

R108
93-8-60

研究資料

開發'93-8-60

韓國의 開途國援助政策



池 鎔 基 著

韓 國 國 際 協 力 團

序 文

우리나라의 開發援助政策은 1991年 4月에 開發援助의 統合實施機關인 韓國國際協力團이 發足되면서 더욱 活潑하게 論議되었고 많은 職員들이 海外援助機關에서 習得한 知識을 通하여 우리 制度의 質的인 轉換을 摸索하려는 熱意로 짧은 期間 동안에 커다란 發展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政府開發援助(ODA)에 對한 國內의 認識은 그렇게 넓지 못하고 이에 對한 研究 역시 一部에 限定되어 있는 實情이다.

先進國들의 援助는 各己 自國의 獨特한 援助背景과 歷史를 가지고 形成·發展되어왔다. 援助의 規模는 勿論 援助의 目標, 實施體制, 援助政策의 樹立過程과 執行過程이 우리와 相異하며 多樣한 形態의 援助프로그램이 自國의 援助戰略에 따라 開發되어 왔다.

援助의 歷史가 짧고 規模가 微弱한 우리의 實情으로 이들 先進國의 制度를 우리나라의 政策에 無條件 接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ODA에 對한 開發援助委員會(DAC)의 原則이나 指針이 수없이 提示되고 있으나 ODA를 主導하고 있는 主要 先進國들의 援助賦與 動機나 實質的 內容과는 많은 乖離를 發見할 수 있고 이러한 現象은 이제 ODA를 本格的으로 實施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敎訓을 示唆해 주고 있다.

따라서 DAC의 原則이나 各國의 政策內容을 보다 넓게 그리고 具體的으로 研究分析하여 우리 實情에 알맞는 政策의 開發努力이 더욱 要求되는 바, 本書는 이러한 目標意識을 가지고 接近코저 하였다. 本書가 向後 우리나라의 開發援助 政策樹立에 좋은 參考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이 著書에 收錄된 모든 內容은 著者의 個人意見이며 韓國國際協力團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10月

韓國國際協力團
總裁 朴 雙 龍

目 次

序 文

第 1 章 外國의 開發援助 概要	1
第 1 節 開發援助의 歷史	1
第 2 節 開發援助의 實績	5
第 3 節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7
第 4 節 開發援助의 評價	14
第 2 章 開發援助의 概念上의 諸問題	18
第 1 節 韓國經濟의 開途國	18
第 2 節 經濟協力의 理論	20
第 3 節 開發援助의 概念	24
第 4 節 開發援助의 分類	26
第 5 節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28
第 3 章 韓國開發援助의 歷史	35
第 1 節 受援의 歷史	35
第 2 節 供與의 歷史	37
第 4 章 韓國開發援助의 現況	40
第 1 節 概要	40
第 2 節 機資材等 供與	41
1. 概念	41
2. 背景 및 目的	42
3. 支援規模	42
4. 地域 및 所得二層別 配分	48

(ii)

5. 支援分野	50
6. 支援形態	52
第 3 節 開發調查	53
1. 沿革 및 法的根據	53
2. 概念	55
3. 種類	62
4. 支援分野	63
5. 妥當性調査의 段階別 區分	64
6. 目的과 效果	65
7. 實施節次	66
8. 支援實績	70
第 4 節 프로젝트型事業	73
1. 概念	73
2. 事業의 施行推移	73
3. 支援種類와 支援分野	77
4. 地域配分 및 支援規模	78
第 5 節 技術協力	79
1. 概念 및 重要性	79
2. 支援分野와 支援形態	79
3. 研修生招請	81
4. 專門家派遣	83
5. 醫療團等派遣	84
6. 青年海外奉仕團派遣	85
第 6 節 對外經濟協力基金	87
1. 法的根據 및 目的	87
2. 支援節次	87
3. 基金의 種類와 條件	88

4. 財源造成 및 運用實績	90
第 7 節 多國間協力	94
1. 概念	94
2. 援助實施機關	95
3. 支援實績	95
第 5 章 韓國開發援助의 政策方向	98
第 1 節 事業의 戰略的 推進	98
1. 現況 및 問題點	98
2. 政策方向	98
가. 理念의 定立	98
나. 目的의 設定	103
다. ODA의 適正規模	105
라. 中長期計劃의 樹立	107
마. 支援分野	110
第 2 節 重點支援國家의 選定	113
1. 現況 및 問題點	113
2. 政策方向	123
第 3 節 開發援助配分의 構造調整과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133
1. 現況 및 問題點	133
2. 政策方向	136
第 4 節 國別援助計劃의 樹立	146
1. 現況 및 問題點	146
2. 政策方向	147
第 5 節 最適協力模型의 開發	152
1. 現況 및 問題點	152
2. 政策方向	153

第 6 節 優秀事業의 發掘과 選定	158
1. 現況 및 問題點	158
2. 政策方向	160
第 7 節 事後管理의 強化와 評價制度의 導入	167
1. 現況 및 問題點	167
2. 政策方向	173
第 8 節 共同協力事業의 積極推進	176
1. 現況 및 問題點	176
2. 政策方向	177
第 9 節 執行業務體制의 確立	178
1. 現況 및 問題點	178
2. 政策方向	181
第 10 節 專門人力의 確保	182
1. 現況 및 問題點	182
2. 政策方向	184
第 11 節 援助業務領域의 擴大	190
1. 現況 및 問題點	190
2. 政策方向	190
가. 環境	190
나. 人口	192
다. 女性開發	194
라. NGO	196
마. 累積債務와 構造調整	197
바. 政治的 狀況認識	197
第 12 節 援助프로그램의 開發과 質的水準의 向上	198
1. 現況 및 問題點	198
2. 政策方向	199

가. 複合的인 援助方式의 模索	199
나. 援助의 質과 效果性의 提高	200
다. 援助産業의 育成	201
第 13 節 下部構造의 擴充	201
1. 現況 및 問題點	201
2. 政策方向	201
가. 關聯法規와 組織의 整備	201
나. 開發援助統計의 確立	203
다. 調査研究와 綜合情報體制의 構築	204
라. 教育訓練의 強化	204
마. 調達業務體制의 確立	205
바. 有關機關과의 協調體制構築	206
사. 弘報活動의 強化	206
<附 錄>	
I. 韓國의 開發援助 實績 (1992)	208
II. 世界의 開發援助 實績 (1991)	216
<參考文獻>	
<索 引>	

第1章 外國의 開發援助概要

第1節 開發援助의 歷史

外國援助(Foreign Aid)의 歷史는 그 起源의 多樣性 때문에 精確한 出發點을 밝히내기가 매우 困難하나 第二次 世界大戰後의 狀況과 連結시키는 것이 가장 適切할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開發援助의 歷史的 흐름을 ①1960년까지의 前史 ②1960年代 ③1970年代 ④1980年代 ⑤1990年代等 5段階로 時代를 區分하여 볼 수 있다.

1. 2次大戰後~1960年代初 (開發援助의 前史)

이 時期는 開發援助가 發生한 時期로 볼 수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狀況이 作用하였다.

첫째,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 敗戰國은 勿論 戰勝國도 마찬가지로 經濟적으로 큰 打擊을 입게 됨에 따라 世界大戰中 兵站庫의 役割을 遂行하여온 美國이 指導的 地位를 獲得하게 되었다. 이에 美國을 中心으로하여 戰後復舊를 爲한 UN, 世界銀行等の 國際機關이 設立되었고 이들 機關은 60年代 以後 開發途上國 援助를 그 重點活動對象으로 하게되었다.

둘째, 世界大戰의 終結後 50年代에는 아시아地域의 舊植民地가 60年代에는 아프리카地域의 舊植民地가 大部分 獨立을 達成하였다. 政治적으로는 獨立을 이룩한 이들 新興國家들이 經濟적으로도 自立發展해 나가기 爲하여서는 아직 많은 障礙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先進諸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가 必要한 實情이었다. 그러나 이들 國家의 舊宗主國들도 戰爭被害로 因한 復舊에 餘力이 없었으므로 Colombo Plan의 發足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美國을 비롯하여 其他 先進國을 包含한 共同開發援助를 遂行하는 方式을 取하게 되었다.

셋째, 世界大戰後 美·蘇間の 東西對立이 激甚하게됨에 따라 美國을 中心으로 한 西方諸國은 美國 트루만 大統領의 포인트.포 計劃(Point Four Program)에서 볼 수 있듯이 開發途上國을 社會主義國家의 影響으로부터 排除하고 資本主義 陳營으로 끌어들이기 爲한 政策을 取하였다.

또한 蘇聯을 中心으로한 共產黨國家는 相互經濟援助會議(CMEA:通常 코메콘이라 稱함)를 設置하여 獨自的으로 開發途上國에 對한 協力을 開始하여 東·西間 援助競爭의 樣相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以上 3가지 要因이 作用하여 60년까지는 開發途上國에 對한 開發援助에 對한 基本的인 認識이 確立되었으며 大部分의 主要 援助實施機關이 誕生하였다.

2. 1960年代 (南北問題의 擡頭)

1960年代는 援助歷史의 劃期的인 時期였다. UN開發 10年(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의 發足等으로 開發援助가 長期計劃에 立脚하여 着實한 第一歩를 내딛은 時期이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政治的 獨立을 爭取한 開發途上國이 77그룹을 結成하여 UN 貿易開發會議(UNCTAD)等を 舞臺로하여 開發途上國 自身の 利益에 立脚한 世界經濟機構의 再編成을 要求하는等 獨自的인 主張을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先進諸國도 主로 OECD傘下의 DAC를 中心으로한 活動等으로 先進國側의 立場을 明確히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3. 1970年代 (南北問題의 展開)

70年代는 開發援助에 있어 混亂과 動搖의 時期로 特徵지어지고 있다.

UN開發 10年이라는 이름으로 出帆했던 60年代는 國際的인 協力과 努力에도 不拘하고 實質的으로는 對開發途上國援助의 惠澤이 貧困層에까지 波及(Trickle Down to the Poorest Strata)시키지 못한 것으로 判明되어 이에 對한

批判과 함께 南北間의 格差가 더욱 深化되자 IBRD等에서는 人間의 基本的需要接近方式(Basic Human Needs Approach)을 勸案하여 開發國의 貧困輕減(Poverty Alleviation)에 對한 關心을 提起하였으며, 先進國은 既存의 協力政策에 對한 全面的인 再檢討를 實施하여 1969年 DAC의 Pearson 報告書와 1970年 第2次 UN開發 10年의 UN開發戰略을 爲한 Tinbergen報告書 等 70年代를 爲한 새로운 南北協力の 構想을 展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닉슨 및 오일쇼크에 이은 開發國의 新國際經濟秩序運動(NIEO)等으로 南北間의 對立이 激化되기 始作함으로써 南北問題(North-South Problem)는 但只 經濟援助의 問題 또는 南北貿易의 問題에 그치지 않고 開發國을 中心으로 南側이 北側의 先進工業國에 새로운 國際秩序의 構築을 要求하는 形態로 展開되어 世界經濟 全體의 本質的인 問題로 登場하였다. 이에 1975. 12月에는 에너지 및 南北問題에 關하여 8個 先進國과 19個 開發途上國에 依하여 國際經濟協力會議(CIEC)가 開催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成果를 보지 못하였다.

한편 開發國은 產油國, 中進國, 最貧國等 階層分化 現象이 생기게 되어 開發援助의 方向이 한층 複雜한 樣相을 띄기 始作하였다.

4. 1980年代 (南北問題의 多樣化)

80年代에 들어서는 70年代 나타나기 始作한 開發國의 階層分化 現象이 더욱 深化되었다. 즉 比較的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있는 新興工業 國家(NICs), 外債 및 經濟沈滯가 繼續되고 있는 中南美國家, 油價下落 및 政治的 不安이 繼續되고있는 中東地域, 慢性的인 貧困과 構造的인 經濟問題에 直面한 아프리카 地域等으로 이들 開發國의 援助欲求도 多樣化 되었다.

또한 國際收支의 弱化和 經濟不況으로 主要先進國은 所謂 援助疲困

(Aid Fatigue) 또는 援助倦怠(Aid Weariness) 現象을 겪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石油波動 以後 開途國의 債務累積 問題도 더욱 深刻한 樣相을 띄게 되어 世界銀行, IMF 등에서 構造調整 政策을 實施하였으나 效果的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80年代末에는 環境問題(Environmental Issues), 人力資源開發(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과 女性開發(Women in Development: WID)等 開發援助에 있어 새로운 課題가 登場하기 始作하였다.

5. 1990年代 (開發援助의 轉換期)

90年代에는 傳統的인 南北間의 問題, 즉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經濟格差 深化와 함께 貧困, 人口, 食糧, 麻藥, 地球環境問題等 世界的 規模의 問題가 浮刻될 展望이며, 舊社會主義國家의 世界資本主義 體制로의 編入에 따라 開發援助에 新潮流가 形成될 展望이다.

開發援助委員會(DAC)는 이러한 여러가지 複合的인 90年代 課題를 解決하기 爲해 1989年 12月 開發協力閣僚 및 國際協力機關長 首腦會議에서 『1990年代의 開發協力』에 關해 合議, 政策方向을 決定한 바 있는데, 이는 90年代 開發援助 政策의 根幹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優先 開途國 스스로가 開發에 關한 最終的인 責任을 지며 開發援助는 開途國의 開發努力을 補充하는 것이라고 言及하고 開途國의 自助努力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둘째, 90年代 中心問題로는 人口增加, 貧困, 營養不足, 文盲 및 劣惡한 環境과 結付된 低開發의 惡循環 問題가 重點 解決課題이며, 이의 解決을 爲해서는 다음 3分野에 一貫性 있는 政策努力이 必要하다.

- 持續可能하며 폭넓은 基礎를 지닌 經濟成長의 促進(Broad-Based Economic Growth)

- 廣範圍한 參與의 開發(Participatory Development)

- 環境改善 및 人口增加 抑制

셋째, 相互依存關係의 深化와 OECD 諸國의 全般的인 經濟政策의 重要性을 勸案하여 다음과 같은 援助努力을 強化하도록 한다.

- 開途國의 多樣化에 相應한 援助政策
- 構造調整(Structural Adjustment) 및 援助評價의 推進
- 政策改革支援과 並行하여 인프라스트럭처의 整備
- ODA의 量的, 質的 擴充

한편 最近 先進國의 開發援助供與는 몇가지 뚜렷한 動向을 타나내고 있는데 受援國(Recipient Country)의 人權이나 民主化 程度, 軍費狀況等의 非經濟的要因이 重視되고(1991.4月 日本이 發表한 ODA供與等 4個 原則), 現在 開途國이 지고있는 莫大한 外債(1991年末 總 1兆 2,800億\$)를 蕩滅 시키려는 努力이 - 代表的인 方法으로 1988年의 Toronto Terms와 1990年의 Trinidad Terms - 增大되고 있다. 아울러 開途國의 要請에 依한 援助方式 만으로는 開途國經濟의 根本的 構造改善이 어렵다고 判斷하고 開發援助의 效率性を 提高하기 爲해 各種의 援助供與國 會議(Donor's Meeting)를 活潑히 開催하고 있으며, 開途國의 受援能力 不足으로 提供된 援助를 效率的으로 活用하지 못하는 點을 考慮하여 프로젝트型 事業을 支援時에는 BOT方式 (Build-Operate-Transfer-Scheme) 또는 BOO方式(Build-Operate-Own-Scheme)으로 推進토록 하고 있다.

第 2 節 開發援助의 實績

本項은 重要的 統計만을 提示하고(附錄參考) 具體的인 內容은 略述한다.

1. 開發援助의 規模

○ 對開途國 資金協力의 總量은 1980年 以後 每年 減少하다 最近에 多少 增

加趨勢인

- 1,848億 \$ ('80)→1,130億 \$ ('88)→1,272億 \$ ('91)
- 資金協力の 總量中 ODA의 重要性이 增大됨에 따라 ODA比重이 增加되고 있음.
 - 23.3% ('80)→41.2% ('89)→42.5% ('91)
- 1991年 現在 ODA 總規模는 602億 \$로서 DAC國家支援이 89.4%인 538億 \$ (經常基準 567億 \$)을 占有함
- DAC國家의 ODA實績
 - 美國 : 113億 \$로 對 GNP 比率은 0.20%
 - 日本 : 110億 \$로 對 GNP 比率은 0.32%
 - 北歐國家의 對 GNP比率이 높음 : 스웨덴(0.92%), 덴마크(0.96%), 노르웨이(1.14%)
 - DAC平均(0.33%), DAC勸告(0.7%), DAC目標(1.0%)

2. 開發援助의 地域別, 所得그룹別 配分

- 最貧地域인 사하라以南 地域에 對한 援助가 꾸준히 增加되고 있음.
 - 24.2% ('81)→28.8% ('86)→31.6% ('91)
 - 아시아地域은 減少 : 同期間中 19.0%→11.6%
- 供與國別(Donor Countries)로 地域別 差等化 戰略追求
 - 美國 : 軍事·外交政策側面에서 라틴아메리카地域 增加, 이스라엘, 이집트等 中東國家에 集中支援
 - 日本 : 資本財輸出과 連繫시켜(Tied Loan) 아시아地域(특히 ASEAN)에 集中支援
 - 英國 : 二國間援助의 75%를 印度等 英聯邦國家에 支援
 - 프랑스 : 아프리카等 佛語圈地域에 集中支援
 - 北歐國家 : 宗教的動機에 依한 人道主義에 重點支援

- 最貧國家보다 低所得國家에 對한 支援比率이 높음
 - LICs(60.4%), LDCs(24.4%)

3. 開發援助의 分野別 配分

- 經濟인프라스트락춰(25.3%) 및 프로그램援助(10.8%) 比率이 높음
- BHN(食糧援助等)에 對한 比重은 크게 낮고 每年 漸次 減少됨
13.1%('76)→2.5%('90)
- 美國은 프로그램援助(24.6%)外에 食糧援助(8.2%)에도 集中하는 反面 日本은 經濟인프라스트락춰(31.9%)에 集中, 食糧援助(0.5%) 比率이 낮음

4. 開發援助의 條件

- ODA의 質을 나타내는 GE比率은 85.1%로 減少되고 있으며, 無償贈與 比率은 72%에 不過함
 - 國別 GE : 美國(76.7%), 日本(75.1%),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랄리아等(100%)으로 ODA의 條件改善을 爲한 GE 86%以上을 維持토록 하는 勸告는 美國, 日本, 佛蘭西, 獨逸等 援助를 主導하고 있는 供與國들이 遵守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
- 非條件附(Untied)가 43.3%, 條件附(Tied)가 23.5%, 部分非條件附(Partially Untied)가 4.7%임

第3節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開發援助의 實施體制를 살펴보면 英國, 美國, 캐나다, 스웨덴, 네델란드, 濠洲等과같이 外務部 中心으로 實施하는 國家, 獨逸, 프랑스等과 같이 經濟協力部 中

〈表 I-1〉

ODA 供 與 의

國名	年度	金 額 ('90價 格)				
		1970-71	75-76	80-81	90-91	(91)
美 國		8,977	8,966	9,508	11,127	(11,262)
E E C 會 員 國		13,120	15,412	21,097	25,912	
(프 랑 스)		4,556	4,945	6,339	7,360	(7,484)
(獨 逸)		3,141	4,009	5,513	6,549	(6,890)
(이 태 리)		856	682	1,347	3,314	(3,352)
(네 텔 란 드)		1,010	1,521	2,344	2,520	(2,517)
(英 國)		2,727	2,833	3,027	2,849	(3,248)
(덴 마 크)		344	516	761	1,188	(1,200)
(벨 기 에)		576	782	868	857	(831)
(아 일 랜 드)		—	23	48	65	(72)
(스 페 인)		—	100	777	1,041	(1,177)
(포 르 투 갈)		—	—	74	169	(213)
日 本		2,794	2,196	5,704	9,526	(10,952)
카 나 다		1,197	1,821	1,798	2,480	(2,604)
스 웨 덴		587	1,405	1,491	2,009	(2,116)
노 르 웨 이		181	465	701	1,203	(1,178)
오 스 트 리 아		869	934	921	997	(1,050)
스 위 스		228	339	461	798	(863)
핀 란 드		61	142	242	898	(930)
오 스 트 리 아		67	181	358	468	(548)
뉴 질 랜 드		65	157	112	99	(100)
D A C 計		28,235	33,019	42,393	53,845	(56,709)
그 리 스		—	—	2	22	
룩 섹 부 룩		—	5	8	12	
아 이 스 랜 드		—	2	3	1	
O E C D 國 家 計		28,235	33,026	42,406	53,881	

長期推移

(單位:百萬\$)

構 成 比 (%)				對 GNP 比率 (%)			
70-71	75-76	80-81	90-91	70-71	75-76	80-81	90-91
31.8	27.1	22.4	20.0	0.30	0.26	0.23	0.20
46.8	46.7	49.8	46.6	0.42	0.44	0.48	0.43
16.1	15.0	14.9	13.2	0.68	0.61	0.67	0.61
11.1	12.1	13.0	11.8	0.33	0.38	0.45	0.41
3.0	2.1	3.2	6.0	0.16	0.11	0.16	0.30
3.6	4.6	5.5	4.5	0.60	0.77	1.01	0.90
9.7	8.6	7.1	5.1	0.42	0.39	0.39	0.30
1.2	1.6	1.8	2.1	0.40	0.53	0.74	0.95
2.09	2.4	2.0	1.5	0.48	0.55	0.54	0.44
—	0.1	0.1	0.1	—	0.10	0.16	0.18
—	0.3	1.8	1.9	—	—	0.10	0.21
—	—	0.2	0.3	—	—	0.02	0.28
9.9	9.7	13.5	17.1	0.22	0.21	0.30	0.32
4.2	5.5	4.2	4.5	0.41	0.49	0.43	0.45
2.1	4.3	3.5	3.6	0.40	0.78	0.80	0.91
0.6	1.4	1.7	2.2	0.33	0.68	0.86	1.15
3.1	2.8	2.2	1.8	0.59	0.53	0.44	0.36
0.8	1.0	1.1	1.4	0.12	0.19	0.24	0.34
0.2	0.4	0.6	1.6	0.09	0.17	0.24	0.70
0.2	0.5	0.8	0.8	0.07	0.17	0.28	0.29
0.2	0.5	0.3	0.2	0.23	0.47	0.31	0.24
100.0	100.0	100.0	99.9	0.34	0.34	0.35	0.33
—	—	0.0	0.0	—	—	0.00	0.07
—	0.0	0.0	0.0	—	—	0.12	0.28
—	0.0	0.0	0.0	—	—	0.06	0.04
100.0	100.0	100.0	100.0	0.34	0.34	0.35	0.34

國名	年度	金 額 (90價格)			
		1970-71	75-76	80-81	90-91 (9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	6,694	9,003	2,663
쿠 웨 이 트		—	1,975	1,853	822
U A E		—	2,385	1,574	712
其 他		—	1,582	1,841	61
아 랍 計		—	12,636	14,271	4,258
舊 蘇 聯		—	2,960	3,701	1,532
其 他		—	645	840	89
中 · 東 유 럽 計		—	3,605	4,541	1,621
中 國		—	827	385	136
印 度		—	161	271	108
韓 國		—	—	30	72
臺 灣		—	—	—	69
베 네 주 엘 라		—	171	182	40
其 他		—	1,908	225	28
非 아 랍 L D C 計		—	3,066	1,093	453
全 世 界 總 計		28,235	52,333	62,311	60,213

資料: OECD

註: ()內는 經常價格基準

(單位：百萬\$)

構 成 比 (%)				對 GNP 比率 (%)			
70-71	75-76	80-81	90-91	70-71	75-76	80-81	90-91
				—	6.66	4.05	2.48
				—	5.81	3.58	—
				—	9.57	3.34	2.14
				—	—	—	—
				—	7.92	4.45	3.03
				—	—	—	—
				—	—	—	—
				—	—	—	—
				—	—	0.09	0.08
				—	—	0.10	—
				—	—	0.03	0.06
				—	—	—	—
				—	0.24	0.18	0.08
				—	—	0.08	—
				—	4.25	0.09	0.13

援助實施體制

有 償 資 金 協 力	國際機關에 대한 出資・據出 (1)開發金融機關, (2)UN機關	備 考
外務, 大藏, 經企, 通產省	(1)大藏省, (2)外務省	
OECD		
農務部, 國際開發協力廳	(1)財務部, (2)國務部	
商品金融公社, 國際開發廳		
經濟協力中央金庫(CCCE)	(1)經濟財政部, (2)外務部	○ 其他海外領・海外領土部가 DOM/TOM에 대한 援助 擔當 ○ ACTIM은 UN, OECD, 世界銀行等の 援助關聯 研修生の 研修實施 ○ 86年 3月 組織改正
經濟協力部	(1), (2)經濟協力部	
復興金融公庫		
外務部, 國庫部, 外國貿易部	(1)國庫部, (2)外務部	
中期信用中央金庫(MC)等		
外務部(海外開發廳)	(1), (2)外務部(海外開發廳)	其他 各種形態의 援助 關聯業務를 代行하는 國營企業으로서 Crown Agent(CA)가 있음
英聯邦開發公社(CDC)		
(카나다는 1986年以後 有償資金 協力を 實施하지 않음)	(1)財務部, (2)外務部	IDRC, ICOD, PCIAC 및 DD는 모두 公社(Crown Corporation). ICHRDD은 아직 事務所가 開設되지 않았음
外務部, 經濟部	(1), (2)財務部, 外務部	
外務部, 經濟部, 네델란드 開發途 上國投資銀行(NIO)等		
濠洲는 ODA로서의 有償資金協力은 實施하지 않음.	(1)大藏省, (2)外務部	
(1978年以來 有償資金協力を 實施하지 않음)	(1), (2)外務部	其他 스웨덴 企業과의 合併事業 推進을 위한 基金으로서 SWEDFUND가 있음

心으로 實施하는 國家, 日本과 같이 各部處 混合으로 實施하는 國家等 3類型으로 區分될 수 있다.

外務部中心의 國家에서는 外務部傘下の 獨自的 機構形態(또는 外局形態)와 內局形態의 2類型으로 分類될 수 있는데 前者의 國家로는 英國의 海外開發廳(ODA)과 美國의 國際開發協力廳(IDCA) 傘下の 獨立機構인 國際開發廳(USAID), 캐나다의 國際開發廳(CIDA), 스웨덴의 國際開發廳(SIDA)이 있고 外務部の 直屬局(內局)形態로는 네덜란드의 國際協力總局, 이태리의 中央技術局이 있다.

經濟協力部 中心의 프랑스는 經濟協力부와 傘下の 經濟協力中央金庫(CCCE) 등이, 獨逸은 經濟協力부(BMZ)와 傘下機關인 復興金融金庫(KfW)와 技術協力公社(GTZ)가 있다.

各部處 混合型的 日本은 ODA를 主로 4省體制로 維持하고 있는데, 外務省과 傘下機關인 JICA, 大藏省, 通產省, 經濟企劃廳 傘下機關인 OECF에서 混合으로 實施하고 있다.

프랑스도 嚴密한 意味에서 混合型的 國家로 볼 수 있는데 外務部傘下 協力部는 佛語圈, 포르투갈語圈의 아프리카, 카리브諸國에 對한 無償資金協력과 全開途國에 對한 技術協력을 擔當하고, 其他援助는 經濟財政부가 世界銀行等 多國間援助를, 實施機關인 經濟協力中央金庫(우리나라의 EDCF에 該當)가 有償資金協력을 分擔하고 있다. 美國을 除外한 거의 모든 國家에서 開發援助, 國際協力 및 經濟協力等에 對한 責任者로 長官級이 任命되고 있다.

第 4 節 開發援助의 評價

ODA에 對하여 最近에 提起되고 있는 主要論點들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供與받고 있다.

이러한 複雜多岐한 援助의 供與와 受援 메커니즘을 보다 生産的이고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해서는 總體的인 援助資源에 對한 調整이 緊要한 問題인데 이의 方法으로 援助當事者間에 對話를 通한 合同會議(例:UN諮問그룹會議, UNDP圓卓會議等)를 行하거나(Joint Consultation) 政策과 프로그램에 對한 相互理解를 爲해 共同融資의 形式으로 共同補助를 取하도록 하거나 (Concertation) 또는 開發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對해 援助形態別 또는 物量別로 具體的인 配分計劃을 作成하는等の 實務調整(Operational Coordination)이 必要하다는 것이다(Barry).

5. 環境業務領域等の 支援

앞으로 大部分의 供與國들이 女性開發과 環境開發의 持續性問題뿐만 아니라 NGO의 役割 및 開發教育에 對해서도 關心이 增大되어야 할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第 2 章 開發援助의 概念上의 諸問題

第 1 節 韓國經濟와 開途國

先進國들은 1960年代에 政治的 獨立으로 登場한 많은 開途國들과의 南北問題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이의 解決을 爲해 努力하고 있으나 各國의 事情에 따라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經濟的 格差는 더욱 深化되고 있어 開途國間에 南南協力體制를 構築할 必要性이 더욱 認識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年末 現在 165個 國家와 修交關係를 樹立하고 있으며 이中 開途國은 92.5%인 141個國을 占有하고 있어 開途國과의 外交的 交流를 매우 幅넓게 維持하고 있고 經濟的으로 交易, 投資, 海外建設 뿐만 아니라 移住, 就業等의 面에서 매우 活潑한 關係를 맺고 있다. 韓國經濟는 지난 30여年 동안 外部指向의 政策(Outward-looking Policy)의 追究을 通해 高度成長을 示顯하면서 海外依存度와 貿易依存度가 크게 높아졌다.

海外依存度는 開發計劃의 初年度인 1962年の 23%에서 1992년에는 63.5%로 2.8배가 增加되었고 貿易依存度 역시 同期間中 19%에서 51.8%로 2.7배가 增加되었다.

우리나라가 世界에서 차지하는 輸出比重을 보면 1960年の 0.06%에서 1992년에는 3.0%로 增加되었고 同期間中 對開途國 比重은 0.2%에서 8.2%로 40배가 增加되어 우리나라와 開途國間의 交易比重이 꾸준히 增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年の 開途國과의 交易量을 보면 輸出은 總規模 766億\$中 44.3%인 339億\$, 輸入은 總規模 818億\$中 33.8%인 276億\$에 達하였는데 이러한 輸出入의 占有率은 1960年の 10%内外에 比較하여 約 3배가 增加된 것이다.

開途國에로의 海外投資 역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2年の 總 12.6億\$中 51.9%인 6.5億\$에 達하였다.

우리나라는 國內 賦存資源의 貧弱으로 大部分의 資源을 海外 特別 開發國으로 부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데 主要 原資材의 80%以上을 開發國으로 부터 輸入하고 있으며 이러한 輸入依存은 經濟規模의 增大에 따라 더욱 深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1966年 부터 始作한 海外建設進出 역시 開發國을 對象地域으로 活潑히 進出해 왔으며 우리經濟의 成長, 外貨獲得 및 雇傭創出에 크게 寄與해 왔다. 1992年의 契約額 27.8億 \$ 中 開發國이 99.6%를 차지하고 있다.

〈表 II-1〉 우리나라의 對開發國 修交 및 經濟協力現況

(單位: 億 \$)

區 分	1987	1992
○ 修交國家數(A)	131	165
對開發國 修交(B)	107	141
援助供與國家數(C)	71	126
B/A(%)	81.7	85.5
C/B(%)	66.4	73.0
○ 總輸出(D)	473	766
對開發國輸出(E)	105	339
E/D(%)	22.2	44.3
○ 總輸入(F)	410	818
對開發國 輸入(G)	107	276
G/F(%)	26.1	33.8
○ 海外投資(H)	4	12.6
對開發國 海外投資(I)	2.1	6.5
I/H(%)	52.5	51.9
○ 海外建設(J)	17.1	27.8
對開發國 海外投資(K)	16.4	27.7
K/J(%)	95.9	99.6

資料: 經濟企劃院, 1992 開發國 經濟協力報告書(1993.7) 및 外務部資料

註: 國際機構等은 除外

이와같이 先進國 進入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開發援助의 對象國도 126 個國에 達하는等 開途國과의 經濟協力を 強化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先發開途國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고, 우리 經濟成長의 主된 原動力인 輸出指向的 成長戰略을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을 것이다.

第 2 節 · 經濟協力の 理論

投資財源으로서 援助의 生産性은 受援國에 따라 援助의 代替性(Fungibility), 受容(吸收)性(Absorption), 浪費性(Dissipation)의 側面이 存在한다(Browne). 그러나 開途國의 經濟發展을 促進키 爲한 重要的 要因中の 하나가 投資 즉 資本形成인데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外資導入이나 開途國에 對한 援助等 經濟協력이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며(Riddell) 이러한 經濟協力問題는 國際資本移動(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의 理論的 領域에 歸屬되는 것이다.

이의 理論的接近은 Ricardo와 Mill에 依하여 代表되는 古典學派로부터 始作하여 Keynes와 Ohlin의 論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經濟協力이란 用語가 戰後的產物이라는 點에서 1950年代부터 展開되어온 純粹理論(開發理論)과 政策理論(援助政策論)을 中心으로 說明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前者는 Nurkse, Rosenstein-Rodan, Rostow, Myrdal等を 中心으로 1950年代부터 本格的으로 展開되었으며 이 뒤를 이어 1960年代에는 Prebisch를 先頭로 Mikesell, Strout, Chenery, Fei等이 政策理論을 提示하였다. 開途國의 援助所要額 決定을 資本理論을 中心으로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以下 朴昇 教授 參考).

外資의 所要額은 무엇에 依하여 決定되는가라는 問題에 對한 解答은 外資導入을 必要로 하는 主要因이 어떻게 變動하는가 하는 問題와 關聯된다.

投資의 上限을 決定하는 要因으로서는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 貯蓄能力(Savings Capacity), 外換供給能力(Foreign Exchange Capacity)等 세가지가 있다. 一定한 量의 投資가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貯蓄된 資金을 投資化할 수 있는 技術(또는 結合力)이 있어야 하며, 投資量에 相應하는 貯蓄이 있어야 하며,

投資財의 一部는 輸入해야 할 것이므로 投資量을 뒷받침하는 外換供給能力이 있어야 한다. 이들 세가지 要因이 바로 外資의 所要額을 決定한다.

外資所要額은 目標成長率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投資量과 이들 세가지 要因들이 제각기 國內의인 힘에 依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投資量의 差(Gap)로서 表示된다.

$$GA=IR-IA=AR-Aa$$

$$GS=IR-IS=SR-Sa$$

$$GF=IR-IF=M-X$$

GA : 吸收能力隔差(Absorptive Capacity Gap)

GS : 貯蓄隔差(Savings Gap)

GF : 外換隔差(Foreign Exchange Gap)

IR : 目標吸收能力이 許容하는 最大投資量

AR : 目標投資量 達成에 必要한 吸收能力

Aa : 現在 國內 吸收能力

IS : 國內貯蓄에 依하여 達成possible한 投資量

SR : 目標投資量 達成에 必要한 國內貯蓄量

Sa : 國內貯蓄可能量

IF : 輸出에 依한 外換供給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投資量

M : 目標投資量 達成에 必要한 最大限의 輸入量

X : 總輸出可能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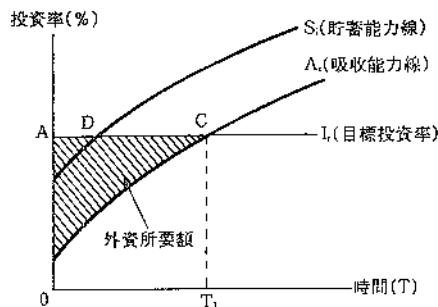
즉 吸收能力隔差(Absorptive Capacity Gap)는 目標投資量 達成에 必要한 投資吸收能力과 現在 吸收能力의 差이며 貯蓄能力(Savings Gap)은 所要投資와 貯蓄能力의 差이며 外換隔差(Foreign Exchange Gap)는 目標投資量 達成에 必要한 輸入所要額과 輸出能力의 差異이다. 外資所要額을 이와 같은 隔差(Gap)로 說明하는 理論을 隔差理論(Gap Theory)이라하고 이 세가지 隔差中에서 한 가지로 說明하는 理論을 單一隔差理論(One Gap Theory), 두개로 說明하는 境遇를 兩隔差理論(Two Gap Theory), 세개로 說明하는 境遇를 3隔差理論(Three

Gap Theory)이라 한다. 單一隔差理論으로서는 貯蓄隔差를 取扱한 페이-파우 모델(Fei-Paauw Model)이 있고 兩隔差理論으로서는 吸收能力과 貯蓄能力을 取扱한 허쉬만(A.O. Hirschman)과 貯蓄隔差와 外換隔差를 取扱한 맥킨너(R.I. McKinnon), 썅굽타(A. Sengupta), 콘토스(S.E. Kontos) 등이 있으며 3隔差理論으로서는 有名한 체너리-스트라우트模型(Chenery-Strout Model)이 있다. 마익셀(R.F. Mikesell)의 隔差理論에 依하면 貯蓄이나 外換보다도 吸收能力의 不足 때문에 目標하는 投資가 이루어지지 못할 境遇 外換導入은 吸收能力의 不足을 채우기 爲해서 必要하다. 이런 境遇의 外資所要額은 吸收能力隔差에 依해서 決定되는데 다음과 같은 不等式이 成立한다.

$$\text{潛在貯蓄}(Sp) > \text{現實貯蓄}(Sa) = \text{現實投資}(Ia) < \text{目標投資}(Ir) \quad \text{그리고} \quad Sp \geq Ir$$

즉 定義에 依하여 恒常 實現貯蓄과 實現投資는 같다. 그런데 現在の 實現되는 投資(Ia)는 潛在貯蓄보다도 적고 目標投資(Ir)보다도 적은데 그 理由는 吸收能力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潛在貯蓄은 目標投資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境遇 現實投資를 目標投資의 水準까지 끌어올리기 爲해서는 吸收能力을 키워야 하며 吸收能力을 키우기 爲해서 外資導入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S_i 는 貯蓄能力線으로서 國內貯蓄으로 達成할 수 있는 最大投資를 나타내며 A_i 는 吸收能力線으로서 吸收能力으로 본 最大投資率을 나타낸다. I_r 는 그 나라가 實現하려고 하는 目標投資率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貯蓄能力은 D 점까지는 目標投資率을 達成하는데 있어 不足하지만 이 점을 지나서는 國內貯蓄의 不足問題는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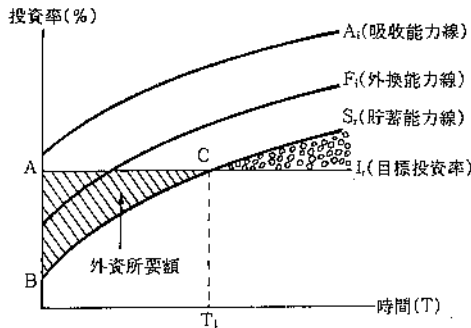
(圖 II-1) 吸收能力隔差



그러나 吸收能力은 貯蓄能力보다 더 적으며 따라서 外資導入의 所要額은 吸收能力에 의하여 決定된다. 즉 時點 T_1 에 이르기까지 모두 斜線으로 標示한 만큼의 外資導入이 必要한 것이다.

그 나라가 意圖하는 投資率(目標投資率)의 達成이 主로 國內貯蓄의 不足에서 基因하는 境遇 外資는 國內貯蓄의 不足을 補充하기 爲하여 必要하게 된다. 이런 境遇 外資所要量은 貯蓄隔差에 依해서 決定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圖 II-2)와 같다. 이 그림에 使用되는 記號들은 (圖 II-1)과 같으며, 다만, F_t 는 外換能力線으로서 그 나라의 外換供給能力으로 볼 때 達成될 수 있는 最大投資率을 나타낸다.

(圖 II-2) 貯蓄隔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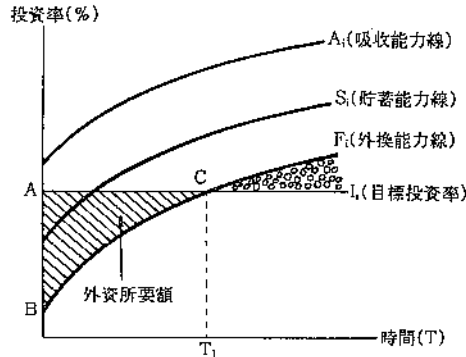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貯蓄不足이 目標投資率 達成에 決定的 隘路임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時間 T_1 에 이르기까지는 斜線으로 標示된 $\triangle ABC$ 의 面積에 該當하는 外資導入이 必要하다.

外換供給能力의 不足으로 投資에 必要한 資本財를 輸入할 수 없는 것이 目標投資率 達成에 가장 큰 隘路가 되고 있는 境遇 外資의 所要額은 바로 外換隔差에 依해서 決定된다. 이러한 境遇는 대개 內向의 經濟開發을 하는 나라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外換不足이 投資에 가장 큰 隘路가 된다는 것은 즉 國內의 潛在貯蓄이 輸出을 통해서 外換形態로 轉換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外換隔差에 依한 外資所要額을 그림으로 보면 (圖 II-3), 가장 큰 投資의

隘路는 外換不足이며 따라서 時點 T_1 까지는 $\triangle ABC$ 의 面積만큼 外資導入이 必要하며 이 점을 넘어서서는 오히려 外換을 外國에 輸出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貯蓄隔差 또는 外換隔差는 모두 事前의인 概念이며 이를 事後의으로 보면 언제나 恒等式이 成立한다.

(圖 II-3) 外換隔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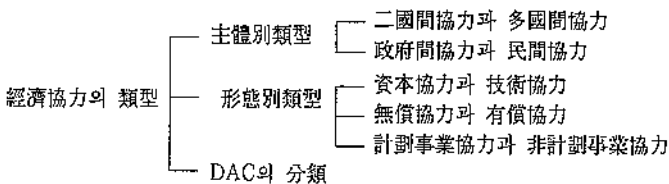
第 3 節 開發援助의 概念

本書는 우리나라의 政府 또는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또는 略해서 開發援助: ODA)를 主로 紹介한 것이다.

開發援助라는 用語는 또다른 類似用語의 使用과 함께 意味하는 바가 相異하므로 이에 對한 說明이 必要할 것이다.

開發援助(Development Assistance)는 最近에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經濟協力(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用語와 同義語로 쓰여지기도 하며¹⁾ 아

- 1) 開發援助의 分類 및 用語의 使用이 經濟協力 또는 다른 用語와 同義語로 쓰여 지기도 하는데 經濟協力の 類型은 그 形態 乃至 方式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올려 開發協力(Development Cooperation), 援助(Aid, Assistance), 外國援助(Foreign Aid, Foreign Assistance) 등의 用語와 關聯하여 各 用語에 完全하게 定立된 概念範圍가 存在하지 않는다.

本書에서는 開發援助, 開發協力 더 나아가 經濟協力이라는 用語의 使用에 別 다른 意味를 賦與하지 않으려 하며 매우 폭넓은 意味를 가지고 있는 이들 用語를 OECD의 DAC에서 말하는 「開發途上國에 對한 資金의 흐름(Flow of Financial Resources)」이라는 觀點에서 把握코져 한다.

開發援助委員會(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는 파리에 있는 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의 下部組織이며 開發途上國에 對한 經濟協力を 先進諸國의 主導로 研究·檢討하고, 더 나아가 先進諸國이 積極의으로 南北問題 解決을 爲하여 內部的의으로 相互審査를 되풀이 함으로써 援助의 增加와 質的改善等을 爲해 努力하고 있다.

DAC加盟國은 OECD 24會員國中 그리스, 아이스랜드, 터키 등 3個國을 除外한 21個國으로 日本, 濠洲,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獨逸,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英國, 美國,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다.

DAC에서는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이나 福祉增進을 圖謀하기 爲하여 援助供與國이 自體의 財政資金을 使用하여 供與하는 純粹한 援助를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ODA는 다음과 같은 基本要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 ① 中央 및 地方政府를 包含한 公共機關 또는 그 實施機關에 依하여 開發途上國 및 國際機關에 對하여 供與될 것
- ②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 및 福祉向上에 寄與하는 것을 그 主目的으로 할 것
- ③ 供與條件이 緩和된 援助로서 10%의 割引率을 使用한 贈與率(Grant Element)이 25% 以上일 것

DAC는 開發途上國에 對한 資金의 흐름에 ODA라고 認定되는 것 외에 이것을

월전 웃도는 量의 資金의 흐름을 主體別 및 形態別로 (圖 II-4)와 같이 分類하고 있다.

其他公的資金(Other Official Flow : OOF)이란 政府開發援助에 依한 세가지 要件을 모두 채울 수 없는 政府部門의 資金供與를 意味하며 輸出促進을 爲하여 供與되는 政府輸出信用과 政府部門에 依한 開途國의 企業의 株式取得等이 包含된다.

民間資金(Private Flow : PF)은 民間部門의 市場與件에 依한 去來를 말하는데 이것은 營利를 目的으로 한 去來이나 間接의으로는 開途國의 開發에 貢獻하는 것이다. 民間輸出信用, 民間直接投資, 證券投資等이 있다.

非政府機關(民間援助團體)(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에 依한 贈與는 非政府·民間團體에 依한 自願奉仕活動과 關聯된 資金이다.

第 4 節 開發援助의 分類

우리나라의 開發援助(ODA)는 受援國에 直接的으로 援助를 供與하는 二國間協力(Bilateral)과 國際機關에의 出資, 分擔金 등을 通하여 受援國에 間接적으로 援助가 提供되는 多國間協力(Multilateral)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二國間協力は 다시 償還義務與否에 따라 無償協력과 有償協력으로 區分된다.

우리나라는 無償協力を 無償援助와 技術協력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無償援助는 嚴格한 意味에서 技術協력과 對稱하여 (無償) 資金協力이라는 名稱이 보다 正確한 表現이나 그동안 無償援助(韓國國際協力團 事業施行指針 第3條 4項)로 通用되어 왔는 바 同指針의 概念定義에 依하면 償還義務를 賦課하지 않고 特定地域에 物資 또는 現金을 供與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日本의 無償資金協力(Capital Grant Assistance)과 같은 概念으로서 日本은 經濟社會發展에 必要한 機資材, 設備 및 서비스를 調整하는데 必要한 資金(Capital)等を 支援하고 있다.

技術協力は 目的에 따라 2가지로 區分할 수 있는데(Browne) 첫째는 投資關

(圖 II-4) DAC의 經濟協力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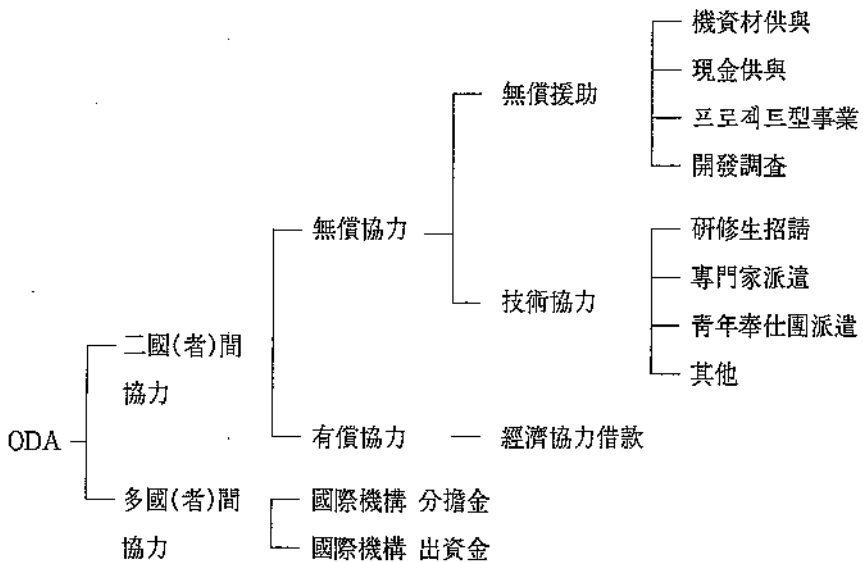
形 態	內 容
公的開發援助 (ODA)	(1) 二國(者)間 1. 贈與(無償) : 技術援助, 食糧援助, 行政費, 其他贈與(無償) 2. 開發資金貸付 및 資金投資 : 新規開發貸付, 食糧援助 借款, 州 및 其他 二國間 資產投資 (2) 多國(者)間 1. 贈與(無償) : UN機關, EEC等 2. 出資 : IBRD, IFC, IDA 地域開發銀行等 3. 讓許性 貸付
其他公的資金 (OOF)	(1) 二國間 1. 公的輸出信用 2. 株式 및 其他 二國間 資產投資 (2) 多國間 — 國際機構
非政府機關 贈與(NGO)	非營利, 自願團體
民間資金(PF)	(1) 直接投資 (2) 間接(證券)投資(二國, 多國間) (3) 民間輸出信用

聯技術協力(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 ITC)으로 資金協力事業을 위한 專門技術이나 訓練을 實施하여 프로젝트計劃이나 實施에 必要한 妥當性 調査等を 遂行케 해 주는 것을 말하며(우리나라의 開發調査, 프로젝트型 事業等) 둘째는 單獨技術協力(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 FTC)으로 特別한 資金協力事業과는 關係없이 專門知識이나 技術을 供與해주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의 專門家派遣, 研修生招請等). 本書에서는 韓國國際協力團 職制

와 業務分掌에 따라 前者의 形態를 無償援助에 包含시키고져 한다.

우리나라의 ODA分類는 OECD/DAC의 分類體系와 相異하며 日本의 分類體系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協力形態別 連繫性的 強化, 프로젝트事業의 增大, 開發調查事業의 效率性增大라는 當面課題와 ODA統計의 整備, 實施體制의 改編等과 關聯하며 再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圖 II-5) 우리나라의 ODA分類



第 5 節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韓國國際協力團은 開發援助中 無償協力만을 擔當하고 있으며 無償援助중 機資材供與, 現金供與, 프로젝트事業 및 開發調查등 事業을 開發協力事業으로, 技術協力中 研修生 招請, 專門家派遣 및 青年奉仕團 派遣等 事業을 技術協力事業으로 區分하여 施行하고 있다.

有償協力에 該當되는 對外經濟協力基金은 財務部, 多國間協力は 外務部와 財務部 등에서 擔當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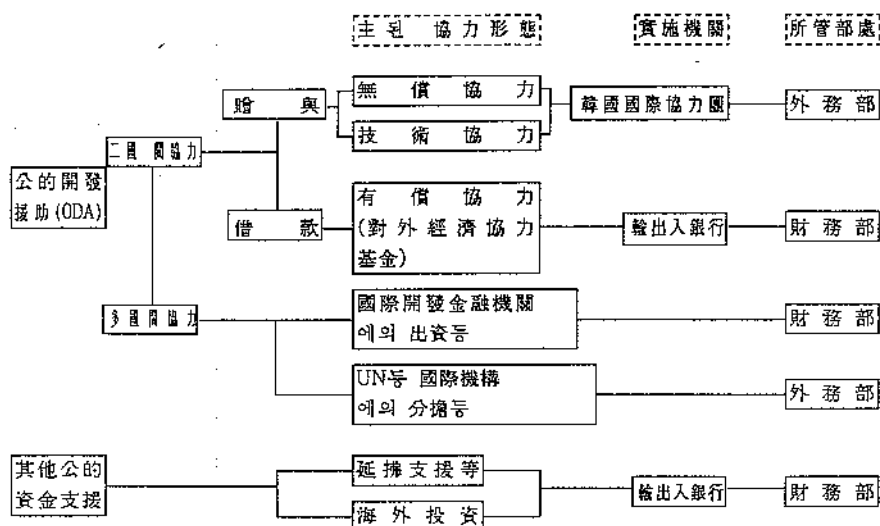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援助實施體制는 英美等과 같은 外務部 中心이나, 프랑스와 같은 經濟部處 中心의 實施體制도 아니고 各 部處混合型的 日本體制를 維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ODA의 業務는 (圖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償援助는 外務部가, 技術協力は 外務部를 비롯한 科技處, 勞動部, 建設部, 遞信部, 文教部, KDI에서 EDCF는 財務部 등에서 分散實施되므로써 協力手段間에 連繫性的 不足은 勿論 一回의인 事業遂行, 豫算의 重複, 專門性的 缺如 등으로 援助事業의 效果를 擧揚시키지 못하는 등의 問題點이 露頭되자 援助業務를 統合하는 政府次元의 體制整備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따라 1991年 1월에 韓國國際協力團法이 公布되고 우리나라의 ODA業務를 擔當할 專擔機構로 KOICA가 外務部傘下에 設立되었으나 이 過程에서 各部處의 理解關係로 EDCF業務와 開發調查業務가 完全히 移管되지 못하므로써 援助實施體制는 日本의 混合型을 따르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現在 KOICA의 事業範圍와 內容이 部分的으로 日本의 制度를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바(開發調查가 代表的임) 援助歷史, 規模, 專門人力等 모든 面에서 日本과 相異한 條件을 勘案할때 우리나라에 알맞는 援助의 實施體制와 方法으로 改善되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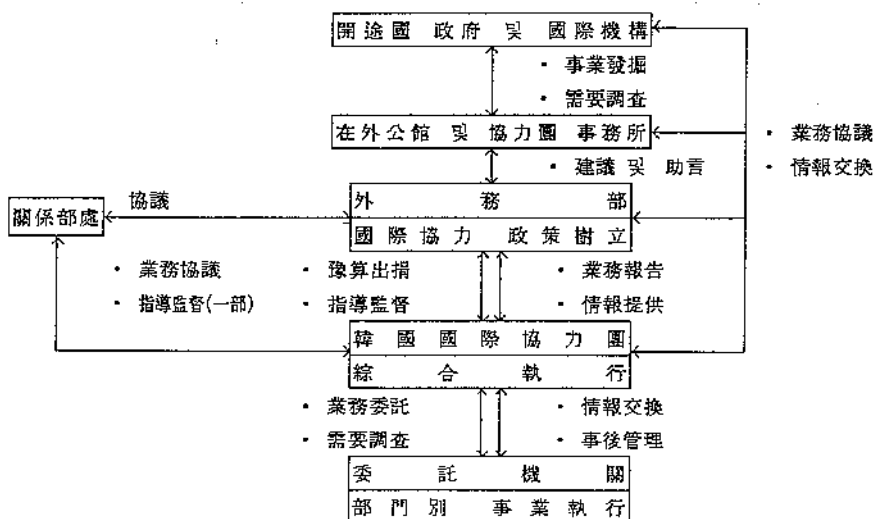
〈圖 II-6〉

業務實施體制

○ 總括體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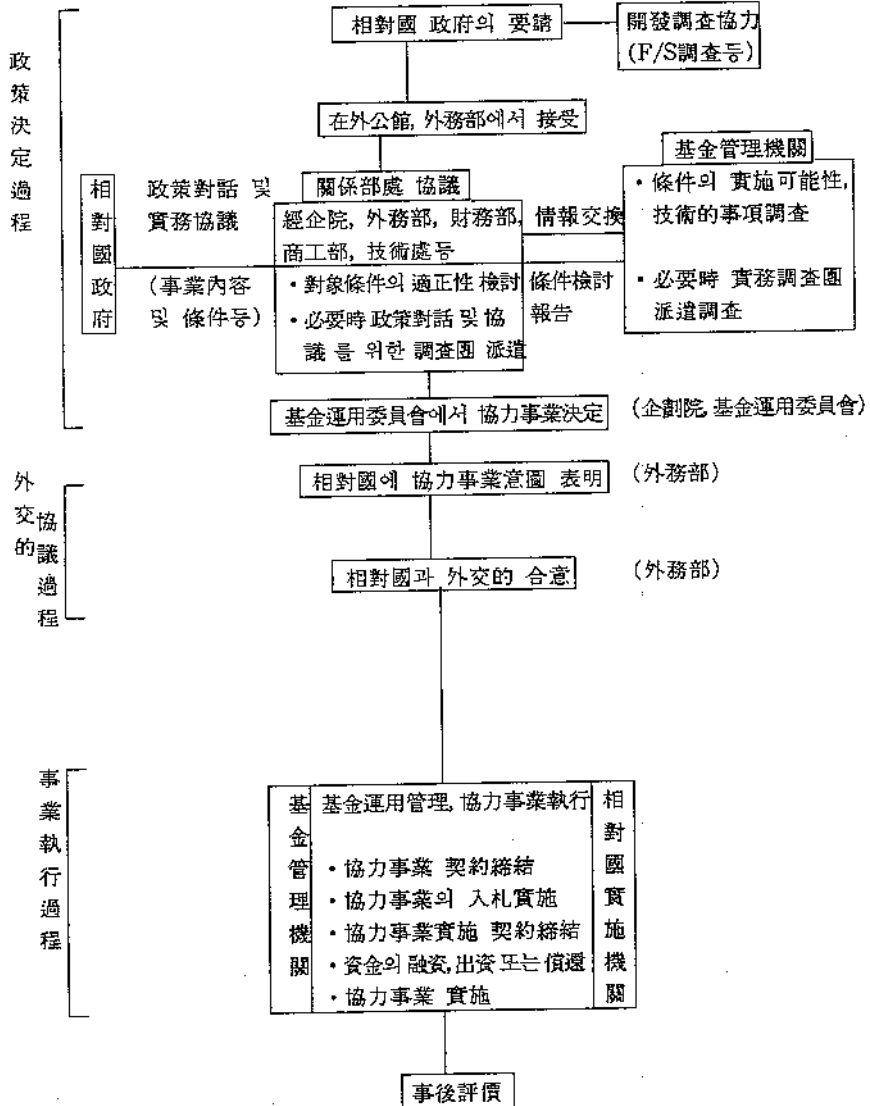


○ 韓國國際協力團 業務實施體系



資料：經濟企劃院

○ 對外經濟協力基金 業務實施體系



資料：經濟企劃院

<圖 II -7> KOICA 設立以前の 開發援助 實施機關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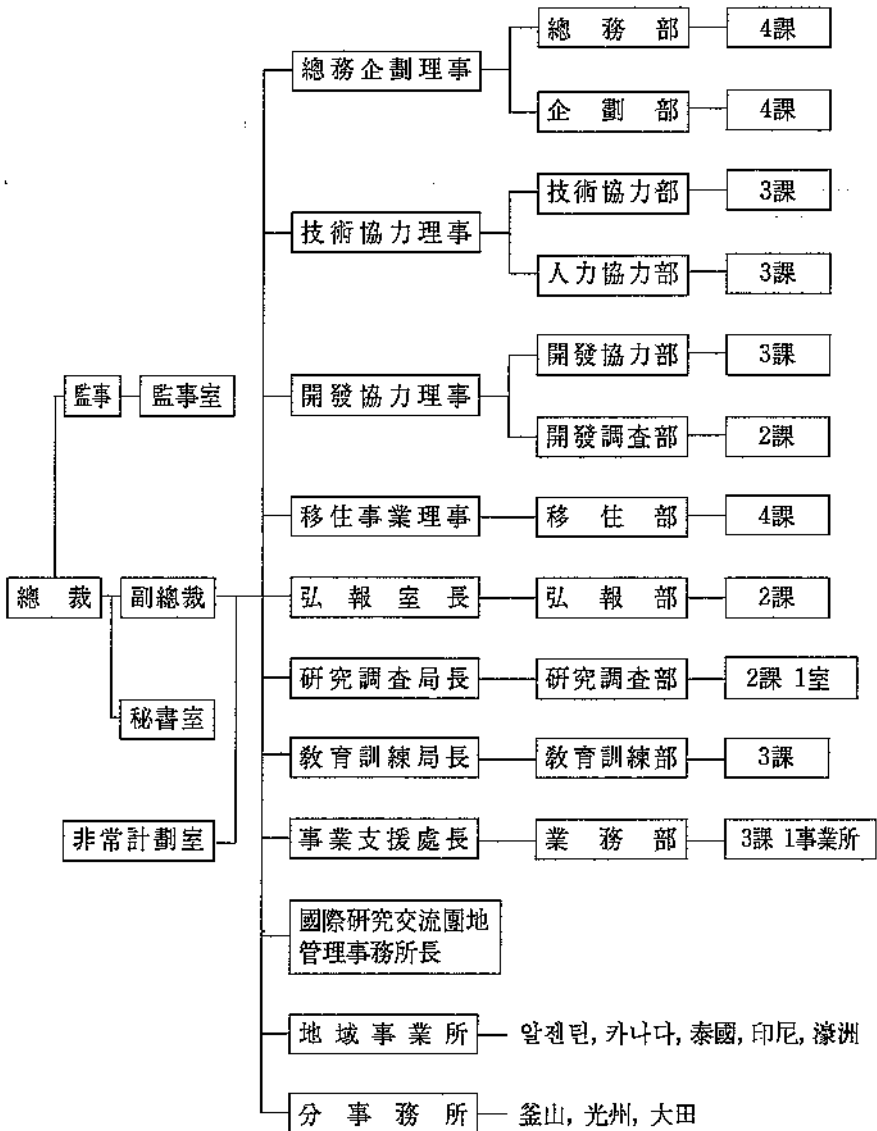
事業別	所管部處	實施機關	事業規模('90豫算)		擔當人員 (實施機關 :名)	KOICA에 業務統合 ('91.4.1)
			事業量	金額(百萬圓)		
○ 2國間協力				21,900.3		
・ 無償援助				9,912.6		
機資材供與	外 務 部	高麗貿易	93個國	8,089.2	4	○
開發調査	經濟計劃院	經濟企劃院	2件	121.7		○
	科 技 處	科技處	2件	26.4		
無償技術用役	建 設 部	海外技術公社	8件	974.5	3	×
	遞 信 部	韓國電氣通信公社	1件	361.0		
職業訓練支援	勞 動 部	勞動部		339.8		○
・ 技術協力				4,895.3		
研修生招請	外 務 部	韓國科學財團	61名	285.7	15	○
吳專門家派遣	科 技 處	韓國科學財團	268名	1,532.6		
	建 設 部	建設技術公務員 教育院	55名	300.0		
	勞 動 部	職業訓練管理公團	56名	558.0	3	
	遞 信 部	通信部公務教育院	35名	333.7		
醫療團・跆拳道 師範派遣	外 務 部	外務部	49名	1,156.1		○
青年奉仕團 派遣	教 育 部	UNESCO韓國 委員會	50名	326.2	4	○
政策研鑽事業	經濟企劃院	KDI	225名	403.0		×
・ 有償協力	財 務 部	韓國輸出入銀行		7,092.4	24	×
○ 多國間協力				40,691.5		
・ 國際機構分擔	外 務 部 等			7,378.9		×
・ 國際機構出資	財 務 部	韓國銀行		33,312.6		×
計				61,591.8	53	
參考(海外移住 吳就業)	外務部, 勞動部	韓國海外開發公社		1,658	149	○

註) : 1) 擔當人員은 專擔人員을 基準함.

2) ○表는 統合, ×表는 非統合임.

<圖 II-8> KOICA의 組織과 定員(1993. 9. 1)

・ 組織圖(總裁, 副總裁, 監事, 4理事, 4局室處, 11部, 34課)



・ 現員(名)

總裁	副總裁	監事	理事	1級	2級	3級	4級
1	1	1	4	4	10	11	30

5級	6級	7級	研究職	技術職	技能職	管理職	計
42	50	7	11	5	57	27	261

註：管理職은 國際研究交流團地 人員임.

第3章 韓國開發援助의 歷史

第1節 受援의 歷史

世界開發援助의 歷史는 世界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始作되어 이제 半世紀의 歷史를 記錄하게 되었으며 援助歷史의 初期부터 우리나라도 主要 受援國의 하나였다.

우리나라에 導入된 無償援助는 1945年 解放以後부터 始作하여 契約上 1970年 5월에 締結된 AID援助 10萬\$을 끝으로 終結되었으며 受援總額은 1977년까지 總 48億\$에 達하였다. 援助推移를 援助性格을 基準으로 3期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期는 解放以後 動亂까지(1945~52)로 GARIOA, ECA等의 美國의 韓國에 對한 救護中心의 援助가 이루어진 時期이었으며, 2期는 1953年 美國 MSA法에 依한 ICA 및 FOA援助와 1956年 PL480號에 依한 剩餘農產物援助, 그리고 韓國戰 復舊를 爲한 UN援助가 集中된 時期였고, 3期는 1961년에 韓國 經濟의 自立計劃을 目的으로 FAA法에 依한 AID援助와 PL480號의 對充資金이 主가 된 時期였다.

民族資本의 形成이 微微하였던 解放以後 50年代를 지나는동안 海外로부터의 貯蓄은 國內財源不足을 補完하는 同時에 成長의 土臺를 마련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는 바 이러한 海外貯蓄은 거의 全部가 無償援助에 依한 것이었다.

1954~60年의 期間中 韓國經濟는 年平均 4.9%의 成長을 이룩하였는데 同 期間中 年平均 投資率은 11.8%이었고 그 投資財源 構成에 있어 無償援助가 大部分이었던 海外貯蓄率이 8.0%로서 經濟成長의 裏面에는 外國援助의 힘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無償援助에 依한 海外貯蓄率도 開發年代인 1960年代에 海外借款이 本格化되면서 그 比率이 크게 縮小되었다. '50~'60年代에 우리나라가 援助를 經濟開發에 有効適切하게 使用하므로써 國家發展의 主要한 要素가 되었으며 Krueger도 指摘하듯이 受援國의 하나인 韓國이 全世

界的으로 經濟開發에 成功한 나라라는 매우 重要한 敎訓을 얻게 되었다.

〈圖 Ⅲ-1〉

對韓 外國援助의 變遷

期 間		1945~1948	1948~1950	1950~1953	1954~1960	1961~1970.5
美 國	法律條約	USAMGIK	FAA(1948)	MSA(1953.7)		FAA(1961.9)
	機 關	GARIOA	ECA		FOA →ICA→ PL480	AID
	性 格	救護援助	經濟援助	戰時緊急 救護援助	復興防衛 援 助	自立計劃援助
國 際 機 構	U N	UNRRA		UNKRA		
	U N 軍			CRIK=SKO SUN (UNCACK→KCAC) SEC (UNCACK→KCAC)		

資料：鄭勳休，經濟協力，KIET(1978, 12)

〈表 Ⅲ-1〉

우리나라의 受援實績

(單位：百萬\$)

	AID	PL480	PAC	UN 및 其他	計
1945~1960	2,199	223	—	579	3,011
1961~1970	809	773	113	47	1,762
計	3,008	1,006	113	626	4,773

資料：經濟企劃院，外資導入統計資料(1974) 및 韓銀，經濟統計年報(1975)

受援額 4,773百萬\$은 2國間 援助가 87.2%인 4,162百萬\$로서 美國과 日本이 主要 供與國이었고 UN 및 其他 國際機關으로부터 供與받은 多國間援助는 12.8%인 611百萬\$에 不過하다.

受援形態는 原資材가 2,084百萬\$ (43.7%), 農產物이 1,201百萬(25.2%)로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資本財는 474百萬\$ (9.9%), UNDP와 콜롬보플랜에 依한 技術支援은 254百萬\$ (5.3%)이었다.

第2節 供與의 歷史

世界援助의 初期부터 受援國의 立場에 있던 우리나라가 先進國과 더불어 오늘날 世界 30余個의 供與國의 하나로 開發援助를 처음으로 始作하게 된 것은 1963年 USAID 援助資金에 依한 研修生 受託訓練을 實施하면서 부터이다. 우리 政府資金에 依하여 1965年 부터는 開途國訓練生 招請事業이 1967年 부터는 專門家派遣等의 協力事業이 段階的으로 始作되기는 하였으나 그 實績은 매우 微微한 水準에 머물렀고 1970年代 中盤까지는 主로 UN 機構等의 資金을 支援받아 開發援助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그 後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功的인 推進과 工業化 政策으로 우리의 經濟成長과 科學技術이 發展되어 開途國으로 부터 需要가 每年增加됨에 따라 우리 資金爲主로 開發援助事業이 本格的으로 推進되었다.

1977年 外務部의 主管下에 110萬\$ 規模의 우리나라 機資材를 開途國에 供與함으로써 對外無償援助가 始作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ODA 規模의 增加에 따라 事業規模가 每年 꾸준히 增加되어 왔다.

政府次元의 開途國 援助事業은 1980年代初 以後 아시아, 아프리카 地域의 大統領 巡訪時 提起된 對開途國 協力事業을 契機로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始作하였는데 KDI가 開途國 政府의 主要職責을 擔當하고 있는 人士를 招請하여 우리나라의 開發經驗에 對한 教育을 實施하는 國際開發 研鑽事業을 1982년부터 始作하였고, 1984년에 建設部에서 無償建設技術 用役事業을, 勞動部에서 職業訓練院設立 支援事業을 始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受援國에서 援助供與國으로서 本格的인 모습을 갖추기 始作한

것은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을 創設하여 開途國의 產業發展과 經濟安定을 支援하기 爲한 借款提共事業을 始作하면서부터이다. 이는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國際收支의 黑字基調示顯, 1986아시안게임의 成功的인 開催等으로 國際社會에서의 우리나라에 對한 認識의 轉換과 함께 主要先進國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NICs에 對한 責任分擔論이 擡頭한 時期와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1989년에 UNESCO 韓國委員會 主管下에 韓國青年海外奉仕團 派遣事業이 始作되어 1990년에 4個國에 44名의 奉仕團員이 最初로 派遣되었으며 1991년에는 7個國 37名, 1992년에는 8個國에 52名, 1993년에는 9個國에 56名이 派遣되기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따른 開途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에 對한 要請의 增加와 함께 그동안 政府의 各 所管部處別로 實施되어 오던 開發援助業務를 統廢合하여 보다 有機的이고 體系的으로 遂行함으로써 援助效果의 極大化를 圖謀하고 多樣化되어 가는 開途國의 需要에 一層 能動的으로 對應하기 爲하여 韓國國際協力團法에 依해 1991. 4月 韓國國際協力團이 設立되었다.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아직 開拓段階에 지나지 않으므로 韓國國際協力團의 發足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經濟規模와 國際的 地位向上에 걸맞게 協力規模를 漸次的으로 擴大하고 새로운 協力手段의 發掘과 함께 協力事業에 對한 效率性增進 方案을 積極的으로 模索하는 등 보다 創意的인 研究와 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圖 Ⅲ-2)

開發援助의 歷史

區 分	年度	事 業 內 容	主管部署
60年代	1963	• 美國 AID 援助計劃 및 資金에 依據 開途國 研修生 訓練 最初實施	外務部, 科技處
	1965	• 政府資金에 依한 研究生 招請事業	外務部, 科技處
	1967	• 政府資金에 依한 專門家 派遣事業	外務部, 科技處

區 分	年度	事 業 內 容	主管部署
	1968	• UN 및 其他 國際機構와의 協力事業으로 外國人 招請訓練 事業 • 政府資金에 依한 프로젝트 技術供與 事業	外務部, 科技處 科技處
70年代	1975	• 技能工 招請訓練 事業 — 75~82년까지는 科技處 委託事業 — 83年 以後 勞動部 自體實施	勞動部
	1977	• 無償援助事業	外務部
80年代	1981	• 公共研究事業	KAIST
	1982	• 國際開發 研鑽事業	KDI
	1983	• 建設技術者 招請訓練 事業	建設部
	1984	• 無償建設 技術用役事業	建設部
	1987	• 對外經濟協力基金 設置	財務部
		• 科學財團에 對外技術供與事業 執行業務委託	科技處, 外務部
	1988	• 對開途國 通信技術支援 無償用役事業	遞信部
	1989	• 韓國 青年海外奉仕團 派遣事業 • 無償技術用役事業	UNESCO 經濟企劃院
90年代	1991	• 韓國國際協力團 設立	外務部 傘下

資料：外務部, 我國의 對開途國 經濟協力(1990.6)

第 4 章 韓國開發援助의 現況

第 1 節 概 要

1985—1992年間の 우리나라 開發援助는 年間 1億\$ 内外로서 量的規模에는 커다란 變化가 없으며, 이中 二國間協力の 比重이 20~30%에 不過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한 增加를 보여 1992년에는 46.4%로 急激히 增大되었다.

1992年 ODA의 GNP比率은 0.04%로서 OECD 勸告基準인 0.7%나 DAC 會員國의 平均 比率인 0.33%에 비해 顯著히 낮은 水準이나 우리나라의 經濟力向上과 國際的 地位의 向上에 相應하여 ODA 規模를 擴大하려는 政策方向으로 볼 때 長期的으로 ODA規模는 繼續 擴大될 것이다.

〈表 IV-1〉

開發援助의 推移

(單位 : 百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A. 政府開發援助(ODA)	48.3	111.5	74.7	62.3	98.5	89.2	99.9	115.2
〈二國間 協力〉	14.9	15.0	17.3	19.9	22.9	32.4	39.1	53.5
無償援助	8.5	8.5	9.1	11.4	12.6	11.6	12.4	11.6
技術協力	6.4	6.5	8.2	8.5	8.5	9.1	10.9	16.1
經濟協力借款(EDCF)	—	—	—	—	1.8	9.9	6.8	15.6
行政費用						1.9	9.0	10.2
〈多國間 協力〉	33.4	96.5	57.4	42.4	75.6	56.8	60.8	61.7
國際機構分擔金	4.9	4.9	5.8	6.7	8.7	10.3	12.2	25.9
國際機構出資金	28.5	91.6	51.6	35.7	66.9	46.5	48.6	35.8
B. 其他公的資金(OOF)	368.0	275.6	346.5	433.0	304.8	426.7	696.6	651.1
輸出信用	350.1	261.4	333.1	463.9	155.7	212.9	568.7	508.6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海外投資支援	17.9	14.2	13.4	29.1	149.1	213.8	127.9	142.4
C. 民間資金 (PF)								
G N P (億 弗)	897	1,027	1,284	1,692	2,040	2,422	2,808	2,945
ODA / GNP (%)	0.05	0.11	0.06	0.04	0.05	0.04	0.04	0.04
A+B / GNP (%)	0.46	0.38	0.33	0.29	0.20	0.21	0.28	0.26

資料：經濟企劃院, 前掲書

第2節 機資材等 供與

1. 概 念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開發援助方式의 하나로서 受惠國에 償還義務를 賦與하지 않고 贈與의 形態로 資金 또는 物資를 供與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開途國의 要求에 보다 迅速하고 機動性 있게 應할 수 있는 積極的인 協力方式으로서 經濟的側面에 대한 協力は 勿論 受惠國과 友好關係의 維持等 政治·外交的인 效果가 크며 先進供與國에서도 하나의 協力手段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에도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二國間 無償援助의 主要 協力手段이 되고 있으며 機資材(物品) 供與事業, 프로젝트型 事業 및 現金支援으로 區分되어 實施하고 있다. 機資材(物品) 供與事業은 各種 機資材, 救護物資等을 現物의 形態로 供與하는 것을 말하며 國產品 提供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型事業은 프로젝트에 關聯된 하드웨어 部門(建物 및 施設의 建設, 機資材供與等)과 소프트웨어 部門(技術移轉 關聯支援)의 各種 協力手段을 單獨 또는 相互 連繫하여 支援하는 事業이며, 現金 支援은 災難의 救護等 人道主義

目的,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現地 또는 第3國의 物品을 使用하여야 할 境遇에 現金의 形態로 供與하는 것을 말한다.

2. 背景 및 目的

1977年 約 110萬\$의 規模로 始作한 우리나라의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冷戰 時代의 與件을 反影하여 經濟的인 實利側面 보다는 非同盟國家와의 關係增進, 對北韓 優位確保等 政治·外交의 側面에 重點을 두어온 것이 事實이며, 또한 急變하는 國際情勢와 天災地變等에 依한 救護要請에 迅速히 對處하기 爲한 緊急資金의 機能도 遂行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對象國家, 配分規模 및 事業 形態上의 特徵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支援背景 및 目的의 特殊性에 依하여 決定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²⁾

3. 支援規模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支援規模는 事業最初年度인 1977年 110萬\$에서 15年이 지난 1992年에는 1,157萬\$로 約 10.5倍의 增加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ODA

2) 無償援助(Grant Aid 또는 Grant Assistance)의 一環으로 實施하고있는 우리나라의 機資材供與 (Provision of Equipment)는 主要先進國에서 技術協力이나 經濟開發等を 爲한 供與와는 달리 乘用車등 消費財의 單純供與가 大部分이다.

이는 日本 JICA에서 技術協力과 連繫하여 小規模로 供與하는 機資材供與 (Provision of Equipment for Technical Cooperation)나 또는 프로젝트 型事業과 關聯하여 比較的 多額으로 供與하는 形態와는 다르며, 日本 外務省에서 無償資金協力 (Capital Grant Assistance)의 6가지 形態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一般無償援助 (General Grant Aid)의 境遇 開途國의 經濟社會開發, 民生安定, 福祉向上等の 計劃을 實現하는데 必要한 建設施設이나 機資材供與等の 形態를 取하는 것과도 相異하다. 우리나라 機資材供與의 目的과 形態는 歐美先進國이 經濟開發과 關係시켜 機資材를 直接供與하거나 또는 機資材의 購入을 위한 現金形態로 供與하는 것(Commodity Aid : 商品援助)과도 多少 相異한 것이다.

規模의 擴大에 따라 機資材等供與事業의 規模도 平均的으로 꾸준히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5~1992사이의 實績을 보면 우리나라 全體 ODA 對比 占有率은 12.2%이며 二國間協力の 39.9%로 開發援助에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IV-2〉 開發援助 對比 機資材供與實績

(單位:百萬\$, %)

區 分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 (’85~’92)
開發援助合計	48.3 (100)	111.5 (100)	74.7 (100)	62.3 (100)	98.5 (100)	89.2 (100)	99.9 (100)	115.2 (100)	700.6 (100)
〈二國間協力〉	14.9 (30.8)	15.0 (13.5)	17.3 (23.2)	19.9 (31.9)	22.9 (23.2)	32.4 (36.3)	39.1 (39.1)	53.5 (46.4)	215.0 (30.7)
機資材等 供與事業	8.5 (17.6)	8.5 (6.6)	9.1 (12.2)	11.4 (18.3)	12.6 (12.8)	11.6 (13.0)	12.4 (12.4)	11.6 (10.1)	85.7 (12.2)
其 他	6.4	6.5	8.2	8.5	10.3	20.9	26.7	41.9	129.3
〈多國間協力〉	33.4 (69.2)	96.5 (86.5)	57.4 (76.8)	42.4 (68.1)	76.6 (76.8)	56.8 (63.7)	60.8 (60.9)	61.7 (53.6)	485.6 (69.3)

한편 豫算의 增加에 따라 支援對象國도 〈表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年の 14個國에서 1992년에는 103個國, 6個 機構로 늘어나 約 7.8倍의 增加를 보인 反面, 1個國當 平均支援規模는 10余萬\$ 水準으로 制限된 豫算을 多數國家에 少額으로 分散하여 供與하고(Thinly Distributing) 있음을 알 수 있다.

機資材供與의 1國當 支援規模를 보면 5萬\$~10萬\$ 規模의 支援이 全體國家의 34%~39%로 大部分을 占有하고 있으며, 5萬\$ 未滿은 機資材供與 初期年度인 1977年 36%에서 最近에는 13%~28%로 減少된 反面, 同 期間中 10萬\$ 以上の 供與는 28%에서 37%~48%로 增大되어 1國當 支援規模가 多少 增

(表 IV-3)

年度別・地域別 機資材 供與 現況

44

(單位：萬 \$, %)

年度別 地域別		1977		1978~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77-92)	
		%		%		%		%		%		%		%		%		%	
아 시 아	金 額	41	37.3	798	17.5	162	17.8	200	17.5	227	18.1	261	22.6	392	31.6	216	18.7	2,298	19.9
	國家數	4	28.6	75	19.6	16	20.6	19	22.6	19	21.3	19	20.4	23	24.7	22	20.2	196	20.9
中 南 美	金 額	13	11.8	1,358	29.8	293	32.2	356	31.1	353	28.1	307	26.5	337	27.7	271	23.4	3,288	28.5
	國家數	3	21.4	118	30.8	26	35.6	27	32.1	28	31.5	28	30.1	26	28.0	28	25.7	284	30.3
아 프 리 카	金 額	56	50.9	2,077	45.5	335	36.8	409	35.7	440	35.0	364	31.4	347	28.0	427	36.9	4,455	38.6
	國家數	7	50	158	41.3	23	31.5	26	31.0	27	30.3	29	31.2	30	32.2	35	32.1	335	35.7
中 東	金 額	—	—	271	5.9	89	9.8	88	7.7	110	8.8	115	9.9	62	5.0	112	9.7	847	7.3
	國家數	—	—	26	6.8	7	9.6	7	8.3	7	7.9	8	8.6	5	5.4	8	7.3	68	7.3
東 歐	金 額	—	—	5	0.1	—	—	—	—	11	0.8	61	5.2	54	4.3	75	6.5	206	1.8
	國家數	—	—	1	0.2	—	—	—	—	1	1.1	5	5.4	5	5.4	10	9.2	22	2.3
其他(國際機構, 基金, 團體)	金 額	—	—	55	1.2	31	3.4	91	8.0	115	9.2	51	4.4	48	3.9	56	4.8	447	3.9
	國家數	—	—	5	1.3	2	2.7	5	6.0	7	7.9	4	4.3	4	4.3	6	5.5	33	3.5
計	金 額	110	100.0	4,564	100.0	910	100.0	1,144	100.0	1,256	100.0	1,160	100.0	1,240	100.0	1,157	100.0	11,541	100.0
	國家數	14	100.0	383	100.0	73	100.0	84	100.0	89	100.0	93	100.0	93	100.0	109	100.0	938	100.0

〈表 IV-4〉

機資材供與의 1國當 支援規模

① 總括表

(單位：個國)

年度別 規模別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2萬弗 未滿	1	7.1	5	16.1	8	13.6	2	2.1	2	2.1	5	4.6
2-5萬弗	4	28.6	2	6.5	10	16.9	14	15.1	10	10.8	26	23.9
5-10萬弗	5	35.8	17	54.8	8	13.6	32	34.4	36	38.7	37	33.9
10-15萬弗	2	14.3	2	6.5	7	11.9	19	20.4	20	21.5	18	16.5
15-20萬弗	1	7.1	2	6.5	11	18.6	13	14.0	14	15.1	15	13.8
20-50萬弗	1	7.1	3	9.6	13	22.0	13	14.0	10	10.7	8	7.3
50萬弗 以上	—	—	—	—	2	3.4	—	—	1	1.1	—	—
計 ¹⁾	14	100.0	31	100.0	59	100.0	93	100.0	93	100.0	109	100.0

註：①國家數가 ②機資材 및 現金支援과 ③프로젝트型事業 支援의 合計와 相異한 것은 一部國家의 重複 때문임.

② 機資材 買 現金支援

(單位：個國)

年度別 規模別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2萬弗 未滿	1	7.1	5	16.1	8	13.6	2	2.3	2	2.3	4	3.8
2-5萬弗	4	28.6	2	6.7	10	17.2	13	14.8	10	11.5	26	24.8
5-10萬弗	5	35.8	16	53.3	8	13.8	31	35.2	34	39.0	37	35.2
10-15萬弗	2	14.3	2	6.7	6	10.3	17	19.3	18	20.7	18	17.1
15-20萬弗	1	7.1	2	6.7	11	19.0	12	13.6	12	14.0	14	13.3
20-50萬弗	1	7.1	3	9.9	13	22.4	13	14.8	10	11.4	6	5.8
50萬弗 以上	—	—	—	—	2	3.5	—	—	1	1.1	—	—
計	14	100.0	30	100.0	58	100.0	88	100.0	87	100.0	105	100.0

③ 프로젝트型事業 支援

(單位：個國)

年度別 規模別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2萬弗 未滿	—	—	—	—	—	—	1	11.1	1	14.3	1	10.0
2—5萬弗	—	—	—	—	—	—	2	22.2	1	14.3		
5—10萬弗	—	—	1	100.0	—	—	1	11.1	3	42.8	5	50.0
10—15萬弗	—	—	—	—	1	100.0	2	22.2	1	14.3	1	10.0
15—20萬弗	—	—	—	—	—	—	2	22.3	1	14.3	2	20.0
20—50萬弗	—	—	—	—	—	—	1	11.1	—	—	1	10.0
50萬弗 以上	—	—	—	—	—	—	—	—	—	—	—	—
計	—	—	1	100.0	1	100.0	9	100.0	7	100.0	9	100.0

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地域 및 所得그룹別 配分

1977年~1992년까지의 總 支援金額 11,541萬\$ 의 地域別 配分構造를 보면 아프리카 地域이 全體의 38.6%로 가장 많고 中南美 地域이 28.5%, 아시아.太平洋地域이 19.9%, 中東 및 其他 地域이 各各 7.3%, 5.7%의 順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主要 先進國이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ming)에 依據 特定地域 및 國家에 重點의으로 支援하는 方式을 採擇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政治.外交的인 配慮에 依해 小規模 多國家 支援政策을 推進해 왔으며 이에따라 國家數가 많은 아프리카 및 中南美地域에 對한 支援이 全體의 67.1 %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歷史, 文化 및 地理的으로 가까운 아시아 地域은 20%에 不過하여 (특히 1991년에는 아세아地域構成비가 31.6%로 急増하였는데 이는 몽골에 148萬\$이 特別支援된 때문임) 아시아地域에 全體 規模의 50%를 支援 (1990)한 日本의 境遇와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表 Ⅲ-5〉 地域別 配分現況 ('77~'92)

(單位: 萬\$, %)

計	아프리카	中 南 美	아 시 아	中 東	其 他
11,541	4,455	3,288	2,298	847	653
(100)	(38.6)	(28.5)	(19.9)	(7.3)	(5.7)

〈表 Ⅲ-6〉 日本의 地域別 配分現況 (1990)

(單位: 百萬\$, %)

計	아 시 아	아프리카	中 南 美	中 東	其 他
1,374.05	700.56	423.23	117.17	113.24	19.85
(100.0)	(50.0)	(30.8)	(8.5)	(8.3)	(1.4)

資料: 日本外務省, 日本의 政府開發援助(1991)

註: 支出額基準

〈表 Ⅳ-7〉 日本의 10大 重點供與國 支援現況 (無償資金協力)

(單位: 億엔)

區 分	'85	'90
對 象 國 家	방글라데시, 泰國, 파키스탄, 스리랑카, 버마(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中國, 수단 (아시아:9個國, 아프리카: 1個國)	방글라데시, 泰國,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中國, 수단, 잠비아, 페루 (아시아:7個國, 中東:1個國, 아프리카:1個國, 中南美:1個國)
支 援 規 模 (A)	905.79	844.2
全 體 支 援 規 模 (B)	1,744	1,998
A/B (%)	51.9	42.3

資料: 日本外務省, 前掲書

1991年度 支援對象國을 所得階層別로 보면 LLDCs(最貧國)에서 우리 우리나라가 속하여 있는 UMICs(高中所得國)에 이르기까지 모든 所得그룹에 對하여 支援하고 있다. 이중 LLDCs에 對한 支援이 全體의 36.3%로 가장 높으며,

LMICs(低中所得國)에 25.6%, LICs(其他 低所得國)에 17.8%, UMICs에 9.1%로 所得이 낮은 그룹順으로 支援比率이 높으며, 其他 國際機構等에 對한 支援이 11.2%를 차지하고 있다.

(表 IV-8) 所得그룹別 配分現況 (1992)

(單位:萬\$)

區 分	計	LLDCs	其他LICs	LMICs	UMICs	其 他
支援規模	1,157	420	206	296	105	130
(%)	(100)	(36.3)	(17.8)	(25.6)	(9.1)	(11.2)

5. 支援分野

最近 4年間(1989~1992)의 分野別 支援實績을 보면 (資料未備로 1977~1988間の 實績은 精確한 把握이 不可함) 總 供與額 4,814萬\$中 消費財가 3,764萬\$로서 全體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中에서도 乘用車類가 大部分인 輸送用機械가 主流를 이루고있어 (1992年境遇 受援國의 54%인 59個國에 支援) 耐久消費財偏重이라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反面 工作, 産業機械와 農機械등 資本財部門은 568萬\$로 11.8%에 不過하고 現金支援은 482萬\$로 10.0%를 占有하였다.

이를 BHN 目的으로 區分하기는 統計上 어려움이 있으나 機資材供與단을 基準時, 災難救護等を 目的으로 供與된 現金支援, 農機械等 農業部門支援, 醫療部門, 公共行政 및 生必品等の BHN 支援은 50%로서 DAC의 二國間 水準보다 다소 높으나 先進國의 경우 BHN 比率은 無償協力이 有償協力보다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二國間 BHN 比率은 先進國에 비해 더욱 낮을 것으로 評價된다. 이러한 援助支援分野等과 關聯하여 提起 되는 批判은 우리나라의 援助目標가 어떤 原則이나 哲學이 不在하여 國家的 또는 世界的 觀點보다도 個別部處들에 의한 援助가 되풀이 되어온 側面이 없지않으며 援助目標만 하더라도 우리國家

가 南北對峙狀況이라는 特殊性으로 第3世界等 보다 많은 國家와 善隣關係를 維持하려는 外交의 利害關係를 中心으로 展開되어옴으로써 援助의 配分에 있어 質의低下 (Quality Deterioration)가 豫見되다는 點이다

따라서 援助의 形態나 分野가 援助國의 參與의開發을 통한 生産能力의 提高라는 側面에서 受援國의 上部 特定部類들에게 所要로 하는 乘用車類等の 供與보다는 國民들의 實需要에 바탕을 둔 아래로부터의 開發戰略 (Bottom - up Approach)을 通하여 實際로 最終需要者의 必要性에 相應토록 調整되어야 하고, 受援國의 農業, 製造業, SOC, 에너지, 科學技術等 主要部門에 있어 廣範圍한 成長基盤造成에 寄與케 함으로써 大多數 國民이 그 開發利益을 共有토록

〈表Ⅳ-9〉

品目別 支援實績

(單位:萬 \$, %)

區 分	年 度		1989		1990		1991		1992		計	
		%		%		%		%		%	(79~92)	%
〈資本財또는生産財〉	229	17.5	142	12.3	125	10.0	82	7.1	568	11.8		
工作·産業機械	139	11.1	73	6.3	80	6.4	36	3.1	328	6.8		
農機械 및 裝備	80	6.4	69	6	45	3.6	46	4.0	240	5.0		
〈消費財〉	877	69.8	956	82.6	991	79.9	937	81.0	3,764	78.2		
輸送用 機械	473	37.6	461	39.7	498	40.1	375	32.4	1,807	37.5		
컴퓨터 및 事務機器	198	15.8	218	18.8	234	18.9	231	20.0	881	18.3		
醫療機器·醫藥品	123	9.9	156	13.4	101	8.1	130	11.2	511	10.6		
生 必 品	—	—	36	3.1	105	8.5	6	0.5	147	3.1		
其 他	82	6.5	88	7.6	53	4.3	195	16.9	418	8.7		
〈現 金〉	160	12.7	59	5.1	125	10.1	138	11.9	482	10.0		
計	1,256	100	1,160	100	1,241	100	1,157	100	4,814	100		

註: 1) 韓國國際協力團에서 그동안 使用한 1977-1989間의 品目別 統計는 推定値로 明確한 統計整理가 不可하므로 引用하지 않음.

2) 輸送用機械는 生産에 直接寄與하지 않는 乘用車가 大部分임.

(表 IV-10)

主要國의 BHN配分 (1989)

(單位: %)

部 門	日 本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獨 逸	노르웨이	스웨덴	英 國	DAC計
社會인프라 및 서비스	19.7	22.2	30.7	39.0	27.0	20.4	15.6	27.7	25.3
農業分野	11.9	11.1	13.4	6.9	6.5	19.1	9.1	8.8	10.1
食糧援助	0.4	7.0	0.1	0.9	2.7	0.5	0.2	1.5	4.1
緊急援助	2.3	1.6	5.6	—	0.7	11.8	16.7	1.8	2.1
B H N計	34.3	41.9	49.8	46.8	36.9	51.8	41.6	39.3	41.6
其 他	65.7	58.1	50.2	53.2	63.1	48.2	58.4	60.7	58.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日本通産省, 經濟協力の 現況과 問題點(1992)

持續的이며 公正한 開發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의 努力을 傾注해야 될 것이다.

6. 支援形態

投資材等 供與事業의 支援形態는 一般的으로 프로젝트型 事業, 프로그램型 援助, 非프로젝트 援助(財政支援, 構造調整援助, 商品援助等), 災難救護, 食糧援助等으로 區分되고 있으며 主要 先進國의 境遇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型 援助를 爲主로 支援하고 있다.

(表 IV-11)

日本 無償援助 支援形態 (1990)

(單位: 百萬\$)

計	프로젝트	非프로젝트	災難救護	食糧援助	其 他
1,358.43 (100)	1,037.06 (76.3)	146.78 (10.8)	46.40 (3.4)	37.09 (2.7)	91.1 (6.7)

資料: 日本外務省, 前掲書

註: 約束額 基準

우리나라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1977~1992期間中 支援形態別 實績을 보면 機資材 供與가 9,459萬\$로 全體의 8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災難救護等を 目的으로 供與된 現金支援은 1,094萬\$로 9.5%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協力形態가 連繫 되어 援助效果가 큰 事業으로 評價되고 있는 프로젝트型事業은 988萬\$로 8.6%에 不過하다.

〈表 IV-12〉 支援形態別 實績 ('77~'92)

(單位:萬\$)

計	機資材供與	現金支援	프로젝트型事業
11,541	9,459	1,094	988
(100.0)	(82.0)	(9.5)	(8.5)

第3節 開發調查

1. 沿革 및 法的根據

우리나라 開發調查의 法的根據는 1980年 制定된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 第4項 1號의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을 爲한 對外無償技術用役의 提供』이라는 規程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1989년에는 建設部訓令 第775號로 對外無償技術用役提供事業 管理規程을 制定), 그동안 開發調查는 建設部(實質的인 事業施行主體는 韓國海外技術公社(KCI)가 實施해온 無償技術用役 提供事業이 大部分이었다.³⁾ 卽 建設部에서 海外技術用役進出을 擴大하고 後續工事의 受注機會를 創出함으

3) 「無償技術用役」이나 「開發調查」등의 用語는 그동안 實施한 事業의 性格, 內容, 節次等으로 보아 이를 區分할 實益이 없다. 이들 事業은 1991年 制定된 韓國國際協力團法 第7條

로써 國產機資材 輸出을 圖謀하기 爲하여 1984년부터 開發途上國에 對한 無償 技術用役 提供事業을 推進한 것이 우리나라 開發調查의 始初라 할 수 있다.

開發調查는 建設部外에도 經濟企劃院, 科學技術處 및 外務部 등에서 ODA의 一環으로 開發途上國에 對한 技術協力 및 對外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해 部處別로 散發的으로 小規模로 實施되어왔으나 實施體制의 未洽性, 事業費 規模의 零細性 등에 따른 問題點이 露呈되어 이에 對한 效率的인 事業遂行의 必要性이 提起 되었다.

이에따라 1991年 1월에 制定된 韓國國際協力團法(法令第4313號) 第7條 第1項 다, 라에 特定協力對象地域에 對한 『無償技術用役의 提供』 및 『開發調查事業에 對한 支援』을 規定함으로써 그동안 各 部處에서 實施해 오던 業務를 1991年 4월에 發足된 韓國國際協力團 에서 承繼하게 됨으로서(但, 無償建設 技術用役業務의 承繼時期에 關하여는 外務部長官과 建設部長官이 協議 決定함), 體系的이고 一貫性있는 開發調查를 推進할 수 있게 되었다.

事業範圍에서 區分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ODA業務를 協力團에 一元化 하면서 一部 部處에서 業務承繼에 對한 異議가 提起됨에 따라 業務所管과 關聯하여 名稱上 區分한데 지나지 않으며 協力團의 發足初期에 豫算獲得戰略도 考慮된 結果이다.

韓國國際協力團 事業遂行指針은 事業의 種類를 無償技術用役은 主로 社會間接資本 分野를, 開發調查는 輸出市場, 經濟開發計劃等 國家經濟社會發展의 計劃樹立과 妥當性 調査로 限定하여 이들 兩事業을 分野別로 區分하고 後者の 事業遂行은 前者의 規程을 準用토록 하고 있다.

業務所管을 前者는 建設部가 後者는 經濟企劃院, 科技處 등의 事業으로 認識되어 왔으나 이는 단지 各 部處들의 用語使用上의 差異에 不過한데 例를들어 協力團設立 以前에 農業 開發調查를 經濟企劃院(1989年 印尼 實施), 科技處(1988年 말레이시아 實施)는 開發調查 名目으로, 建設部(1988 泰國 施行)는 技術用役事業으로 遂行하였으나 이들 事業은 모두 같은 種類의 事業이었다.

2. 概 念

開發調査(Development Survey 또는 Development Study)란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各種 開發事業 및 計劃에 對해 調査團 또는 專門家를 派遣하여 綜合開發計劃, 基礎調査, 妥當性調査, 實施設計를 作成하는等 各分野에 對해 技術用役을 無償으로 提供하는 事業으로서 通常 世界銀行의 5段階 프로젝트사이클 (Project Cycle)인⁴⁾ ①事業發掘 → ② 準備 → ③審査 →

4) 프로젝트의 發生에서 實施에 이르는 사이클(Project Cycle)에 關해서는 學者나 各國에 따라 그 段階가 相異하고 各 段階別 名稱과 業務內容에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代表的으로 W.C. Baum의 4段階 (Identification→Preparation→Implementation→Evaluation)와 世界銀行의 5段階를 들 수 있다. 後에 開發經濟學者인 Rodinelli는 Baum의 사이클을 12段階로 더욱 細分하였고 Goodman과 Love는 Rodinelli의 細分化된 사이클을 4段階로 그룹핑하여 說明하고 있다. 各國은 便宜에 따라 이보다 複雜하게 몇個의 段階를 追加하고 있고 各 段階별로 具體的인 施行計劃과 業務內容이 매우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世界銀行等の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프로젝트의 發掘(Identification) 또는 着想(Conception)
- ② 프로젝트의 準備 또는 作成(Preparation) 또는 形成(Formation)
- ③ 프로젝트의 審査(Appraisal) 또는 承認(Approval)
- ④ 프로젝트의 實施 또는 執行(Implementation) 및 監理 또는 監督(Supervision)
- ⑤ 프로젝트의 運營(Operation)과 評價(Evaluation)

· 亞細亞 開發銀行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發掘(Identification)
- ② 形成 및 審査(Formulation and Appraisal)
- ③ 實施(Implementation)
- ④ 終了 및 評價(Completion and Evaluation)

· Rodinelli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發掘 및 定義(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 ② 形成, 準備, 妥當性分析(Formulation, Preparation and F/S)
- ③ 事業設計(Design)
- ④ 審査(Appraisal)
- ⑤ 選定, 協商, 承認(Selection, Negotiation and Approval)
- ⑥ 活性化 및 組織構築(Activation and Organization)
- ⑦ 施行 및 運營(Implementation and Operation)

- ⑧ 監督, 모니터링, 統制(Supervision, Monitoring and Control)
- ⑨ 終了 또는 終結(Completion or Termination)
- ⑩ 結果導出, 一般行政으로 轉換(Output Diffusion, Transition to Normal Administration)
- ⑪ 評價(Evaluation)
- ⑫ 事後分析, 措置(Follow-up Analysis and Action)

・美國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企劃(Planning)
- ② 計劃 또는 設計(Design)
- ③ 實施(Implementation)
- ④ 모니터링 및 評價(Monitoring and Evaluation)

・日本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發掘(Identification)
- ② 形成(Formation) 및 準備(Preparation)
- ③ 審査(Appraisal)
- ④ 實施(Implementation)
- ⑤ 監理(Supervision)
- ⑥ 評價(Evaluation)

・英國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發掘(Identification)
- ② 計劃(Design)
- ③ 審査(Appraisal)
- ④ 承認(Approval)
- ⑤ 實施(Implementation)
- ⑥ 運營 및 評價(Operation and Evaluation)

・カナダ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發掘(Identification)
- ② 妥當性調査 및 計劃(Feasibility and Design)
- ③ 承認(Approval)
- ④ 契約(Contracting Process)
- ⑤ 實施・모니터링 및 統制(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Control)
- ⑥ 評價(Evaluation)
- ⑦ 終結(Project Termination)

・濠洲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 ① 國家戰略樹立(Country Strategy Formulation)
- ② 國家 프로그램開發(Country Program Development)
- ③ 發掘 및 最初評價(Identification & Initial Assessment)
- ④ 準備 및 計劃(Preparation & Design)
- ⑤ 實施 및 모니터링(Implementation & Monitoring)

④實施 → ⑤評價의 1.2段階인 事業發掘 및 準備段階에 該當하는 事業으로 볼 수 있다.⁵⁾

따라서 開發調査는 本事業 實施를 爲한 事前準備 段階로서 그 調査 結果는 基礎調査, 妥當性調査等에 對한 報告書로 作成된 後 相對國 政府에 提出되어 政策判斷의 基礎資料로 活用됨과 同時에 向後 先進國 및 國際金融機關 等으로 부터의 本 事業을 爲한 資金調達에도 活用케 된다.

日本이나 歐美先進國에서의 開發調査는 過去 植民地 統治國으로서 歷史가 오래되고 國內市場이 狹小하므로 海外開發 프로젝트의 重要性이 認識되었다는 點과 國內業界의 活動과 政府의 支援等에서도 海外프로젝트에 力點을 두고 發展되어왔다.

따라서 오늘날 英國을 爲始한 많은 國家가 開發調査를 遂行하는 自國의 건설 企業의 海外活動에 對한 體制造成을 爲한 支援은 勿論 補助金を 支援하는등 건설 産業을 育成하고 있으며 日本(JICA)의 境遇는 民間企業이 行하는 프로젝트에 對한 投融資支援은 勿論 開發調査業務까지 提供(開發協力事業)하여 事業의 圓滑한 實施를 圖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前述한 바와 같이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을 爲한 目的等으로 1980年代부터 政府의 開發調査가 本格的으로 實施되기 始作하였다. 우리나라의 開發調査는 前述한 韓國國際協力團 事業遂行指針 第3條의 規程에서와 같이 日本과 매우 類似한 制度를 採擇하고 있으며 歐美制度와는 目的等이 多少 相異하므로 이에 對한 올바른 理解가 必要하다.

⑥ 終了 및 評價(Completion &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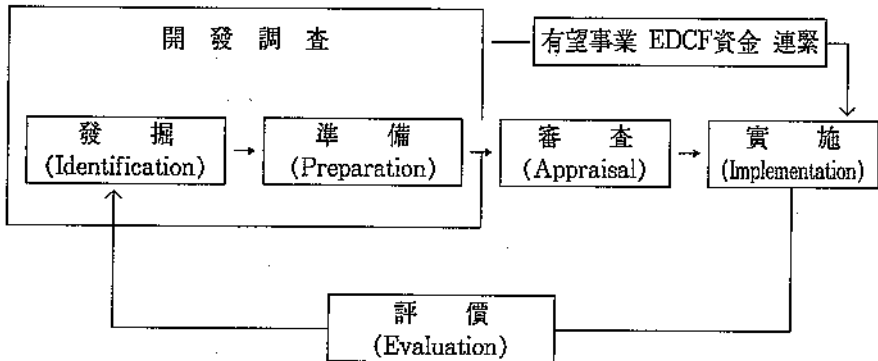
5) 韓國國際協力團 事業遂行指針(制定 1991.4.23) 第3條의 開發調査等에 關한 概念 定義

8項, "無償技術用役提供"이라함은 特定地域에서 推進되는 開發事業에 對한 妥當性 調査 및 實施設計를 爲하여 無償으로 技術用役을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9項, "開發調査事業"이란 特定地域의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事業의 推進을 支援하기 爲하여 그 事業의 諸般妥當性を 包含한 綜合計劃을 作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圖 IV-1)

프로젝트 사이클의 各段階



一般的으로 프로젝트란 目標達成을 爲한 複合的인 行爲의 推進으로 定義(Robertson)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管理過程은 繼續的이고 循環的인 하나의 週期를 形成한다.

開發援助의 프로젝트週期를 管理하는 過程은 나라에 따라 相異한데 美國(AID), 英國(ODA), 캐나다(CIDA)等の 援助機關에서와 같이 5段階를 單一機關에서 一貫性있게 主導하는 境遇(이를 「歐美型」 또는 「一貫實施型」이라 부르기로 한다)와 日本과 같이 5段階中 前 2段階인 事業의 發掘・準備는 JICA에서, 殘餘 段階는 OECF에서 各各 分離하여 管理하는 境遇(이를 「日本型」 또는 「區分實施型」이라 부르기로 한다)로 大分될 수 있다.

한마디로 兩者의 長短點을 判斷하기란 쉽지않다. 프로젝트를 受援國 政府의 要請에서부터, 事業完了時(또는 評價)까지 所謂 完全한 形態의 프로젝트를 遂行하는 「一貫實施型」의 境遇에도 事業의 妥當性이 없다고 判斷되어 事業을 中斷하거나 事業施行中에라도 政治・外交의 變化와 豫算制約으로 事業施行에 蹉跌을 겪게되는 境遇 相對國과의 摩擦이 發生할 素地가 있으며, 援助國이 開發프로젝트의 全段階를 獨自的으로 遂行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借款條件, 技術移轉 등에 對한 受援國의 意思 反映이 困難한 境遇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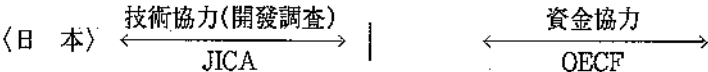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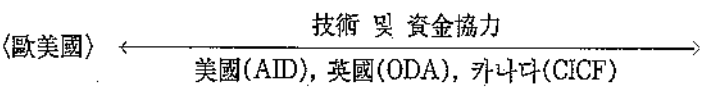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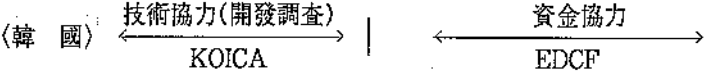
프로젝트를 分離實施하는 日本의 「區分實施型」의 境遇는 大部分의 開發國이 社會·經濟를 發展시켜 나가기 爲해 必要한 開發調査를 實施하려 해도 人力·技術·資金 등에 制約이 있어 이를 實施하지 못하는 開發國들에게 開發調査를 實施하여 必要한 情報과 關聯技術을 移轉시켜주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供與國側 으로서도 開發國의 資源等 情報獲得은 勿論 個別 프로젝트에 關聯된 OECF의 審査資料로서 使用되는等 技術協力과 資本協力에 連繫시키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境遇 開發調査는 妥當性調査報告書를 開發國에 提供함으로써 事業이 終了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의 具體的인 成果를 完成시키기 爲해 調査結果를 資金協力에 連結시키는 努力을 하게 되는데 受援國은 後續事業施行에 所要되는 自己資金의 調達이 容易치 않는 境遇 先進融資國이나 國際金融機關에 資金協력을 要請하거나 또는 日本에 資金協력을 要請하게 되는것이며 이 境遇 日本은 OECF나 無償資金協力에 連結시키거나 또는 技術協力的 태두리안에서 機資材供與와 專門家의 派遣 등을 組合하여 對應한다.

開發調査의 「日本型」과 「歐美型」의 特徵과 長短點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 兩制度의 特徵

區 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事 業 實 施 體 制	· 開發調査를 爲한 獨立된 豫算과 組織을 갖추고 있음 · 開發調査 擔當機關(JICA)과 資金協力 擔當機關(OECF)이 別個의 組織임 · 開發프로젝트의 Hardware보다는 計劃樹立 및 調査技法傳受等 Software에 重點을 둠 · 資金協力 보다는 技術協力的 一環 으로 開發調査가 實施됨	· 開發調査를 爲한 獨立된 豫算과 組織 을 갖추고 있지 않음 · 大部分의 援助機關이 技術協力事業과 資金協力事業을 兼하고 있음 · 開發프로젝트의 土木, 建築工事 등의 Hardware 構築및 設置에 모든 活動이 置重됨 · 開發調査에 該當하는 調査活動은 資金協력을 爲한 準備過程으로 取扱됨

區 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프로젝트 사이클과開發調查	(要請)→事業發掘→妥當性調査→融資審査→實施・監理→(完了)…評價 〈日 本〉  〈歐美國〉  〈韓 國〉 	資金協力 ← OECD → 技術 및 資金協力 ← 美國(AID), 英國(ODA), 캐나다(CICF) → 資金協力 ← EDCF →
事業目的	・受援國에 日本의 OECF는 勿論 他國의 援助機關이나 國際金融機關等에 資金申請을 할 수 있는 資料의 生成 및 提供을 目的으로 함	・特定 開發프로젝트의 資金協力에 앞서 그 妥當性 與否를 確認 하거나 入札等에 必要한 資料를 作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함
事業發掘體制	・海外事務所는 相對國 政府와 隨時 協議를 通하여 開發프로젝트의 成案을 도와줌 ・成案된 事業이 支援對象事業이 되기 爲해서는 外交的 通路를 通한 正式 支援 要請을 必要로 함	・政治的,經濟的 戰略에 依據 主要 受援國에 對해 Country Program이 作成됨 ・海外事務所에서는 同 Program의 範圍內에서 受援國政府가 提出하는 資料를 審査하여 支援與否를 決定하는 境遇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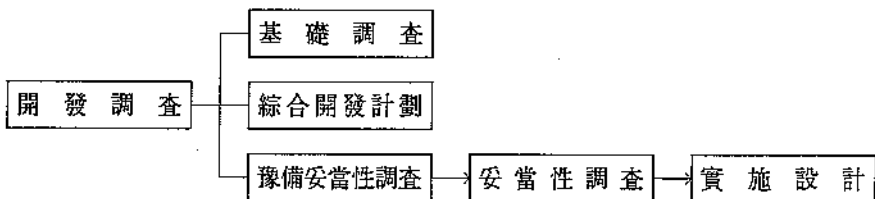
○ 兩制度의 長短點

區 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長 點	・ 적은 費用으로 受援國의 開發計劃 樹立에 貢獻할 수 있으며, 相對國 政策立案者들과의 協力體	・ 開發프로젝트의 準備段階부터 本事業 完成까지 一貫實施하므로 可視的 效果가 分明함

區 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制 構築이 可能 • 供與國이 開發計劃 立案時부터 參與함으로써 開發情報을 早期에 把握 • 적은費用으로 多數의 開發프로젝트에 關與 함으로써 受援國에 對한 影響力을 增大시킬수 있고, 各 分野에 豊富한 情報蓄積이 可能함 • 調查結果 妥當性이 없다고 判明될 境遇 相對國과 別 摩擦없이 事業의 마무리가 可能 함 • 自國의 資金協力 機關 및 金融機關 等에게 客觀性 있는 審査資料 提供 → 資金協力の Risk를 줄임 • 自國內의 用役業體 및 專門家養成 → 國際的 感覺을 갖춘 컨설턴트 育成이 可能함	• 처음부터 本事業 實施에 對한 約束이 分明 하므로 受援國이 積極的임 • 開發프로젝트의 損益概念을 分明히 하므로 投資가 效率的임 • 現地事務所가 一定規模 以下の 事業은 支援與否를 決定 할 수 있으므로 現地 實情에 맞는 프로젝트의 實施 可能 • 大規模 綜合開發프로젝트를 實施 할 境遇 受援國의 社會的, 經濟的 發展效果를 直接的으로 期待할 수 있음 • 調查結果가 本事業으로 곧바로 連結되므로 調查業務에 對한 責任所在가 分明함
短 點	• 調查結果가 本事業에 반드시 連結되는 것이 아니므로 調查結果가 死藏되는 境遇가 發生함 • 本事業에 對한 支援約束이 分明치 않으므로 相對國이 消極的임	• 事業의 妥當性이 없다고 判明되어 事業을 中斷하거나 事業施行中에라도 政治·外交的變化和 豫算制約으로 事業施行에 蹉跌을 겪게되는 境遇 對象國과 摩擦이 發生할 素地가 큼

區 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 (一貫實施型)
	・調査結果에 對한 責任所在가 分明치 않음 ・調査 着手를 爲해서는 반드시 外交的 經路를 通해야 하므로 柔軟性이 缺如됨 ・資金協力과의 連繫率이 低調함	・援助國이 開發프로젝트의 全段 階를 獨自的으로 遂行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借款條件, 技術移轉等에 對한 受援國의 意思反映이 困難함 ・調査結果가 곧바로 本事業에 連結되므로 危險負擔 可能性이 있음 ・大規模의 資金이 甞받침 되지 않으면 事業推進이 不可能함

3. 種 類



・ 基礎調査 (Basic Study) :

各種 經濟開發 및 地域開發計劃 樹立에 利用할 수 있도록 基礎的인 調査를 遂行하는 것으로써 賦存資源 現況을 調査하거나, 地質圖 및 探查圖, 海圖等을 作成하는 資源開發 基礎調査나 交通量調査等이 이에 該當한다.

・ 綜合開發計劃 (Master Plan) :

一定地域 또는 特定產業 分野에서의 開發可能性 및 開發方向을 提示하는 調査이다.

• 妥當性調査 (Feasibility Study) :

特定 프로젝트의 實施가 經濟的, 技術的으로 妥當한지 與否를 評價하고 同 프로젝트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한 方法, 手段 및 開發目標等을 決定하는 調査로서 開發調査의 大部分을 占有한다.

• 實施設計調査 (Implementation & Detailed Design) :

特定 프로젝트에 對해 妥當性調査를 한 結果 經濟的, 技術的으로 適合하다는 結論을 얻은 境遇 本工事着手을 하기 爲하여 具體的으로 必要的인 實施設計圖, 工事施方書, 入札關係書類等을 作成하는것을 말한다.

4. 支援分野

開發調査를 實施하는 對象分野는 매우 廣範圍하다. 經濟나 技術, 人力分野의 綜合開發計劃을 爲始하여 產業別로 農林水産業, 製造業, 資源, 道路, 港灣, 鐵道, 電力, 通信등의 社會間接資本施設, 敎育, 環境, 保健, 醫療등의 分野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를 包括하나 우리나라의 初創期 與件을 勘案 當分間은 公共部門에 對한 開發調査가 大部分을 이룰 것으로 展望된다.

(圖 IV-2) 開發調査 對象分野

區 分	細 部 分 野
• 開發計劃	開發計劃一般, 綜合 또는 地域開發計劃, 都市開發計劃, 環境保存計劃, 經濟開發計劃
• 建 設	港灣, 空港, 道路, 鐵道, 橋梁, 上下水道, 河川, 堤防, 水資源, 工業團地
• 測量 및 土質調査	航空測量, 海洋測量, 一般測量, 試錐

區 分	細 部 分 野
• 建 築	住宅, 教育文化施設, 醫療福祉施設, 通信放送施設, 生産流通施設
• 運輸・交通	陸運, 鐵道, 海運, 船舶, 航空
• 通信・放送	通信, 放送, 電信, 電話, 라디오, TV放送, 郵便
• 農業・畜産・ 林業・水産	農業土木, 養蠶, 農產品加工, 農業機械化, 林業, 水産
• 工 業	重工業, 輕工業, 中小企業
• 鑛 業	金屬・非金屬資源開發, 石炭開發
• 에 너 지	電力, 가스, 原子力
• 保健・醫療	保健, 醫療一般, 人口, 家族計劃
• 其 他	行政, 統計, 情報, 觀光, 教育文化, 勞動

5. 妥當性調査의 段階別 區分

開發調査의 大部分을 이루는 妥當性調査의 作業段階는 다음과 같다.⁶⁾

○ 事前調査 (Project Identification) : 各種 프로젝트의 綜合開發計劃, 妥當性調査 등의 本格調査에 앞서 行하는 準備段階의 調査이며 相對國 政府와 Scope of Work 를 協議함과 同時에 本格調査의 實施方針을 檢討하는 것을 말한다.

• 現地政府와 TOR(案) 協議 및 現場踏査

○ 豫備妥當性調査 (Pre-Feasibility Study) : 妥當性調査의 規模가 尙大하거나 長期間을 要하는 境遇 本妥當性調査에 앞서 事業의 經濟的, 技術的 妥當性을 概略

6) 綜合開發計劃調査, 實施設計調査 및 資源調査等도 妥當性調査와 類似한 作業過程을 거치게 된다.

的으로 評價하는 作業을 말한다.

- 一般的으로는 豫備妥當性調査 段階를 省略하고 바로 本 妥當性 調査를 實施한다.

○ 妥當性調査 (Feasibility Study) : 特定事業에 對해 經濟的, 技術的 側面에서 當該 프로젝트의 場所, 時間, 必要한 技術, 必要한 投資, 開發의 目標, 프로젝트의 規模 및 內容, 波及效果等を 精密 檢討하여 當該 프로젝트의 Input과 Output을 算出함으로써 最終的으로 當該 프로젝트의 適合性 與否를 判斷하는 作業을 말한다.

- 作成되는 書類 : Inception Report, Progress Report, Interim Report, Final Report

6. 目的과 效果

開發調査의 目的은 開發國이 推進코자하는 主要開發事業의 計劃樹立·準備등에 對한 基礎 및 妥當性調査를 爲한 技術用役을 無償으로 提供함으로써 受援國의 經濟·社會開發에 寄與함과 同時에, 先發開發國으로서 國際經濟社會에서의 役割을 遂行함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 受援國에 주는 效果

- 開發프로젝트에 對한 事業推進情報의 提共
 - 事業의 妥當性與否判定 및 事業優先順位 提示
 - 先進國이나 國際金融機關等에 事業推進을 爲한 財源調達에 必要한 資料提供
- 開發調査過程에서 相對國 技術者와의 共同作業으로 開發調査에 關聯된 技術을 移轉

○ 供與國에 주는 效果

- 開途國과의 經濟·外交協力 增進
- 開途國進出 機會擴大
 - 關聯事業等에 關한 廣範圍한 資料 및 情報의 蒐集
 - 關聯事業 推進時 國內業體 參與可能性 提高
 - 國產機資材輸出 및 專門人力 活用
- 對外經濟協力基金(EDCF)과 連繫 良質의 프로젝트 發掘 및 借款供與 決定에 有用한 資料提供
- 國際水準에 比해 相對的으로 낮은 國內用役技術水準의 海外進出에 따른 情報·經驗蓄積을 통한 技術向上과 競爭力 提高

7. 實施節次

事業發掘에서 妥當性調査까지의 開發調査 節次와 所要期間은 事業의 種類, 事業費規模 및 國家에 따라 多少 相異하다.⁷⁾ 우리나라와는 달리 外國에서는 事業發掘 以前에 國別援助戰略이나 國別프로그램의 開發等에 約1年의 期間이 所要되는 境遇도 있으나 事業의 發掘에서 妥當性調査의 終了까지의 所要期間은 20個月 以內로 國家別로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表 IV-13〉

開發調査 所要期間

(單位: 個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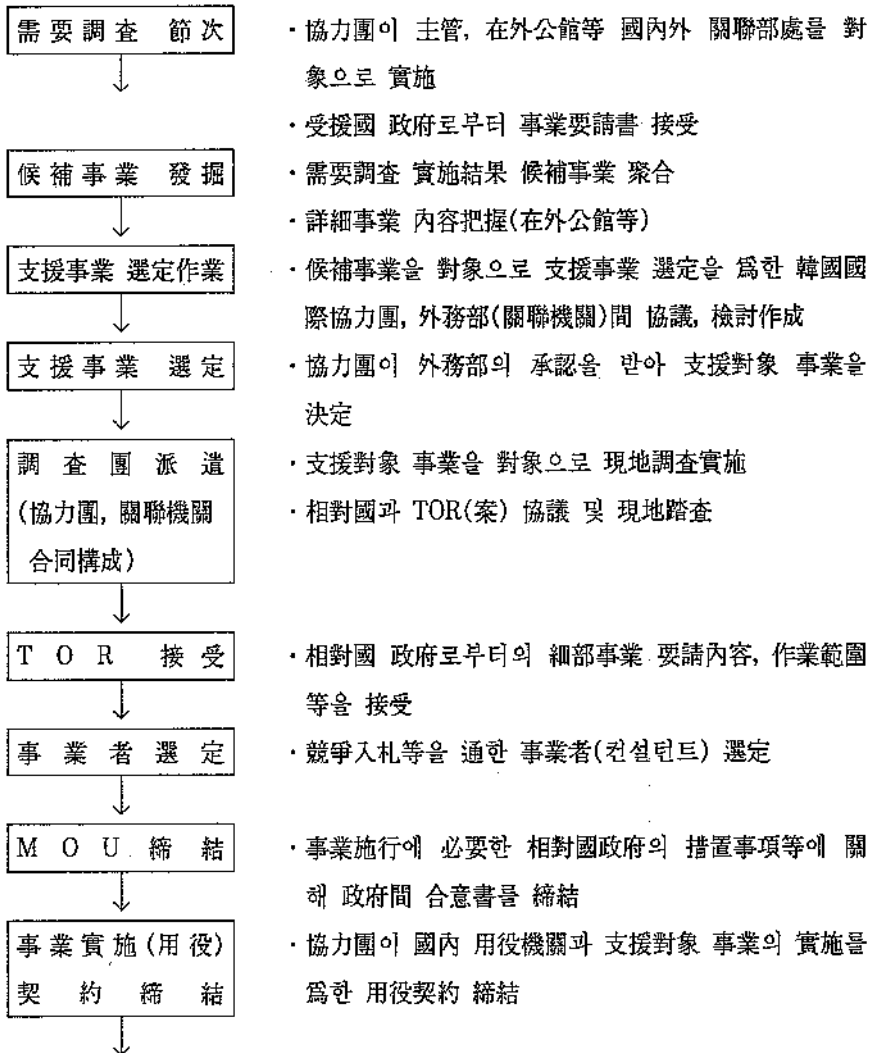
	事業選定	妥當性調査	計
韓 國	10	11	21
濠 洲	9	10	19
카 나 다	5	1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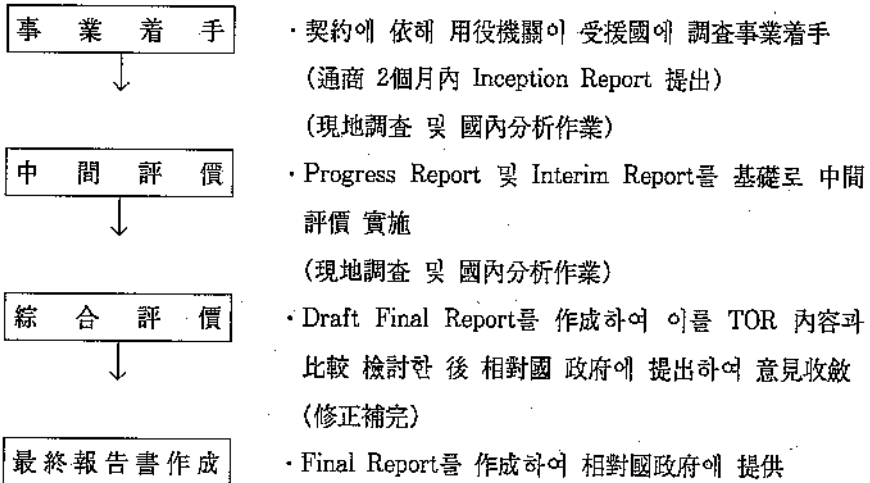
註: 韓國은 KOICA에서 '91~'93.4에 걸쳐 實施한 事業의 平均値로 妥當性調査에 數個年이 所要되는 資源調査는 除外됨.

韓國國際協力團에서 實施하고 있는 開發調查節次 및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圖 IV-3〉

開發調查節次 및 主要內容





7) 參考로 CIDA의 二國間 大規模 프로젝트의 決定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開發協力段階		決定 레벨					
		캐나다側				現場側	
		財務委員會	長官	CIDA本部	캐나다의 現地 執行機關	現場 캐나다 擔當官	支援國
프로젝트의 選定	프로젝트의 發掘			⊙		⊙	⊙
	政策上, 財政上 및 技術的 可能性 檢討 및 決定			⊙			
	CIDA-受援國間의 合意			⊙			⊙
	프로젝트選定 使節團의 派遣			⊙		⊙	⊙
	프로젝트 調査開始의 承認			⊙			
妥當性	컨설턴트 롱·리스트 作成			⊙			
	쇼트·리스트의 承認		⊙				
	計劃書의 公募			⊙	⊙		
	計劃書의 審査			⊙			
	컨설턴트의 選定		⊙				
	契約의 交渉			⊙	⊙		

開發協力段階		決定 階 級					
		캐나다側				現場側	
		財務委員會	長官	CIDA本部	캐나다의 現地 執行機關	現場 캐나다 擔當官	支援國
調 査	契約의承認			○			
	妥當性 調査의 實施				○	○	○
	妥當性 判定			○			○
	프로젝트의承認	○	○	○			
	合議文書 締結			○		○	○
프 로 젝 트 의 實 施	컨설턴트 롱·리스트 作成			○			*
	쇼트·리스트 承認		○				
	計劃書의 公募			○	○		*
	計劃書의 審査			○			*
	컨설턴트의 選定		○				
	契約의 交渉			○	○		*
	契約의承認	○	○	○			
	契約의 締結			○	○		*
	開始使節團 派遣				○	○	○
	使節團 派遣 報告書 承認			○			
	活動開始				○		

註：* 캐나다의 援助實施 機關이 受援國과의 사이에 컨설턴트 契約을 締結한 境遇

所要期間：① 選定過程 — 平均 4.7個月

② 妥當性 調査와 設計過程 — 平均 16.1個月

③ 承認過程 — 平均 2.2個月

④ 實施過程 I 契約締結 — 平均 3.9個月

⑤ 實施過程 II 活動開始 — 通常, 프로젝트 發掘로 부터 27個月 後

8. 支援実績

우리나라의 ODA部門 開發調査는 1984년 業務가 始作된 以來 1992년까지 9年間實績은 17個 國家(單純海外出張 5個國 除外)에 總 73件으로서(單一事業統計 基準은 51件) 件當 支援規模는 1.5億 원으로 年間 300餘件에 件當 支援規模가 4億 원이 넘는 日本에 比較하면 微微한 實情이나 國際社會에서의 政治·外交의 變化와 經濟的 位相을 勘案할 때 事業量은 漸進的으로 增大될 것이다.

(表 IV-14)

開發調査의 年度別, 部處別實績

(單位:件, 百萬원)

年度 部處別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 (’84-’92)
建設部	1,000 (4)	1,000 (4)	790.5 (6)	709.5 (3)	800 (5)	974 (5)	974.5 (8)	1,023.7 (9)	1,243.3 (5)	8,515.5 (49)
科技處		27 (1)	30 (1)	30 (1)	38 (2)	17.2 (2)				142.2 (7)
外務部			348 (2)							348 (2)
遞信部						184 (1)	345 (1)	500 (2)		1,029 (4)
經濟 企劃院						86.1 (2)				86.1 (2)
韓國國際 協力團								37 (2)	960 (7)	997 (9)
計	1,000 (4)	1,027 (5)	1,168.5 (9)	739.5 (4)	838 (7)	1,261.5 (10)	1,319.5 (9)	1,560.7 (13)	2,203.3 (12)	11,117.8 (73)

註: ()內는 單一年度施行基準 事業件數로 ’84-’92間의 單一事業統計基準 件數는 51件임.

〈表 IV-15〉

開發調査의 地域別 實績

(單位:件, 百萬圓)

國 家 別	件 數		事業費	
		%		%
〈亞 細 亞〉	55	75.3	8,735.1	78.6
인 도 네 사 아	18	24.7	3,577.5	32.2
방 글 라 데 시	8	11.0	1,633.9	14.7
파 키 스 탄	5	6.8	852.5	7.7
네 팔	5	6.8	659.1	5.9
태 국	6	8.2	378.0	3.4
필 리 핀	6	8.2	1,074	9.7
스 리 랑 카	4	5.5	520	4.7
베 트 남	1	1.4	16	0.1
其他(인니, 말련, 부루나이, 태국)	2	2.7	25.1	0.2
〈大 洋 州〉	8	11.0	1,450	13.0
P N G	6	8.2	1,135	12.0
西 사 모 아	2	2.7	315	2.8
〈아프리카〉	4	5.5	515.6	4.6
세 네 칼	1	1.4	174	1.6
케 나	1	1.4	174	1.6
中 央 아 프 리 카	2	2.7	167.6	1.4
〈中 南 美〉	3	4.2	57.1	0.5
콜 롬 비 아	1	1.4	25	0.2
코 스 타 리 카	1	1.4	5.1	0.1
其他(브라질, 페루, 파나마)	1	1.4	27	0.2
〈東 歐〉	3	4.2	360	3.3
루 마 니 아	1	1.4	300	2.7
유 고	2	2.7	60	0.6
計	73	100	11,117.8	100

73件을 國家別로 보면 亞細亞地域(55件)이 가장 많고 大洋洲(8件), 아프리카地域(4件), 中南美地域(3件), 東歐地域(3件)의 順이다. 國別로는 總 17個國中 印尼가 18件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8件), PNG(6件), 泰國(6件), 緬甸(6件), 네팔(5件), 파키스탄(5件), 스리랑카(4件), 西사모아(2件), 中央아프리카(2件) 유고(2件) 및 베트남, 세네갈, 케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등이 각 1件이다.

分野別로 보면 道路建設이 가장 많고(19件), 地下水等 農業開發(12件), 洪水調節 및 排水(8件), 研究所 및 技術協力(7件), 橋梁 및 터널建設(5件), 都市開發·上下水道(5件), 通信(4件), 資源開發(4件), 電力(2件), 鐵道(2件), 造船所建設(2件), 空港建設(2件), 工團(1件)等 多樣하게 施行되었다.

〈表 IV-16〉

開發調査의 分野別 實績

(單位: 件, 百萬원)

分 野 別	件 數		事業費	
		%		%
道 路 建 設	19	26.0	3,762.3	33.8
地 下 水 等 農 業 開 發	12	16.4	1,156.2	10.4
洪 水 調 節 및 排 水	8	11.0	1,525.8	13.7
橋 樑 및 터 널 建 設	5	6.9	916.5	8.3
研 究 所 및 科 學 技 術	7	9.6	167.9	1.5
都 市 開 發 · 上 下 水 道	5	6.9	1,157	10.4
資 源 開 發	4	5.5	169.1	1.5
通 信	4	5.5	1,029	9.3
電 力	2	2.7	276	2.5
鐵 道	2	2.7	320	2.9
空 港	2	2.7	308	2.8
造 船 所 建 設	2	2.7	315	2.8
工 團	1	1.4	12	0.1
計	73	100.0	11,117.8	100.0

第4節 프로젝트型 事業

1. 概 念

韓國國際協力團의 法에는 프로젝트型事業에 對한 概念이 明確하게 標示되어 있지않다. 프로젝트란 用語는 매우 多樣하게 쓰여지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目標達成을 爲한 複合의 行爲의 推進으로 볼 수 있다.

開發援助의 支援形態에서 프로젝트型事業이란 프로젝트에 關聯된 各種 協力手段인 物的(機資材供與), 人的(專門家派遣, 研修生招請) 要素를 패키지化 하여 相互間의 適切한 組合으로 實施되는 事業으로, 特히 이들 要素를 하나의 事業計劃으로 統合하여 프로젝트의 發掘에서 計劃立案, 實施를 거쳐 終了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計劃의이며 綜合的으로 運營·實施하는 協力形態이다.

오늘날 主要 先進國이 프로젝트事業 爲主로 開發援助를 支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機資材供與나 專門家派遣 또는 研修生招請等の 事業이 相互間에 連繫되지 못하고 個別的으로 實施됨으로써 事業의 效果性を 提高시키지 못하였다. 韓國國際協力團의 發足과 더불어 이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많은 受援國에 事業을 計劃했으나 事業의 發掘·形成等이 容易치 않아 機資材供與로 轉換하는 事例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젝트型事業의 活性化를 爲해서는 프로젝트型事業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과 擔當者들의 프로젝트事業에 對한 立案能力의 培養이 時急한 課題로 提起되고 있다.

2. 事業의 施行推移

우리나라의 프로젝트型事業은 1978年 네팔에 蠶業試驗研究所 支援을 始作으로 1993年까지 21件 2,091萬\$이 計劃되고 이中 988萬\$의 豫算이 支援되었다. 年度別 施行件數를 보면 1978年 1件, 1986年 3件, 1988年 1件, 1989年 4件,

1990年1件으로 '70~'80年代에는 事業施行이 微微하였으나 1991年 韓國國際協力團의 發足과 더불어 事業施行이 크게 增大되었다. 즉 1992년에는 프로젝트型 事業을 重點國家支援의 一環으로 當初 10件을 新規로 計劃하였으나 事業發掘의 어려움等으로 4件의 事業을 着手하는데 그쳤고 1993年에도 當初 8件을 新規事業으로 計劃하였으나 實際로 7件이 執行될 것으로 展望된다.

事業規模는 1978-1991年까지 13年間の 總額이 868萬\$에 不過하였으나 1992년에는 120萬\$, 1993년에는 358萬\$로 每年 크게 增大되고 있다.

事業費 規模를 件當으로 보면 約 100萬\$로 日本의 640萬\$ 및 年間施行 50餘國 200件内外에 비해 아직은 小規模이며 機資材供與 事業費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0%未滿에 不過했으나 1993年부터는 機資材供與 項目과는 別途로 프로젝트事業費를 計上하여 이의 比重도 28%로 大幅 增大되었으며 이와같은 趨勢는 繼續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表 IV-17>

프로젝트型 事業 支援現況

(單位：萬\$)

國 名	프로젝트名	分 野	期 間	事 業 費				
				計	1978 ~ 1991	1992	1993	1994 以後
네 팔	蠶業試驗所運營支援	農 業	'78-'92	53.8	52	1.8		
	蠶業開發事業	農 業	'93-'95	60			20	40
대 국	示範農場運營支援	農 業	'89-'92	28	19.6	8.4		
	廢水處理研究調查	研究開發	'90	7	7			
안도네시아	職業訓練所支援	職業訓練	'86-'94	520	410	26	32.8	51.2
룩아일랜드	眞珠養殖場運營支援	水 産 業	'86-'92	29.4	22.4	7		
자 대 이 카	技術訓練所支援	職業訓練	'89-'92	60.5	51	9.5		
	새우養殖事業	水 産 業	'93-'94	40			20	20
콜롬비아	電子通信研究所支援	通 信	'89-'93	100	46.2	14.5	39.3	
라이베리아	示範農場運營支援	農 業	'88-'90	80.8	80.8			
세 네 갈	示範農場運營支援	農 業	'86-'90	79	79			
케 나	技術訓練所支援	職業訓練	'89-'90	100	100			

國 名	프로젝트名	分 野	期 間	事 業 費				
				計	1978 ~ 1991	1992	1993	1994 以後
수 단	職業訓練所支援	職業訓練	'92-'96	450	—	5.3	52.6	392.1
도 미 니 카	農村地域學校建築支援	教 育	'92-'93	60	—	20	40	
페 루	保健所建立支援	保 健	'92-'94	80	—	20	40	20
스 리 랑 카	開放大學韓國語教育支援	教 育	'92-'93	10.4		7.6	2.8	
이 집 트	職業訓練所支援	職業訓練	'93-'95	60			20	40
과 데 말 라	兒童福祉院建立	保 健	'93-'95	80			20	60
과 라 파 이	僻村食水供給施設事業	保 健	'93-'95	72			20	52
몽 골	冷凍倉庫建設事業	流 通	'93-'94	40			20	20
베 트 남	經濟開發研究所支援	開發計劃	'93-'94	80			30	50
	計	21		2,090.9	868.0	120.1	357.5	745.3

註：1993年은 暫定推計值임.

<表 IV-18>

프로젝트型 事業의 種類

(單位: 件, 萬 \$)

種類 分野別	施設支援 (A)		機資材와 技術協力 連繫支援(B)		A+B型 支援		其 他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農林水産			4	200.8	1	60.0	2	110.2	7	371.0
職業訓練			2	580.0	1	450.0	2	160.5	5	1,190.5
教 育	1	60.0	1	10.4					2	70.4
保 健			1	72.0	2	160.0			3	232.0
研 究 및 開發計劃			2	87.0					2	87.0
通 信			1	100.0					1	100.0
流 通							1	40.0	1	40.0
計	1	60.0	11	1,050.2	4	670.0	5	310.7	21	2,090.9

註: 其他는 프로젝트事業에 機資材만을 支援한 境遇일.

3. 支援種類와 支援分野

프로젝트型事業의 種類 또는 形態를 보면 프로젝트遂行에 必要한 建物이나 施設만을 支援한 事業은 1件에 60萬 \$, 우리나라의 機資材供與와 專門家派遣, 研修生招請等の 技術協力事業이 連繫된 事業은 11件에 1,050.2萬 \$, 兩者가 結合된 形態의 事業은 4件에 670萬 \$을 支援하였고, 受援國의 研究所나 職業訓練 事業等の 프로젝트에 單純히 機資材만을 供與한 事業은 5件에 311萬 \$이 支援 되었다.

이를 分野別로 보면 農林水産業이 7件 371萬 \$, 職業訓練이 5件 1,181萬 \$, 保健이 3件 232萬 \$, 教育이 2件 70萬 \$, 研究 및 開發計劃이 2件 87萬 \$, 通信이 1件 100萬 \$, 流通이 1件 40萬 \$이다.

4. 地域配分 및 支援規模

地域別 配分을 보면 아세아地域이 7個國에 9件 829百萬\$로 가장 많고 中南美는 7個國에 6件 493百萬\$, 아프리카는 5個國에 5件 770百萬\$이 支援되었다.

事業의 1件當 支援規模는 20萬\$ 以下가 2件, 20萬\$ ~ 40萬\$ 規模의 支援이 3件, 40萬\$ ~ 70萬\$ 이 6件, 70萬\$ ~ 100萬\$ 이 6件, 100萬\$ 以上이 4件으로 1件當 平均은 約 100萬\$ 이다.

<表 IV-19> 프로젝트型事業의 地域別 配分

(單位 : 件, 百萬\$)

國 家 別	件 數	事 業 費
< 아 세 아 >	9	828.6
네 팔	2	113.8
태 국	2	35.0
인 니	1	520.0
스 리 랑 카	1	10.4
몽 골	1	40.0
베 트 남	1	80.0
룩 아 일 랜 드	1	29.4
< 중 남 미 >	7	492.5
자 데 이 카	2	100.5
콜 럼 비 아	1	100.0
도 미 니 카	1	60.0
페 루	1	80.0
파 테 말 라	1	80.0
파 라 과 이	1	72.0
< 아 프 리 카 >	5	769.8
세 네 갈	1	79.0
캐 나	1	100.0
수 단	1	450.0
이 집 트	1	60.0
라 이 베 리 아	1	80.0
計	21	2,090.9

<表 IV-20> 프로젝트型 事業의 1件當 支援規模 (單位: 件)

區分	計	20萬\$未滿	20~40萬\$	40~70萬\$	70~100萬\$	100萬\$以上
件數	21	2	3	6	6	4
%	100.0	9.5	14.3	28.6	28.6	19.0

第 5 節 技術協力

1. 概念 및 重要性

技術協力(Technical Cooperation) 또는 技術援助(Technical Assistance)는 開途國의 經濟·社會發展과 國民福祉向上을 目的 으로 開途國 國民의 知識·技能, 生産能力等を 提高하기 爲한 資源의 提供을 意味하는 것으로, 政府次元의 技術協力は 政府 또는 그 實施機關이 該當 開途國에 對하여 無償으로 訓練生招請, 專門家派遣, 物資·用役의 提供等の 事業을 實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開途國의 經濟發展을 阻害하는 가장 큰 要因은 資本의 絶對的 不足과 人材不足 및 技術의 脆弱을 들 수 있다. 大多數의 受援開途國들은 近代의 産業을 受容할만한 與件이 未備되어 있어 先進國으로부터 資金이나 物資支援을 받더라도 이를 經濟開發에 效率的으로 利用하지 못하는 實情이므로 産業發展의 基盤이 되는 先進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의 重要性이 擡頭된 것이며 技術協力は 開途國의 技術基盤問題, 適正技術의 移轉, 先進國의 支援方向等に 焦點을 맞추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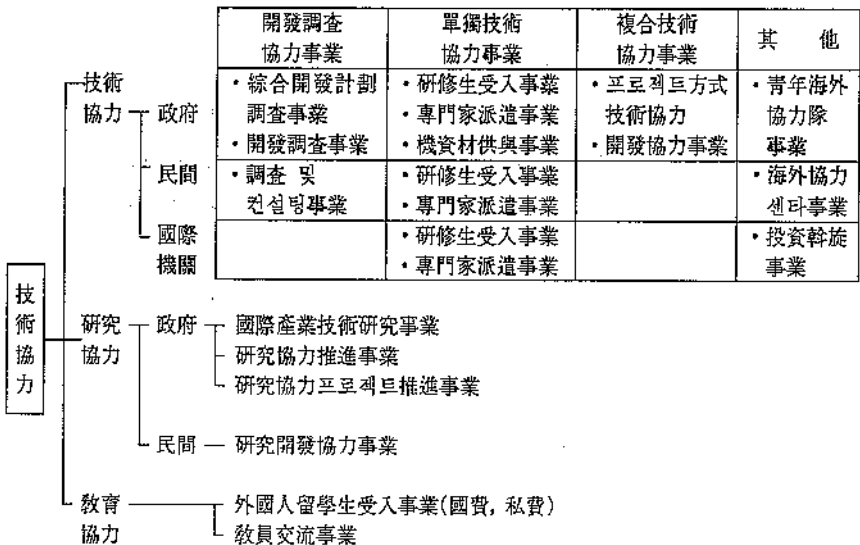
2. 支援分野와 支援形態

技術協力の 形態와 對象은 매우 多樣하다. Browne은 技術協力を 目的에 따

라 單獨的인 技術協力(FTC)과 資金協력이 連繫되어 推進되는 投資關聯 技術協力(ITC)으로區分하며, 日本은 技術協力を 크게 技術協力, 研究協力 및 教育協力等 3個部門으로 區分하여 政府와 民間 兩側에서 實施하고 있다.⁸⁾ 政府는 主로 JICA를 中心으로 開途國의 要請에 따라 技術協力を 開發調査 協力事業, 單獨技術 協力事業, 複合技術 協力事業 및 其他 協力事業等 4가지 形態로 區分해서 實施하고 있으며, 民間團體에의 補助金支給과 國際機關에 對한 支援을 通한 技術協정도 並行하고 있다. 技術協力中 研究協력은 通產省과 農林水產省이, 教育協력은 文部省이 主로 擔當하고 있다.

技術協力の 分野는 生産,經營技術뿐만 아니라 教育,行政,社會開發에 關한 公共技術等 거의 모든 分野의 技術을 包含하는 바,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事業은 技術協力事業으로 醫療團等 派遣事業 및 青年奉仕團派遣事業은 人力協力事業으로 開發調査, 프로젝트型事業은 開發協力事業으로

8) 日本의 技術協力 分類



區分하여 實施하고있다. 우리나라 政府次元의 對 開途國 技術協力은 1963年 USAID 의 援助資金으로 開途國 政府의 委託을 받아 研修生을 받아들인 것이 그 嚆矢로서 우리 政府資金에 依한 研修生招請은 1965년부터 實施되었으며 專門家 派遣은 1967년부터 始作되었다.

그리고 人力協力事業의 醫療團派遣事業은 1968年, 青年海外奉仕團 派遣事業은 1990년부터 各各 始作되었다.

<表 IV-21>

研修生 地域別 招請實績

(單位: 名, %)

年度 地域	1963 ~ 1981	1982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 (’63-’92)
亞 細 亞	2,411 (80.8)	1,894 (64.9)	299 (63.6)	280 (58.5)	228 (45.5)	282 (53.1)	266 (57.2)	305 (57.1)	5,965 (67.2)
아프리카	190 (6.4)	539 (18.5)	80 (17.0)	70 (14.6)	100 (10.0)	62 (11.7)	56 (12.0)	70 (13.1)	1,167 (13.1)
中 南 美	124 (4.1)	322 (11.0)	63 (13.4)	74 (15.4)	104 (20.7)	108 (20.3)	58 (12.5)	52 (9.8)	905 (10.2)
中 東	253 (8.5)	160 (5.5)	27 (5.8)	38 (7.9)	60 (12.0)	32 (6.0)	27 (5.8)	29 (5.4)	626 (7.0)
其 他	7 (0.2)	2 (0.1)	1 (0.2)	17 (3.6)	9 (1.8)	47 (8.9)	58 (12.5)	78 (14.6)	219 (2.5)
計	2,984 (100.0)	2,918 (100.0)	470 (100.0)	479 (100.0)	501 (100.0)	531 (100.0)	465 (100.0)	534 (100.0)	8,882 (100.0)

資料: 科技處, 國際技術協力統計(1993.10)

3. 研修生招請

研修生 招請은 1963年 USAID 資金에 依하여 事業을 처음으로 實施한 以來 韓國國際協力團 發足 以前인 1990년까지 꾸준히 實績이 增加되어 왔으나 1991

年에는 다소減少하였다. 이는 KOICA에서 一部 部處의 業務를 移管하여 처음으로 始作하면서 事業準備期間이 促迫하여 一部 受援國과의 業務協議가 圓滑하게 進行되지 못하였고, 關聯豫算이 1990年 1,989百萬元에서 1991年 1,781百萬元으로 減少된 때문이다.

地域別 實績을 보면 1963年~1992年까지의 累計 8,882名中 67.2%인 5,965名이 아시아·大洋洲地域으로부터 招請되었으며 아프리카 地域 13.1%, 中南美地域 10.2%, 中東地域 7.0%, 其他地域 2.5% 順으로 되어 있다.

<表 IV-22>

研修生 分野別 招請實績

(單位: 名, %)

年度 地域	1963 ~ 1981	1982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 (’63-’92)
礦工業	306 (10.3)	311 (10.7)	71 (15.1)	60 (12.5)	157 (31.3)	85 (16.0)	78 (16.8)	155 (29.0)	1,223 (13.8)
農林水産業	981 (32.9)	969 (33.2)	142 (30.2)	97 (20.3)	104 (20.8)	126 (23.7)	107 (23.0)	138 (25.8)	2,662 (30.0)
科學·教育· 行政	536 (20.0)	915 (31.4)	83 (17.7)	259 (54.1)	121 (24.2)	221 (41.6)	264 (56.8)	177 (33.1)	2,576 (29.0)
保健·社會	1,034 (34.7)	264 (9.0)	103 (21.9)	63 (13.1)	119 (23.7)	99 (18.7)	16 (3.4)	44 (8.3)	1,742 (19.6)
其他	127 (2.1)	461 (15.7)	71 (15.1)	-	-	-	-	20 (3.8)	679 (7.6)
計	2,984 (100.0)	2,918 (100.0)	470 (100.0)	479 (100.0)	501 (100.0)	531 (100.0)	465 (100.0)	534 (100.0)	8,882 (100.0)

資料: 科技處, 前揭書

이는 日本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經濟的, 地理的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는 아시아地域에 援助가 集中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分野別 實績을 보면 1963年~1992년까지 累計 8,882名中 農林水産業이 全體의 30.0%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科學·敎育·行政部門이 29.0%, 保健·社會部門이 19.6%, 鑛工業이 13.8%, 其他 7.6% 順으로 되어 있다. 年度別로 보면 1963年~1981년에는 保健·社會部門이 34.7%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고, 1982年~1986년에는 農林水産業이 33.2%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987年 以後에는 一部 分野別 比重의 變化에 起伏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事業遂行에 있어 우리나라의 比較優位 分野에 對한 重點 支援方式보다는 相對國의 要請에 依存한 데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

4. 專門家派遣

專門家 派遣은 研修生招請과 마찬가지로 1967年 事業始作 以來 꾸준히 事業規模가 增加하여 왔다. 1991年 派遣人員은 39名으로 前年에 比해 다소 減少하였는데 이는 研修生招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關聯豫算이 1990年の 270百萬元에서 1991년에 93百萬元으로 減少되었고 一部 受援國側의 事情으로 要請이 取消되었기 때문이다.

地域別 實績은 보면 1967年~1992년까지 累計 559名中 49.4%인 276名이 아시아·大洋洲 地域에 派遣되었으며, 中南美地域에 25.8%, 아프리카地域에 19.0%, 中東地域에 3.1%, 其他地域에 2.7%가 派遣되어 아시아·太平洋地域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分野別로 보면 1967年~1992년까지 累計 559名中 農林水産業分野에 全體의 44.0%인 246名이 派遣되었으며 科學·敎育·行政 分野에 28.8%, 鑛工業分野에 19.5%, 保健·社會分野에 3.8%, 其他分野에 3.9%가 派遣되었다. 年度別로 보면 1967年~1981년에는 農林水産業이 59.2%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982年 以後에는 科學·敎育·行政部門의 比重이 크게 增加되었다.

<表 IV-23>

專門家 地域別 派遣実績

(單位：名，%)

年度 地域	1967 ~ 1981	1982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 (’67-’92)
亞細亞	37 (37.0)	108 (61.0)	18 (51.4)	16 (32.7)	42 (64.6)	21 (42.9)	16 (41.0)	18 (38.3)	276 (49.4)
아프리카	38 (39.0)	23 (13.0)	7 (20.0)	15 (30.6)	5 (7.7)	6 (14.3)	5 (12.8)	7 (14.9)	106 (19.0)
中南美	17 (17.0)	41 (23.2)	10 (28.6)	18 (36.7)	13 (20.0)	20 (40.8)	12 (30.8)	13 (27.7)	144 (25.8)
中東	7 (7.0)	2 (1.1)	—	—	2 (3.1)	1 (2.0)	2 (5.1)	4 (8.5)	18 (3.1)
其他	—	3 (1.7)	—	—	4 (4.6)	—	4 (10.3)	5 (10.6)	15 (2.7)
計	98 (100.0)	177 (100.0)	35 (100.0)	49 (100.0)	66 (100.0)	48 (100.0)	39 (100.0)	47 (100.0)	559 (100.0)

資料：科技處，前掲書

5. 醫療團等 派遣

醫療團等 派遣은 아프리카 및 中東地域 開途國에 醫療團 및 跆拳道 師範을 派遣하여 風土病 等の 豫防 및 治療와 跆拳道 普及을 通한 現地住民의 健康을 增進시켜 兩國間의 友好를 增進하는 事業이다.

醫療團 派遣은 1968년부터 1993年 9月 1日까지 總 108名이 派遣되어 現在 13個國에 14名이 活動中에 있으며 跆拳道 師範 派遣은 1972년부터 總 52名이 派遣되어 1993年 9月 1日 現在 10個國에 11名이 活動中이다.

兩事業의 派遣殘留人員은 1987年 52名에서 1988年 42名, 1989年 41名, 1990年 37名, 1991年 32名, 1992年 33名, 1993年 9月 現在 25名으로 漸次 減少趨勢

에 있으며, 醫療團의 境遇 國內醫師들의 平均報酬와의 懸隔한 差異 等으로 經歷이 豊富하고 有能한 醫療團員을 募集 하는데 限界가 있는 點이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表 IV-24>

專門家 分野別 派遣實績

(單位: 名, %)

年度 地域	1967 ~ 1981	1982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計 (’67-’92)
鑛 工 業	28 (28.6)	28 (15.8)	12 (34.3)	10 (20.4)	20 (30.4)	4 (8.3)	1 (2.6)	6 (12.8)	109 (19.5)
農林水產業	58 (59.2)	84 (47.4)	19 (54.3)	15 (30.6)	23 (34.8)	21 (43.8)	6 (15.4)	20 (42.6)	246 (44.0)
科學·教育· 行 政	4 (4.1)	49 (27.7)	3 (8.6)	24 (49.0)	23 (34.8)	23 (47.9)	18 (46.1)	17 (36.2)	161 (28.8)
保 健·社 會	4 (4.1)	1 (0.6)	1 (2.8)	—	—	—	14 (35.9)	1 (2.0)	21 (3.8)
其 他	4 (4.0)	15 (8.5)	—	—	—	—	—	3 (6.4)	22 (3.9)
計	98 (100.0)	177 (100.0)	35 (100.0)	49 (100.0)	66 (100.0)	48 (100.0)	39 (100.0)	47 (100.0)	559 (100.0)

資料: 科技處, 前掲書

6. 青年海外奉仕團 派遣

青年海外奉仕團 派遣은 韓國의 젊은이들이 나눔과 섬김의 奉仕精神으로 開
途國住民과 함께 生活하면서 相互理解와 協力을 바탕으로한 奉仕活動을 通
派遣國의 經濟, 文化, 社會發展에 寄與함으로써 모든 人類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社會를建設하는데 그 理念을 두고, 人類福祉 增進을 爲한 實踐의 參與,
特定協力對象地域과의 開發經驗 共有, 平和의 構築을 爲한 새로운 國際協力에

의 寄與, 國家發展을 爲한 青年의 參與意識 鼓吹等の 目的을 追究하는 事業이다. 事業初期의 諸般與件의 未備에도 不拘하고 1993年 9月까지 4期에 걸쳐 總 189名을 成功的으로 派遣함으로써 國內外的으로 肯定的인 評價를 받고 있다.

<表 IV-25>

青年海外奉仕團 國別 派遣實績

(單位: 名)

國別 年度別	스리 랑카	네팔	필리핀	인나	泰國	PNG	히지	몽골	방글라 데시	計
1990(1期)	16	14	7	7	—	—	—	—	—	44
1991(2期)	7	5	3	5	7	5	5	—	—	37
1992(3期)	5	4	8	6	9	6	7	7	—	52
1993(4期)	8	7	6	7	9	4	4	4	7	56
計	36	30	24	25	25	15	16	11	7	189

<表 IV-26>

青年海外奉仕團 分野別 派遣實績

(單位: 名)

國別 分野別	스리 랑카	네팔	필리핀	인나	泰國	PNG	히지	몽골	방글라 데시	計
技術協力	13	9	7	3	5	1	9	—	2	52
敎育	15	3	1	1	13	—	—	4	—	37
農畜産	—	2	7	10	3	13	2	3	3	43
看護・保健	2	14	3	1	—	—	3	—	1	24
地域開發	4	—	3	8	2	—	—	—	—	17
코디네이터	2	2	3	2	2	1	2	1	1	16
計	36	30	24	25	25	15	16	11	7	189

國家別 派遣實績을 보면 스리랑카에 36名으로 가장 많은 人員이 派遣되었고 네팔에 30名, 泰國과 인도네시아에 各各 25名, 필리핀에 24名, 튀지예 16名, PNG에 15名, 몽골에 11名, 방글라데시에 7名順으로 派遣되었다. 分野別로는 技術協力分野가 52名으로 가장 많고, 農畜産分野 43名, 敎育分野 37名, 看護·保健分野 24名, 地域開發 17名 및 코디네이터 16名順으로 되어 있다.

第6節. 對外經濟協力基金

1. 法的根據 및 目的

對外經濟協力基金(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對外經濟協力基金法 (法律 第3863號, 1986.12)에 依해 設置되었으며 이의 目的은 經濟力向上에 따른 國際的 地位의 上昇으로 後發開途國으로부터의 經濟協力要請이 增大됨에따라 南南協力(South-South Cooperation)의 基本精神下에 우리나라의 對開途國協力を 能動的으로 遂行함으로써 海外進出 基盤確保를 效率적으로 推進하는데 있다.

2. 支援節次

基金에 依한 借款의 支援節次는 日本의 OECF나 IBRD와 같은 國際支援機關과 類似하다. 開途國이 適切한 事業을 發掘·選定하여 우리나라의 外務部長官과 主務部長官에 支援要請하면 韓國輸出入銀行은 이에 對한 妥當性과 實施可能性 등을 檢討한 審査報告書를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한다. 財務部長官은 經濟企劃院長官·外務部長官等 關聯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支援方針을 決定하며 外務部長官은 該當供與國에 支援方針을 通報하고 兩國政府間에 政府間協定(Exchange of Notes:E/N)과 借款協約(Loan Agreement:L/A)이 締結되면 事業에 必要한 財貨와 用役購買後 資金이 引出되게 된다. 이와같은 節次에 依한 그동안의 運

用實態를 分析해본 結果 支援要請 接受로부터 支援決定까지 平均 1年 3個月 (日本의 境遇 所要期間 9個月)이라는 많은 期間이 所要되고있는 點等이 問題點으로 指摘되고있다.

3. 基金의 種類와 條件

基金의 融資支援은 크게 開途國政府 또는 法人에 對한 借款과 大韓民國에 對한 海外投融資資金貸出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對한 出資의 두가지로 區分된다.

開途國政府 또는 法人에 對한 借款에는 5가지 種類가있는데 이를 보면

- ① 開途國의 經濟開發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하는 開發事業借款,
- ② 開途國 產業發展에 必要한 機資材의 調達資金을 支援하는 機資材借款,
- ③ 開途國 產業發展에 必要한 機資材 調達資金을 轉貸하기 爲한 資金을 開途國政府 또는 開途國 金融機關에 融資해주는 基金轉貸借款,
- ④ 開途國의 經濟安定을 爲하여 特히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物資를 大韓民國으로부터 輸入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支援하는 物資借款,
- ⑤ 經濟開發事業의 準備를 爲한 調査 또는 經濟開發事業의 試驗的 實施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하는 事業準備借款等이 있다.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海外投融資資金貸出은 大韓民國 國民이 協力事業의 推進을 爲해 海外에 出資 및 融資를 하는 境遇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 支援하는 것으로 農林水產業, 炭鑛業等과 같이 事業의 危險度가 높고 收益性이 낮은 事業, 投資資本의 回收期間이 長期인 事業 또는 中小企業의 海外投資事業인 境遇에 限하여 支援된다.

大韓民國 法人에 對한 出資는 該當協力事業의 推進이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나 收益性이 낮아 이를 推進하는 業體에 基金의 出資로 支援하지 않으면 事業實施가 困難하다고 財務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海外投融資를 目的으로 新設되는 大韓民國 法人에 出資되는것을 말한다.

基金의 支援條件은 開途國政府, 法人에 對한 借款의 境遇 利子率은 2.5~5%, 償還期間은 25年以內, 据置期間은 7年以內이다.

<圖 IV-4>

基金支援 條件

區 分	開途國 政府 또는 法人 에 對한 借款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海外投融資資金 貸出
① 融資限度	• 開發事業借款：外貨所要資金 範圍內(現地貨 費用도 一部 支援可能함) • 機資材借款, 基金轉貸借款：機資材販賣額 範圍內 • 物資借款：物資購買額 範圍內 • 事業準備借款：所要資金 範圍內	出資 및 融資等에 必要한 資金의 80% 範圍內
② 利率率	年 2.5~5%(但, 事業準備借款은 年 2.0~4.5%)	年 5~6% 範圍內
③ 償還期間	25年 以內	15年 以內
④ 倨置期間	7年 以內	5年 以內
⑤ 元金償還方法	年 2回 定期分割	年 1回 定期均等 分割
⑥ 利子徵收方法	每 6個月 後取	每 1年 後取
⑦ 擔 保	中央政府, 中央銀行： 必要없음 地方自治團體, 法人：中央 政府 또는 中央銀行의 支 給保證	國內 또는 國外金融機關의 支給保證書 等
⑧ 表示通貨	원 貨	원 貨

資料：韓國輸出入銀行,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制度 (1993.6)

註：大韓民國 法人에 對한 出資의 境遇 出資限度는 資本金의 50% 未滿으로 하며 出資方法은 原則적으로 株式取得의 方法에 依함.

4. 財源造成 및 運用實績

基金의 財源은 政府出捐金, 政府投資機關 또는 經濟團體의 出捐金, 다른 基金으로 부터의 出捐金, 長期借入金, 債券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基金運用收益金 등으로 造成된다.

基金의 造成實績을 보면 1987年 政府出捐金으로 300億원의 基金이 造成된後 꾸준히 基金規模를 擴大하여온 結果 1993年 8月末 現在 基金의 總造成額은 3,952億원(4.9億\$)에 達하였다.

基金의 運用實績을 보면 그동안 많은 開途國으로부터 支援要請이 接受되어 (37個國, 97個事業, 1,355百萬\$), 1993.8月末 現在 인도네시아 道路建設事業等 19個國 23個事業에 總 2,369億원(315.9百萬\$)을 支援決定(Commitments)하였고 10個國 14個事業(244.6百萬\$)에 對해 支援을 推進中에 있다.

基金引出(Disbursements)은 1993年 8月末까지 6個國 9個事業에 總 712億원이 引出되었으며 基金과 開發調查事業과의 連繫實績을 보면 1984年 以後의 開發調查 51件中 EDCF支援이 決定된 것은 인도네시아 帛當市 道路建設事業等 3件에 不過하다.

한편 政府는 資金執行과 關聯하여 IBRD와 共同融資(Cofinancing) 基本協約을 맺음으로써 將次 有望事業發掘 및 支援過程에서 相互協力하여 業務處理의 效率性を 提高하기 爲한 基盤을 마련하였으며, 政府間協定(E/N), 標準文案 改定, 海外投融資資金 支援範圍 調整等 制度整備에 不斷한 努力을 기울였다.

向後 對外經濟協力基金은 우리나라의 開發援助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漸次 높아지고 對開途國 經協手段으로서 가장 重要的 役割을 遂行할 것으로 期待되므로 長期的인 戰略下에 基金의 造成과 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開發調查事業과의 連繫性도 크게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表 IV-27>

對外經濟協力基金 造成現況

(單位：億圓)

區 分		1987～ 1989	1990 小計		1991 小計		1992 小計		1993 計劃	
				1990		1991		1992		1993(計劃)
造成 基金 (A)	政府出損	1,000	1,000	100	1,200	100	1,200	—	1,400	200 ¹⁾
	財特借入	400	400		900	500	1,000	100	1,100	100
	運用收入	163.2	444.8	281.6	887.6	442.8	1,586	698.4	1,913	327
	小 計	1,563.2	1,944.8	381.6	2,987.6	1,042.8	3,786	798.4	4,413	627
運用 費用 (B)	委託手数料	9.8	12.1	2.3	25.0	12.9	30.2	5.2	46.2	16
	借入利子支給等	4.4	26.4	22.0	61.6	35.2	113.8	52.2	169.7	55.9
	小 計	14.2	38.5	24.3	86.6	48.1	144	57.4	215.9	71.9
純造成額 (A - B)		1,549	1,906.3	357.3	2,901	994.7	3,642	741	3,197.1	555.1

資料：韓國輸出入銀行，1993. 9. 1.

註：1) 1992年度 移越金 100億圓 包含

<表 IV-28> 借款支援方針決定 現況

(單位: 億圓, () 內는 百萬\$)

對 象 國	對 象 事 業	事 業 概 要	借 款 額	借款條件 利 子 率 償還期間 (据 置)	備 考 (支援決定)
○ 借款事業: 19個國 21件 2,353億圓(313.7百萬\$)					
인도네시아	과당市 迂迴道路 建設事業	22cm 2次線 道路工事	98(13.3)	年 3.5% 25年(7年)	87.12
나이지리아	鐵道車輛 現代化 事業	鐵道車輛購入	81(10)	年 4% 20年(5年)	87.12
페루	漁船現代化事業	漁船購入	71(9.8)	年 3.5% 20年(5年)	88.12
피지	Ba 및 Sigatoka 橋梁 建設事業	190m 및 182.5m 橋梁 2個建設	42(6.2)	年 4% 20年(5年)	89.7
가나	精油製品貯藏所 建設事業	5個據點에 精油製品貯藏 施設 設置	90(13.0)	年 3.5% 20年(5年)	90.5
필리핀	電話網 擴充事業	TDX-IB 全電子 交換機 設置	38(5.4)	年 3.5% 20年(5年)	90.3
스리랑카	콜롬보-폴간 道路 改補修事業	콜롬보-폴간 98km 道路改補修 및 擴張	104(14.5)	年 3.5% 20年(5年)	90.8
요르단	廢水處理施設事業	廢水處理施設事業	72(10.0)	年 2.5% 25年(7年)	91.3
우간다	地方電話網 擴充事業	TDX-IB 全電子 交換機 設置	54(7.5)	年 2.5% 25年(7年)	91.4
파키스탄	産業設備貸與産業	發電機 變壓機等	72(10.0)	年 3.5% 17年(5年)	91.3
인도네시아	移動式 職業訓練事業		182(25.0)		91.9
나이지리아	機關車 現代化 事業	디젤機關車 및 部品 購入	109(15.0)	年 3.5% 20年(5年)	91.11
파푸아뉴기니	洪水 排水路 擴大事業	排水路 整備 및 新設	91(12.5)	年 3.5% 20年(5年)	91.11
폴란드	通信網 現代化 事業	TDX-IB 全電子 交換機 設置	382(50.0)	年 4.2% 20年(5年)	92.4

對 象 國	對 象 事 業	事 業 概 要	借 款 額	借款條件 利 子 率 償還期間 (据 置)	備 考 (支援決定)
불 가 리 아	킬러TV工場 建設事業	킬러TV工場 建設	38(5.0)	年 5.0% 20年(5年)	92. 4
케 나	技術訓練所 設立 事業	技術訓練所 建築 및 設備 購入	110(14.4)	年 3.5% 20年(5年)	92. 6
미 안 마	電話通信網 擴充 事業	TDX-IB 全電子 交 換機 設置	57(7.8)	年 2.5% 25年(7年)	92. 6
터 키	上水道管 現代化 事業	鑄鐵管 및 펌프類 購 入	116(15.0)	年 4.2% 20年(5年)	92. 8
몽 골	注射器工場 建設事業	注射器工場 建設	41(5.2)	年 3.5% 20年(5年)	92. 8
방 글 라 테 시	第2次 送配電事業	送配電用 機資材 購 入	111(14.0)	年 2.5% 25年(7年)	93. 1
루 마 니 아	Prahova州 通信網 現 代化 事業	TDX-IB 全電子 交 換機 設置	395(50.0)	年 4.2% 20年(5年)	93. 2
○ 海外投融資事業：2個國 2個事業 16億원(2.2百萬\$)					
필 리 핀	養蠶 및 生絲製造 海 外投資事業	養蠶, 生絲製造	6(0.9)	年 5% 15年(5年)	90. 6
인 도 네 시 아	"	"	10(1.3)	年 5% 10年(4年)	92. 6
○ 總 計	19個國 23個事業 2,369億원(315.9百萬\$)				

資料：韓國輸出入銀行, 1993. 9. 1.

第7節 多國間協力

1. 概 念

多國間協力(援助)이란 多國間 援助機構(國際機關)를 통한 援助를 말하며 援助가 供與國과 受援國들의 集團의 意思決定에 依해 運營되는 制度이다 (Browne), 多國間援助를 爲해 國際機關들은 開發需要의 資源을 連結시키는 仲裁者로서 많은 受援國들로부터의 要求에 應하게 되는데 이러한 目的을 爲해서 數年間 컨소시엄을 構成하거나 協議團會議를 計劃하고, 開途國들을 爲해 圓卓會議를 召集하게 된다.

ODA中 2國間 援助나 또는 多國間 援助나에 對한 判斷은 援助供與國의 援助政策과 關聯된 問題로서 DAC의 兩者間 比率는 73:27%이고 日本은 76:24%, 美國은 89:11%로서 2國間 援助比率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46.4:53.6%로서 多國間援助의 比率이 다소 높다.

多國間 援助가 갖는 長點은 2國間 援助의 偏狹한 理解關係를 떠나 廣範圍한 開發需要에 適切히 對應함으로써 援助의 國際的 性格을 強化할 수 있다는 點이다. 즉 地域의 疏忽히 할 수 있는 國家나 (例 :아프리카의 饑饉 또는 難民救濟) 또는 最近 世界的인 對應이 要求되고있는 環境.麻藥.人口等の 分野에 效果的인 援助를 展開할 수 있다.

이외에도 援助에 關與하는 國際機關이 가지고 있는 專門的知識.經驗의 活用은 勿論 各國에 있는 이들의 援助事務所를 통해 效果的인 援助를 實行할 수 있고, 國際社會에서의 中立의立場에 따라 政治的中立性을 살린 援助가 可能하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援助方法에도 많은 制約이 따르게 되는데 大規模 援助供與國들은 援助額을 出資할 때 援助目的을 明示하여 그 限度內에서만 使用하게 한 다던가, 또는 自國의 目的이 實現되지 않을때에는 援助出資規模를 줄이겠다는等으로 間接的인 影響力을 行使하는 境遇가 종종 있다.

2. 援助實施機關

多國間 援助의 實施는 모든 國際機關이 該當되는 것은 아니며 DAC의 定義에 따라 開途國의 經濟開發에 도움이 되는 活動이나 救濟活動을 實行하고 있는 特定 國際機關만이 該當된다.

國際機關은 크게 나누어 開發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하는 國際開發金融機關과 主로 技術協力에 關係하는 活動을 實行하고 있는 國際聯合關係 援助機關이 있다.

前者에 對한 出資와 後者에 對한 贈與가 多國間 援助의 中心이 된다.

國際開發金融機關으로는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國際開發協會(IDA), 國際金融公社(IFC), 多國間投資保證機關(MIGA), 아시아開發銀行(ADB), 歐洲復興開發銀行(EBRD), 國際農業開發基金(IFAD) 등이 있고 國際聯合關係 援助機關으로는 UN開發計劃(UNDP), UN食糧農業機關(FAO), 世界食糧計劃(WFP), UN人口活動基金(UNFPA), UN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UNHCR) 등이 있다.

3. 支援實績

多國間協力으로서 國際機構에 對한 分擔金負擔 및 出資·出捐은 우리의 ODA 中에서 每年 60% 以上の 높은 比重을 차지하여 왔으나 1992년에는 全體 ODA 115.2百萬\$ 의 53.6%인 61.7百萬\$로 이의 比率이 크게 減少되었다. 이는 UN 加入 및 UN에서의 地位上昇에 따라 UN定規豫算分擔金(6.4百萬\$) 및 UNPKO 分擔金(1.1百萬\$) 등 UN에 對한 分擔金이 增加하였으나 出資金의 減少로 多國間協力 總額은 前年水準과 비슷한 反面에 全體 ODA 規模는 크게 增大된 때문이며 이와같은 趨勢는 앞으로도 繼續될 展望이다.

向後 우리의 經濟力向上에 따라 增額이 豫想되는 國際機構分擔金負擔은 可及的 國際機構의 性格, 우리나라와의 關係程度, 經濟的 利害關係等を 勘案한 優

先順位를 考慮하여 增額시켜나가면서 特別 民間經濟機構 性格이 강한 機構(國際小麥委員會等)에 對해서는 相對的으로 政府參與를 縮小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同一한 國際機構에 對해 外務部를 비롯한 여러 關係部處가 各自 分擔金을 確保·負擔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여 必要한 境遇 相互 有機的으로 連繫 調和시키도록하고 分擔金의 管理活用に 對한 積極的인 對應努力이 있어야 될 것이다.

<表 IV-29>

國際機構 出資金

(單位:千\$)

國際機構名	1985末 殘 存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IMF	457,622	77,814.4	22,569	34,971.5	88,027.3 27,557.7	—	27,207	478,725 ¹⁾
世界銀行그룹 IBRD	3,175.5 18,812.7	229.1 2,070.1	9,497.8	3,688.6 1,756.4	—	1,488.2 13,393.4	351.5	—
IDA	126 8,825.4	2,676.9	6,425	7,430.4	4,162.8 7,582.1	12,180	10,789.6	10,369.1
IFC	2,450	—	1,756.4	585	585	3,637	—	—
MIGA	—	—	—	979	—	—	—	—
아시아開發銀行 ADB	49,404.3 40,350.5	1,957.6 2,532.5	1,957.6 2,753.5	—	—	—	—	—
ADF	2,625	384.4	1,250	1,740	1,250	1,250	—	3,750
TASF	1,450	150	150	150	—	150	—	—
아프리카開發銀行 AfDB	2,012.2	677.8	1,394.5	1,612.8	639.6	711.3	694.9	—
AfDI	25,255.7	3,088.5	3,866.6	4,471.7	6,185.1	12,370.2	—	7,477.3
商品共同基金 (Common Fund for Commodities)	—	—	—	350.6	364.4	356	442.9	—
유럽復興開發銀行 (EBRD)	—	—	—	—	—	—	4,561.3	4,551.3
財 務 部 小 計	612,109.3	91,581.3	51,620.4	35,728.9	44,163.8	45,536.1	47,199	26,147.7
國際電氣通信衛星 機構(INTELSAT)	—	—	—	—	15,076	774	1,072	8,386
國際海事衛星機構 (INMARSAT)	—	—	—	—	535	177	353	1,270
遞 信 部 小 計	—	—	—	—	15,611	951	1,425	9,656
合 計	612,109.3	91,581.3	51,620.4	35,728.9	66,874.8	46,487.1	48,804	35,803.7

資料: 經濟企劃院, 前掲書에서 整理

註: 1) '92.12월 納入分, OECD/DAC 統計指針에 依據 ODA集計에서 除外

<表 IV-30>

國際機構 分擔金

(單位:千\$)

國際機構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 國際經濟機構 (外務部)	1,290.5	1,750.5	1,994.2	2,013.0	2,103.3	2,346.7	2,386.6
○ 國際機構	3,646.7	4,003.2	4,734.3	6,931.3	8,217.3	9,827	23,537.8
— UN直屬機構	943.9	1,190.0	1,265.5	2,055.5	1,707.7	2,418.7	11,548
・ 外務部	943.9	1,190.9	1,265.5	1,530.5	1,252.7	1,822.7	9,468
・ 科技處	—	—	—	525.0	455	596	2,073
— UN專門機構	1,868.0	1,680.3	2,393.2	3,177.4	4,291	4,432.8	9,047.5
・ 外務部	1,868.0	1,680.3	2,393.2	2,519.4	2,746	2,958	6,449
・ 科技處	—	—	—	30	30	30	30
・ 遞信部	—	—	—	604	1,452	1,422	2,501
・ 教育部	—	—	—	20	20	18.8	20
・ 保社部	—	—	—	4	43	4	47.5
— 政府間機構	706.6	894.7	920.6	1,211.5	1,464.6	1,471.5	1,772.3
・ 外務部	706.6	894.7	920.6	1,065.5	1,350	1,302.2	1,487
・ 遞信部	—	—	—	146	114.6	169.3	160.3
— 非政府間機構	105	125	150	190	190	700	760
・ 外務部	105	125	150	150	150	150	200
・ 保社部	—	—	—	40	40	50	60
・ 農振廳	—	—	—	—	—	500	500
— 其他(外務部)	23.2	112.3	5.0	297.2	564	804	410
計	4,987.2	5,803.7	6,778.5	8,944.6	10,320.6	12,173.7	25,924.4

資料:經濟企劃院, 前掲書

第 5 章 韓國開發援助의 政策方向

第 1 節 事業의 戰略的 推進

1. 現況 및 問題點

大部分의 援助供與國들은 開發援助를 國家의 重要한 政策의 하나로서 戰略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開發援助의 戰略的 推進이란 다른 모든 事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事業의 理念, 目的 및 支援國家나 支援分野等에 對한 基本政策方向의 樹立을 通한 體系的인 事業推進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協力形態別로 이의 必要性에 따라 關係部處別로 推進되어 왔기 때문에 開發援助 全體에 對한 綜合的 基本政策이나 效率的인 事業推進을 爲한 開發援助 戰略(ODA Strategy)이 樹立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는 協力으로서의 開發援助에 關心을 갖게 된 것은 最近의 일로서 援助規模가 漸次 增大되고, 國際社會에서의 役割增大로 늦게나마 政府에서도 開發援助에 對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事業推進의 必要性이 提起되게 되었다. 特히 1987年 對外經濟協力基金의 設置를 契機로 우리나라도 援助供與國의 모습을 갖추기 始作하였으며, 1991.4.1 韓國國際協力團의 設立으로 本格的인 開發援助事業推進體制를 갖추게 됨에 따라 開發援助의 戰略的인 推進이 무엇보다 重要한 政策課題로 擡頭되었다.

2. 政策方向

가. 理念의 定立

戰略的 事業推進을 爲한 첫 段階는 事業理念의 體系化이다. 理念이 分明하게 設定되어 있어야만 事業의 目標과 政策方向을 確定할 수 있고 事業完了後에는 이에 對한 評價의 尺度가 될 수 있다. 援助의 基本理念은 主要先進國의 境遇에

도 (圖 V-1)에서 보는바와 같이 各 國家別로 相異하고 援助의 理念, 目標 및 政策方向等의 區分이 明確하지 못한 實情이다.

(圖 V-1) 主要 先進國의 援助理念 및 目標

國 別	基 本 理 念	目 標
美 國	• 戰略援助 • 自由, 民主主義, 人權의 普及 • 自由主義 經濟秩序의 構築 및 推進 • 西方諸國의 安全保障	
英 國	• 英聯邦 優先 援助 • 人道的 配慮 • 相互 依存主義 • 援助의 柔軟한 運營으로 國益 圖謀	
프 랑 스	• 舊殖民地國家에 對한 責任 • 開途國의 信賴獲得을 통한 國益의 充足	• 第3世界 自立能力 및 紐帶強化 • 프랑스語 및 프랑스 文化普及
獨 逸	• 第3世界와의 協調 • 人道的 配慮 • 相互依存	• 南北問題의 解決 — 緊張緩和의 一環 • 援助를 통한 國內經濟 發展 — 雇傭創出等
스 웨 덴	• 人道的 配慮가 極히 重要함 (國內福祉制度의 延長) • 最近, 經濟的 相互依存 關係를 比較的 重視	
이탈리아		• LLDCs等 低所得 國家의 救濟 • 開發途上國의 政治經濟社會의 安定
日 本	• 相互依存性의 認識 • 人道主義的 努力	• 開途國의 開發 및 自助努力 支持

資料：日本經濟企劃廳, 經濟協力政策研究會 中間報告(1990)

오늘날 援助動機의 核心 혹은 共通分母가 되는 所謂 一般理念으로서 적어도 다음 2가지 點은 西方先進工業國間에 國際的인 合意(Consensus)로서 定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世界全體를 하나의 共同體로, 人類를 地球市民으로 보고, 그 連帶性에 立脚한 人道主義的 考慮(Humanitarian Consideration)와 南北相互依存의 認識(Recognition of Interdependency between South and North)이 그것이다.

開發援助 一般理念의 첫번째 要素인 人道主義的 考慮의 觀點을 強調한 代表的인 例는 1969年 發表된 피어슨 報告書이다.

이 報告書는 우리는 하나의 世界社會에 살고 있다는 世界共同體 (World Community)의 觀念을 基調로 하고 있다. 世界를 變化시키려는 人間의 努力에 制約을 加하고 있는것은 따뜻한 마음씨가 不足하거나 아니면 視野가 좁은 때문이므로 世界의 安全과 繁榮을 위하여서는 모든 국민에게 共通的인 問題에 對하여 共通的인 關心을 表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趣旨의 主張을 하고있다.

두번째 南北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은 1980年 2月 브란트 委員會 (國際開發問題 獨立委員會)가 提出한 報告書를 基礎로하여 人道主義的 考慮의 重要性에 對한 變함없는 認識의 前提下에 그 以後 漸次的으로 援助의 國際的인 一般理念으로 定着하게 되었다.

이러한 相互依存의 認識은 1960年代에 擡頭되기 始作한 南北問題가 1970年代들어 南北對決 樣相으로 深化됨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 즉 1961年 第17次 UN總會時 行한 케네디大統領의 演說을 契機로 始作된 UN 開發 10個年計劃이 事實上 失敗로 돌아감에 따라 南北間의 經濟格差가 더욱 深化되었고, 1973年의 第1次 石油波動, 1974年의 新國際經濟秩序(NIEO) 宣言 등으로 開發途上國이 世界의 經濟秩序 또는 構造全體의 改革을 追求하는 國際社會에서의 새로운 힘으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80年 2月 브란트委員會가 UN에 提出한 報告書(北과 南一生存을 爲한 프로그램)는 世界開發 基金의 創設, 南北間頂上會談의 開催等을 主張하여 先進國의 發想轉換을 促求하는 契機가 되었으며 이에따라 1981.10月 멕시코 칸

중에서 先進國 8個國 및 開途國 14個國이 參加한 南北頂上會談이 開催되었다.

이러한 南側 開途國 立場의 強化는 先進工業國側에 여러가지 意味에서 開途國의 重要性을 새롭게 認識시키는 契機가 되어 開途國의 所得水準向上을 支援하여 友好的 協力關係를 構築하는 것이 先進工業國 自體의 生存과 繁榮에 있어서도 不可缺한 條件이며, 南北關係는 相互依存關係에 있다는 認識을 強化시키게 되었다.

一般的으로 理念이라는것은 窮極的으로 追求하는 바인 最善의 狀態, 즉, 어떠한 犧牲을 치루고서라도 實現해야 할 絶對的인 價値로서 彼我的 利害關係를 떠나 價値志向의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現在 開發援助의 一般理念으로 認識되고 있는 人道主義의 考慮 및 相互依存 關係의 認識은 開發援助의 理念이라기 보다는 國際協力の 動機(Motives)로 볼 수 있으며 이는 開發援助의 一般的인 動機로 認識되고 있는 政治的(Political), 經濟的(Economic), 人道主義的(Humanitarian)動機와도 一致한다.

主要 先進各國의 援助動機는 반드시 一致하는것은 아니지만 一般的으로 人道主義的動機, 政治的動機, 經濟的動機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中 政治的動機 및 經濟的動機는 供與國 側의 國益과 關聯된 動機로서, 開發援助의 一般理念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은 政治的動機 및 經濟的動機에 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家의 行爲는 自國의 利益과 利己的인 競爭心에서 出發하게 되는데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이라는 概念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南北對決이라는 狀況下에서 各國의 利益을 위하여 不可避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開途國이 國際社會에서 새로운 힘으로 登場하여 南北對決 樣相이 深化됨에 따라 先進工業國 들은 開途國을 工業製品 輸出市場 및 原料供給源 對象이라는 從來의 認識에서 自身들의 生存과 繁榮을 維持하기 爲한 國際政治的力學關係 및 經濟的 必要性(動機)에 依해서 南北相互 依存關係로 認識을 轉換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相互依存關係 認識은 先進國이 貧困한 開途國을 도와 함께 繁榮을 누리자는 意圖에서 出發한 것이 아니라 自身들이 누려온 既

存의 生存과 繁榮을 維持하기 爲하여 不可避하게 새로운 勢力으로 登場한 開途國의 存在를 認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點은 1979.5월부터 6월에 거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開催된 第5回 UNCTAD의 第8議題 相互依存을 둘러싼 南.北間의 論議 및 意見對立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以上과 같은 點을 考慮할때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바람직한 理念의 設定方向은 무엇인가? 이에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을수 있으나 적어도 다음 몇가지 要件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모든 分野의 理念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價値志向의 이어야 한다. 즉 開發援助(ODA)의 窮極의 目標은 開發援助가 必要없는 世界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는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祉向上을 통하여 함께 잘사는데 그 뜻이 있다.

둘째, 非政治的이어야 한다.

OECD 의 DAC가 標榜하고 있는 바와 같이 ODA는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祉의 向上等 經濟的, 人道的 支援이 主目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民主主義 또는 社會主義의 擴散이나 西方諸國이 앞세우는 安全保障의 確立等 政治的인 理念이나 目的을 前提로한 協力は 開發援助의 理念에서 排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國際的인 性格을 가져야 한다.

開發援助가 政府를 主體로하여 行하여지는 以上 國家의 利益을 強調 하는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開發援助 그 自體는 對外的이며 國際的인 性格을 가진 것이다.

네째, 調和로운 發展을 圖謀할 수 있어야 한다.

資本主義下에서의 調和와 協力は 일찌기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指摘하였듯이 利己的인 競爭에서 出發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해서 全體의인 調和와 成長의 놀라움을 만들어 낸다. 開發援助도 各國의 利己的인 競爭에서 出發하지만 公定하고 自由로운 競爭이 保障된다면 亦是 全世界의인 調和와 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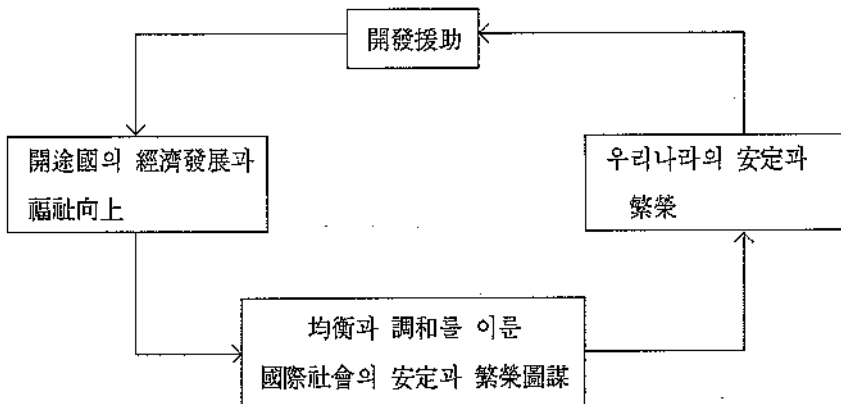
長으로 歸結될 수 있다.

우리가 世界資本主義內에 位置하고 그러한 自由市場經濟의 價値를 追究하는 政治·經濟·歷史的 背景 및 現實이 顯著히 相異한 各國의 特性을 살린 國際的 分業과 相互補完을 通하여 調和로운 發展을 圖謀하는 것은 重要한 일이다.

以上과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開發援助의 理念으로 既 提示된 바 있는 相互利益과 共同繁榮은 첫번째와 두번째의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및 네번째 要件을 反影한 開發援助의 理念은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祉向上의 增進(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을 通하여 均衡과 調和를 이룬 國際社會의 安定과 繁榮에 寄與하는 것으로 整理하여 볼 수 있으며 그 概念圖는 아래와 같다.

(圖 V-2) 開發援助理念의 概念圖



나. 目的의 設定

開發援助의 戰略的 推進을 爲한 두번째 段階는 目的의 明確化이다. 開發援助의 理念이 窮極的으로 追求하는 上位 目標인 反面, 目的은 理念에 到達하기 爲한 現實的인 政策目標과 할 수 있으므로 國家利益 및 現實的인 與件이 反映되 지 않을 수 없다.

主要 先進國의 開發援助 目的(Aid Objectives)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지만 一般的으로 政治·外交的目的, 經濟的目的, 人道的目的의 3가지로 區分하여 볼 수 있으며 어느 供與國을 莫論하고 이러한 目的에 依하여 開發援助를 實施하고 있다.

이중 特히 政治·外交的, 經濟的 目的은 供與國側의 國益과 關聯이 있는것으로서 開發援助가 供與國 國民의 負擔에 依해 遂行된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이러한 國益 考慮는 當然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境遇에도 이러한 3가지 目的이 마찬가지로 適用된다 할 수 있다.

援助供與國의 開途國에 對한 開發援助는 上記 3가지 目的중 어느 한가지의 目的에 依한 境遇보다는 두가지 或은 세가지 複合的인 目的을 가진 境遇가 大部分이다. 重要한 것은 어느 目的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둘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供與國이 處한 對内外 政治·經濟的 與件에 左右될 수 밖에 없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그동안 主로 政治·外交的 目的에 置重되어 왔다. 南北의 分斷狀況下에서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非同盟 그룹等 第3世界와의 關係增進, 未修交國과의 關係改善, UN加入等を 위한 政治·

(圖 V-3)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目的

區 分	內 容
政治·外交的 目的	○國家의 安保維持 ○國際社會에서의 支持獲得 및 影響力 增大
經濟的目的	○輸出增大를 爲한 海外位相 確保 ○原資材 供給線 確保 ○受援國에 對한 民間投資 促進 ○産業構造調整 促進
人道主義的 目的	○人道主義에 立脚한 道德的 責務 ○國際社會에서 地位上昇에 따른 責任 및 役割 遂行

外交的 手段으로 使用되어 온 側面이 많았던 것이다. 最近 共產圈의 民主化

等 國際政勢의 急變과 함께 南北韓 和解,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關한 合議, 韓半島의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等으로 長期的으로 볼때 從前과 같은 政治·外交의 目的 支援의 重要性은 減少될 것으로 展望되나 冷戰終熄以後 새로운 世界秩序가 形成되는 過程에서 統一基盤 造成을 爲한 外交對策, UN等에서의 多者間 外交 強化의 必要性으로 急激한 政策轉換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最近 經濟불덕化 趨勢等에 따른 既存 國際經濟秩序의 變化, 우루과이라운드, CIS 및 東歐의 經濟不安, 環境問題의 擡頭等과 같은 世界 經濟與件의 急激한 變化와 함께 國內經濟의 惡化 및 貿易逆調等으로 經濟·通商目的 開發援助의 重要性이 더욱 增大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人道的次元에 依한 支援은 政治·外交의 目的 및 經濟의 目的과는 달리 比較的 供與國의 國益과는 關係가 적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援助規模等の 諸般與件을 考慮할 때 優先順位가 뒤지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現在 全世界 人口의 約 1/5이 絶對貧困狀態로서 貧困救濟 問題가 開發援助의 가장 主要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으므로 最貧開發途國 및 災難救護에 對한 人道的次元의 支援에 對한 努力을 疏忽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 ODA의 適正規模

1992年度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規模는 11,520萬\$로 GNP對比 0.04% 水準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經濟規模에 비해 적은 規模라는데 一般的으로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ODA 適正規模는 GNP에 對한 比率이 그 尺度가 되고 있는데 1992年度 DAC 會員國의 平均은 0.33%로서 IMF가 各國의 經濟力을 反映한 出資比率 0.19%等を 勘案할때 '90年代 中盤에 OECD 加入을 積極的으로 推進中인 우리나라의 立場으로서는 經濟規模에 알맞는 水準으로 ODA 規模를 增大할 必要가 있다.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는 「우리의 經濟水準을 勘案 ODA規模를 段階的으로 擴大」한다는 目標을 設定하고 具體的인 計數는 提示하고있지 않은데 政府와

學者들간의 論議는 7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96年の ODA適正 規模를 GNP의 0.15%~0.2% 水準으로 推定한 바 있다.⁹⁾ 新經濟 5個年計劃의 最終年度인 1997年 GNP規模가 5,616億\$로 計劃되어 있으므로 同年度の ODA 規模를 最小限 0.1%~0.15%로 推計하더라도 약 5.6億\$~8.4億\$로 推定된다. 이를 達成하기 爲해 1993年을 基準으로 每年 30.5~44.4%의 ODA增加率이 要求 되는 바 이는 同期間中 GNP의 年平均成長率 6.9%나 財政增加率 13.9%에 比하여 매우 높은 展望值이며 國際收支나 財政需要와 이의 部門別 優先順位等 現實與件으로 보아 ODA 豫算의 劃期的 增大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ODA 規模의 量的增大에 豫算制約(Budget Constraint)이 있음을 勘案하여 當分間은 配分構造의 適正化로 事業效果의 極大化를 圖謀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보며 NGO의 協力을 얻는 方案도 積極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表 V-1〉

ODA 適正規模 推定

(單位: 億\$)

區 分	1992實績	1993暫定 (A)	1994	1995	1996	1997(B)	B/A(倍)
GNP	2,945	3,219	3,643	4,418	4,849	5,616	1.7
ODA	1.15	1.95	2.54~ 2.82	3.32~ 4.07	4.33~ 5.87	5.62~ 8.42	2.9~ 4.3
ODA /GNP(%)	0.04	0.06	0.07~ 0.08	0.08~ 0.10	0.09~ 0.12	0.10~ 0.15	1.7~ 2.5

註: 新經濟 5個年計劃上 '97 GNP 規模에 ODA比率을 0.10~0.15%로 하고, '93 ODA 暫定 値를 基準年度로 하여 年度別로 推定함.

- 9) 金學洙 博士는 우리나라 ODA의 適正規模를 測定하기 爲해 緩慢한 增額方式, 漸進的 增額方式 및 急進的 增額方式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를 假想하고 結論的으로 OECD의 非 DAC 5個 會員國의 對 GNP比率이 1986-89 平均 0.08%이고 1989年の 5個國 合計金額이 4億\$水準이므로 韓國이 '90年代 中盤에 0.1%金額 으로 4~5億\$이 되어도 國際的으로 充分히 容納될 수 있는 線으로 보았다.

ODA 展望値를 보면 1996年은 GDP의 0.14%인 6.5億\$, 1999年은 0.2%인 12.6億\$로서 이는 當初 金學洙 博士가 提案했던 '90年代 中盤頃의 0.2%, 1999年の 0.3%線에서 크게 後退한 數值이다.

NGO는 歐美先進諸國에서는 이미 긴 歷史를 갖고 海外에서 活潑하게 活動하고 있는데 이들의 ODA에서의 比重을 보면 6~10%에 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NGO의 成長을 支援함과 同時에 함께 提携하여 開發援助를 보다 效果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 中長期計劃의 樹立

現在와 같은 財源制約下에서는 무엇보다도 手段間 配分構造의 最適模型을 提示할 必要가 있는데 이를 爲해 現實與件에 合當한 開發援助 中長期計劃의 樹立 이 時急하며 短期的으로는 援助手段間의 連繫를 勸案한 體系的인 事業計劃의 樹立과 이의 遂行을 爲한 豫算確保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ODA政策에 對한 이렇다 할 綜合的인 中長期 戰略 (Strategic Plan)이 樹立된 바가 없어 每年 計劃의이고 一貫性 있는 政策樹立과 執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ODA 中長期計劃의 樹立問題는 무엇보다도 時急하게 解決되어야 할 課題中的 하나이다.

最近政府에서도 ODA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ODA의 政策方向을 政府의 長期計劃等에 提示하고 있다.

1990年 6月 事實上 ODA의 主管部署 役割을 해온 外務部는 對開途國 經濟協力 事業의 必要性을 國際的 責任分擔, 輸出市場의 多變化, 開途國의 各種 協力要請에 能動的對應, 先進國進入 以前에 我國의 立地強化等 經濟的·政治外交의 側面에서 力說하고 政策改善事項으로 ODA規模의 擴大, 二國間 援助比重의 增大, 開發援助 手段間의 連繫強化, 總體的 ODA管理體制의 構築(專擔機構의 設立)등의 對策을 提示 하였다.

經濟企劃院도 1990年 12月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和 對開途國 經濟協力の 重要性을 認識하고

- ① 1996년까지 適正 ODA規模를 GNP의 0.2%(8.5億\$) 水準으로 提高
- ② 多國間 및 二國間 協力比率을 40:60%에서 70:30%로 構造調整
- ③ 制約된 援助能力을 勸案 比較的 援助의 效率性和 效果가 期待되는 國家

에 對한 優先的 支援 (Country Focus)

④ 우리의 技術, 經驗等의 面에서 比較優位를 지니고 있는 分野를 支援 (Sectoral Focus)

⑤ 援助形態別로 推進戰略樹立 및 相互連繫強化等의 長期政策 方向을 提示하였다.

1991年 6月 經濟社會發展 7次 5個年計劃樹立에서 國際化部門 計劃班은 ODA의 適正規模와 政策方向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① 開途國을 長期的인 眼目에서 對外進出戰略上 潛在能力 對象으로 보고 實質的인 協力增進에 力點을 뒀.

② ODA의 GNP對比 比重을 現在 0.1%未滿 水準에서 1996년까지는 適正水準으로 提高

③ EDCF의 造成 및 供與를 本格化하고 海外投資等 開途國에 對한 民間資金의 흐름을 積極 誘導

④ 우리가 比較優位 乃至 強點을 지니는 人的資源, 中級技術, 開發經驗提供等에 重點을 두고 無償技術協力規模를 持續的으로 擴充

1993年 6月の 新經濟 5個年計劃 對外通商 및 國際化部門 計劃에서는 開途國에 對한 長期的 協力基盤 擴充을 爲해 다음과 같은 政策方向을 提示하였다.

① 우리의 經濟水準을 勘案 ODA規模를 段階的으로 擴大

② 直接的 效果가 큰 二國間 協力部分의 比重을 높이고, 特히 有償 및 技術協力 支援을 強化

③ 援助手段間의 有機的인 連繫性 強化

④ 開發援助와 民間企業活動間의 連繫強化

⑤ 開途國 經濟協力 專門家の 育成活用

⑥ 開發援助事業의 審査·評價機能의 強化

ODA 中長期計劃은 開發援助의 理念, 目的의 確立은 勿論 適正 ODA 規模의 推定, 個別事業目標의 優先順位의 設定, EDCF를 包含하는 協力形態別 豫算配分과 國別·分野別 推進戰略, 이런 長期戰略 遂行을 爲한 人力等 下部構造의

定立 方案等 諸般分野를 包括하는 現實性이 있는 綜合計劃이어야 하며 每年 連動(Rolling)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計劃樹立을 爲해서는 優先 計劃의 Macro한 指針을 作成하여 이에 對한 各界의 意見을 收斂한 후 重點 課題別로 Task Force를 構成하여 細部作業을 推進토록 하고, 各 作業班에서 作成된 部門別 試案을 綜合하여 公聽會 등으로 政府關係部處는 勿論 各界의 意見을 聚合한 後 最終案을 마련함으로써 國民的 合意(National Consensus)를 얻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캐나다는 ODA 戰略을 樹立하여¹⁰⁾ 國會에서의 論議 등으로 國民에 對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있으며, 日本은 그동안 5次에 걸친 ODA 中長期目標을 樹立한 바 있고¹¹⁾ 日本外務省은 ODA에 對한 國民的 理解를 돕기 爲해 經濟協力理念(副題:政府 開發援助를 왜 遂行하는가)이라는 冊子를 發刊하여 國民에게 弘報하고 있다.

10) 캐나다의 ODA戰略(Sharing Our Future : 1988)

○開發援助의 基本原則

- ① 貧困問題 最優先
- ② 開發國의 自助努力支援
- ③ 開發國의 開發優先順位 考慮
- ④ 開發國과 캐나다의 共同協力關係 重視

○開發援助의 優先順位

- ① 貧困緩和
- ② 開發國의 構造調整過程 支援
- ③ 女性參與 促進
- ④ 開發의 環境의 考慮
- ⑤ 食糧供給의 安定的 確保
- ⑥ 에너지의 效果的 利用

○開發援助의 當面目標

- ① ODA의 GNP 比率을 1990年 0.5%, 1995年 0.6%, 2000年 0.7% 水準으로 提高
- ② LLDCs에 ODA의 對 GNP 比率은 0.15%를 繼續 維持
- ③ 人道主義的 援助에 ODA의 2%를 割當
- ④ 모든 ODA는 無償으로 供與
- ⑤ ODA의 1/2은 國家 主導 프로그램에, 나머지 1/2은 共同協力 프로그램에 配分
- ⑥ 二國間 援助의 75%는 低所得 및 小島嶼開發國에 支援
- ⑦ 二國間 援助의 75%는 30個 重點支援對象國 및 地域그룹에 重點支援
- ⑧ 食糧援助豫算의 5%까지는 開發國 剩餘食糧物資 購買에 對해 United 購買可能

마. 支援分野

開發援助의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經濟開發 및 福祉向上에 寄與할 수 있도록 支援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目標을 爲해 開途國의 經濟發展이 發展의 다음 段階로 圓滑히 移行될 수 있도록 經濟發展 段階別 接近方法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開途國의 發展段階 및 程度를 考慮하여 適切한 協力對象事業, 對象技術 및 協力形態를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해서는 優先 開途國 發展段階別 分類基準을 明確히 하여야 하는데, 開途國 經濟의 發展段階에 따른 産業構造, 貿易構造, 勞動市場, 技術水準을 勘案한 分類方法을 適用토록하고 特히 各 發展段階別 主要 經濟發展 目標을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特히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境遇 開途國의 經濟開發이나 福祉向上과 無關한 分野에 消費財 爲主로 開發援助가 執行되고 援助의 受惠도 特定部類에 限定되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11) 日本 ODA 中期目標 概要

(單位: 億\$)

區分	第1次	第2次	第3次	第4次	第5次
計劃樹立 年度	'78.7.12	'81.1.23	'85.9.18	'88.6.14	'93.6 閣議決定
主要内容	'77年 ODA實績 14.2億\$ 을 '80년까지 2倍로 增加	'80年代 前半 5箇年間 ODA實績總額을 '70年代 後半 5箇年間 總額의 2 倍로 增加(ODA關稅豫算 을 2倍로 增加)	'86~'92年間の 實績總額 을 400億\$ 以上으로 함. ('92年 ODA實績을 '86年 實績의 2倍로 增加)	'88~'92年間の ODA實績 總額을 過去 5箇年('83 ~'87)의 2倍以上인 500 億\$ 以上으로 함	'93~'97年間 4次中期目標 보다 40~50% 增加된 700~750億\$ 計劃
達成狀況	'77 ~ '80 14.2→(目標)28.4 (實績)33.5 (達成率)116%	'76~'80 '81~'85 106.6→(目標)213.6 (實績)188.7 (達成率)84.6% (인貨基準時 ODA豫算 : 億엔) '76~'80 '81~'85 12,144→(目標)24,888 (實績)24,307 (達成率)98%	'86~'92 (目標)400 '85 380→(目標)76.0 (實績)'87: 74.5 '86年 가을以後 인貨에 따른 餘裕있는 目標達 成을 爲해 87.5月의 緊急 經濟對象에서 目標年 度를 2年앞당김	'83~'87 '88~'92 250→(目標)500 '83 '88 37.5~'88年 91.3 89年 89.7 90年 92.2 81年 110.4 92年 113.3 4次 目標을 達成함	

앞으로는 農水産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等 全産業에 걸쳐 各發展段階別로 受援國의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適格分野를 選定支援함으로써 援助의 惠澤이 國民全體에 擴散됨은 勿論 우리나라의 國家的經濟的利益이 隋伴될 수 있는 互惠的分野에 集中支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立場에서 볼때 制限된 資本, 技術力을 考慮하여 우리가 比較優位를 가진 國際競爭力이있는 産業과 産業構造調整에 連繫되는 分野, 資源의 安定的 供給等 援助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事業을 發掘·支援할 必要가 있다.

開發援助의 分野別 配分政策을 爲해 가장 알려진 方法論의 하나가 經濟發展段階別 接近方法으로 同 方法을 援用한 日本 經濟企劃廳報告書(1988)는 開途國을 4段階發展過程으로 區分하여 이에 알맞은 對象産業·對象技術·協力形態를 提示하고 있다.

우리나라 境遇는 羅元燦(1989)이 最初로 이같은 方法을 試圖한 바 있는데 그는 開途國을 3段階 發展過程으로 區分하고 段階別 對象産業과 對象技術을 提示하였다.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1991年末 1992年度의 豫算配分計劃을 樹立하면서 國家選定에있어 重點國家方式을 導入한 外에도 支援對象分野의 基準을 『1992年度 機資材等 供與事業 施行指針』에 마련하여 90餘個國의 公館에 示達한 바 있다.

同 基準에 依하면 機資材供與는 BHN과 經濟開發支援을 爲한 部門으로 分類하여 5個 圈域別로 7個分野 14個의 重點支援品目에서 支援토록 하였고, 프로젝트型事業은 受援國의 經濟·社會의 均衡 있는 發展과 國民福祉向上에 直結될 수 있는 6個分野 29個 對象 事業을 提示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巨視的方法에 依한 支援分野의 基準設定은 個別國家에 對한 實際 援助供與에 있어 均一的으로 適用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갖고있으며, 따라서 一般原則의 提示로서 意味를 갖게되는것이 現實이므로 國別研究에 依해 이를 補完토록해야 될 것이다.

(圖 V-4) 開發段階別 協力對象分野 및 協力形態

區 分	1 段 階	2 段 階	3 段 階	4 段 階
對象産業	○農林水産業 - 食糧自給 및 輸出作物 増産 - 農産物 加工 및 流通 - 金融制度의 擴充 ○鑛工業 - 在來産業 ○基礎 인프라스트락처 - 農村道路, 基幹道路, 鐵道・港灣의 整備 - 都市上下水道의 擴充	○農林水産業 - 食糧自給 및 輸出作物의 増産 - 農産物加工 및 流通 ○鑛工業 - 在來産業 ○基礎 인프라스트락처 - 農村道路, 基幹道路, 鐵道・港灣의 整備 - 都市上下水道의 擴充	○農林水産業 - 生産作物의 多角化 - 農産物의 加工, 流通 ○鑛工業 - 非耐久財을 中心으로 한 輸出代替産業(第1次 輸出代替) ○中立技術의 移轉	○農林水産物 - 生産作物의 多角化 ○鑛工業 - 鑛工業等 重化學工業製品을 中心으로 한 輸出代替의産業(第2次 輸入代替) - 機械類等 重化學工業製品을 中心으로 한 輸出代替의産業(第2次 輸出代替) - 中小企業 育成
對象技術	○一般 基礎育成等 受容이 容易한 應用技術의 移轉 ○研究補給基盤의 擴充	○一般 基礎育成等 受容이 容易한 應用技術의 移轉 ○研究補給基盤의 擴充	○研究補給體制的 強化 ○中立技術의 移轉	○專門技術分野의 交流
協力形態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技術協力 프로젝트等 ○無償資金協力等 ○ODA協力中心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技術協力 프로젝트等 ○無償資金協力과 有償資金協力 並行(無償 > 有償) ○ODA와 民間協力並行 (ODA > 民間協力)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技術協力 프로젝트等 ○有償資金과 無償資金 協力並行(民間協力 > ODA)	○共同研究, 프로그램, 專門家の 派遣 및 招請 ○有償資金協力 中心

資料：日本經濟企劃廳 報告書(1988)

第 2 節 重點支援國家의 選定

1.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對象國家를 地域別·國家別로 選定하고 이를 差等化하여 支援金額을 配分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援助의 歷史가 오래된 先進國에서조차 國別選定基準에 對한 一般화된 理論的基準이나 模型을 찾아보기 힘들다.

開發援助의 圖域別 또는 國家別 配分에 對한 캐나다의 援助戰略(1988)을 보면 ①向後 5年間に 二國間援助의 65%를 英聯邦 및 佛語圈 開途國에, ②二國間援助의 75%는 低所得 및 小島嶼開途國에, ③二國間援助의 75%는 30個 重點支援 對象國 및 地域그룹에, ④向後 5年間に 二國間援助의 45%는 아프리카, 39%는 아시아, 16%는 中南美에 支援토록하고 있다.

특히 個別國家의 支援을 爲해 圖域別로 援助支援適格國(Country Eligibility List)을 3個그룹으로 分類하여 其中 第 1部類인 重點 支援對象 30個國(아프리카 및 中東 14國, 中南美 7國, 아세아 9國)을 國家프로그램計劃에 依해 支援되는 國家로 設定하고 5個年에 걸친 支援計劃을 樹立하여 二國間 援助額의 75%를 配分하고 있다.

第 2部類는 經濟的, 政治的側面에서 캐나다와의 關係가 相當한 程度로 認定되나 國家프로그램이 適切치 않은 國家이고 第 3部類는 援助프로그램이 豫想되지 않거나 兩者間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없는 國家로서 이들 國家와는 캐나다의 機關이나 NGO等を 통한 援助단을 實施하고 있다.

重點支援對象國의 選定基準으로 援助의 必要性, 開發에 對한 政治的 意志, 援助의 受容能力, 經濟開發을 爲한 政策努力, 受援實績, 캐나다의 政治的 利益과 通商利益等を 들고있고, 援助水準을 決定하는 基準으로는 受援國의 需要, 援助管理努力과 能力, 人權記錄, 國民 參與度, 社會·經濟政策의 質 및 政策改善努力, 캐나다와 受惠國과의 政治·經濟關係等を 들고 있다.

〈表 V-2〉

캐나다의 國別援助配分

圈域別	中南美	佛語圈 아프리카	英語圈 아프리카	아 시 아
1部類	콜롬비아等 7國	카메룬等 7國	이집트等 7國	방글라데시等 9國
2部類	바베이도스等 11國 및 地域機關	알제리아等 5國 및 地域機關	보츠와나等 7國	말레이시아, ASEAN機關, 地域機關
3部類	알제틴等 12國	베냉等 13國	앙골라等 13國 및 地域機關	부탄等 7國 및 南太平洋 島嶼8國

資料: Canada's ODA Program : An Overview (1989)

濠洲는 地理的으로 가까운 隣接國家를 中心으로하는 重點支援戰略을 推進하는等 援助對象國家를 4個그룹으로 分類하고 第 1部類인 PNG, 南太平洋 및 印度洋國家들에는 一般無償援助와 모든分野의 프로젝트 및 細部的인 方式에依據한 國家프로그램을 提供하고 第 2部類(東南亞 및 南아시아小國), 第 3部類(中國 및 南아시아大國), 第 4部類(아프리카, 中東, 中南美, 東歐) 國家에 對해서는 一般無償 援助는 모두 供與對象이 되나 프로젝트와 國家프로그램 援助提供에는 差等を 두고 있다.

援助配分實績을 보면 1986-1990年間 2國間 援助額 4,409百萬\$ (濠洲\$)中 第 1部類 國家에 49.1%(이中 PNG는 36.8%), 第2部類 國家에 28.6%, 第3部類 國家에 11.5%, 第4部類 國家에 10.8%를 配分하였다.

二國間援助를 提供하는 基準으로는 人道主義의 配慮, 受援國의 需要, 濠洲의 援助提供能力, 地域的.傳統的 紐帶, 濠洲의 戰略的 經濟的 理解, 受援國의 吸收能力等の 要素가 考慮된다.

英國은 國別配分基準으로 國民所得 700\$ 内外의 最貧國에 二國間 援助의 80%를 配慮함과 同時에 特히 英聯邦國家에 二國間援助의 75%를 供與하고 그 외에 受援國의 吸收能力, 適切한 經濟社會政策追求努力, 人權과 遵法履行等を 重視하고 있으며, 開發援助의 目的은 開發國의 經濟改革增進, 善한 政府의 發

展, 貧困輕減, 人間開發, 環境保全, 經濟開發에 있어 民間部門의 發展, 國際的災難救助의 役割增大等에 높은 優先順位를 두고 援助事業을 推進하고있다.

主要國家가 供與한 上位 20國까지의 二國間援助의 集中度를 보면 DAC國家全體로는 上位 5個國에 29.7%, 上位 10個國에 43.2%, 上位 20個國에 59.7%를 供與하였는데 이를 國別로 보면 美國은 上位 5個國에 63.1%, 上位 10個國에 73.7%, 上位 20個國에 83.9%를, 日本은 上位 5個國에 47.2%, 上位 10個國에 66.0%, 上位 20個國에 80.9%를, 프랑스는 上位 5個國에 30.1%, 上位 10個國에 45.0%, 上位 20個國에 66.4%를 供與하고 있다.

우리나라 二國間 開發援助의 集中度는 統計資料의 未備로(金額基準으로 過去實績에 對한 總體的 把握이 不可함) 動態的 把握이 不可能함으로 最近 年度인 1992年의 10大 重點供與國을 中心으로 보면 1位는 印尼로 總供與額 35,356千\$中 24.6%인 8,681千\$을 供與하였으며 2位는 나이지리아 9.6%, 3位는 가나 7.7%, 4位는 스리랑카 6.8%, 5位는 필리핀 6.4%, 6位는 泰國 2.1%, 7位는 PNG 2.0%, 8位는 파키스탄 1.6%, 9位는 이디오피아 1.3%, 10位는 몽골 1.1%의 順으로 總 10個國中 아세아 地域이 7個國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 地域의 3個國이다.

二國間 援助의 上位 10個國 集中度는 63.0%로서 DAC 全體의 43.2% 보다는 높고 先進國의 50%~60% 水準과 類似하나 上位 5個國의 集中度는 55.1%로 美國, 日本의 47~63% 水準과 類似하며 DAC 全體의 29.7%나 英國, 프랑스 등의 30% 水準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上位 20個國 集中度는 70.9%로서 DAC 全體의 59.7%보다는 높으나 美·日等 先進國의 80% 水準보다는 낮다.

이를 國家別로 보면 上位 1位國인 印尼의 集中度가 24.6%로 1國 集中度가 가장 높은 美國의 43.1%보다는 낮으나, DAC 全體의 14.5%나 캐나다等先進國의 10%內外 水準보다 倍以上임을 알 수 있다.

上位 20個國의 集中度를 協力形態別로 보면 研修生招請은 79.6%, 專門家派遣은 86.5%이나 醫療團·跆拳道·青年奉仕團派遣, 開發調査, 프로젝트 및 EDCF 등은 各各 100%로 매우 높고 機資材供與은 41.0%에 不過하다. 開發調

〈表 V-3〉

濠洲의 國別 援助配分

(單位：濠洲百萬\$)

圖域別 支援額 및 方式		支 援 額 (1986~1990)		援助方式		
		金額 (百萬\$)	%	一般 援助	프로젝트	國 家 프로그램
1部類	PNG, 南太平洋 (15國) 및 印度洋 (4國) 島嶼國家	2,163.6	49.1	該當	모든分野 該當	細部的인 方式採擇
2部類	東南亞 및 南아시아 小國(10國)	1,259.8	28.6	該當	優先順位 分野만 該當	細部的인 方式採擇
3部類	中國 및 南아시아大國 (11國)	507.5	11.5	該當	特定分野만 該當	廣範圍한 方式採擇
4部類	其他 開途國 (아프리카 41國, 中東 14國, 中南美·東歐 33國)	478.2	10.8	該當	除外	除外
計	130國	4,409.1	100.0			

資料：AIDAB의 Details of Australian ODA Expenditure(1991) 및 Jackson Report (1984)
에서 整理

註：1) 國家數는 1986-1990年間の 純計임.

2) 一般援助는 技術協力, 研究調査, 多者間協力機構를 통한 援助, 食糧援助, 災難救護, 開發輸
入金融, 奉仕活動支援等을 包含

查, 프로젝트, EDCF 事業은 이들 事業이 프로젝트와 關聯된 協力形態라는 特
殊性和 初創期的 적은 豫算을 數個國에 限定하여 配分할 수 밖에 없는 點, 그
리고 이들 事業이 經濟的 目的과 크게 關聯되어 있다는 點等에서 數個國에의
集中化 現象은 不可避한 것이며 이같은 集中化 現象은 向後 豫算의 增大와 供
與國의 多邊化를 통해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展, 貧困輕減, 人間開發, 環境保全, 經濟開發에 있어 民間部門의 發展, 國際的災難救助의 役割增大等에 높은 優先順位를 두고 援助事業을 推進하고있다.

主要國家가 供與한 上位 20國까지의 二國間援助의 集中度를 보면 DAC國家全體로는 上位 5個國에 29.7%, 上位 10個國에 43.2%, 上位 20個國에 59.7%를 供與하였는데 이를 國別로 보면 美國은 上位 5個國에 63.1%, 上位 10個國에 73.7%, 上位 20個國에 83.9%를, 日本은 上位 5個國에 47.2%, 上位 10個國에 66.0%, 上位 20個國에 80.9%를, 프랑스는 上位 5個國에 30.1%, 上位 10個國에 45.0%, 上位 20個國에 66.4%를 供與하고 있다.

우리나라 二國間 開發援助의 集中度는 統計資料의 未備로(金額基準으로 過去實績에 對한 總體的 把握이 不可함) 動態的 把握이 不可能함으로 最近 年度인 1992年의 10大 重點供與國을 中心으로 보면 1位는 印尼로 總供與額 35,356千\$中 24.6%인 8,681千\$을 供與하였으며 2位는 나이지리아 9.6%, 3位는 가나 7.7%, 4位는 스리랑카 6.8%, 5位는 필리핀 6.4%, 6位는 泰國 2.1%, 7位는 PNG 2.0%, 8位는 파키스탄 1.6%, 9位는 이디오피아 1.3%, 10位는 몽골 1.1%의 順으로 總 10個國中 아세아 地域이 7個國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 地域의 3個國이다.

二國間 援助의 上位 10個國 集中度는 63.0%로서 DAC 全體의 43.2% 보다는 높고 先進國의 50%~60% 水準과 類似하나 上位 5個國의 集中度는 55.1%로 美國, 日本의 47~63% 水準과 類似하며 DAC 全體의 29.7%나 英國, 프랑스 등의 30% 水準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上位 20個國 集中度는 70.9%로서 DAC 全體의 59.7%보다는 높으나 美·日等 先進國의 80% 水準보다는 낮다.

이를 國家別로 보면 上位 1位國인 印尼의 集中度가 24.6%로 1國 集中度가 가장 높은 美國의 43.1%보다는 낮으나, DAC 全體의 14.5%나 캐나다等先進國의 10%內外 水準보다 倍以上임을 알 수 있다.

上位 20個國의 集中度를 協力形態別로 보면 研修生招請은 79.6%, 專門家派遣은 86.5%이나 醫療團·胎券道·青年奉仕團派遣, 開發調査, 프로젝트 및 EDCF 등은 各各 100%로 매우 높고 機資材供與은 41.0%에 不過하다. 開發調

〈表 V-3〉 濠洲의 國別 援助配分

(單位: 濠洲百萬\$)

支援額 및 方式 區域別		支 援 額 (1986~1990)		援助方式		
		金額 (百萬\$)	%	一般 援助	프로젝트	國 家 프로그램
1部類	PNG, 南太平洋 (15國) 및 印度洋 (4國) 島嶼國家	2,163.6	49.1	該當	모든分野 該當	細部的인 方式採擇
2部類	東南亞 및 南아시아 小國(10國)	1,259.8	28.6	該當	優先順位 分野만 該當	細部的인 方式採擇
3部類	中國 및 南아시아大國 (11國)	507.5	11.5	該當	特定分野만 該當	廣範圍한 方式採擇
4部類	其他 開途國 (아프리카 41國, 中東 14國, 中南美·東歐 33國)	478.2	10.8	該當	除外	除外
計	130國	4,409.1	100.0			

資料: AIDAB의 Details of Australian ODA Expenditure(1991) 및 Jackson Report (1984)
에서 整理

註: 1) 國家數는 1986-1990年間の 純計임.

2) 一般援助는 技術協力, 研究調査, 多者間協力機構를 통한 援助, 食糧援助, 災難救護, 開發輸
入金融, 奉仕活動支援等を 包含

查, 프로젝트, EDCF 事業은 이들 事業이 프로젝트와 關聯된 協力形態라는 特
殊性和 初創期的 적은 豫算을 數個國에 限定하여 配分할 수 밖에 없는 點, 그
리고 이들 事業이 經濟的 目的과 크게 關聯되어 진다는 點等에서 數個國에의
集中化 現象은 不可避한 것이며 이같은 集中化 現象은 向後 豫算의 増大와 供
與國의 多邊化를 통해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10大 供與國이 協力形態中 國當 支援規模가 가장 큰 有償協力(EDCF) 供與 如何에 따라 크게 左右되고 있는데 受援 1位國인 印尼의 境遇 EDCF를 比較的 多額으로 支援함으로써 同國에 對한 集中度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一國에의 지나친 偏重은 無償協力手段과의 有機的 連繫로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다.

(表 V-4) 二國間 援助의 國家別 集中度 (1990/1991)
(單位: 援助額 集中度, %)

國別順位		1位~5位	6位~10位	11位~15位	16位~20位
DAC 全體	計	29.7	13.5	9.6	6.9
	累計	29.7	43.2	52.8	59.7
美 國	計	63.1	10.6	6.1	4.1
	累計	63.1	73.7	79.8	83.9
日 本	計	47.2	18.8	9.6	5.3
	累計	47.2	66.0	75.6	80.9
카 나 다	計	28.2	17.3	12.1	10.3
	累計	28.2	45.5	57.6	67.9
英 國	計	31.8	17.7	14.3	10.5
	累計	31.8	49.5	63.8	73.4
프 랑 스	計	30.1	14.9	12.0	9.4
	累計	30.1	45.0	57.0	66.4
獨 逸	計	32.2	19.8	10.7	3.8
	累計	32.2	52.0	62.7	66.5
스 웨 덴	計	46.6	19.3	10.7	6.0
	累計	46.6	65.9	76.6	82.6
네 덜 란 드	計	36.5	15.1	10.2	8.5
	累計	36.5	51.6	61.8	70.3

資料: OECD

특히 印尼는 이집트에 이어 最近 19個國家 및 國際機構들로 부터 年間 約 50億\$이라는 莫大한 ODA를 받는 世界 第2位の 受援國(DAC 二國間 援助의 5%)으로 浮上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援助目的을 勸案 效果的으로 對處해야

〈表 V-5〉 二國間援助의 協力

國別 順位	研修生		專門家		醫療團		跆拳道		奉仕團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1	中國	206	泰國	98	니제르	107	이집트	57	泰國	253
2	CIS	154	필리핀	61	西사모아	67	가나	50	필리핀	190
3	泰國	133	中國	22	스와질랜드	64	수단	37	인니	190
4	필리핀	131	말레이아	21	모리타니아	62	튀니지	35	스리랑카	174
5	베트남	113	볼리비아	20	레소토	58	니제르	30	PNG	174
6	말레이아	96	에쿠아돌	15	카메룬	58	中央아(共)	30	튀지	174
7	몽골	84	코스타리카	11	이디오피아	56	자이르	30	네팔	126
8	폴란드	75	튀니지	10	코트디브와르	55	세네갈	29	몽골	111
9	인니	74	헝가리	9	中央아(共)	52	요르단	28	—	—
10	印度	50	멕시코	8	케냐	39	오만	25	—	—
小計 (A)	10	1,116	10	275	10	618	10	351	8	1,392

形態別 集中度(1992)

(單位：千\$,%)

機 資 材		開發調査		프로젝트		無償協力計		有償協力(EDCF)		合 計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이디오피아	387	인 니	1,013	인 니	260	인 니	1,584	인 니	7,097	인 니	8,681
탄자니아	353	필 리 핀	895	도미니카 (共)	200	필 리 핀	1,473	나 이 지 리 아	3,355	나 이 지 리 아	3,379
베 넵	284	파키스탄	426	페 루	195	테 국	745	가 나	2,581	가 나	2,726
이집트	243	P N G	380	콜롬비아	145	P N G	693	스리랑카	2,065	스리랑카	2,388
모리타 니 아	240	태 국	52	자마йка	95	파키스탄	574	필 리 핀	774	필 리 핀	2,247
파테말라	217	유 고	39	泰 國	84	이 디 오 피 아	443	—	—	태 국	745
파라과이	213	베 트 남	19	룩 아 일 랜드	69	몽 골	392	—	—	P N G	693
아프가 니트탄	202	네 팔	19	수 단	24	탄자니아	353	—	—	파키스탄	574
케냐	199	—	—	네 팔	18	베 트 남	329	—	—	이 디 오 피 아	443
부룬디	198	—	—	—	—	스리랑카	323	—	—	몽 골	392
10	2,536	8	2,843	9	1,090	10	6,909	5	15,872	10	22,268

國別順位		研 修 生		專 門 家		醫 療 團		跆拳道		奉 仕 團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11		파키스탄	49	페 루	8	우 간 다	13	나 이 지 아	24		
12		헝 가 리	46	예 멘	8	나미비아	10	태 국	22		
13		스리랑카	42	인 니	8	잠 비 아	5	리 비 아	21		
14		루마니아	40	스리랑카	8			미 얀 마	20		
15		불가리아	40	모 리 타 니 아	7			인 니	19		
16		멕시코	37	수 단	7			부 루 키 소 나 파 소	9		
17		체 코	34	파라과이	6			네 팔	7		
18		콜롬비아	31	오 만	6						
19		과테말라	30	세 네 갈	6						
20		나미비아	30	카 타 르	6						
小 計 (B)		10	379	10	70	3	28	7	122		
計 (A+B=C)		20	1,495	20	345	13	646	17	473	8	1,392
1992 支 援 總 計 (D)		87	1,877	31	399	13	646	17	473	8	1,392
集 中 度 (%)	A/D	11.5	59.5	32.3	68.9	76.9	95.7	58.8	74.2	100.0	100.0
	C/D	23.0	79.6	64.5	8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單位:千\$, %)

機 資 材		開發調査		프로젝트		無償協力 計		有償協力(EDCF)		合 計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國 名	金 額
몽 골	197					모 리 타 니 아	309			탄자니아	353
베트남	197					이집트	300			베트남	329
비동맹아프 리카가금	197					베 넝	284			모 리 타 니 아	309
필리핀	196					코트디 브와르	251			이집트	300
코트디 브와르	196					네 팔	249			베 넝	284
부 탄	195					과테말라	247			코트디 브와르	251
방글라 데 시	194					취 지	243			네 팔	249
자이르	190					케 나	238			과테말라	247
앙골라	169					니제르	235			취 지	243
엘살바돌	149					중 국	228			케 나	238
10	1,880					10	2,584			10	2,803
20	4,416	8	2,843	9	1,090	20	9,493	5	15,872	20	25,071
105	10,764	8	2,843	9	1,090	132	19,484	5	15,872	132	35,356
9.5	23.6	100.0	100.0	100.0	100.0	7.6	35.5	100.0	100.0	7.6	63.0
19.0	41.0	100.0	100.0	100.0	100.0	15.2	48.7	100.0	100.0	15.2	70.9

〈表 V-6〉

韓國의 國家別 援助集中度

(單位: 援助額 集中度, %)

國別順位	1979		1985		1990		1991		1992	
	計	累計	計	累計	計	累計	計	累計	計	累計
1位~5位	60.4	60.4	21.8	21.8	19.1	19.1	21.5	21.5	19.0	19.0
6位~10位	14.2	74.6	14.0	35.8	11.1	30.2	8.4	29.9	9.7	28.7
11位~15位	11.5	86.1	12.0	47.8	8.9	39.1	8.0	37.9	7.8	36.5
16位~20位	9.1	95.2	10.3	58.1	7.6	46.7	7.6	45.5	7.1	43.6

註: 機資材供與 및 프로젝트型事業 基準

될 것이다. 과거 프로젝트型事業은 機資材供與事業의 一環으로 實施되어 왔으며 事業實績도 微微하므로 兩者를 合算한 集中度를 보면(表 V-6) 對象國 數가 20國以上이 되는 最初年度인 1979년에는 5位까지의 集中度가 60.4%로 매우 높은데 이는 同 年度의 總供與額이 3,100千\$에 不過하나 세네갈大統領 訪韓 및 經濟技術 協定 締結等에 따른 後續措置로 세네갈에 1,270千\$을 集中的으로 供與한 때문이다.

年度別推移를 보면 上位 20國까지의 集中度가 初期의 60% 水準에서 1985年 58.1%, 1990年 46.7%, 1991年 45.5%, 1992年 43.6%로 繼續 減少되어 集中度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7~1992年間の 受援國家數는 14國에서 109國으로 7.8배가 增加 되었으나 供與額은 1,103千\$에서 11,854千\$로 10.7배가 되어 供與額의 增加가 受援國家數 增加의 約 1.4배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上位 20國까지의 集中度가 下向趨勢를 보인것은 援助配分の 基準으로 外交의 觀點에서 每年 많은 受援國에 거의 均一하게 配分하는 政策을 固守해 온 때문이다.

특히 最近年度의 上位集中度가 크게 減少되고 있는데 1991年의 45.5%比率은 年度中 몽골에 對한 特別支援 1,483千\$을 考慮하지 않을 境遇 더욱 減少되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最近年度의 減少趨勢는 最近 5年(1988~1992)동안 受援對象國은 90國內外로 一定하나 豫算은 每年 11,000千\$ 內外로 거의 增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換差要因 등이 主要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1992豫算配分計劃에서는 처음으로 重點 및 準重點國家를 選定하여 豫算을 差等配分하는 外에도 프로젝트事業으로 수단의 職業訓練院 建設費 580千\$을 計上하여 上位 20國의 集中度는 43.7%로 前年에 비해 多少 減少되는 것으로 計劃되었으나 1992年中 同事業의 推進未備로 豫算執行이 保留되어 集中度는 43.6%로 減少되었다. 1992年の 集中度가 減少되는 것은 前述한 豫算制約要因 以外에도 重點 및 準重點國에 對한 配分額의 差가 그리 크지 않은 때문으로 判斷되는데 上位集中度의 増大를 爲해서는 豫算의 增額은 勿論 配分基準에 對한 研究檢討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2. 政策方向

先進國에서 開發援助對象國의 決定은 受援國의 援助需要(Recipients Need)와 供與國의 主觀의이거나 政治的인 判斷에 依한 援助目的(이른바 Donor's Interest)¹²⁾ 및 供與國의 能力(Capacity)이 合一되는 境遇에 이루어져 온 것으로서 이러한 過程은 적어도 이들 國家의 援助의 出發時期에서 부터 오랜 期間에 걸쳐 쌓아진 結果로 把握될 수 있으므로 어떤 時點에서 一定한 基準에 依해 對象國을 크게 加減하는 政策轉換은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國家選定基準을 어떤 圖式的基準에 依해 定한다는 것은 별로 有用하지 못할 것이라는 見解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基準도 없이 그때 그때의 必要性에

12) ODA의 決定에 對한 研究로서 Louis M. Imbeau의 實證의 分析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는데 그에 依하면 援助의 決定은 供與國家의 官僚나 政治人等 集團이 諸般制約要因을 勘案하여 合理的方案(Bounded Rational Perspective)을 模索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援助水準을 決定하는 要因으로 手段的 (Instrumental), 人道主義的 (Humanitarian), 理念的(Ideological) 및 漸增主義的(Incremental) 側面을 들고 있다.

따라 주먹구구式으로 援助供與基準을 決定하는 일은 避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開發援助對象國의 選定에 關한 研究는 〈圖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件의 研究와(沈義燮 包含時 7件) 韓國國際協力團의 1992年 機資材供與 對象國 選定基準을 들 수 있다.

이들 研究中 選定基準의 提示와 함께 各 變數에 加重值를 賦與하여 對象國家를 選定한 것은 4件(韓國國際協力團 包含)으로 이러한 定量的 方法이 國家選定에 合理性과 客觀性을 높이는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生覺되나 政策樹立에 아무런 濾過없이 實際로 適用하기에는 많은 制約이 따름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羅元燦, 宋河律의 研究는 定量的 方法에 依해 國家를 選定한 最初의 試圖로 評價되는데 成長潛在力等 經濟的 變數를 使用하여 最貧國과 低,中所得國의 順位를 提示하고 最貧國에서 5國과 低,中所得國에서 15國을 選定 20個國을 重點國家로 選定함으로써 BHN次元의 援助 目的도 함께 配慮하고 있다.

金學洙 研究는 變數의 基準年度에 動態性을 考慮하고 輸出,入과 海外投資等 經濟的 目的에 重點을 두었고, 가장 最近의 尹海鎮 研究는 從來 提示된 方法論보다 多樣한 接近을 試圖하였는데 對象 國家選定基準을 모든 國家에 一律적으로 適用되는 一般配分基準과 人道主義的 次元의 BHN基準 및 特別配分基準으로 分類하고 開發 援助의 目的인 政治,外交의 側面, 經濟的 側面 및 人道主義的 側面에서 考慮될 수 있는 變數를 廣範圍하게 利用하는等 더욱 進展된 研究로 評價된다.

韓國國際協力團은 1992年의 機資材 國別配分計劃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型 事業 實施國家와 重點 및 準重點協力對象國等으로 區分하고, 이를 圈域別로 國家를 選定하여 財源을 差等配分하는 政策轉換이 試圖되었는데 이와같은 方法이 開發援助政策 部署에서 最初로 試圖되었다는데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이들 4가지 研究를 基準으로 各已 選定된 國家中 上位順位 20個國家를 基準時 對象國家에 包含되는 國家數는 總 47個國이고 其中 4人(또는 機關)이 共通으로 選定한 國家는 아세아의 PNG,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의 카메룬等 3個國

〈表 V-7〉 1992 機資材 供與事業의 國別配分計劃

(單位：個國，%)

區 分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中東	其他	計
A. 프로젝트型事業 實施國	3	2	4	1		10(11.1)〈20.0〉
B. 重點協力 對象國	3	4	2	1	2	12(13.3)〈16.9〉
C. 準重點協力 對象國	4	10	6	2		22(24.4)〈22.0〉
D. 人道的次元 支援對象國	2	8	4	1	1	16(17.8)〈11.2〉
E. 移住 및 外交 支援 對象國	1	5	2國 2協力圈	1	1機構	9國 1機構 2協力圈(21.1) (8.5)
F. 既 支援約束 및 繼續事業國	3	2	1	1	4機構	7國 4機構 (12.2) 〈21.4〉
計	16 (17.8) 〈20.7〉	31 (34.9) 〈32.2〉	19國 2協力圈 (31.1) 〈25.6〉	7 (7.8) 〈9.6〉	3國 5機構 (8.9) 〈11.9〉	76國 5機構 2協力圈 (100.0)

註：1) 財源配分基準：A(20萬\$)，B(14萬\$)，C(10萬\$)，D(7萬\$)，E(7萬\$)，F(7~30萬\$)

2) ()內 構成比는 76國 + 2協力圈(알제틴, 칠레外 카리브沿岸 7國의 合計)의 9國 + 5個機構를 合計한 85國 5個機構를 母數로 함.

3) 〈 〉表는 金額基準構成比

에 不過하며 3人이 共通으로 選定한 國家는 아세아의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中東 및 其他의 예멘, 이집트等 7個國, 2人 共通選定 國家는 베트남等 10個國家이고 나머지 27個國家는 全히 重複이 안된 1人選定

<圖 V-5>

國家選定基準의 比較

서울國際컨설팅 Co. (1989. 1)	羅元燦·宋河律 (1989. 11)	金學洙 (1990.10)	李善煥·孫正植 (1991. 8)
<우리나라와의 相互 依存關係에 依한 基準> 1. 우리보다 經濟水 準이 낮은 國家 2. 地理的, 歷史的 配 慮 3. 對外政策과 符合 性 4. 經濟的인 相互 補 完性 <對象國 評價에 關 한 基準> 5. 成長 潛在力 6. 外債償還 7. 外交效果 期待되 는 未修交國	<成長潛在力> 1. 經濟成長率 2. 政治的 安定度 3. 產業成熟度 <自助努力> 4. 經濟成長率 5. 國內 總投資 增 加率 6. 總輸出增加率 <外資所要額> 7. 財政收支/GDP 8. 經常收支/GDP <外債償還能力> 9. 外債殘額(GDP) 10. 外債元利金 償還 比率 <우리나라의 進出擴 大 可能性> 11. 直接投資環境 12. 天然資源 賦存度 13. 總輸入規模	1. 輸出 2. 輸入 3. 海外 投資	<定量的 要因> 1. 國民總生產 2. 雇傭 3. 外債償還比率 4. 貧困程度 5. 援助要請規模 <定性的 要因> 6. 우리나라의 長短 期 國益 7. 受援國의 經濟狀 況과 必要 8. 援助管理能力 9. 經濟政策의 質 또 는 政策改善 努力 10. 他援助에 依한 資 金調達 可能性

資料: 서울國際컨설팅 Co.,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效率的 選定方案, 1989. 1.

羅元燦·宋河律,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開發援助政策, 1989. 11.

金學洙,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經濟協力方案, 1990. 10.

李善煥·孫正植,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方向, 1991. 8.

韓國國際協力團, 開發協力部, 1991. 12.

黃仁政, 韓國型 對開途國 經濟協力方案: 概念과 政策方向, 1992. 9.

尹海鎮, 우리나라 政府開發援助의 國別差別化 政策方案, 1992. 11.

註: 順序는 研究發表日字 基準임.

1992 豫算 (1991. 12)	黃仁政 (1992. 9)	尹海鎮 (1992. 11)
1. 經濟的 側面 (成長, 交易, 資源) 2. 外交·政治的 側 面 3. 人道主義的 側面 4. 協力形態別 配慮	<經濟的 要因> - 成長潛在力 1. 經濟成長率 2. 投資率 3. 製造業比重 4. 輸出增加率 - 外資所要額 5. 財政狀態 6. 經常收支 - 外債償還能力 7. 外債比率 8. 元利金 償還負擔率 - 우리나라 進出可能性 9. 輸入規模 10. 資源保有 11. 投資環境 <12. 受援國의 自助 努力> <13. 所得그를別 配慮> <地域別 配慮> 14. 아시아 重點, 其他 地域은 政治, 經濟的 據 點確保 考慮 <15. 協力形態別 配慮>	○ 一般配分基準 <交流潛在性> 1. 交易量/GNP 2. 交流便利性(距離) <自救努力度> 3. 經濟成長率 4. 產業成長率 5. 投資增加率 <經濟性> 6. 市場性(人口) 7. 市場性(1人當 GNP) 8. 市場性(面積) 9. 市場性(GNP) 10. 交流性(我國과 貿易 /總交易量) 11. 交流性(我國과 投資) 12. 交流性(我國과 建設) <資源配分 效率性> 13. 軍人數/人口 14. 國防費/GNP <援助受容性> 15. 被援助額/人口 16. 被援助額/GNP <基本生活水準> 17. 教育達成度 18. 平均壽命 19. 라디오 補給率 20. 1人當 實質所得 ○ 特別配分 基準 1. 國際政勢變化 2. 歷史·文化的 特殊한 關係 3. 其他特定要因 ○ BHN基準 1. 基本生活水準(4個) 2. 援助依存度

<圖 V-6>

重點協力 上位對象 20個 國家 選定比較

	羅元燦·宋河律	金學洙	'92豫算	尹海鎮
아 세 아	泰國 印度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PNG (7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泰國, 印度, 필리핀, PNG 파키스탄, 브르나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10國)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PNG 미얀마 (6國)	인도네시아, 泰國,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PNG,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리랑카 (13國)
中 南 美	코스타리카 (1國)	파나마 칠레 과테말라 에쿠아돌 (4國)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共) 과테말라 에쿠아돌 볼리비아 (6國)	도미니카(共) (1國)
아프리카	보츠와나 소말리아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카메룬 모리셔스 짐바브웨이 (8國)	라이베리아 카메룬 (2國)	코트디보와르 자이레 앙골라 세네갈 카메룬 케냐 (6國)	나이지리아 말리 라이베리아 자이레 카메룬 (5國)
中東·其他	예멘 터키 이집트 모로코 (4國)	예멘 오만 리비아 이집트 (4國)	이집트 모리타니아 (2國)	예멘 (1國)
計	20國	20國	20國	20國

註: 1) 다음 資料에서 選定된 協力對象國家中 上位 20個 國家를 基準으로 作成함.

羅元燦·宋河律, 前掲書,

金學洙, 前掲書,

韓國國際協力團, 開發協力部(機資材供與의 境遇)

尹海鎮, 前掲書, (一般配分基準의 境遇)

2) 서울國際컨설팅 Co와 沈義變의 研究에서도 國家를 提示하고 있으나 定量的 方法

共通選定國家	國家數 (純計)	參 考	
		서울國際컨설팅 Co	沈 義 燮
<4人 共通> PNG, 방글라데시 <3人 共通>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2人 共通> 베트남, 印度, 미얀마	17國	베트남 캄푸치아 미얀마 스리랑카 솔로몬제도 西사모아 PNG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北마리아나 피지
<2人 共通> 도미니카(共) 과테말라 에쿠아돌	9國	페루	CBI
<4人 共通> 카메룬 <2人 共通> 라이베리아 자이레 세네갈 케냐	14國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브와르 中央아프리카 카메룬
<3人 共通> 예멘 이집트	7國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47國	10國	24國

에 依한 具體的 基準이 明示되고 있지 않으므로 參考로 收錄함.

國家이다.

支援對象國家選定이나 選定된 國家를 重點 또는 準重點等으로 區分 하는等の 差等化戰略에 있어 各自 考慮하는 變數의 種類와 이들의 加重置 및 基準時點이 다르고 方法論의 差異가 있으므로 多樣하게 論議되고있는 基準을 劃一化 또는 統一시키기는 困難한 일이나 研究方法上 다음과 같은 點들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提示된 變數의 數가 3個에서 20餘個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바 政治·外交의 側面, 經濟的側面, 人道主義的側面等 援助의 目的을 配慮한 各種 變數를 總網羅(Exhaustive)하여 變數의 內容이 經濟的側面等 一部 目的에 偏在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둘째, 變數가 지나치게 많아 概念的으로 類似하여 獨立性이 缺如되고, 各要素를 說明하는 數個의 最終說明 變數間에 높은 相關 關係가 있을 境遇 一部 變數를 除外시키는 作業을 先行하는 共線性(Collinearity)의 問題가 論議 됨으로써 要素의 說明力을 提高하는 가장 適合性(Appropriateness)이 있는 變數가 選定 되어야하며 說明力을 提高할 수 있는 要素나 變數의 開發이 時急하다.

셋째, 變數가 많을수록 統計의 信賴性이나 結果의 客觀性에 보다 接近될 수도 있겠으나 加重置賦與에서 나타나는 主觀的 自意性은 그만큼 커지게 되므로 變數의 獨立性과 加重置의 信賴性提高를 爲해 變數의 種類와 加重置에 變化를 주어 導出된 數個의 시뮬레이션中에서 國別順位를 區分하는 方法도 考慮해 볼 수 있다.

네째, 援助의 3가지 目的을 同時에 配慮할 境遇 이들 目的間의 相衡性 - 例컨대 無償協力이나 人道的考慮에 依한 援助를 하면서 有償協力이나 經濟的 考慮에서 論議될 수 있는 外債償還能力等を 國家選定の 變數로 考慮 하는等 - 에 對한 克服問題에 有念해야되며 그 代案으로 變數內容과 加重置의 調整은 勿論 援助形態別, 援助目的別 基準設定이 提示될 수 있다.

다섯째, 國別 援助의 決定이 各 受援國의 多樣한 援助需要 - 例컨대 A國은 教育, B國은 農業 -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援助對象國의 援助需要를

同一하게 보고 國別選定基準을 劃一化시키는 것은 問題가 있다.

大部分의 研究된 國別配分基準들이 援助手段을 統合한 綜合配分基準만을 提示하고 있는 바 手段別 配分基準(二國間 協力の 形態別, 多國間, 또는 綜合配分基準)은 勿論 圈域別, 所得그룹別, ODA 目的別等 多樣한 基準이 提示되어 政策樹立에 選擇의 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섯째, 變數의 基準時點은 後進國統計의 未備點을 勘案 動態性이 勘案되어야 한다.

일곱째, 새로운 國別基準의 提示에 앞서 過去와 現行 國別配分政策에 對한 現況과 問題點에 對한 分析이 前提되어야하고 提示된 代案을 實施하였을 境遇豫想되는 實益과 效果等에 對한 檢證이 필요하다.

여덟째, 受援對象國이 우리나라 ODA의 對象國家를 選定하는 것이므로 모든 開途國 中에서 우리나라보다 1人當 國民所得이 높은 國家나, 開途國中 比較的 國民所得이 높은 高中所得國(UMICs), OECD에서 論議되고있는 1人當 GNP가 2,465 \$ (1990年 基準)以上인 國家, 政府當國에서 政策의으로 受援對象에서 除外하거나 또는 包含豫定國家들에 對해서는 研究對象國에의 包含與否를 慎重히 考慮하는것이 바람직하다.

開發援助를 어떤나라에 얼마만큼을 支援할 것인가 하는 基準을 設定하는것은 그리 容易한 問題가 아니므로 이에對한 深度깊은 研究가 持續化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主로 政治·外交的 目的으로 小規模 多國家 支援方式이 繼續 되어 왔으나 앞으로 經濟的 要因을 보다 많이 考慮하여 우리나라와의 開發援助를 通하여 相互利益이 極大化될 수 있는 國家를 重點對象國으로 選定하는 協力方式 으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몇가지 事項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定量的方法에 依한 國別配分基準의 研究와 이의 提示는 政策的으로 重要的 參考는 될 수 있으나 國家政策에 그대로 反映하기에는 많은 無理한 點이 따른다.

둘째, 앞으로 適切한 模型開發에 따라 重點對象國 協力方式을 指向한다 하더

라도 過去 支援對象國에 對한 갑작스런 援助中斷은 援助效果를 半減 또는 逆效果를 가져오게 되므로 漸進的인 政策轉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既存 政治.外交의目的 援助對象國에 對하여서는 現象維持 또는 漸進的으로 援助規模를 縮小하고 重點協力對象國에 對하여서는 每年度의 豫算增額分과 他國家 援助節減分을 集中的으로 支援하는 方法(Incrementalism) 등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機資材供與事業의 境遇 既存의 受援國을 減少시키기 爲해서는 1992機資材 供與國中에서 公館不在國家 39個國과 人口規模가 100萬 未滿인 17個國中에서 選別的으로 供與對象에서 除外하거나 支援規模가 적은 技術協力 으로 代替하는 方案이 講究될 수 있을 것이다.

第3節 開發援助配分の 構造調整과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1. 現況 및 問題點

1991年 開發援助의 二國間協力(Bilateral) 對 多國間協力(Multilateral) 比率은 39.1:60.9%로서('92年은 46.4:53.6%) DAC會員國들의 同 比率 73:27%와는 크게 相異하며 二國間協力比率은 無償協력이 77.2%로 有償協力 22.8% 보다 높다.

無償協力 豫算은 數個 部處로 分散되어 있으나 主로 韓國國際協力團이 管掌하고 있다. 無償協力の 內容을 보면 機資材供與事業 等の 無償援助가 62.3%, 研修生招請等の 技術協력이 37.7%이나 無償協力中 프로젝트型事業(4%)과開發調査事業(9%)이 技術協力事業의 性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包含時 技術協力の 比率은 40% 以上이 된다.

無償協力の 主要 事業別 構成比를 보면 機資材供與가 49.3%로서 가장 많고 技術協力事業은 研修生招請 14.6%, 專門家派遣 0.9%, 青年奉仕團, 醫療團, 跆拳道等 派遣 6.3%等이다.

1992年 開發援助의 形態別 地域別 配分構造를 보면 無償援助는 아프리카(36.9%)>中南美(23.4%)>아세아(18.7%)>中東(9.7%) 順이고, 研修生招請은 아세아(57.1%)>아프리카(13.1%)>中南美(9.8%)>中東(5.4%)의 順이며 專門家派遣은 아세아(38.3%)>中南美(27.7%)>아프리카(14.9%)>中東(8.5%)의 順이고, 青年奉仕團은 아세아地域에 限定되어 있다.

對外經濟 協力基金은 아세아(35.9%)>東歐圈(34.4%)>아프리카(15.3%)>中東(11.4%)>中南美(3.0%) 順으로 되어있어 全體的으로 아세아地域이 높은 比率을 占하고 있다.

國別配分에 있어서 提起되는 問題點은 年度別 趨勢에 起伏이 甚한데 이는 그동안 開發援助가 各 部處로 多元化되어 推進됨으로써 國別 配分에 對한 綜合的인 基準이 없이 受援國의 要請이나 短期的 眼目에 따른 配分の 結果이며, 形態別配分에 있어서 相互 有機的인 考慮가 全혀 되어있지 못하다는 點이다.

<表 V-8>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形態別 地域別 配分

(單位：%)

地 域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中 東	其 他	計	
區 分								
無償援助 ¹⁾	1977	38.3	50.0	11.8	—	—	100.0	
	1978~1986	17.5	45.5	29.8	5.9	1.3	100.0	
	1992	18.7	36.9	23.4	9.7	11.3	100.0	
	計(77~92)	19.9	38.6	28.5	7.3	5.7	100.0	
技 ²⁾ 術 協 力	研修生招請	1963~1981	80.0	6.4	4.1	8.5	0.2	100.0
		1982~1986	64.9	18.5	11.0	5.5	0.1	100.0
		1992	57.1	13.1	9.8	5.4	14.6	100.0
		計(63~92)	67.2	13.1	10.2	7.0	2.5	100.0
	專門家派遣	1967~1981	37.0	39.0	17.0	7.0	—	100.0
		1982~1986	61.0	13.0	23.2	1.1	1.7	100.0
		1992	38.3	14.9	27.7	8.5	10.6	100.0
		計(67~92)	49.4	19.0	25.8	3.1	2.7	100.0
	青年奉仕 團 派遣	1990 ~ 1993	100.0	—	—	—	—	100.0
	對外經濟 ³⁾ 協力基金	1993. 9	35.9	15.3	3.0	11.4	34.4	100.0

註：1) 金額基準

2) 人員基準

3) 金額基準：1993.9.現在 借款決定額 基準

<表 V-9>

ODA 構造의 國際比較(1991)

(單位：%)

區 分	韓國	先 進 國						備考 ¹⁾
		日本	美國	프랑스	오스트리아	伊太利	DAC	
<二國間協力>	39.1	76	82	82	75	61	73	70
無償援助	18.8	21	60	29	22	24	36	10
技術協力	11.4	13	28	35	17	40	22	20
有償協力	8.9	42	△1	18	36	25	15	40
<多國間協力>	60.9	24	11	18	25	39	27	30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OECD

註：1)經濟企劃院의 1996年度 構造調整目標值인(經濟企劃院 資料, 1990.12)

<表 V-10>

開發援助의 配分構造 (1991)

(單位：%)

區 分	構 成 比
二國間 協力	39.1
<無償協力>	30.2 (100.0)
○ 無償援助	18.8 (62.3)
— 機資材供與	14.9 (49.3)
— 프로젝트型事業	1.2 (4.0)
— 開發調査	2.7 (9.0)
○ 技術協力	11.4 (37.7)
— 研修生招請	4.4 (14.6)
— 專門家派遣	0.3 (0.9)
— 特殊目的支援 ¹⁾	1.9 (6.3)
— 其他 ²⁾	4.8 (15.9)
<有償協力>	8.9
多國間 協力	60.9
<國際機構 分擔金>	12.2
<國際機構 出資金>	48.7
計	100.0

註：1)青年奉仕團, 醫療團, 跆拳道 等 派遣

2)共同研究開發, 韓-아세안協力 等

1992年 韓國國際協力團의 開發援助規模는 3千萬\$에 不過하나 協力對象國數는 126個國(6個 國際機構 除外)으로 우리나라와 協力對象國家數가 같은 日本의 130個國 116億\$ (英國은 120個國 26億\$)에 比較하여 적은 豫算으로 많은 國家를 支援하고있어 援助의 質의低下를 가져오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 點에 對해 Mosley에 依하면 援助供與國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援助의 質은 더욱 低下되게 마련인데 그 理由는 主로 可能限한 많은 國家에 對해 援助를 두루 供與하려는 外交的 實利(Diplomatic Interest)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受援對象國家를 줄이고 重點國家支援 方式으로 轉換하기 爲해서는 于先 開發 援助의 主要形態인 無償援助와 技術協力間에 形態別, 國別, 豫算配分에 對한 連繫性強化가 必要하다.

例컨데 單位事業費가 比較的 큰 機資材供與國中 重點國家가 아닌 國家에 對해서는 單位事業費가 적은 技術協力中心으로 轉換하거나, 經濟的目的과 聯關이 큰 開發調査는 아세아中心으로 實施하는것이 效果的일 것이다.

2. 政策方向

가. 開發援助配分の 構造調整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配分構造는 主要 先進國의 國別配分은 勿論 援助形態別 配分構造와 크게 相異한데 先進國의 配分比率이 우리나라의 政策樹立에 도움이 되는지 與否를 判斷하는 것은 이에 對한 構造의 分析 없이는 매우 어려운 問題이며, 우리의 經濟的 與件, 援助理念과 目的, 援助效果等を 勸案 우리에게 適正한 配分構造政策을 樹立해야 될 것이다.

外國의 境遇 二國間協力이 主가 되고 二國間의 形態別配分에 있어서는 日本을 除外한 DAC 大部分 國家들의 境遇에는 無償協力の 比率이 매우 높다.

二國間協力の 比重이 높은 理由는 援助供與國의 立場에서 볼 때 自國의 外交.貿易 政策上 國際政勢의 變化에 對하여 보다 機動性있게 政策을 遂行해 나갈 수 있고, 受援國의 政治的.經濟的.文化的 側面에서 彈力的으로 援助를 이끌

어 나갈 수 있다는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開發援助의 形態中 多國間協力の 豫算配分은 우리의 對外位相 提高에 따라 漸增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援助形態에 비해 漸次 硬直性을 띄게 될 것이므로 豫算의 劃期的인 增額이나 形態別 配分政策 樹立은 二國間の 協력이 主로 問題가 될 것이다.

二國 및 多國間 協力の 豫算配分에 있어 다른 國家와는 달리 多國間協力の 構成 比가 높은데 앞으로는 援助效果가 直接的으로 浮刻되는 二國間 協力の 比重이 增大되어야 할것이다.

二國間 協력에 있어 有·無償援助間 配分構造의 目標을 定하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며 事業主體가 財務部와 韓國國際協力團으로 分擔되어있어 每年 統合된 豫算戰略의 樹立은 勿論 事業施行上의 連繫가 容易하지 않다.

특히 援助形態別 配分에 있어 問題가 되는것은 韓國國際協力團이 管掌하는 無償協力 - 機資材供與, 프로젝트型事業, 開發調査,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青年奉仕團 派遣 - 諸形態間の 構造調整이다.

1992年 韓國國際協力團 開發援助의 豫算規模는 3千萬\$에 不過하여 援助形態別 1國當 豫算支援規模가 크게 零細한데 <表 V-11>에서 보는바와 같이 無償援助事業은 1億원 內外이나 研修生招請이나 專門家派遣等の 技術協力は 1千萬원·2千萬원에 不過한 實情이다.

援助形態別 國別 支援規模와 件當支援規模를 우리나라 總 ODA規模의 100倍以上 水準인 日本과 比較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外交與件은 相異하나 經濟力이 類似한 自由中國과 比較해보면 無償援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05個國에 8,356百 萬원을 供與하여 1國當 支援規模가 80百萬원이나 自由中國은 24個國에 22,650百 萬 원을 供與하여 1國當 支援規模는 우리의 12倍인 944百萬원이다.

無償援助의 最低와 最高支援額의 境遇에 韓國은 最低 10千\$ 最高 390千\$에 不過하나 自由中國은 最低 300千\$, 最高 3,150千\$로 그 規模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開發調查와 프로젝트型事業에 있어서도 豫算基準의 1國當 支援規模가 우리의 1.3倍이며 研修生招請은 3.3倍이다.

<表 V-11> 開發援助의 形態別 1國當 支援規模比較(1992)

(單位：百萬圓)

規模 形態別	支援規模			支援 國家數 (C)	1國當 支援規模		備考 (1國當 物量支 援基準)
	豫算 (A)	物量 (B)	件當規模 (A/B)		豫算 (A/C)	物量 (B/C)	
< 無償援助 >							
機資材供與	8,356	105件 ¹⁾	80	105	80	1	1萬\$ - 39萬\$ 1件
프로젝트型事業	845	9件	94	9	94	1	
開發調查	2,203	12件	184	8	275	1.5	1-3件
< 技術協力 >							
研修生招請	1,455	461名	3.2	87	17	5.3	1-39名
專門家派遣	309	47名	6.6	31	10	1.5	1-5名
青年奉仕團派遣	1,079	52名	21	8	135	6.5	4-9名
醫療團派遣	501	17名	29	13	39	1.3	1-3名
跆拳道師範派遣	367	19名	19	17	22	1.1	1-2名

註：1)國當 1件으로 看做

<表 V-12>

韓國과 外國의 ODA 比較

援助形態別	單位	韓國 ¹⁾	自由中國 ²⁾	日本 ³⁾	1國當 支援規模			倍 數	
					韓國(A)	自由中國(B)	日本(C)	B/A	C/A
< 無 償 援 助 >									
支 援 國 家 數	個國	105	24	109					
豫 算	百萬원	8,356	22,650	909,320	80	944	8,342	11.8	104.3
支 援 規 模	千\$ /件	10-390	300-3,150	10-120,000					
(最低-最高)									
< 開發調查 및 프로 젝트型 事業 >									
支 援 國 家 數	個國	14	9	64					
豫 算	百萬원	3,048	2,580	267,486	218	287	4,179	1.3	19.2
件 數	件	21	9	460	1.5	1	7.2	0.7	4.8
	(百萬원/件)				(145)	(287)	(581)	(2.0)	(4.0)
支 援 規 模	千\$	18-735	100-1,500						
(最低-最高)									
< 研 修 生 招 請 >				125					
支 援 國 家 數	個國	87	67	88,299					
豫 算	百萬원	1,455	3,780	5,183	17	56	706	3.3	41.5
人 員	名	461	729		5.3	11	17	2.1	3.2
	(百萬원/名)				(3)	(5)	(17)	(1.7)	(5.7)

註：1)韓國國際協力團 1992基準

2)自由中國 外交部 및 經濟部의 1991豫算基準(研修生招請은 1992豫算)

3)日本 外務省 및 JICA의 1990實績基準

協力對象國數를 段階의으로 縮小調整하기 爲해서는 援助形態別로 地域이나 國家別配分에 있어 相互連繫性を 強化해 開發援助 可用財源을 最適配分(Optimum Allocation)하는것이 重要な 當面 課題中の 하나이다.

아직도 援助形態別로 몇個 部處에 業務가 分散되어있어 綜合된 單一の 配分體系를 이룩하기는 困難하나 韓國國際協力團의 豫算이 二國間 協力の 61% (1991基準)를 占하고 있고 이 比率은 每年 더욱 增大될 것으로 期待되므로 日本과 같이 14個 部處에 業務가 分散되어 體制的 整備·強化와 關聯하여 國際協力廳이라는 援助 行政의 一元화된 機關을 새로 設置해야 한다는 意見이 擡頭되고 있는(豫算의 大部分은 外務省과 大藏省에 計上되어있으며 그中 JICA豫算은 12%에 不過함) 實情에 比較하면 우리의 境遇 形態別 構造調整에있어 큰 難點은 없을 것으로 生覺된다.

우리의 ODA 規模가 絶對的으로 零細하므로 短期的으로는 金額 規模가 比較的으로 큰 機資材供與事業 보다는 적은 金額으로 開途國의 經濟發展에 必需的인 人力開發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을 圖謀할 수 있는 技術協力の 增大가 必要하고, 經濟的目的과 關聯이 큰 開發調査와 援助效果가 國民에게 擴散되는 프로젝트型事業等に 重點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開發援助의 主要形態인 無償援助와 技術協力間에 形態別, 國別, 豫算配分에 對한 圓滑한 有機的協力を 爲해 韓國國際協力團 組織內的 綜合調整機能이 強化되어야한다. 形態別 連繫의 一環으로 1992 豫算配分에서 아프리카地域의 境遇 言語, 航空卷負擔等 어려움으로 技術協力の 非效率性を 勘案하여, 機資材供與는 아프리카>中南美>아시아順으로, 技術協力 및 開發調査의 境遇는 아시아>中南美>아프리카順으로 協力形態의 地域別 特化를 配慮한 바 있다.

나.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開發援助의 構造的 適正配分の 目標가 定해지면 이의 形態別 推進戰略이 樹立되어야 한다.

(1) 無償援助

無償援助의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無償援助의 境遇 償還負擔이 없으므로 基本的으로 最貧開途國(LLDCs)을 中心으로하되 우리나라와의 外交 및 經濟協力の 增進을 通하여 相互利益이 極大化 될 수 있는 國家와 地理的, 文化的 및 歷史的으로 가까운 國家에 對한 配慮를 強化해야 될것이다.

現行의 多數國家 小規模援助方式을 止揚하고 重點協力國家에 特定事業의 戰略的 實施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爲해 高中所得國家(UMICs), 公館不在國家, 人口規模가 적은 國家等은 漸次 選別的으로 供與對象에서 除外하거나 또는 支援規模가 적은 技術協力으로 代替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經濟開發 및 國民福祉의 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分野로 하되, 國家別로 特性에 맞는 對象分野를 積極 發掘해 나가도록하고 災難救護나 食糧援助等 人道的性格의 援助를 配慮토록 해야 될 것이다.

支援形態는 單純한 機資材供與에서 計劃的 프로젝트型事業 方式으로 漸進的으로 轉換토록 誘導하고 機資材供與 境遇에는 單純消費財 보다는 受援國의 經濟開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資本財 또는 生産財로 轉換토록해야 될 것이다.

(2) 技術協力

技術協力の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技術移轉의 受容能力과 受容態勢를 갖추고있는 國家, 既存 技術協力事業에 對한 事後管理가 必要한 國家, 商品輸出이나 直接投資等 經濟協力の 增進이 期待되고 政府次元에서 支援이 約束된 國家, 所得水準이 높아 無償援助對象이 되지않거나 大規模 有償協력이 困難한 開途國等을 優先支援해야 될 것이다.

支援分野는 費用이 적게드는 中間 또는 勞動集約的技術, 開發經驗이나 人力養成等을 爲해 緊要한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을 移轉토록하고 (Stewart), 우리가 相對的으로 強點을 지니고있는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와 開途國에의 波及效果가 큰 事業, 機資材 供與事業과 패키지化 할 수 있는 프로젝트型事業, 農業等 一次的 國民生活需要를 充足하기 爲한 分

野, 研究開發管理・基礎科學技術 振興을 爲한 科學技術分野 및 疾病退治와 人口抑制等 保健·醫療分野를 優先支援해야 될 것이다.

(3) 有償協力

有償協力(EDCF)은 ODA의 要件을 充足시키는 條件으로 支援하기 爲해 讓許性 水準을 나타내는 GE를 DAC에서 定하는 一定基準 以上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經濟的 能力을 勘案한 適正水準을 維持하도록 해야 한다.

現在 政府는 EDCF의 重點支援 對象國家 基準을 OECD 및 世界銀行에서 分類하고 있는 開途國 및 1人當 國民所得水準, 産業化의 程度等이 이에 相當하다고 認定 되어 基金運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國家中 다음과 같은 國家로 하고 있다.

- 經濟開發段階, 産業構造等의 面에서 우리나라와 相互補完的인 協力可能性이 높은 國家(例: 天然資源을 많이 保有하고 있는 後發開途國)
- 政治·社會의 安定性이 높고 順調로운 經濟發展이 期待되는等 成長潛在力이 큰 國家
- 基金支援을 通하여 經濟協力基盤의 構築은 勿論 外交의 效果가 期待되는 國家, 다만 經濟發展段階, 産業構造等 經濟的水準 및 所得水準이 우리나라 보다 높거나 비슷한 國家는 除外함.

協力事業의 對象分野는 다음과 같다.

- 業種에 制限을 두지 않으나 協力事業은 開途國의 産業發展에 이바지하는 同時에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를 增進하는 事業
- 開途國政府(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機關 包含)가 要請하는 事業으로서 經濟 協力性이 認定되고,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效果가 큰 分野를 優先對象 分野로 함.
- 經濟圈域別로 經濟發展段階 및 經濟·社會與件에 알맞는 分野를 能動的으로 發掘
- 長期的으로는 經濟交流效果가 작더라도 開途國 經濟開發에 基礎가 되는

社會 間接資本 事業部門으로 支援對象分野를 擴大함.

(4) 多國間協力

多國間 協力에 있어서는 國際機構에 對한 出資 및 分擔金負擔은 우리의 經濟力 및 國際的 地位 變化에 相應한 義務的 性格의 負擔이므로 우리 能力에 맞게 忠實히 履行토록 하고, 國際機構에 對한 分擔金은 우리의 經濟的 能力을 勘案 하여 適正한 優先順位를 基準으로 負擔規模를 決定토록 해야 될 것이다.

(5) 開發調査

그동안 實施된 開發調査의 問題點과 政策方向을 提示하면

첫째로 開發調査의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事業施行 與件 등을 勘案 最貧開途國 보다는 中進開途國을 對象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輸出, 海外投資, 資源開發, 建設進出擴大 등에 有利한 位置를 占有한 國家를 優先 支援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國家開發計劃上 優先順位가 높고 開途國의 經濟開發 및 國民福祉 向上에 實質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分野, 開途國과의 共同事業 推進을 通하여 援助事業의 效果提高 및 技術移轉 圖謀가 可能한 分野, 經濟計劃, 農業, 資源, 建設 등 우리나라의 開發經驗이나 건설턴트가 國際적으로 競爭力을 갖고 있는 分野, 技術協力 및 對外經濟協力基金과의 連繫가 可能한 分野 등을 優先支援토록 해야 될 것이다.

세째로 歐美先進 各國에서는 事業發掘 → 準備 → 審査 → 實施 → 評價라는 프로젝트사이클에 따라 完全한 形態의 프로젝트를 實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開發調査의 大部分을 日本과 같이 프로젝트사이클의 1, 2段階인 事業發掘, 事前(PreF/S) 또는 本 妥當性調査(F/S)만을 遂行하여 報告書를 相對國에 提供하는 것으로 事業을 마무리하고 있어 歐美先進供與國에서 完全한 形態의 프로젝트를 遂行하는 制度와는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因해 受援國의 關心低下等 憂慮도 없지 않으나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EDCF와의 連繫로 事業의 效果性을 提高시킬 수 있으며 또한 期待되는 效果도 적지 않다. ODA 豫算規

模가 너무 작고 開發調査와 EDCF의 主務部署가 分散되어 있는 등의 現實與件으로 보아 當分間은 歐美型의 프로젝트實施는 容易치 않을 것으로 展望되는바 小規模 프로젝트型 事業에 對해서는 現在 KOICA에서 實施하고 있는 바와 같이 歐美型의 方法을 따르되, 大規模 프로젝트에 對해서는 長期的으로 歐美型과 日本型의 制度를 比較研究하여 適切한 對應方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¹³⁾

네째로 事業主管을 開發調査의 初創期인 1980年代初에는 海外建設事業을 振興 하고 海外建設工事의 適正한 施工을 期하고져 主로 建設部에서 建設分野를 中心으로 限定的으로 施行하였으나, 一部 部處에서도 所管分野나 國家間 約束事業의 履行이라는 次元에서 通信을 爲始하여 資源, 農業 等에 對해 一貫性있는 計劃樹立 및 實施體系 등이 未備된 狀態에서 散發的으로 實施하였다.

韓國國際協力團의 設立으로 業務의 統合의 推進이 期待되나 職員經驗 및 專門 人力의 不足等으로 內部 實施體制가 未洽한 實情인 바, 開途國의 開發調査要請과 EDCF要請事業과 關聯한 需要增加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爲하여 開發調査事業을 體系的, 效果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體制가 早速히 構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財源의 制約으로 事業規模가 零細하여 事業施行實績은 年間平均 10件 内外에 不過하고 規模도 小規模 프로젝트가 大部分이며 事業에 따라서는 事前 妥當性調査만 實施하고 本 妥當性調査나 實施設計調査 等 本格的인 開發調査事業은 拋棄하는 境遇도 있어 一貫性 있는 事業施行이 要求된다. 向後 開發調査의 支援規模는 豫算制約 等を 勘案 短期的으로는 件當 100萬\$ 内外의 中小規模事業을 優先 支援하고 長期的으로 支援規模를 擴大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여섯째로 前述한 바와 같이 歐美型의 프로젝트를 遂行하기 爲해서는 開發調

13) 1993年 6月 日本은 野黨聯合(現執政黨)으로 「國際開發協力基本法案」을 議會에 提出한 바 있는데 同法案의 主要骨子中の 하나가 JICA와 OECF를 統合한 政府機構로서의 「國際開發協力廳」의 設立이다. 이는 國際開發協力の 重要性에 비추어 國際開發協力の 適正하고도 效果的인 推進을 圖謀하기 爲한 것이나 國會解散으로 廢止된바 있다.

査 와 EDCF間에 連繫性이 要求되나 그간의 實績은 連繫性이 缺如되어 開發調查의 意義가 半減되고 있다는 點이다. 그동안 實施된 開發調查와 EDCF와의 連繫 實績을 보면 總實施件數 51件(單一事業基準) 中에서 EDCF 支援이 決定된 것은 3件으로 5.9%에 不過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開發調查와 EDCF擔當機關間에 事業 計劃에 對한 情報交流와 有機的인 業務의 連繫로 開發調查事業의 效果를 增大시켜야 될 것이다.

日本의 境遇 JICA의 開發調查가 OECF에 連繫되는 比率은 25%이고(資本協力과의 連繫를 包含時는 70%), ADB는 自體的으로 開發調查를 實施하여 이中 60%가 借款事業에 連繫되고 있다.

<表 V-13>

開發調查의 連繫現況

(單位 : 件, %)

開發調查	資本協力과 連繫 ¹⁾		OECF와 連繫 ²⁾	
	件 數	連 繫 性	件 數	連 繫 率
442	200	45	110	25

資料 : JICA企劃部(1992.11)

註 : 1) OECF以外的 資本協力實績으로 JICA에서 實施設計, 機資材供與 및 施工한 事業 임.

2) 1974~1990年間 JICA가 外務省의 交付金으로 施行한 社會開發 및 農林水産分野의 實績으로 通産省 委託金施行分은 除外됨

일곱째로 開發調查는 事業의 性格上 專門性이 要求되고 分野가 多樣하며 實施地域이 海外라는 등 特殊性으로 國內의 專門用役業體中 이와같은 業務를 海外에서 遂行한 經驗이 있거나 또는 向後 遂行할만한 與件을 갖춘 專門用役業體가 매우 制限되어 있는 바(日本의 境遇 19個分野에 475個社에 達하며 主로 契約에 應하는 業體는 140個社임) 專門 컨설턴트業體에 對한 育成策이 時急하다.

여덟째로 無償技術 用役業務를 建設部로 부터 名實共히 韓國國際協力團에

承繼하는 法的問題뿐만 아니라(韓國國際協力團法 第6條의 改正), 그동안 各 部處에서 遂行해오던 開發調查를 圓滑히 執行하기 爲해서는 關係部處와 事業計劃의 樹立時 綿密히 協助토록하고(同法施行令 第11條), 技術協力이나 機資材供與 等 他協力 手段과도 有機的 關係를 높이는 等の 業務體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로 以上の 列舉한 事項들 外에도 日本과 같이 海外 47個國에 50個의 支社를 가지고 있는 JICA와 달리 韓國國際協力團의 境遇 優秀事業發掘을 爲한 情報채널의 未備와, 豫備調查를 爲한 分野別 派遣專門家の 確保上 隘路, 調查事業을 爲한 用役契約 節次上的 複雜性, 그리고 歷史가 日淺하여 受援國들의 認識이 不足하거나 이들 國家官僚들의 消極的인 業務協助 行態等도 克服해야 될 課題들이다.

第 4 節 國別援助計劃의 樹立

1.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의 實施는 各 受援國의 實情에 適合한 援助가 提供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떠한 分野에 어떠한 形態의 援助를 어느程度 規模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二國間協力の 全般的인 次元에서 研究·檢討하여 國別援助의 基本方針을 樹立하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그러나 援助를 效果의으로 推進하기 爲한 이러한 國別援助計劃의 樹立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프로젝트를 發掘·形成할 能力이 없는 開途國이 많고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만들어보아도 이들間에 事業優先順位를 判斷하기 困難한 國家들이 大部分이다. 援助計劃을 樹立해보아도 計劃에 包含되지 않은 非計劃事業이 隨時로 追加되거나 事業의 優先順位가 變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別 計劃의 立案이 이와같은 沮害要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되지만 그럼에

도不拘하고 現實의인 國家別 援助計劃을 樹立하는 努力은 繼續될 必要性 이 있는 것이다.

先進國은 國別援助計劃에서의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實際作業에 있어서 包括的인 國別援助計劃이 樹立되는 境遇는 적고 現實의으로는 實施豫定인 프로젝트 目錄을 中心으로한 短期的인 計劃을 選好하는 傾向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一回의이고 非計劃的인 事業推進으로 國家別 特性에 맞는 事業推進 計劃이나 戰略이 未備되어 援助事業의 效率性을 提高시키지 못한것이 事實이다.

2. 政策方向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ming)은 個別國家의 經濟, 歷史, 社會, 文化, 政治等에 對한 綜合的인 知識을 土臺로 誘導의이고 前向的인 土臺위에서 技術, 資本, 人力등 모든 開發資源 手段을 總網羅한 開發援助計劃을 그 나라의 開發與件과 要求에 알맞게 樹立施行하기 爲해 體系의이고 一貫性있게 接近하는 基本的인 틀을 만드는 方式이다. 主要先進國 大部分은 이러한 國別援助計劃을 基礎로 하여 援助를 實施하고 있다.

<圖 V-7> 先進國의 國別援助計劃

國 名	國別援助計劃名	主 要 內 容
美 國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 USAID本部指針에 따라 海外事務所가 作成하는 5年單位의 分野別 援助計劃인. ○ 對象國家는 重點協力對象國, 開發政策에 變更이 생긴 國家, 海外事務所가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國家等임. ○ 政治·經濟·社會의概況, 援助必要部門(農業, 住宅, 保健, 敎育, 人口, 女性)의 評價, 開發戰略, 所要資金等이 主要內容임.

國 名	國別援助計劃名	主 要 內 容
카 나 다	Country Program Review	○ CIDA에서 5年 單位로 最重點 協力對象國을 中心으로 하여 作成 ○ 支援規模, 重點支援分野, 援助實施方式, 他援助機關과의 協助, 援助國內 制約要因等を 主要 內容으로 함.
스 웨 덴	Country Programming	○ SIDA에 依하여 每 2年마다 原案을 作成하여 外務省의 承認을 得하는 形式을 取함. ○ 對象國은 프로그램支援 重點協力對象 17個國에 限함. ○ 一般經濟概況, 外國援助의 動向, 스웨덴의 支援實績, 分野別 概況, 有望프로그램에 對한 翌年度 援助額 등이 主要內容임.
네델란드	Country Policy Plan	○ 外務省 國際協力總局 地域擔當課에서 作成 ○ 적은 資金의 效率的 利用 및 보다 計劃的인 援助實施라는 觀點에서 10大 重點 援助對象國(프로그램對象國)에 對하여 作成 ○ 過去 援助實績 및 問題點, 向後 援助指針, 네델란드의 農產物加工 分野外에 敎育訓練開發, 女性의 役割 및 環境等에 關한 것을 內容으로 함.

國 名	國別援助計劃名	主 要 內 容
英 國	Country Policy Paper	○ 海外開發廳(ODA) 地域事務所의 資料等을 基礎로 經濟企劃스텝(EPS)의 地域擔當 專門家가 草案을 作成하고 地域國이 整理하는 責任을 짐. • 草案을 在外公館으로 부터의 意見收斂과 함께 外務省 英聯邦 本省, 通商省 및 英國 銀行과의 協議를 거쳐 正式 決定됨. • 同 페이퍼는 每年 作成됨. ○ 同 페이퍼는 所定樣式에 依해 作成되며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經濟政勢 • 援助의 歷史的, 政治的, 經濟的 背景 • 開發計劃 및 關聯 行政制度 • 政治·經濟的 堅持에서의 援助의 檢討 • 其他 國家의 過去 5個年間 援助實績 • 向後 5個年間 英國의 援助方針 • 主要 프로젝트에 對한 援助支出 스케줄
日 本	國別援助實施指針	○ 國別援助 基本方向의 設定에 도움을 주기 爲하여 JICA에서 作成 ○ JICA 海外事務所 設置 地域을 中心으로 作成함.

資料 : 日本國際開發發達社, 主要先進國의 無償援助(1989) 및 各國의 ODA 資料

美國은 世界 80個 受援國에 駐在하고 있는 AID Mission의 Director責任下에 當該國家의 政策擔當部署, 美大使館, AID本部關聯部署 等の 協助를 받아 CDSS를 作成한후 受援國駐在大使의 承認을 받고, 이어 워싱턴 本部에 提出하여 最終承認을 받게 된다. 每5年마다 通常 50페이지 程度로 作成되어 왔으나 最近에는 經濟與件의 變化, 計劃書의 簡素化의 必要性을 勘案하여 事業執行計劃書(Action Plan) 혹은 年間豫算申請書(Annual Budget Submission)로 代替하기도 한다.

카나다는 內閣에 依해 決定된 重點支援對象國(現在 30國)에 對해서는 5個年 支援計劃으로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 Review:CPR) 을 CIDA의 3個 地域部署에서 作成하고 있다. 그러나 同 內容이 複雜하여 이의 作成에 2~3年의 長期間이 所要되므로 政策變化에 迅速하게 對處하기 爲하여 援助의 基本的인 重點方向단을 簡單히 記述하는 Country Policy Framework(CPF)로 代替할 計劃으로 있다.

國別援助計劃은 英國의 境遇가 比較的 發達되어있는데 이는 舊植民地에對한 行政指導에 根源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尙大한 人力과 時間을 計劃 樹立作業에 投入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境遇도 이러한 英國의 制度를 一部 導入하여 JICA에서 國別研究會를 設置·運營하여 重點協力對象國에 對한 Country Report를 作成하고 있으며 海外事務所 設置國家를 中心으로 國別 援助實施指針을 作成하고 있다.

國別援助計劃을 作成하기 爲하여서는 國別研究가 先行되어야 하는데 日本 JICA의 國別研究會 運營 및 國別援助實施 指針制度는 우리에게 많은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國別援助研究會의 目的은 重點協力對象國에 對한 有·無償援助의 效率的 支援方案을 講究하는 것으로 그 組織은 大學教授等 關係專門人士, OECF關係者등 6~7名으로 構成된 國別援助研究會가 있으며 傘下에 JICA職員 8~10名으로 構成된 專擔研究班(Task Force)이 있다.

運營方法은 專擔研究班이 各 分野別로 基礎資料를 作成하며 이 資料를 基礎로 國別援助研究會는 每月 1回씩 7~8回의 討論을 거쳐 報告書를 完成하게 된다. 現在까지 필리핀, 泰國,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等 主로 아시아地域을 中心으로 13件의 報告書가 나왔다.

다음은 國別援助 實施指針으로¹⁴⁾作成目的是 國別援助 基本方向 設定에 도움을 주기 爲한 것이며, 作成節次는 1次的으로 所定樣式에 依하여 JICA 海外事務所가 基礎資料를 作成하며 本部 地域課에서 資料를 整理하게 된다. 이 資料는 各 事業部의 海外勤務經驗者를 中心으로 構成된 國別協力檢討會議을 거쳐 理事會 承認을 得한 후 外務省에 報告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國別援助計劃을 樹立하기 爲해서는 Country Report의 作成이 優先되어야하며 이에는 많은 時日이 所要될 것이므로 圈域別로 重點國家를 選定하여 年次的으로 CR作業을 擴大토록하되, 短期的으로는 主要受援國에 對한 國內外에서 쉽게 獲得될수 있는 國別情報를 聚合하여 日本의 國別援助實施指針(또는 캐나다의 CPF)같은 形式의 指針書를 作成해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14) 國別援助實施指針의 包含事項(日本)

I. 政治, 經濟, 社會狀況

1. 政治狀況 : 政體, 獨立年月日, 國家元首, 政治機構, 內政, 政治動向, 外交關係
2. 經濟狀況 : 一般動向, 主要產業別 動向, 財政政策, 國際收支, 對外債務, 對日本 經濟關係
3. 社會狀況 : 主要分野別 動向, 所得分配 및 地域間 格差, 其他
4. 特記事項 : 環境, 開發과 女性, 軍事費支出, 民主化 및 基本人權 等
5. 各種指標

II. 經濟社會開發의 現況

1. 開發計劃의 概要 : 目標, 課題
2. 開發重點分野別 主要政策 및 開發推進上의 問題點
3. 開發計劃을 爲한 投資計劃
4. 國家豫算

III. 國際機關, 先進國의 援助動向

1. 主要 先進國의 援助
2. 國際機關의 動向
3. 日本의 援助動向

IV. 援助의 重點分野

1. 概要
2. 內容

區分	主 要 目 標				目的	內容	重點對象地域
	安定的 成 長	輸出 促進	地域間 隔差是正	環境			

V. 協力實施上 留意事項

VI. 評價 結果의 포인트

第5節 最適協力模型의 開發

1. 現況 및 問題點

우리나라 開發援助는 形態別로 各各 分散實施됨으로써 協力手段間에 連繫性이 매우 未洽하며, 各各의 援助事業이 事業을 主管하는 各部處의 個別的論理 또는 主張에 左右되어온 面이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들間의 連繫性을 強化시키고 資本協力과 技術協력을 패키지化하여 하나의 프로젝트事業으로 推進하는等 우리에게 適合한 援助模型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 無償協力の 境遇 無償援助는 單純機資材 供與爲主로 되어왔고 技術協力は 資本協力과의 連繫를 爲한 努力이 不足하는等 非프로젝트援助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主要先進國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型 爲主로 支援하고 있는것과는 매우 對照的인 것으로 앞으로는 여러가지 協力形態中에서도 支援效果가 크게 期待되는 中 小規模의 프로젝트型事業으로 漸次 轉換하여야 할 것이다.¹⁵⁾

프로젝트型事業의 長點은 供與對象國의 經濟開發에 높은 優先順位를 갖는 投資에 寄與함으로써 經濟開發政策이나 過程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費途가 明確하여 援助資源이 適正하게 使用되었는지를 把握하기가 容易하고 受援國의 國民에게 技術移轉等の 實質的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援助의 效果도 現在와 같은 一回性 消耗의 機資材 供與에 比해 長期持續性을 維持할 수 있다. 프로젝트型事業의 受援國은 通常 프로젝트의 據點이되는 土地, 建物施設等の 準備, 카운터파트의 提供 및 運營費等の 로컬코스트를 負擔하는 것이 原則이며, 相互協力하여 共同으로 프로젝트를 實施하게 된다. 또한 數年間に 걸쳐 人力面이나 費用面에서 相當한 規模의 協력을 展開하는 關係上 事前에 兩者의 責任分擔이나 附帶條件等に 對해 相互間에 充分한 合議가 있어야 하므로 通常 政府間協定 또는 事業 調査팀과 相對國 擔當機關과의 사이에 合意

15) 開發援助의 效率성과 效果性側面에서 프로젝트援助가 重視되어야 함은 DAC 나 主要供與國에서도 認識을 같이하면서도 最近에 非프로젝트援助가 漸增하고 있다. 그 理由는 受援國側의 事情으로 經濟的 與件에 따른 援助吸收 能力의 低下와 이에따른 프로젝트事業機會의 減少를 들 수 있고 供與國側 事情으로는 單純機資材供與가 財政 또는 人力 負擔을 輕減시키는 便宜性, 機資材供與에 따른 輸出振興 및 市場擴大效果, 援助資金償還의 容易性 및 外交政策上 效果 등의 面에서 長點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거 때문이다.

議事錄(Record of Discussions : R/D)이 署名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프로젝트型事業은 이에對한 政策不在, 豫算規模의 零細性, 優秀事業發掘의 難易性, 受援國에서의 프로젝트事業 計劃 樹立能力의 不足과 프로젝트型事業보다는 單純한 機資材供與를 選好하는 性向等으로 活性化되지 못하였고 但只 이와 類似한 事業이 數件 實施되었을 뿐이다.

프로젝트型事業의 實施는 單純한 機資材供與에 比해 이를 擔當할 分野別 專門家가 必要하고 事業發掘, 施行, 事後管理에 이르기까지 長期間에 걸쳐 受援國과의 緊密한 協助가 必要하며 그동안 主要 先進國들의 施行過程에서 露出된 여러 問題點에 對해서도 留意해야 될 것이다.

2. 政策方向

가. 事業發掘과 選定基準

프로젝트型事業을 活性化시키고 成功的으로 施行하기 爲해서는 適正한 프로젝트를 發掘하는 일이 가장 重要한 先決課題이다.

大部分의 開途國이 經驗不足으로 프로젝트型事業에 對한 概念把握은 勿論計劃樹立等에 어려움이 豫想되므로 事業計劃 立案段階에서부터 韓國國際協力團 海外事務所나 海外公館에서 適切한 情報蒐集과 供與對象國政府와의 政策對話를 通하여 優秀事業의 發掘과 形成에 積極的으로 協力해야 될 것이다.

○ 對象事業 選定基準¹⁶⁾

16) 美國의 對象事業 選定基準

- ① 事業의 重要性 : AID 支援方針이나 國家開發計劃 등을 勘案 優先順位가 높은 事業
- ② 受惠範圍와 事業의 效果 : 貧民層에 미치는 惠澤, 受惠者의 範圍, 地域의 範圍, 所得, 雇傭 및 福祉增大, 生産性, 女性地位向上 등의 側面에서 效果가 큰 事業
- ③ 長期的 自立基盤 構築 : 受援國의 長期的 經濟社會 自立基盤 構築에 寄與할 수 있는 事業
- ④ 既存組織 活用 : 受援國內 既存組織을 最大한 活用할 수 있는 事業
- ⑤ 費用과 便益 :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한 便益增大가 可能한 事業
- ⑥ 現地勞動力 活用 : 現地勞動力의 活用으로 資本投入을 最小化할 수 있는 事業
- ⑦ 他部門과의 連繫性 : 受援國의 經濟開發計劃의 一部로서 全體計劃에 寄與할 수 있는 事業
- ⑧ 受援國의 參與度 : 受援國이 最小한 總費用의 25%以上을 負擔할 意思가 있고, 受援國政府 및 事業地域 住民들이 積極 參與할 수 있는 事業
- ⑨ 環境에 미치는 影響 : 環境破壞等 副作用을 最小化하고 災難防止에 도움이 될 수 있는 事業

- 供與對象國에 對한 經濟開發은 勿論 우리나라의 國家的, 經濟的利益이 隋伴될 수 있는 互惠의 事業
- 事業目標의 設定이 明白하고 現實의이며 國內의 社會·文化·環境에 對한 適應이 可能的인 事業
- 供與 및 受援兩國의 豫算과 技術面等を 考慮한 支援可能 事業
- 供與對象國의 프로젝트 實施體制가 準備된 事業(Local Costs 또는 Counterpart Costs 負擔, 援助終了後 管理能力 및 維持體系保有與否等)
- 政府次元에서 既 約束된 事業 및 既存繼續事業

나. 支援規模와 費用負擔

豫算制約等を 勘案하여 當分間은 1個國當 事業費 規模가 100萬\$ 内外인 中, 小型 프로젝트를 對象으로 2~5年間に 걸쳐 支援하되 漸進적으로 支援規模를 擴大토록한다. 事業要素別로 受援國側의 費用負擔 事項을 事前에 明確히 할 必要가 있는데 受援國의 財源調達等に 制約이 있을 境遇에는 이에 對한 融通性을 圖謀해야 될 것이다.

<圖 V-8> 프로젝트型事業 構成要素別 負擔主體

	構 成 要 素	負擔主體 ¹⁾
物的要素	不動產：土地	受援國
	建物	兩 側
	機械設備(機資材 包含)	供與國
	附帶施設(電氣, 用水施設等)	兩 側
人的要素	專門家 派遣	供與國
	研修生 招請	供與國
	青年奉仕團(또는 醫師) 派遣	供與國
運營費	事業運營上 費用	受援國

註：1) 負擔主體는 最近에 實施된 事例을 中心으로 例示한 것이므로 向後 프로젝트別로 負擔主體의 分擔事項이 調整될 수 있을 것임.

受援國의 Local Costs(또는 Counterpart Costs) 負擔事項
(建物 및 施設建設의 例)

- 建物 및 施設의 建設을 爲한 融資確保 및 整地作業
- 建設用地에 對한 配電, 給水, 排水, 電話線 施設等 附隨施設
- 援助에 必要한 機資材에 對하여 迅速한 通關 및 陸上運搬手段 確保
- 援助에 從事하는 人力에 對한 關稅, 入國稅 및 其他 財政的 徵收金을 免除
- 프로젝트를 完成하기 爲하여 供與國이 贈與하는 資金部門을 除外한 모든 經費負擔
- 施設 完成後, 當該施設이 效果的으로 利用 및 維持될 수 있는 方案 講究

다. 事業의 種類 및 支援形態

事業種類는 施設支援事業, 機資材와 技術協力 連繫 支援事業 및 前二者의 複合形 事業으로 區分하여 施行한다.

<圖 V-9>

프로젝트型事業의 種類

種 類	內 容
施設 支援事業	開發 프로젝트 遂行에 必要한 建物이나 施設의 建設에 必要한 支援
機資材와 技術協力 連繫支援事業	• 關聯 施設物의 建築이나 整備는 受援國의 責任 下에 完了하고 • 供與國에서는 機資材供與 + 專門家 또는 青年奉仕隊 派遣 + 研修生 招請事業을 連繫하여 支援함
施設支援事業 + 機資材와 技術協力 連繫支援事業	• 供與國에서 施設建築과 프로젝트 連繫事業을 同時에 支援하는 形態의 事業 • 施設建築事業 + 機資材供與 + 專門家 또는 青年奉仕隊 派遣 + 研修生 招請事業

라. 支援分野

供與對象國의 經濟·社會의 均衡있는 發展과 住民福祉 向上에 直結될 수 있는 分野로서 主要 對象事業은 農林水産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및 서어비스業等 모든 分野를 包含한다.

<圖 V-10>

프로젝트型事業의 對象分野

分 野	對 象 事 業
農林水産業	• 食糧増産 • 家畜, 水産養殖 및 養蠶 • 園藝開發 • 土壤研究 • 作物保護 • 家畜病豫防 • 灌溉技術増進 • 農業協同組合振興 • 食品 및 水産加工技術 増進 • 農耕地 利用
製造業	• 小規模 工場建立 및 運營 • 勞動集約的 (衣類, 신발類) 産業 • 組立加工業 • 生必品 加工關聯 事業 • 輸入代替産業
保健·醫療	• 家族計劃 • 母子保健 • 地域保健 및 醫療 • 醫藥品 製造技術

分 野	對 象 事 業
教育·職業訓練	• 研究所 및 職業訓練센터 運營 • 學校建立 • 韓國語教育센터 運營
社會間接施設	• 中小規模 交通施設 (道路, 港灣, 橋梁) • 中小規模 通信施設
其他	• 새마을事業 • 流通構造改善 • 還境 • 上下水道 • 開發計劃

第6節 優秀事業의 發掘과 選定

1. 現況 및 問題點

오늘날 開發援助의 歷史가 길고 尙大한 規模의 協力을 實施하고있는 先進國家에서조차 開發援助의 成敗要因으로 規模의 增大, 適切한 事後評價의 實施, 優秀人力確保와 함께 優秀事業發掘에 對한 問題意識을 갖고있다.

一般的으로 自國의 經濟社會開發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이 不足한 開發國은 自國實情에 適合한 事業의 發掘(Identification)이나 形成(Formation)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援助供與國은 優秀事業 發掘을 위하여 有關機關을 통한 情報蒐集, 需要調査, 政策對話등 多樣한 努力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그동안 開發援助를 部處別로 施行하여 總括調整하는 機能이 脆弱했으며 따라서 有關機關間의 協助體制를 통한 效率的 情報蒐集體制가 未備되어 있었다. 開發援助의 國別需要調査만 하더라도 事業에 따라서는 定期的인 需要調査가 實施되지 못하였거나 次年度의 計劃을 豫算要求後에 需要調査를 實施하는 境遇가 많았고 定型化된 需要調査樣式도 없어 需要調査를 통한 優秀事業 發掘이 어려운 實情이었다.

受援國의 事業要請이 있을 境遇에도 이에 對한 確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事業推進協議等を 爲한 定期的인 政策對話(Policy Dialogue)制度가 마련되지 못하는等 단지 受動的 要請主義方式(Request Basis)에 依한 事業推進의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이러한 要請主義에 依한 事業推進의 境遇에는 相對國이 要請하는 프로젝트단을 支援하게 되기때문에, 다른 援助供與國과의 重複可能性은 勿論 國民福祉와는 無關한 展示의인 事業이나 또는 다른 國家에서 忌避하는 優先順位가 낮은 殘存開發事業(Residual Development Projects)단을 맡을 可能性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開發調査나 프로젝트型事業 및 專門家 派遣事業等の 大部分이 多數의

國別候補事業리스트中에서 良質의 프로젝트를 選定하는 方式을 取하지 못하고 受援國의 要求를 그대로 受容하는 實情인 바 이는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初創期에 나타나는 業務現實로 理解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젝트의 審査를 現行 要請順序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一定期間동안 모아서 優先順位를 가려내는 프로젝트 集合評價制度(Project Pool Appraisal System)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類似한 制度的 接近을 1992年의 開發調查對象事業 選定을 爲한 事業發掘 過程에서 試圖한 바 있는데, 韓國國際協力團은 3次에 걸친 需要調查를 在外公館(30個), 政府關聯部處(15個), 政府投資機關 및 研究所等 出捐機關(23個), 民間用役協會(2個), 大學地域研究所(4個)等 總 74個 機關에 實施한 結果 39個 國으로부터 56件의 事業要請書가 接收되었다.

그러나 韓國國際協力團 發足後 最初로 實施한 需要調查에서 나타난 共通의 特徵은 開發調查에 對한 事前知識이나 認識의 不足과 事前에 配布한 11個 問項에 達하는 需要調查表에 對한 記述上의 어려움等으로 事業名만을 記載한 것이 大部分이어서 事業의 概略의 內容把握마저 어려운 實情이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單純한 事業리스트의 獲得은 開途國의 長期開發計劃書나 또는 一部國家들이 每年 作成하는 T/A事業 提議目錄(印尼의 境遇 國家開發企劃部는 1992/1993年度 T/A事業으로 24個 分野에 353個를 提示하고 있음) 또는 世界銀行에서 提示하고있는 開途國의 Cofinancing 프로젝트 目錄에서 記述되고 있는 內容보다도¹⁷⁾ 資料의 價値가 뒤떨어진 것이 事實이므로 事業發掘에 큰 도움이 안되었다.

따라서 56件의 事業中 ①漠然히 事業題目만을 提示하고 內容이 具體的으로

17) 印尼國家開發企劃部, List of Technical Assistance Proposals 1992/1993 및 世界銀行, Projects with Potential for Cofinancing by Official Aid Agencies,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Private Sources, 1992.

UNDP에서 國別 및 分野別로 PreF/S하여 提示한 프로젝트目錄(例: Report of the Vietnam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ector Analysis, 1992)

記述되지 않는 事業, ②開發調查事業費나 本事業費가 지나치게 큰 大規模의 事業, ③開發調查事業으로 볼 수 없는 性質의 事業 ④國內 컨설팅業體에서 遂行이 어렵다고 判斷되는 分野等を 除外시킨 殘餘事業을 事業選定基準에 依據 圖域別, 國家別 및 分野別로 配分하여 8個國의 7개分野 11個事業을 主候補事業(Prime Project Candidates)으로, 같은 方法으로 11個事業을 豫備候補事業(Reserve Project Candidates)으로 選定하였다.

그러나 1992年度の 事業實施中에 實際 受援國에 對한 事前調査를 爲한 出張準備過程에서 ①主 또는 豫備候補事業中 公館을 통해 보다 具體的인 事業內容 把握이 不可能하였거나, 內容把握을 爲한 質疑에 受援國의 應答이 없었던 境遇, ②P/I調査를 하가에는 受援國의 政情不安, 調査團의 身邊安全確保 困難等の 事由가 發生한 境遇 ③事業確認過程에서 受援國이 F/S를 直接着手 하였거나 또는 다른 供與國에서 먼저 着手된 境遇, ④外務部, 建設部等關係部處와의 協議過程에서 否定的 意見이 提示되거나 當分間 保留意見이 提示된 境遇等の 事由로 當初 計劃했던 事業이 大幅 變更되었다.

이와같이 開發調査의 需要調査와 P/I實施까지의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點은 開發調査에 對한 事前知識이나 認識이 不足하고, 豫算制約等으로 이의 實施與否에 對한 確信感의 缺如等에서 오는 公館에서의 事業發掘에 對한 積極性缺如로, KOICA와 事業發掘의 主要通路인 公館과의 事業發掘體制가 너무 脆弱하다는 점이다.

2. 政策方向

主要先進國의 境遇에는 援助實施機關의 彪대한 海外組織이나 在外公館等を 通하여 優秀한 事業發掘을 爲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을뿐 아니라 年次協議에 依한 相對國 政府와의 充分한 政策對話를 通하여 優秀事業을 發掘 및 形成하는 積極的인 協議主義方式(Consultation Basis)을 採擇하고 있다.

國別候補事業리스트中에서 良質의 프로젝트를 選定하는 方式을 取하지 못하고 受援國의 要求를 그대로 受容하는 實情인 바 이는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初創期에 나타나는 業務現實로 理解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젝트의 審査를 現行 要請順序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一定期間동안 모아서 優先順位를 가려내는 프로젝트 集合評價制度(Project Pool Appraisal System)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類似한 制度的 接近을 1992年의 開發調查對象事業 選定을 爲한 事業發掘 過程에서 試圖한 바 있는데, 韓國國際協力團은 3次에 걸친 需要調查를 在外 公館(30個), 政府關聯部處(15個), 政府投資機關 및 研究所等 出捐機關(23個), 民間用役協會(2個), 大學地域研究所(4個)等 總 74個 機關에 實施한 結果 39個 國으로부터 56件의 事業要請書가 接收되었다.

그러나 韓國國際協力團 發足後 最初로 實施한 需要調查에서 나타난 共通의 인 特徵은 開發調查에 對한 事前知識이나 認識의 不足과 事전에 配布한 11個 問項에 達하는 需要調查表에 對한 記述上의 어려움等으로 事業名만을 記載한 것이 大部分이어서 事業의 概略의 인 內容把握마저 어려운 實情이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單純한 事業리스트의 獲得은 開途國의 長期開發計劃書나 또는 一部國家들이 每年 作成하는 T/A事業 提議目錄(印尼의 境遇 國家開發企劃部는 1992/1993年度 T/A事業으로 24個 分野에 353個를 提示하고 있음) 또는 世界銀行에서 提示하고있는 開途國의 Cofinancing 프로젝트 目錄에서 記述되고 있는 內容보다도¹⁷⁾ 資料의 價値가 뒤떨어진 것이 事實이므로 事業發掘에 큰 도움이 안되었다.

따라서 56件의 事業中 ①漠然히 事業題目만을 提示하고 內容이 具體的으로

17) 印尼國家開發企劃部, List of Technical Assistance Proposals 1992/1993 및 世界銀行, Projects with Potential for Cofinancing by Official Aid Agencies,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Private Sources, 1992.

UNDP에서 國別 및 分野別로 PreF/S하여 提示한 프로젝트目錄(例: Report of the Vietnam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ector Analysis, 1992)

記述되지 않는 事業, ②開發調查事業費나 本事業費가 지나치게 큰 大規模의 事業, ③開發調查事業으로 볼 수 없는 性質의 事業 ④國內 컨설팅業體에서 遂行이 어렵다고 判斷되는 分野等を 除外시킨 殘餘事業을 事業選定基準에 依據 圈域別, 國家別 및 分野別로 配分하여 8個國의 7개分野 11個事業을 主候補事業(Prime Project Candidates)으로, 같은 方法으로 11個事業을 豫備候補事業(Reserve Project Candidates)으로 選定하였다.

그러나 1992年度の 事業實施中에 實際 受援國에 對한 事前調査를 爲한 出張 準備過程에서 ①主 또는 豫備候補事業中 公館을 통해 보다 具體的인 事業內容 把握이 不可能하였거나, 內容把握을 爲한 質疑에 受援國의 應答이 없었던 境遇, ②P/I調査를 하기에는 受援國의 政情不安, 調査團의 身邊安全確保 困難等の 事由가 發生한 境遇 ③事業確認過程에서 受援國이 F/S를 直接着手 하였거나 또는 다른 供與國에서 먼저 着手된 境遇, ④外務部, 建設部等關係部處와의 協議過程에서 否定的 意見이 提示되거나 當分間 保留意見이 提示된 境遇等の 事由로 當初 計劃했던 事業이 大幅 變更되었다.

이와같이 開發調査의 需要調査와 P/I實施까지의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點은 開發調査에 對한 事前知識이나 認識이 不足하고, 豫算制約等으로 이의 實施與否에 對한 確信感의 缺如等에서 오는 公館에서의 事業發掘에 對한 積極性缺如로, KOICA와 事業發掘의 主要通路인 公館과의 事業發掘體制가 너무 脆弱하다는 점이다.

2. 政策方向

主要先進國의 境遇에는 援助實施機關의 彪대한 海外組織이나 在外公館等を 通하여 優秀한 事業發掘을 爲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을뿐 아니라 年次協議에 依한 相對國 政府와의 充分한 政策對話를 通하여 優秀事業을 發掘 및 形成하는 積極的인 協議主義方式(Consultation Basis)을 採擇하고 있다.

<圖 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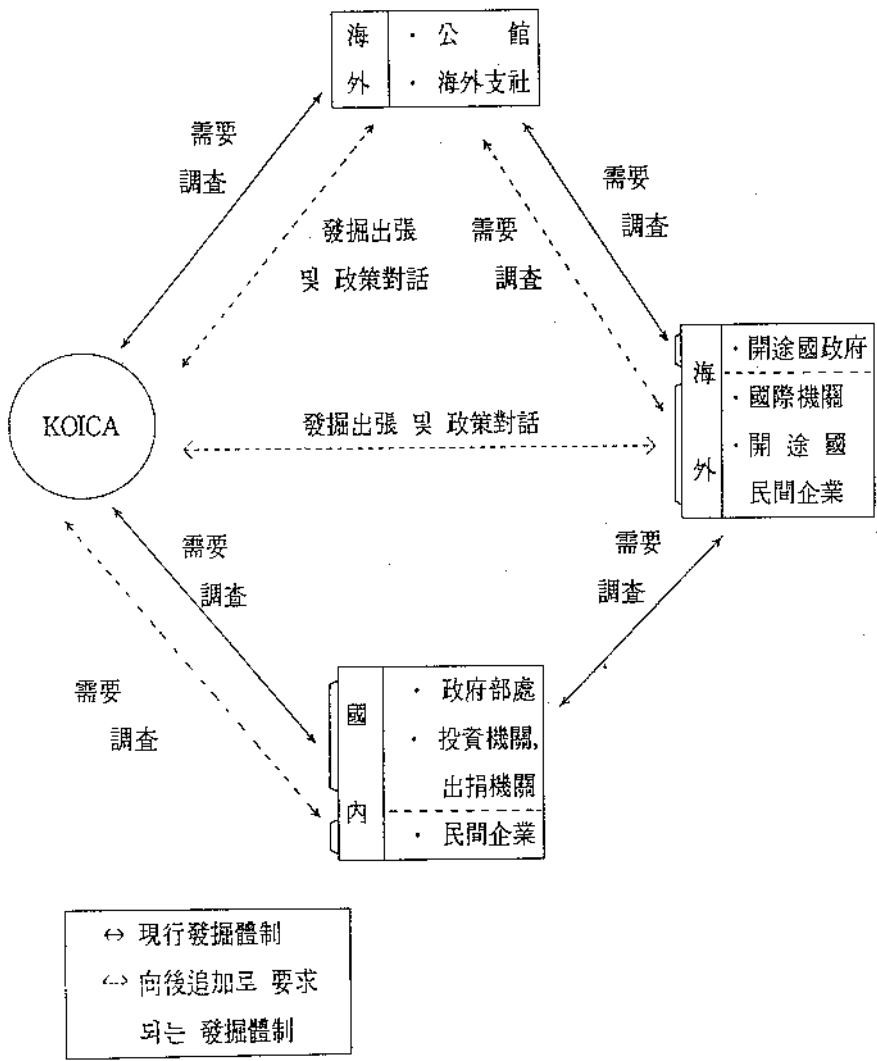
先進國의 事業發掘制度

國 名	內 容
프 랑 스	○ 各國과 每年 1회씩 經濟協力 全般에 걸친 協議를 함. • 파리와 現地에서 相互開催 • 必要에 따라 分野別 委員會를 設置함. ○ 協議團은 本國으로부터 7~8名을 包含하여 全體 10名程度로 構成됨. • 團長은 主要國인 境遇는 經協省의 局長級이지만 나라에 따라 • 經協省 및 現地大使館의 協力班 外에 研究省의 國內農業開發研究 센터, 海外科學技術研究公社에서 參加하기도 함.
스 웨 덴	○ 프로그램 支援對象國에 對하여 2年에 1회씩 政府次元의 協議를 實施하며 主要國家의 境遇 年 1회씩 實施함. • 同 會議에서 援助額, 援助條件, 援助實施節次等에 關한 協定을 締結함. ○ 協議團은 外務省 事務次官補, 2國間 援助部長, 地域擔當官, 大使館, SIDA本部 및 地域事務所 職員이 參加함.
네델란드	○ 年 2回 開催되며, 年初에는 國際協力總局의 部長 또는 課長級이되며 現地 公館에서도 2~3名이 參加를 하고 公館長이 團長이 되는 境遇도 있음. • 年初 會議는 國別計劃에 對한 說明 및 合議議事錄(R/D) 作成이 主目的임. ○ 中間會議는 7~9月頃 開催되는데 小規模單位로 派遣되며 案件의 進陟狀況의 체크가 中心 內容으로 됨.

國 名	內 容
西 獨	○ 主要國家에 對해서는 2年에 1回, 其他國家에 對해서는 年 1回 獨逸 및 相對國에서 開催됨. ▪ 2個年間に 걸쳐 提供할 支援額을 提示하고 個個 프로젝트에 對하여 協議하게 됨. ▪ 最近에는 相對國에 對하여 長期的인 計劃을 알려주기 爲 해 主要國에 對해서는 每2年마다 會議을 開催함. ○ 60~70個國을 對象으로하며, 每年 15~20個國과의 協議를 獨逸에서 實施하고, 其他 15~20個國에 對해서는 相對國에서 協議를 함. ○ BMZ, 大使館, GTZ, KfW 關係者가 參席함. ○ 合議結果는 合議文 形式으로 作成함.
英 國	○ 印度와 파키스탄에 對해서는 年 1回 次官補가 訪問하여 援助의 全般的인 範圍에 對하여 協議함. ○ 아프리카局長은 年 1回程度 東·南北 아프리카를 訪問 合議함. ○ 其他地域은 ODA 地域事務所 所長 및 職員이 數時 管轄國을 訪問하여 合議함.
日 本	○ 援助規模가 큰 約 25個國을 對象으로 함. ○ 有償協力은 外務省, 經濟企劃省, 大藏省, 通產省 職員 10名 以內로 構成 ○ 無償協力은 外務省 및 JIAC職員 10名 以內로 構成 ○ 主要協議 內容은 當該國으로부터 合議받은 案件에 對하여 ▪ 要請案件이 當該國의 實情에 一致하는지 與否 ▪ 當該國에 있어 優先順位 程度 ▪ Local Costs 負擔을 爲한 技術 및 財政的 能力 ▪ 日本과의 2國間 關係等を 考慮, 適切한 事業規模, 形態, 分野等を 決定함.

資料：池鎔基, 韓國開發援助政策과 比較開發調查論, 韓國國際協力團(1992.12)

〈圖 V-12〉 事業發掘體制의 強化模型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每年 1~3月中(또는 前年度 末頃)에 定期的으로 翌年度 事業에 對한 需要調査를 完了하여 關係機關과의 豫算審議時 充分한 反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韓國國際協力團과 國內,外 關聯機關과의 事業發掘체널을 보다 公式化 또는 擴大하여 積極的인 發掘體制를 構築하는 일이 時急하다. 受援國에서 要請하는 프로젝트에 對해서 海外公館으로 하여금 美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Project Identification Document(PID)와 같은 Proposal Paper를 作成케 하는等 最初評價(Initial Assessment) 機能을 強化토록 하고 韓國國際協力團 職員의 發掘出張과 開途國과의 政策對話實施는 勿論 外國에서와 같이 比較的 많은 海外情報를 蓄積하고있는 國內 民間企業을 통한 事業發掘이 積極化 되어야 할 것이다.(圖 V-12參考) 優秀事業의 發掘(Identification) 또는 着想(Conception)을 爲해서는 事前分析(Preliminary Study)을 土臺로 檢討할 必要性이 있는 프로젝트의 目錄을 作成하게 되고 이 段階에서는 當該分野 專門家들의 經驗과 創意性에 크게 依存할수도 있을것이다. 情報나 資料가 制限되어 있기는 하지만 概括的인 實現可能性分析이 있어야하며 프로젝트의 選擇與否를 決定짓는 最終段階에서는 經濟的, 技術的, 制度的, 財政的, 社會的, 環境的인 妥當性(Feasibility)과¹⁸⁾ 費用과 便益을 圖謀함으로써 測定되는 能率性 乃至는 收

18) 프로젝트의 妥當性(Feasibility) 審査基準(Baum & Tolbert)

檢討項目	內 容
① Technical Analysis	• 技術側面(技術水準, 原料調達, Utility等) • 事業規模](Economies of Scale等) • Location • 工事期間 • Process
② Economic Analysis	• 國家的 見地에서 본 Net Benefits • Shadow Prices • Opportunity Cost
③ Financial Analysis	• 直接的인 受惠者立場에서 본 財務的 效果 • 事業自體의 財政收支 • 政府立場에서의 財政收支
④ Social Analysis	• 事業便益의 階層間 配分效果 • 消費, 貯蓄에 미치는 影響 • 民間部門, 公共部門에 미치는 效果
⑤ Institutional Analysis	• 事業의 內部的 組織構造 • 監督者 및 經營者의 能力 • 訓練施設의 具備程度 • 專門職, 技術職要員의 確保狀況
⑥ Environmental Analysis	• 環境과 關聯된 諸般事項

益性の側面, 國家의 目標와 投資優先順位에 비추어 본 妥當性, 社會正義의 觀點에서의 適合性(Desirability)等を 勸案토록하고 境遇에 따라서는 政治的 折衝이나 戰略的 必要에 依해서 프로젝트의 選擇이 左右되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開途國에서 프로젝트의 選擇決定이 不合理하게 이루어지는 原因을 Puri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 ① 主要人士들이 프로젝트를 自身들이 認定을 받기爲한 手段으로 利用하는 境遇
- ② 政治的인 흥정의 對象이 되는 境遇
- ③ 財源供給側이나 援助提供機關이 實際 與件을 無視한 基準을 適用한 境遇
- ④ 分析과 決定이 여러가지 制約때문에 拙速으로 이루어지는 境遇
- ⑤ 國家目標과 프로젝트의 利益사이에 葛藤과 衝突이 생기는 境遇
- ⑥ 政府가 外部效果나 戰略的 考慮때문에 妥當性이 낮은 投資를 獎勵하는 境遇

프로젝트의 選擇에 있어 合理性을 높이기 爲해서는 達成하려는 目標과 選擇의 準據(Criteria)가 明確하게 規程되어 있어야하며, 프로젝트의 選擇決定에 必要로하는 情報과 知識을 完全히 갖추고있고, 決定者의 個人的인 偏見이나 選好, 政治的인 考慮等 非合理的인 要素들은 排除되어야하며, 對象國과 類似한 狀況에 處했던 다른 地域이나 國家의 經驗을 參照하거나 對外援助機關들의 投資優先順位 및 支援事例等を 參考로하는것도 바람직하다. 프로젝트가 高度의 冒險이나 危險이 內包된것, 財源動員이나 原料調達이 不可能한 것, 技術이나 技能人力の確保가 어려운 것은 適合하지 못한것으로 排除되어야 할 要素이다.

事業發掘時 主要評價項目은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다.

- ① 政策 및 프로그램 側面
 - 國別戰略과의 附合性
 - 環境的, 性別 聯關性
 - 社會的 開發側面
 - 既存 프로그램 및 活動과의 補完性

- 要求되는 技術과 調達裝備에 對한 能力
- ② 事業目標
 - 事業에 對한 目標, 目的 및 結果를 明細化
 - 目標達成을 爲한 리스크의 範圍
- ③ 組織構造 構築
 - 事業施行機關의 目標와 施行上의 責任分擔과의 附合與否
 - 提案된 事業活動을 爲한 代替機關이나 管轄機關의 存在有無
 - 類似活動時 受援機關의 經驗有無
 - 政府의 政治的, 財政的 支援의 程度
- ④ 政治 및 安全問題
 - 反射的인 政治上의 聯關性과 身邊安全有無
- ⑤ 期待利益, 豫見되는 持續可能性, 리스크等 : 社會的, 性別分類에 따른 利益, 經濟的, 組織構造的, 環境的, 技術的, 商業的 利益(受援國과 供與國의 利益으로 區分)
- ⑥ 經驗에 依한 敎訓
 - 評價研究를 통해 類似類型으로 부터 얻어진 經驗
 - 國別프로그램에 包含될 境遇 事業提案書의 適合性 評價

Bruce는 프로젝트 企劃體制的 效率性を 提高하기 爲한 制度的인 要因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 ① 政策決定者가 合理的인 프로젝트企劃過程의 重要性을 認定할 것.
- ② 關聯機關들의 機能과 責任을 明確히 規定하고 組織構造上의 連繫를 強化할 것.
- ③ 프로젝트企劃 및 運營部署에 有能한 專門要員과 支援人力을 確保할 것.
- ④ 프로젝트企劃에 關한 各 段階의 作業(活動)節次를 明確히 規定할 것.
- ⑤ 妥當性 分析, 費用/收益(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等 共通的인 方法論을 補給, 活用할 것.
- ⑥ 繼續的인 評價, 環流體制를 維持할 것.

- ⑦ 採擇된 프로젝트의 執行에 必要한 所要財源과 人力을 蹉跎없이 供給하기 爲한 綜合的 資源豫算制度를 運營할 것.

第7節 事後管理의 強化와 評價制度의 導入

1.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의 質的向上을 期하기 爲해서는 樹立된 政策이나 이의 實施에 對한 을마른 評價와 事後管理를 通해 問題點과 援助의 成果를 밝히고 援助의 效果性을 測定하여 當初事業目的의 達成程度를 判斷토록하며 次後의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을 提供해 주어야 된다.

事業評價는 이를 넓은 意味로 볼 때 實施時期, 目的 및 技法에따라 事業의 推進實績을 單純히 點檢(Monitoring)하거나 評價(On-Going Evaluation : 執行中 評價)하는 境遇와 모든成果를 事後分析하는 事後評價(Ex-Post 또는 Post Evaluation)로 大分할 수 있다.

前二者는 事業實施中 各種 데이터를 定期的으로 蒐集, 整理하며 實際 事業推進狀況과 當初計劃을 比較, 分析한 後 必要한 措置를 講究함으로써 事業管理에 必要한 情報을 提供해주는 制度이고(嚴密한 意味에서 모니터링은 事業計劃의 管理業務로 執行中 評價와는 差異가 있음), 事後評價制度는 事業의 實施結果를 組織的이고 客觀的으로 檢討하여 事業의 效果性, 效率性(能率性), 自生能力, 當初事業目的의 達成程度를 判斷하고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을 提供해 주는 것으로서 事業評價에있어 點檢도 重要하지만 弱極的으로는 事業의 效果性(Effectiveness)과 效率性(Efficiency)을 測定하는 作業이 核心的인 것이다.

OECD 援助評價 專門家그룹의 報告書는 評價의 類型으로 事業發掘後 最初評價(Identification 또는 Appraisal), 事前審查(Appraisal Ex Ante), 事業進行中 또는 終了時評價(Evaluation), 事業施行中評價(Mid-Term Evaluation 또는 On-Going Evaluation), 事後評價(Ex-Post Evaluation), 部門別評價(Sector Evalua-

組織과 人員의 構成	評價의 目的	評價方法
日 本 • 外務省, 經協評價 委員會(隨時 構成 10名), 評價室 計劃課(14 名), JICA 計劃 部 評價 監理課 (6名)	• 援助效果의 測定 • 問題點에 對한 迅速 한 措置 • 評價結果의 向後 援助 政策反映	• 經協平價委員會: 評價基 準 및 方法의 策定, 年度 別 評價 計劃樹立, 對象 條件의 選定, 評價效果의 整理 • 外務省, JICA: 獨自의 또는 共同으로 評價實施
英 國 • 海外開發廳 評價部 • 7名으로 構成 이中 2名은 經濟學者	• 國會, 國家에 英國의 開發援助實績 成果를 報告함 • 評價에서 얻어진 敎訓을 檢討하여, 將來의 援助活動에 利用	• ODA의 海外駐在事務所, 大使館 等 現地機關으로 부터 報告를 받거나, • 評價미션(ODA스텝의 觀察, 專門家, 研究機關等 外部에 委託하는 方法, 兩者의 併合等 3가지 形態가 있음)의 派遣에 依함
프 랑 스 • 經濟協力部, 開發政策局, 評價室 • 4名으로 構成, 이中 1名은 常勤컨설턴트	• 援助의 適正성과 效果的 實施를 確保코자 함 • 援助效果의 形態別 比較檢討 • 開發計劃과 實施事業의 成果를 確認	• 評價팀(平均3名)을 約 1 個月 現地에 派遣(例로 農業關聯事業의 境遇 經濟學, 社會學, 農學의 各 專門家로 構成) • 效果에 重點을 둔 評價를 實施하는 마 社會經濟分析과 巨視經濟分析을 링크시킴 • 事後評價단을 實施

tions)等으로 區分하여 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援助規模가 크게 增大되고 있는 日本은 80年代 以前에는 援助實施機關을 中心으로 援助影響을 主로 調査해 왔으나 1981年 1月에 外務性 經濟協力局內에 經濟協力評價委員會를 設置하여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評價를 實施하게 되었으며後에 JICA와 OECF에서도 專擔部署를 設置하여 各種 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이들이 實施하는 評價의 種類는 事業段階別로 ① 事前審査, ② 執行中點檢, ③ 事業終了時 評價 및 ④ 事業終了後 一定期間이 經過後 行하는 事後評價等으로 區分되며 外務省은 原則的으로 ④의 境遇만 實施하고 其他의 評價는 基本的으로 援助實施機關이 行하고 있다. 이들이 行하는 各種 形態別 評價의 特色은 ① 重點援助對象國에 對해 兩國의 官民學者와 專門家等이 行하는 國別評價를 爲始하여 ② JICA事業實績에 對한 部門別評價, ③ 在外公館에 依한 評價, ④ 日本과 다른나라 援助機關이 主要援助國을 對象으로 프로젝트에 對해 事後에 行하는 合同評價, ⑤ 外國人 援助專門家が 第3者的 入場에서 行하는 國際專門家에 依한 評價, ⑥ 日本 民間專門家에 依한 評價等을 行한다는 點이다. 外務省은 自體 및 援助實施機關에서 實施한 이들 各種 評價結果를 經濟協力評價報告書에 聚合하여 1982年부터 每年 公表하고 있다.

援助의 評價에 있어 評價事項이 各 國家別로 多少 相異한데 評價事項이 매우 類似한 英國과 濠洲는 技術的, 財政的, 經濟的, 制度的, 社會文化的, 環境的 側面과 女性開發, 成果와 管理, B/C分析等의 諸般側面에서 評價를 行하고 있다.

評價制度가 매우 體系的인 獨逸의 境遇 經濟協力部(BMZ)는 그들이 支援하는 프로젝트를 프로젝트進行評價(Project Progress Reviews), 프로젝트 最終段階評價(End-of-Project Reviews), 프로젝트 遂行後의 最終評價(Final Evaluations Following the End of Project)로 區分하여 效率性을 定期的으로 評價하고 그 效果를 議會와 一般國民에게 提供한다.

프로젝트의 評價體系를 보면 評價者의 評價에 對한 理解를 容易하게하고 特定基準에 基礎한 比較를 容易하게 하기 爲해 評價者의 口頭評價를 計數評價로

解析한 5段階 評價體系를 使用하고 있으며 評價觀點은 目標, 計劃, 實行, 調整 및 開發政策의 效率性等的 5個로 區分하여 各各 順位가 주어진 3個의 下位側面에 對한 加重値를 附與하고 있다.

<評價의 5個 觀點>

- ① 目標(Objectives) : 目標水準을 決定하기 爲해 目標의 明確性, 實行可能性, 兩立可能性(供與國과 受援國의)을 評價
- ② 計劃(Planning) : 計劃의 基礎, 組織, 結果를 評價
- ③ 實行(Implementation) : 技術의 遂行, 投入量, 遂行組織을 評價
- ④ 調整(Steering) : 進捗事項點檢, 計劃과 目標調整, 事業段階別 活動調整等を 評價
- ⑤ 開發政策의 效率性(Development-Policy Effectiveness) : 目標達成, 收益·費用比率(B/C Ratio), 持續性에 主眼點을 둔 影響(Impacts)等を 土臺로 評價

開發援助의 歷史가 짧고 規模가 적은 우리나라의 境遇에 事後管理 및 評價에 疏忽히 하여온 點을 否認할 수 없다. 아직까지 開發援助에 對한 評價는 實施된 바가 없으나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今年初에 事後管理實態를 調査한 바 있다. 1990-1991年間の 機資材 供與事業의 事後管理實態를 例로 問題가 提起된 主要內容을 보면 매뉴얼 未送付가 19件, 援助品の 自然磨耗等에 따른 不良品船積이 10件, 機資材 設置 및 操作未熟에 따른 問題發生이 9件, 必需部品漏落이 7件, 通關費 追加支援事例가 4件, 仕様 未確認이 3件等 總 76件이다.

이를 內容別로 보면

첫째, 總 76件의 事後管理問題 發生中 매뉴얼 및 部品漏落이나 不良品船籍, 通關費 事前未確認에 依한 追加費用 發生等이 40件으로 輸出業體 不注意 및 過失에 依한 問題發生이 全體의 約 53%나 차지하고 있다.

둘째, 供與機資材의 設置나 操作·運營에 따른 措置未備와 現地에서의 整備 및 部品調達體制 未備에 依한 問題事例가 27件으로 全體의 約 36%를 차지하

고 있다.

셋째, 船積物品 破損이나 紛失事例가 6件으로 供與對象國 政府當局의 關心이나 監視가 未洽한 點이 指摘되고 있다.

넷째, 供與物品에 對한 要請 樣式等이 定型化되고 있지 않아 要請品目에 對한 基本仕樣 및 關聯事項의 事前 未確認으로 因한 問題가 3件이 發生하였다.

<表 V-14> 機資材供與의 事後管理現況 (1990-1991)

區 分	原 因	發生 件數	該 當 國家數	該 當 業體數
計		76	42	19
매뉴얼 未備	業體不注意	19	17	11
必需部品未備	"	7	6	6
不良品 船積	"	10	9	7
仕樣(SPEC) 未確認에 따른 問題發生	仕樣未確認	3	3	3
船積物品 破損紛失	現地監督不徹底	6	6	4
設置 및 操作未熟	操作技術未備	9	8	6
援助品の 自然磨耗等에 따른 後續支援	現地 事後 A/S 體制 未備	18	15	8
通關費 追加	業體事前未確認	4	4	2

2. 政策方向

작은 援助規模로 最大의 支援效果를 거두기 爲해서는 事後管理의 徹底와 事後評價가 必히 實施되어야 한다. 事業效果에 對한 評價는 두가지 次元에서 測定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事業의 直接的인 產出(Output)에 對한 評價이고 다

른 하나는 事業이 가져온 影響(Impact) 또는 成果(Performance)에 對한 評價로서 事業이 目標로 했던 受惠者(Target Beneficiaries)가 惠澤을 입었는지? 解消하고자 했던 問題點과 障礙가 除去되었는지? 등에 對한 結果 및 原因이 深度있게 分析되어야하며 評價結果는 是正措置를 取하거나 管理體制를 改善하는데는 勿論 次期事業을 計劃하는데 適切히 反映되어야 한다.

DAC는 開發援助의 質의 向上(To Improve the Quality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爲한 評價業務의 重要性을 強調하고¹⁹⁾ 開發援助의 質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期待以下の 投資收益率, 事業費用의 超過, 事業範圍의 變更, 事業의 持續性缺如等 事業實施中이나 完工後 자주 發生하는 問題點들을 들고 이런 問題點들은 大部分이 보다 確實한 事業準備와 審査를 通해 豫測 또는 豫防될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不明確한 事業目的, 非現實的인 目標設定, 지나치게 樂觀的인 事業實施計劃等이 事業審査段階에서 흔히 나타나는 誤謬의 代表的인例로 評價되었다.

開發援助의 質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要素中 事業計劃 및 實施段階에서 考慮해야 할 事項으로 不適切한 技術의 選擇이 問題로 提起되고 있는데 이로因해 技術利用能力의 不在, 資本集約的技術로 因한 勞動力 代替, 操業中斷, 施設維持의 困難等이 惹起되고 있으므로 國家 및 關聯 産業部門의 開發優先順位와의 附合, 技術協力 및 資本協力の 均衡, 人的資源의 能力等 現地力量의 開發을 念頭に 두어야하며 特히 援助事業의 顯示의 目的達成에 急急하여 擔當職員의 管理技術研修等 人的資源開發이 疏忽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開發環境 亦是 援助事業의 質의 向上을 爲한 要因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事業과 關聯된 政策環境이 事業審査나 事業實施段階에서 充分히 考慮되었는지, 또

19) DAC의 援助評價專門그룹(DAC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은 事業 評價業務의 役割을 開發援助의 Effectiveness와 關聯 事業計劃 및 實施 段階(Design and Implementation), 政治·社會·經濟的 開發環境(Development Circumstances), 援助供與國의 政策(Donor Policies), 增加되고 있는 非프로젝트型援助(Non-Project Assistance), 開發事業의 持續性(Sustainability)等の 觀點에서 提起하고 있다.

한 援助國과 受援國의 政策對話 및 政策助言이 適切하였는지를 事業評價時에 檢討해야하며, 供與國의 財政, 經營, 技術의 支援이 終了된 以後에도 開發事業이 適切한 便益을 長期間 提供될 수 있도록 하는 事業의 持續性(Sustainability)²⁰⁾ 與否가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前述한 機資材供與事業의 事後管理와 關聯한 改善方案은 첫째, 事後管理에 關한 豫算을 別途로 策定하여 適期에 機動性있는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次的으로 1992年度에는 124百萬圓의豫算을 確保하였으나 事業規模에 比例하여 漸次的으로 豫算을 增大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輸出業體에 對한 管理를 보다 徹底히 하여야 할 것이다.

關聯業體에 對하여서는 公文 및 定期 懇談會를 通하여 注意를 促求하고 擔當職員에 對하여서는 關係規程이나 問題事例에 對한 教育을 實施하고 事後管理問題 頻發業體에 對하여서는 見積依賴制限等の 措置도 아울러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事後管理問題 發生事例集을 作成하여 各公館및 輸出業體에 配付함으로써 類似事例 再發을 最大한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事後管理를 爲한 海外出張實施 및 아프터서비스팀 派遣活動 強化이다.

主要 援助對象國에 對하여서는 現地出張을 通한 供與機資材 活用實態및 改善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아프리카, 中南美地域等 供與物品 紛失이 잦은 地域에 對하여서는 物品船積時 當該公館을 通하여 相對國 政府에 事前注意를 促求하는等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 事業持續性의 檢證事項 (DAC)

- 納得할만한 政策環境 및 必要한 政策變更이 事業實施가 開始되기 以前에 合意되었는지의 與否
- 明白하고 現實의인 目標의 設定與否
- 受惠者의 管理 및 技術能力에 맞는 事業計劃樹立 與否
- 最初의 費用算定, 事業의 運營 및 維持面에서의 適正性
- 女性을 包含한 目標그룹 및 現地當國의 能動的 參與 與否
- 受惠者의 經濟的, 社會的狀況에 適正한 技術의 選擇與否
- 實際의인 所要期間檢討
- 一旦 外部의 援助가 終了되었을 때의 管理能力 및 維持體系 保有與否
- 國內의 社會, 文化, 環境에 對한 適應度
- 環境의 持續性이 있는지 與否

第8節 共同協力事業의 積極推進

1.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는 事業에 따라서는 어느 한나라나 一個 援助機關으로서는 經驗 및 專門人力의 不足과 豫算의 制約等으로 效果的으로 遂行하기에는限界가 있기 때문에 開發事業의 經驗과 專門의知識이 蓄積되어있는 先進國 또는 國際機構와 共同으로 事業을 推進함으로써 援助의 效率을 期할 수 있다.

이러한 共同協力事業은 各國이 保有하고있는 高度의 專門知識, 豊富한 經驗 및 廣範圍한 情報의 利用이 可能하고, 政治的 中立性을 確保할 수있는 利點이 있으며 難民, 環境, 麻藥問題等 二國間 援助로서 支援困難한 事業에 參與가 可能하게 된다.

國際機構와의 共同協力事業의 境遇에는 垂直, 水平協力等 2가지 方法이 있으나 現在 우리나라 境遇에는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一環으로 UNESCO等の 一部 國際機構에 支援을하고 있는 實情이며 協力の 歷史가 日淺할 뿐아니라 可用財源이나 技術의 不足으로 大規模事業이나 尖端技術分野에 對한 協力事業을 單獨으로 推進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援助國이나 援助機關과의 政策協助나 共同事業의 推進이 早晚間 必要한 課題로 擡頭될 것이다.

<圖 V-14>

共同協力事業의 形態

垂直協力(Vertical Cooperation)	水平協力(Horizontal Cooperation)
○ 國際機構等이 形成한 事業을 協力團이 遂行 ○ 國際機構等이 遂行한 事業에 對한 協力團의 運營, 管理 ○ 國際機構等에 依한 資金 支援으로 協力團에서 事業 妥當性 調査 遂行	○ 協力團과 國際機構等이 1個事業에 對하여 分野別로 事業分擔實施 ○ 國際機構等이 遂行하는 事業에 協力團이 參與 • 世界銀行等이 資金支援한 事業과 關聯하여 協力團에서 研究生招請이나 專門家派遣 • 協力團이 資金支援한 事業에 對하여 UNDP等에서 專門家派遣 等

2. 政策方向

先進國 및 國際機構와의 共同協力事業은 可用財源, 經驗 및 技術不足等の 諸般與件을 勘案하여 段階의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第1段階로는 情報 및 人力交流을 促進시키도록 한다.

첫째, 資料蒐集 및 情報蒐集 體系를 構築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重點協力對象國에 關한 國別研究報告書(Country Report), 分野別研究報告書(Sector Report)를 蒐集하여 第3國이나 國際機關의 客觀的인 分析 및 評價를 1次的으로 活用하도록 하고 世界銀行等이 이들 國家에 融資해주고 있는 프로젝트에 關하여 事前計劃에서부터 事後評價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資料를 徹底하게 蒐集分析하여 우리가 計劃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活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各種 國際會議나 세미나 및 워크샵에의 積極的인 參加이다.

世界銀行 및 國際機構等이 主管하는 會議에 積極 參與함으로써 支援對象國 政府와의 自然스런 政策對話가 可能하며, 다른 援助供與國의 援助動向을 把握할 수 있다. 또한 協力團과 援助關聯機構와의 定期的인 交換訪問 및 研修計劃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第2段階는 支援可能한 프로젝트의 發掘・形成 및 參與段階이다.

우리나라와의 地域的인 與件等を 勘案하여 優先 아시아 開發銀行(ADB), ESCAP, Mekong Committee等과 보다 緊密한 協議 및 協助體制를 構築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方式은 專門開發金融機關이 推進하는 良質의 좋은 프로젝트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確保되며(Parallel System) 協調融資機關의 專門知識과 經驗을 배우고, 또한 行政費用도 節減할 수 있다.

具體的인 方法으로는 國際機構等に 프로젝트의 發掘 또는 形成段階에 있는 事業에 對한 人的 또는 財政支援을 通하여 本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거나 國際機構와의 信託基金設置等이 檢討될 수 있다. 特히 向後 UN等

國際機構에 進出할 우리나라 專門家の 確保 및 充員의 業務를 보다 效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國家專門人力管理制度(National Recruitment Services)를 設立하여 共同協力事業을 增進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年豫算에 1次的으로 메콩委 事業參與를 爲한 基盤構築을 爲하여 機資材等 供與事業費에서 메콩委 라오스 國境地域 電力化 事業에 23萬\$을 支援키로 하였고, UNIDO와는 外務부와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1989年에 協定을 締結하여 年間 30萬\$ 規模의 資金을 運用中에 있으며 1992年度에 UN과의 共同技術協力事業으로 9個課程 144名의 研修生 招請訓練을 實施하였다.

第3段階는 共同開發事業의 參與段階이다.

第2段階에서 우리나라가 支援 또는 協力한 事業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 漸次的으로 事業對象 및 規模를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9節 執行業務體制的 確立

1. 現況 및 問題點

우리나라의 開發援助業務는 그동안 各 部處에서 遂行하여 오는 過程에서 人力不足 및 專門性缺如로 效率的인 執行體制를 갖추지 못한 境遇가 많았다. 韓國國際協力團의 發足과 함께 各種 執行業務를 改善토록 努力하고 있으나 20年 가까운 執行慣行을 하루아침에 軌道에 올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100個内外의 國家에 對한 國產物品을 支援하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는데 1991~1992年 境遇 다음의 問題點들이 提起되었다.

첫째, 要請時期의 遲延이다 1992年の 總要請件數 171件中 後半期 要請이 102件으로 全體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特히 4/4分期中 要請이 43件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要請接收日로부터 物品船積日까지 通商 2個月 内外의 長期間이 所要되는 點을 勘案할때, 當該年度內의 豫算執行等 圓滑한 業務推進에 많은 어려움이 露出되고 있다.

<表 V-15>

機資材의 要請時期

(單位: 件)

分期別	計		1/4		2/4		3/4		4/4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要請件數	143	171	25	20	43	49	50	59	25	43
(%)	(100)	(100)	(17.5)	(11.7)	(30.0)	(28.7)	(35.0)	(34.5)	(17.5)	(25.1)

둘째, 頻煩한 分割要請 事例이다.

1國當 平均 要請件數는 1.6件이며 2回以上 要請한 國家의 平均 要請件數가 同期間中 2.6件에서 2.3件으로 減少되었으나 아직도 要請物品을 分割要請한 事例가 많다.

機資材供與 業務는 契約事務處理規定等에 依하여 業體選定에서부터 船積까지 複雑한 節次와 많은 期間을 要하기 때문에 業務處理의 複雜化로 因한 適期 船積이 遲延되고 있다.

<表 V-16>

機資材의 要請回數

(單位: 件)

要請回數	計		1回		2回		3回		4回		5回以上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國 家 數	90	109	57	61	16	31	15	12	1	5	1	-
(%)	(100)	(100)	(63.3)	(56.0)	(17.8)	(28.4)	(16.7)	(11.0)	(1.1)	(4.6)	(1.1)	(-)
要請件數	143	171	57	61	32	62	45	36	4	12	5	-
(%)	(100)	(100)	(39.3)	(35.7)	(22.4)	(36.3)	(31.4)	(21.0)	(2.8)	(7.0)	(3.5)	(-)

셋째, 少量多品目の 要請이다.

1992年の 要請品目の 數量別로는 6個 以上の 品目要請이 33件으로 全體의 24.6%이며, 11個以上 品目要請이 18件으로 13.4%를 차지하여 支援對象國別 配定規模가 10余萬\$의 小規模입을 勘案時 少量 多品目 要請으로 援助效果의 半減은 勿論 業務處理의 複雜化를 招來하고 있다.

넷째, 仕様不明確 品目要請事例이다.

物品要請中 仕様 不明確으로 因하여 管轄 公館에 再確認한 事例가 21件으로 全體15.7%를 차지하여 業務遲延과 通信費用에 따른 浪費事例가 많다.

<表 V-17>

機資材의 要請品目數

(單位:個, 件)

要請品目 數 量	計		1~5		6~10		11~20		21~50		50以上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要請件數	119	134	88	101	18	15	4	9	7	6	2	3
(%)	(100)	(100)	(74.0)	(75.4)	(15.1)	(11.2)	(3.4)	(6.7)	(5.9)	(4.5)	(2.0)	(2.2)

註: 現金要請은 除外

다섯째, 豫算超過 要請事例이다.

物品要請中 豫算超過 要請事例가 24件으로 全體 17.9%를 차지하여 管轄公館과의 再協議에 따른 業務處理가 遲延되고 있다.

여섯째, 當初 要請品目の 隨時變更이나 國內生産 不可品目 要請(11.9%)으로 因한 業務 遲延事例가 頻繁한 편이다.

일곱째, 供與目的이나 受惠機關이 不分明한 境遇가 많으며(45件, 33.6%), 要請形式에 있어 相對國의 外交文書에 依한 公式要請은 23%에 不過하고 公館文書나 電文(54%) 및 外務部 要請에 依한 緊急 또는 特別支援(23%)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2. 政策方向

機資材 要請과 關聯 在外公館은 從來 駐在國 政府의 要請을 그대로 受容하는 要請主義方式에서 協議主義 方式으로 轉換하여 在外公館의 1次的 評價와 調査機能을 強化하되 供與目的과 受惠機關을 確實히 하고, 要請形式은 相對國의 外交文書에 依한 定式要請의 節次를 取하도록 한다. 供與機資材는 當該年度 上半期中 要請토록하되 國當支援金額의 規模가 少額임을 勘案하여 可及的 品目數를 줄이고 이를 1회에 一括要請함으로써 供與物品의 適期供給으로 援助效果를 提高해야 한다.

支援勸獎品目 및 止揚品目 리스트를 提供하여 在外公館이 相對國 政府와의 協議時 便宜提供은 勿論, 相對國의 實質的인 經濟開發과 福祉向上에 寄與하도록 하고 機資材 要請書, 品目리스트 및 機資材供與業務關聯 체크리스트等 各種樣式을 定型化하여 業務의 效率性을 提高토록 해야 될 것이다.

第 10 節 專門人力の 確保

1. 現況 및 問題點

援助事業의 效果性이나 能率性의 提高 또는 援助의 質의 向上과 關聯하여 專門人力の 確保는 가장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될 課題中의 하나이다.

특히 技術協力은 사람이 協力の 主體가 되므로 協力 活動에 直接 從事하는 사람은 充分한 能力과 風富한 經驗을 가진 優秀한 專門家이어야 하므로 專門人力の 確保는 事業推進의 重要한 要件이 되고 있다.

各國은 業務의 多樣化에 따라 多種多様な 人力確保를 爲해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데 日本의 境遇 人才의 確保를 爲해 專門家登錄, 公募, 特別囑託, 專門技術囑託, 國際協力專門家 制度를 活用하고 있으며 人才의 養成을 爲해 海外派遣前 短期研修, 中期研修, 海外長期研修를 通하여 語學能力과 專門知識을 習得시키고 프로젝트리더, 國際協力세미나, 留學生派遣, 海外開發專門家 招聘等 技術協力綜合研修를 實施하고 있다.

人力確保는 優先 量的으로 適正해야 하고 質적으로 優秀專門人력이 多數確保되어야 한다.

美國(AID)의 境遇 專門人力 從事者는 23種으로 總職員 3,413名中 64%에 達하는 바 이中 國內勤務는 1,555名の 40%인 628名, 海外勤務는 1,858名の 83%인 1,543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執行幹部, 行政管理, 秘書職等の 一般職을 除外한 專門職의 分野를 보면 프로그램 分析家, 農業專門家, 投資事業 및 借款資金 專門家, 財務管理者, 保健醫療專門家 等 5個分野從事者가 1,143名으로 33.5%를 占有하고 있다.

英國(ODA)의 專門人力은 런던 本부와 海外事務所 職員 總 650名中(스코트랜드 550名, ODNRI 400名 除外) 21%인 138名에 達하는데 이들은 經濟(67名), 農林水産(27名), 教育(10名), 保健·人口(9名) 및 工學(25名)等 5個分野로 區分되고, 諮問部에 66名, 地域部에 32名, 4個地域 海外事務所에 40名이 配置

되어 있다.

〈表 V-18〉 美國(AID)의 職員現況

(單位：名)

區 分		人員	%
國內人	定規職	3,413	31.7
	• 워싱턴 本部勤務(GS)	1,700	15.8
	• 海外勤務(FS)	1,713	15.9
	有關契約職	1,332	12.4
	計	4,745	44.1
海外現地 雇 傭 人	定規職	1,004	9.4
	有關契約職	5,005	46.5
	計	6,009	55.9
總 計		10,754	100.0

資料：美國 USAID(1992.9)

〈表 V-19〉 英國 專門人力의 部署別, 分野別 配置現況

(單位：名)

區 分	經 濟	農林水產	教 育	保健 및 人口	工 學
諮問部署 配置(66)	經濟 13	研究/環境 3	教育一般 1	保健 1	土木工學 2
	統計 8	農業研究 1	技術教育 2	人口 1	電氣 1
	社會開發 6	農林水產 1	計 3	保健經濟 1	機械 1
	財政 및 經營 8	(一般)		計 3	水資源 1
	小企業 2	林業 3			鑛業 1
	警察 2	水產業 2			에너지 1
	計 39	獸醫 2			計 7
		人的資源開發 2			
		計 14			
地域部署 配置(72)	經濟 25	農林水產 13	教育一般 7	保健 및 人口 6	土木工學 14
	社會開發 2	(一般)			建築 14
	經營 1				計 18
	計 28				
	—海外事務所 配置：28名中 15名	—左同： 13名中 9名	—左同： 7名中 3名	—左同： 6名中 3名	—左同： 18名中 10名
總計(138)	67	27	10	9	25

資料：英國 ODA(1992)

2. 政策方向

人力的 量的增大를 爲한 增員の 問題は 適正人力에 對한 所要判斷이 前提되어야 한다.

職務分析(Job Analysis)을 通한 適正人力問題가 恒時 論議되고 있으나 職務記述書 作成에 있어서 形式的記述等으로 客觀性確保에 限界가 있으므로 外國과의 1人當 ODA나 行政費의 比較를 通하여 有用한 判斷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年을 基準으로 供與國의 1人當 ODA規模를 比較해보면 日本은 開發援助를 擔當하고 있는 外務省 經濟協力局, 在外公館經濟協力擔當官, JICA 및 OECD 職員의 總數는 1,560名이나 ODA總額은 8.965百萬\$로 1人當 ODA가 5.63百萬\$(1980年은 3百萬\$)이고, 美國은 2.17百萬\$, 英國은 1.62百萬\$, 캐나다는 1.84百萬\$이며 우리나라(1992)는 357千\$(KOICA는 124千\$)로 先進國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V-20〉 供與國의 1人當 ODA 및 行政費比率

	單 位	日 本	美 國	英 國	카나다	韓 國
1人當 ODA	百萬\$	5.63	2.17	1.62	1.84	0.357 (0.124)
行政費比率	%	3.4	4.3	3.1	6.4	9.0 (26.1)

資料：日本外務省, JAPAN'S ODA(1991), OECD 1992 Report 및 Browne, Foreign Aid Practice(1990)에서 整理

註：1人當 ODA는 1990年, 韓國은 1992年, 行政費比率은 1991年 ()內는 KOICA分임

開發援助의 行政費用은 이를 管理하는 機關의 職員과 組織의 規模 및 豫算 編成構造에 따라 그 規模가 相異하며, 技術協力の 行政費用이 無償援助나 借款의 境遇보다 더 所要된다. DAC 平均은 3%~4%이고 IDA는 6%이며 技術協力

을 擔當하는 部署에서는 20%까지 達하고 있는데 이를 國別로 보면 日本 3.4%, 美國 4.3%, 英國 3.1% 캐나다 6.4%로 多樣하다. 우리나라의 ODA는 1990~91年間 89.2百萬\$에서 99.9百萬\$로 12% 增加되었으나 同 期間中 行政費用은 1.9%에서9.0%로 373.7%라는 커다란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ODA規模가 다른나라에 比해 絶對的으로 적으나 無償援助·技術協力이 少額 多國家支援形態를 取하여 많은 管理人力을 所要하고 있고, 그동안 數個 部處에서 少數人力이 擔當해오던 開發援助業務가 既存의 海外開發公社의 組織과 人力을 모두 吸收하여 發足한 韓國國際協力團으로 移管되어 ODA 擔當人力이 新規로 크게 增大된 때문이다.²¹⁾ 特히 韓國國際協力團만의 行政費用을 보면 1991년에 25.4%, 1992년에 26.1%라는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바 DAC統計基準과 關聯하여 이에 對한 正確한 檢討가 要望된다. 韓國國際協力團 職員의 階級別 構成比를 政府投資機關과 比較하면 執行幹部의 構成比가 3.7%로 政府投資機關의 0.9%(政府投資機關23個 平均은 0.09%)에 比해 높고 課長級 以上 및 次長級 以上도 各各 26.5%와 13.2%로 政府投資機關의 20.5%(全體平均은 8.5%) 및

(表 V-21)

職級別 職員 構成比 比率

(單位: %)

	計	任員	執行 幹部	部長	次長	課長	係長	職員 및 勞務員等
韓國國際協力團	100.0	0.8	3.7	3.7	5.0	13.3	21.6	51.9
政府投資機關 ¹⁾	100.0	0.3	0.9	4.8	—	14.1	30.4	49.4
(政府投資機關全體)	100.0	0.02	0.09	1.1	1.4	4.9	12.1	80.4

註: 1) 人力構造가 韓國國際協力團과 比較的 類似한 觀光公社, 大韓貿易振興公社, 大韓鑛業振興公社의 平均値임.

21) KOICA設立以前의 우리나라 ODA擔當人力은 韓國科學財團等 實施機關의 專擔人力이 29名에 不過했으나(圖Ⅱ-7參考)(EDCF擔當 24名은 除外) 1991年 4月 KOICA의 發足으로 現在 234名(國際研究交流團地 27名 除外)으로 크게 增加되었는데 이는 KOICA가 海外開發公社의 組織 및 人員(149名)을 모두 吸收하고 優秀人力의 確保를 爲해 新規로 增員시킨 때문이다. 이와같은 人員의 增大로 DAC로부터 行政費用(Administrative Cost)의 過多問題가 繼續 論議될 展望이므로 適正人力을 維持해야할 課題를 안고 있다.

6.0%(全體平均은 2.6%)에 비해 매우 높으며, 金融機關等 一部政府投資機關에만 있는 次長制度를 갖는等 組織의 階級(Grade)이 너무 多段으로 되어있어 行政費 節減과 行政能率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正確한 職務分析으로 適正人力を 算出하여 合理的인 組織體系로 整備토록 하고 行政費規模等 豫算構造도 適正하게 調整토록 해야 될 것이다.²²⁾

DAC는 韓國國際協力團豫算 30.1百萬\$에 對한 行政費用 9百萬\$이 매우 높다는 指摘과 함께 이에 對한 說明을 要求한 바 있는데²³⁾ 行政費用 9百萬\$은 우리나라의 ODA總計 約 1億\$에 對한 費用이므로 內容을 잘못 理解한 것으로 判斷된다.

人力確保에 있어 量的擴大 또는 適正人力の 確保 못지않게 質的增大가 매우 重要하다.

〈表 V-22〉

各國의 專門技術職比較

(單位: 名, %)

區 分	韓國(KOICA)		日本(JICA)		네델란드(國際協力總局)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文 社 會 系	155	66.3	721	64.0	387	72.2
理 工 系	23	9.8	140	12.4	25	4.7
農 林 水 產 系	1	0.4	244	21.7	72	13.4
其 他	55	23.5	21	1.9	52	9.7
(派遣公務員)	(17)	(7.3)	(49)	(4.4)		
計	234	100.0	1,126	100.0	536	100.0

資料: 該當國의 1993.9現在 統計를 基準으로 作成

註: 1) KOICA는 國際研究交流團地 人員(27名) 除外, 其他는 主로 技能職임

2) 人員數에 派遣公務員이 包含됨

3) JICA人員: 本部(644), 附屬機關(133), 國內支社(46), 海外事務所(283)

4) JICA의 派遣公務員 比率: 1974創設時(38名 3.8%)→1993(49名 4.4%)

22) 金秀勇, 金完淳教授等의 報告書(Korea's Development Assistance)는 受援國 數를 現在의 1/2 또는 1/3로 漸次 줄이고 經濟的·政治的으로 紐帶가 깊은 少數國家에 援助를 重點支援하여 開發援助의 能率性과 效率性을 높이고 行政費用도 減少시킬 것을 勸告하였다.

23) OECD/DAC 議長 Alexander R. Love의 1992.12.7日字 公文

韓國國際協力團의 現在의 人的構成을 보면 理工系나 農業系等 開發國의 開發援助業務에 必要로 하는 專門技術職의 人力은 10.2%로서 日本의 34.1%나 네델란드의 18.1%에 比하여 낮고 人文社會系는 語文學系列에 偏重되어 있으며 (21.8%) 職員의 大多數가 過去 海外移住·就業事業의 從事者이거나 新規職員들로 構成되어 開發援助業務와는 無關한 學歷과 經歷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開發援助業務의 圓滑한 遂行을 爲해 優秀한 專門人力을 確保하여 適所에 配置하는 問題는 가장 時急하게 解決해야 할 課題中 하나이다.

ODA歷史가 깊은 日本의 境遇 ODA의 實施體制가 脆弱하다는 點이 現在에 도자주 指摘되고 있으며 政府自身도 이 點을 認定하고 體制強化를 爲해 有能한 人才의 育成을 爲한 國際開發大學院의 設立을 構想中에 있다.

〈表 V-23〉 技術協力 分野別 登錄現況

(單位:名)

分 野 別	人 員	分 野 別	人 員
農 業	101	金 屬 工 學	3
林 業	18	機 械 工 學	5
水 産 業	22	産 業 工 學	1
蠶 業	23	에 너 지	6
畜 産 業	17	高 分 子 工 業	1
食 品 工 業	22	非 破 壞 檢 査	2
獸 醫	11	光 學	1
藥 學	2	表 面 코팅	1
環 境	6	鑛 物 資 源	69
建 設	30	海 洋	22
水 資 源	4	保 健 衛 生	9
職 業 訓 鍊	16	經 營 經 濟	33
電氣·電子·通信·컴퓨터	30	其 他	27
材 料 工 學	7	計	500

註: 1993.9.1 現在

〈表 V-24〉 研修生招請의 過程別 訓練機關 現況

分野別	過 程	機 關 名	國家 및 人員數	
			國家	人員(名)
○一般協力	21個 課程			382
農林水產	米穀生產	農村振興廳	14	16
	作物生產技術	慶北大學校	11	13
	農村開發	農村振興廳	14	16
經濟·行政	稅關公務員 研修	關稅廳	12	16
	市場經濟管理 및 韓國	韓國開發研究院	18	20
	經濟開發經驗			
	巨視經濟企劃 및 政策調整	韓國開發研究院	20	20
	輸出進興	大韓貿易振興公社	20	20
	行政能力開發	中央公務員教育院	14	20
	中小企業育成	中小企業振興公團	15	20
職業訓練	職業訓練教師 養成	韓國產業人力管理公團	1	25
	컬러TV 構造 및 修理	(株)大宇電子	18	22
	自動車 整備	(株)大宇自動車	15	21
	基礎職業訓練	韓國產業人力管理公團	18	20
產業技術	產業財產權制度	國際特許研修院	18	20
	情報管理 및 檢索	產業技術情報院	9	10
科學技術	國家標準制度	韓國標準科學研究院	16	16
	礦物資源 探查 및 開發	韓國資源研究所	21	22
		大韓鑛業振興公社		
建 設	國土開發	國土開發研究院	13	16
其 他	米穀生產課程事後管理 및 宣傳	農村振興廳	15	15
	韓國語教育	延世大學校言語研究教育院	10	14
	멀웨어 기술者 訓練	未 定	1	20
○特別協力	7個 課程			125
農林水產	船舶機關修理	韓國漁業技術訓練所		20
	蠶業	農村振興廳蠶業試驗場		15
	植物保護	全南大學校		15
產業技術	컴퓨터活用	韓國產業人力管理公團		25
	TV프로그램製作	韓國放送公社		15
科學技術	非破壞檢査技術의	韓國原子力研究所		15
	產業的利用			
保 健	女性指導者 家族計劃	大韓家族計劃協會		20
總 計	28個 課程			507

註：1) 1993年度 研修生 招請事業計劃 基準임.

2) 一般協力은 KOICA 單獨事業, 特別協力은 UN과 共同協力事業임.

開發援助의 各 形態別로 業務가 複雜多樣하고 各 分野에 對한 專門知識의 要求와 對外指向性等的 特徵으로 오늘날 主要先進國의 大部分이 人力確保手段으로 組織內的으로는 職員의 教育訓練과 外部專門家의 常勤職 採用을 制度化하고 있으며 組織外的으로는 業務關聯部處로부터 公務員을 派遣받거나, 各 分野別로 外部專門家 또는 컨설턴트의 登錄制等 多樣한 方法을 實施하고있다.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現在 技術協力에 必要한 農業등 27個 分野에 500名의 外部專門家를 登錄받아 活用(Pool System)하고 있으며, 招請研修生의 訓練은 政府部處, 政府出捐機關, 大學校, 民間企業體等 20餘個의 專門訓練機關에 委託하여 實施하고 있다. 開發調查와 프로젝트型事業은 豫算會計法 第76條 및 韓國國際協力團 會計規程 第124條에 依한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等과의 隨意契約條項과 1985年 3月 29日字 國務總理指示 第6號에 依한 『公共投資事業 事前調查等에 關한 施行指針』 등에 따라 事業의 初創期임을 勘案 主로 政府投

〈圖 V-15〉 開發調查 및 프로젝트型事業 關聯專門機關現況

分 野 別	機 關 名	分 野 別	機 關 名
農 業	農漁村振興公社	都市開發, 工團	國土開發研究院
	農村振興廳		韓國土地開發公社
養 蠶	國立蠶絲所	交 通	交通開發研究院
	農水產物流通公社		韓國電氣通信公社
流 通	農村經濟研究院	通 信	韓國通信技術株式會社
	韓國資源研究所		韓國水資源公社
資 源	大韓鑛業振興公社	水 資 源	大韓住宅公社
	韓國電力株式會社	住 宅	韓國醫療管理研究院
電力·에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韓國產業人力管理公團
	에너지技術研究所	醫 療	KDI
너지	에너지管理公團		KIEP
	韓國道路公社	職 業 訓 練	KIET
道 路	韓國建設技術研究所		
		經濟, 產業開發	

註：上記 機關은 韓國國際協力團에서 그동안 開發調查, 프로젝트型事業과 關聯하여 事業의 發掘, P/I調查團派遣, 技術評價等的 業務에 關聯된 公共機關을 中心으로 作成함.

資機關(政府出捐機關 包含)과 一部 大學教授를 P/I 調査等に 活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優秀한 民間用役業體도 積極으로 參與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다.

韓國國際協力團의 境遇 專門人力의 保有는 人力増員의 制約과 專門技術의 多樣性을 勸案하여 當分間은 自體人力의 育成活用に 重點을 두되, 政府의 關聯 部處로부터 有能한 公務員을 派遣받는 等(韓國國際協力團法 第14條) 外部專門 人力을 適切히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向後 長期的으로 開發援助業務의 圓滑한 遂行을 爲해 協力團 組織 內·外的으로 必要한 專門家는 開途國地域에 對한 政治·經濟·社會現象을 深層的으로 分析·研究하고, 開發調査와 프로젝트事業에 對한 事業計劃의 作成과 이를 專擔遂行하게 될 專門컨설턴트의 業務를 調整總括하며, 國際機構에 從事하게될 人力의 確保를 爲해 開途國地域專門家, 經濟協力 및 經濟分析 專門家, 農業·土木·電氣·資源分野等 專門技術者 및 國際機構 專門家들이다.²⁴⁾

특히 사람이 協力の 主體가 되는 技術協力에 있어 專門家の 養成確保는 緊要한 問題인데 研修生을 招請하여 教育을 擔當하는 專門家は 勿論 異質의 文化속에 들어가서 從事하게 되는 人材는 高度의 知識과 才能과 經驗이 要求될 것이다.

第 11 節 援助業務領域의 擴大

1. 現況 및 問題點

OECD의 90年代 開發援助 戰略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援助方向도 새로운分野에의 積極인 參與가 要求되고 있다. 環境·人口問題를 爲始하여 女性開發, NGO의 活用, 開途國의 構造調整努力等이 그것이다.

24) 프로젝트나 開發調査事業과 關聯하여 向後 豫見되는 韓國國際協力團 組織內·外的 必要한 專門人力은 Country/Program Officer, Economist, Specialist(Evaluation, Agriculture, Financial, Transport & Communication, Social Infrastructure 部門), Project Engineer (Irrigation, Civil, Electric Power 部門)들이다.

2. 政策方向

가. 環境

開發援助의 새로운 分野로 最近 크게 強調되고 있는 環境問題는 開發國의 經濟開發에 있어 長期的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的한 範圍內에서 自然資源을 利用하여 經濟의 成長을 圖謀하도록 推進되어야 하며 開發國의 爆發的인 人口增大多를 抑制토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다.

DAC는 1989년 環境專擔 作業團을 設立하고 1992년 파리會議에서 開發國의 環境保護 및 環境管理努力을 支援키 爲해 4個部門의 環境과 援助에 關한 指針(Guidelines on Environment & Aid)을 採擇하였으며²⁵⁾ 1992년 6月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의 UN環境開發會議(UNCED)에는 110個國의 國家頂上을 包含한 178個國 代表들이 參加하여 環境과 開發의 調和를 爲한 指針인 리우宣言과 21世紀를 向한 具體的인 實踐指針인 議題 21(Agenda 21)을 採擇하였는 바,²⁶⁾

25) 環境과 援助에 對한 4個 指針은 다음과 같다.

- ①開發프로젝트 環境影響評價의 模範事例(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援助機關들은 開發援助 프로젝트의 環境影響評價를 하여야 함.
- ②國別 環境測定 및 環境戰略의 模範事例(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環境과 天然資源의 管理에 必需的인 手段 確保를 爲한 接近方式을 規定
- ③開發援助에 있어서 強制移住 및 再定着에 關한 援助機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ment Projects): 프로젝트의 實施로 因하여 移住하게 되는 住民들이 當該 프로젝트의 受惠者가 되어야 하며 이들을 健全한 生産的集團으로 再定着케 해야 함.
- ④地球環境問題에 關한 援助機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先進國들이 그 性格上 國境을 超越하여 어느 地域全體 또는 地球全體에 關聯된 環境問題에 關해 國際的인 協力을 增進시킬 수 있는 方法을 提示.

26) 議題 21의 開發을 爲한 資源의 保存管理 政策으로 ①大氣保護 ②土地資源의 統合的企劃管理 ③土地資源(山林荒廢) ④脆弱生態系 管理(沙漠化와 旱魃) ⑤脆弱生態系 管理(持續可能的한 山地開發) ⑥土地資源(持續可能的한 農業 및 農村開發) ⑦生物多樣性 保存 ⑧生命工學의 環境安全管理 ⑨海洋 및 海洋生物資源 保護 ⑩淡水資源의 質과 供給保護 ⑪毒性化學 物質의 環境安全管理 ⑫有害廢棄物의 環境安全管理 ⑬固形 및 下水 廢棄物의 環境清淨管理 ⑭放射性 廢棄物의 環境安全管理等 14個 項目을 들고 있다.

이의 履行에 所要되는 財源을 93~2000年間 約 6,000 億\$ (그中 1,250億\$ 은 無償 또는 讓許性) 以上으로 推定하고 GNP의 0.7% 까지 ODA를 擴大하는 유엔目標을 再確認하였다.

主要 供與國들도 開發援助에서 環境問題에 커다란 關心을 갖고 專擔 組織과 豫算을 配分하고 있는데 日本 JICA는 企劃部內에 環境室을 設置 하고 있으며 開發調査 擔當部署들은 分野別로 이에 對한 業務指針을 가지고 있다. 最近의 環境關聯 援助實績을 보면 地球環境 및 資源問題(大氣汚染, 水質汚染, 原子力, 生態界維持, 山林造成, 砂防·土壤, 環境行政等 8個分野) 와 人間 住居環境問題(保健衛生, 上水道, 下水道, 廢棄物, 住宅, 鑛山公害等 6個分野)에 關心을 갖고 1985년에는 이들 細部 14個分野에 開發調査中 8.4% (22件), 프로젝트事業中 9.9%(14件), 研修生招請中 6.0%(136件), 專門家 派遣中 7.7%(95件)의 環境關聯 事業을 實施하였는데 이같은 環境關聯 援助 比率은 每年 크게 增大되고 있다.

世界銀行(專門家 50~60名 保有)等の 國際援助機關과 USAID를 비롯한 歐美各國 援助機關들도 機關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開發 프로젝트의 環境評價에 必要한 具體的인 組織과 專門家體制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對外環境政策과 關聯하여 外務部에 科學環境課와 環境處에 地球環境課가 設置되어 있을 뿐 韓國國際協力團 組織에는 이를 專擔하는 部署가 없으며 但只 開發調査時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 項目을 包含시키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環境問題에 對한 體系的인 研究·調査와 技術協力事業에 이들 分野事業을 擴大토록 해야 될 것이다.

나. 人 口

1991年 UN 報告書에 依하면 西紀 1년에 300萬에 不過하던 世界人口는 1800년에 10億이 되었고 다시 10億이 增加되어 20億이 되기까지 130年(1930年)이 所要 되었으나 다음의 10億 增加는 30年(1960年), 그 다음은 15年(1975年), 그 다음은 12年(1987年)으로 急激하게 增加되어 1991年 現在의 世界人口는 54億

에 達하며 2085년에는 100億(Nafis Sadik 博士는 140億으로 推定)으로 人口가 增加되어 安定化 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특히 많은 開途國들의 經濟不振에도 不拘하고 世界의 人口增加의 9割 以上이 開途國에서 發生될 것으로 豫測되고있어 人口增加와 貧困 및 環境의 惡循環이 되풀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世界人口中 15%未滿의 先進國 人口가 65%以上의 全世界所得을 차지하는데 反하여 75%의 開途國 人口는 15%以下의 所得을 占有하고 있으므로 世界人口의 安定과 發展을 爲해서는 先進國의 苦痛分擔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世界 各國은 開發援助中 人口協力이 增大되어야 할 必要性을 活潑히 論議하고있는데 世界人口를 100億名線으로 安定化 시키는 것이 向後 人類生活에 絶對的으로 重要하며 그러기 爲해서는 開途國의 人口抑制를 爲한 良質의 家族計劃(Family Planning) 普及이 關鍵으로 認識되고 있다.

開途國 政府의 家族計劃은 女性·乳兒健康에 直結되며 人口增加抑制가 經濟發展과 生活水準向上, 資源保存에 緊要하고, 家族計劃은 가장 費用效果가 높은 事業으로 評價되고 있다.

1989年 암스테르담 會議에서는 先進國의 人口協力援助(Population Assistance)가 ODA의 1% 水準에서 向後 4%까지 增大되어야 할 것으로 合議된 바 있으나 1993.3月 거의 모든 供與國들이 參加한 유럽人口會議에서는 各國政府가 勸告案에 ODA의 4%를 人口協力에 割當하는 內容挿入을 反對하는等 人口協力에 對한 各國의 政治的 支持가 微弱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ly와 Speidel는 開發援助에서 人口協力增大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다음과 같이 勸告하고 있다.

①世界의 影響力있는 指導者나 機關들은 供與國들이 더 많은 人口援助를 提供할 수 있도록 壓力을 行事하고 ②供與國政府와 UNFPA 및 IPPE 經營者들은 이들 機關의 力量強化와 分擔金의 劃期的增大를 爲하여 共同努力하며 ③人口援助에 經驗과 專門家를 保有한 供與國들은 家族計劃等에 直接援助를 增大시키고 ④援助機關들은 人口 및 家族計劃援助에 對한 專門能力의 強化와 NGO의

參與을 爲한 支援을 強化해야 한다.

人口를 100億水準으로 安定化시키기 爲해 21世紀初까지 避妊을 全 世界에 普遍的 으로 普及시키는 努力이 必要한데 이에 對한 費用으로 110億\$이 所要 되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先進國의 ODA部門 人口協力은 1991년에 約 8億\$로 매우 未洽한 實情인데 노르웨이는 ODA中 4~5%를 占有하여 世界的으로 人口協力を 主導하고있고 日本은 1%未滿에 不過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30年間の 開發年代에 家族計劃에 依한 人口抑制에 가장 成功한 나라중의 하나로 꼽혀왔는데 UNFPA로부터 1973~1990年間に 13百萬\$의 援助를 받아 왔으나 反面에 同 期間中 資金供與는 55萬\$에 不過하였다.

最近 UNFPA는 韓國에 亞太 開發國의 關聯者들을 招請하여 家族計劃에 對한 노우하우를 傳受토록 積極的인 參與을 要請하였는 바, 每年 50千\$씩 供與해 오던 UNFPA 協力資金을 1993년부터는 150千\$로 3배나 增加시킨 바 있다.

다. 女性開發

오늘날 女性은 世界의 總勞動時間의 3分の 2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60%~80%, 南美에서는 40%의 食糧을 生産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公式的으로는 女性은 世界의 勞動力의 3分の 1밖에 되지않고, 所得은 10分の 1이며, 所有하고 있는 資產은 1% 以下에 不過한 實情이다.

各國은 開發活動에 女性의 役割이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그 認識이 不足한 것이 事實이며 UN에서 世界女性의 해(1975年) 및 UN女性 10年(1976~1985)을 指定한 것을 契機로 政府開發援助에 女性프로그램을 積極的으로 包含시켜 이를 實施하기 爲한 基本的 方針과 重要課題等에 關心을 갖게 되었다.

UN의 境遇는 第 1, 2, 3次 開發10年計劃이 樹立되어 UN의 開發援助 活動이 擴大되어 가면서 開發國의 社會經濟開發에 있어서 女性의 役割이 注目되었고, 特히 農村開發, 食糧增産, 人口抑制, 衛生狀態의 改善等を 爲해서는 女性의 役割이 不可缺하다는 것을 認定하게 됨으로써 開發의 全過程에 開發과 女性

(Women in Development : WID)의 概念이 形成되어 女性의 地位 向上을 爲한 包括的인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OECD內의 DAC는 開發과 女性에 關한 非公式會議을 수차례 開催하였고 美國, 스웨덴等이 中心이 되어 『DAC/WID 專門家 그룹』이 結成되어 社會 全體의 利益을 爲해서 開發에 女性의 積極的인 參加를 促進시키고 持續的인 開發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企劃, 實施의 段階에 女性의 役割을 認定하고 資源, 서비스, 敎育 및 訓練에 平等한 機會가 女性에게 주어지도록 努力하고 있다.²⁷⁾

歐美 先進諸國의 NGO間에 開發과 女性에 對한 關心이 높고 政府와 協力해 나가면서 WID에 關聯된 活動을 하고 있다. 近年에 數個國에서 NGO에 依한 UN 女性開發基金(UNIFEM) 國內委員會가 設立되어 UNIFEM에 對한 弘報活動과 資金協力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고 있다. 日本은 技術協力에서 活潑한 女性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9년 研究生招請은 總人員 5,340名의 18.3%인 975名을 專門家派遣은 總人員 1,714名의 2.7%인 46名을 派遣하였고 青年海外協力隊員은 總 1,939名中 約 1/3인 585名이 女性으로 構成되어 幅넓은 分野에서 活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方式 技術協力 等에 依한 母子保健, 家族計劃, 看護敎育, 女性에 適合한 行政等의 分野에도 活潑한 女性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青年奉仕團事業에서 그동안 派遣된 總人員 189名中 女性이 90名으로 47.6%라는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研修生招請은 1992年 總 461名中 23.9%인 110名을 차지하는等 活潑한 女性參與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專門家派遣은 全無한 實情이며 無償援助分野에서도 女性과 關聯한 支援實績은 低調

27) DAC가 提示하고 있는 女性開發에 있어 8個 關心分野는(Guiding Principles for WID) 女性이 食糧生産의 主要 原動力이 되고있는 農業生産分野를 爲始해서(Agricultural Production), 서비스나 貿易分野 等の 收入 및 雇傭分野와(Income and Employment) 男子들이 大部分 차지하고 있는 公式的인 經濟分野에의 參與 幅을 넓히고(Informal Sector) 開發活動에 參與할 수 있는 時間의 適切한 割當과(Time Allocation) 訓練 및 敎育機會를 增大시키며(Training and Education) 女性들의 經濟活動에 妨害가 되고 있는 銀行融資 等 信用制度를 改善하며(Access to Credit and Banking Facilities) 環境改善과(Environment) 家族計劃 等 保健分野에 (Health) 積極的으로 寄與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實情이므로 이에 對한 配慮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 NGO

오늘날 各國은 NGO가 開發戰略의 非經濟的인 面에 相當히 慎重하다는 認識과 NGO가 一般 大衆들의 BHN을 代辯하는 프로그램을 設定하는데 比較 優位가 있다고 證明되었기 때문에 開發政策에 있어서 NGO役割의 影響이 있는 分野에 重點的인 政策을 두고 이를 積極活用하고 있다.

NGO의 歷史는 1940年代 中盤의 前後 유럽再編과 더불어 始作되어 現在 全世界的으로 2,542個(1990)의 NGO가 매우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DAC 會員國의 NGO에 對한 援助實績은 1988년 現在 ODA의 4.7%인 23億 \$ (自體資金造成額은 42億 \$로 ODA의 8.8%임)에 이르고 있으며 先進諸國은 NGO에 依한 開發國 援助를 資金과 機資材의 供與, 專門家の 派遣等を 中心으로 實施하고 있다.

NGO와 共同協力事業은 캐나다의 CIDA가 模範적으로 遂行하고 있는데 CIDA는 NGO와 共同融資基金을 設置하여 150余個의 NGO가 各種 프로그램을 遂行하고 있으며 日本은 NGO의 自體資金造成의 ODA 比率이 1.2%로 DAC의 8.8%에 크게 뒤지고 있어 이에 對한 批判이 提起되었는 바, 最近에 政府는 NGO에 對한 活動을 높이 評價하여 이에 對한 支援을 強化하고 있는데 1989년에는 外務省이 事業補助金制度를 新設하였고 年間 70百萬\$~100百萬\$의 政府補助金を 支給하여 NGO의 活動을 크게 活性化 시키고 있다.

ODA規模가 작은 우리나라의 境遇 NGO와의 協力體制 構築은 매우 緊要²⁸⁾하

28) 援助機關과 NGO의 共同協力方式은 各國에 따라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는데 OECD는 NGO에 對한 援助機關의 資金協力(Financial Cooperation)方式으로 NGO가 發掘한 事業에 支援하는 共同融資方式(Confinancing)과 政府가 事業을 發掘하고 NGO에 實施를 委託하는 下請契約方式(Sub-Contracts)으로 區分하고 前者의 方式으로 NGO가 提示하는 個別事業別로 資金을 支援하는 Matching Grants, NGO가 提示한 여러個의 事業에 一括하여 資金을 支援하는 Block Grants, 事業施行에 數個年이 所要되는 事業에 資金을 支援하는 Multi-year Funding 등을 들고 있다.

므로 國內 NGO의 精確한 現況把握과 豫算項目을 新設하여 協力形態別로 共同 協力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을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 累積債務와 構造調整

오늘날 開發國이 共通的으로 겪고 있는 景氣沈滯와 約 1兆 2,800億\$에 達하는 過多한 外債의 累增으로 이들에 對한 開發援助의 實效性이 低下되자 IBRD나 IMF等 國際機關과 主要先進國家에서는 過渡한 債務輕減(Debt Relief)을 通한 開發國의 國際收支改善, 産業構造改革等を 爲한 長期低利借款과 構造調整融資(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SAL)을 通하여 經濟成長과 國際收支改善을 圖謀하고 있는 點도 우리가 EDCF와 無償援助分野에서 有意해야 될 事項이다.

〈表 V-25〉 地域別 債務指標

地域 \ 指標	DSR(%)		債務殘高/輸出額(%)		債務殘高(億弗)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사하라 以南 아프리카	19	21	330	341	1,737	1,758
東아시아, 大洋州	15	14	91	88	2,347	2,450
歐洲, 地中海	16	18	123	123	1,841	1,728
中南美, 카리브	25	30	261	268	4,311	4,292
北아프리카, 中東	33	38	243	249	1,415	1,356
東아시아	25	26	283	293	1,154	1,224
計	20	21	177	176	12,805	12,808

資料: OECD, Financing and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1993)

바. 政治的狀況 認識

先進國이 開發援助의 供與에 있어 民主化程度, 人權狀況, 軍費問題, 支配層腐

敗等 政治的 要因을 重視하고 있는 點도(日本 政府는 1991.4.13日 ODA供與 政治4原則을 가이후 首相이 發表한 바 있음)²⁹⁾ 認識해야되며, 經濟協力の 效率性 提高를 爲해 援助供與國會議(Donor's Meeting)가 頻頻히 開催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積極的인 參與가 바람직할 것이다.

第 12 節 援助프로그램의 開發과 質의水準의 向上

1. 現況과 問題點

開途國의 開發支援要求에 보다 伸縮的으로 副應할 수 있는 多樣的 援助프로그램의開發과 開發援助의 質과 效果性을 提高시키려는 努力이 多角的으로 檢討되어야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供與國들이 自國援助의 質과 效果性問題를 깊이 認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自國利益을 爲해 援助와 貿易의 連繫를 疎하는等 複合的인 援助方式을 實施하고 있고, 援助를 하나의 國家産業으로 育成하고 있다.

援助의 質과 效果性의 提高를 爲한 努力이 各種 國際會議等을 통해 增大되고 있는 바 1993年 7月 Mexico의 Tidewater 供與國會議에서는 開發援助의 影響과 效果性의 增大가 主要 議題로서 論議된 바 있다.

29) 가이후 首相 發表의 ODA供與 指針內容

○受援國에 對한 ODA 供與時 追加 考慮事項

- 周邊國과 比較하여 過多한 軍費增強 與否等 軍事費支出 動向
- 核武器等 大量破壞武器의 開發·製造 動向：核 擴散防止 努力 強化次元
- 武器輸出入 動向：國際紛爭 誘發可能 武器輸出入 抑制 觀點
- 民主化 程度, 市場指向型 經濟方式 導入 努力, 基本의 人權 및 自由의 保障狀況：受援國의 民主化 및 人權狀況 改善 促進 觀點

○上記 事項을 充分히 考慮하면서 兩者關係, 受援國이 處한 安保環境을 包含한 國際情勢, 受援國의 援助需要 및 經濟·社會狀況 等を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ODA供與 實施

2. 政策方向

가. 複合的인 援助方式의 模索

一部 供與國家들은 開發援助가 貿易을 包含하는 自國經濟의 利益追求라는 觀點에서 援助와 貿易의 連繫를 正當化 시키는等 混合融資(Mixed Credits)를 增大시키고 있으며 2國間 援助提供時 自國의 製品 또는 用役을 Tied化 시키고 있다.

특히 混合融資方式은 條件附援助中の 하나의 特殊한 形態로서 1970年代末까지 프랑스를 除外한 大部分의 供與國에서는 매우 微微한 位置를 占하였다.

1975년에 混合融資는 2.5億\$未滿으로 推算되었으나 1983-85년에는 DAC 12個 供與國에서 모두 27億\$로 그 規模가 增大되었는데 특히 이中 프랑스가 52%, 伊太利 11.5%, 英國이 10%를 占하였다.

混合融資는 交通, 通信, 電力等の 資本 및 輸入集約的 프로젝트를 支援하여 이들 프로젝트가 受援國의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한편으로는 이의 正當性과 貿易 및 開發을 爲한 效果性에 關心이 높아지고 있고, 同制度가 國際貿易과 開發援助프로그램을 歪曲시킬 수 있다는 批判까지 提起되고있다(Krueger).

濠洲는 1983년에 設置된 開發輸入 融資基金(Development Import Finance Facility : DIFF)의 擴充等을 通해 貿易連繫援助의 提供을 總援助의 9%水準까지 擴大하고 있으며 英國의 援助貿易連繫事業(Aid and Trade Provision), 日本의 開發協力事業等은 모두 自國의 輸出振興等 國益을 爲한 手段으로 實施하고 있는 援助形態이다.

그러나 이러한 援助方法이 特定產業部門에 對한 補助金支給의 支援이나 產業 政策을 代替하는 結果로 認識될 境遇 이는 ODA 目標에 附合되지 않는다는 點에서 援助와 貿易의 連繫는 製品 또는 用役이 比較優位를 지닌 部門에 限定토록 함으로써 ODA의 追加的인 費用誘發의 豫防과 援助의 基本目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援助의 效果性 問題는 受援國이 援助資金을 效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能力 (Capital Absorptive Capacity)의 缺如에서도 緣由되는데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프로젝트型事業을 支援時에는 BOT方式(Build-Operate-Transfer-Scheme) 또는 BOO方式(Build-Operate-Own-Scheme)으로 推進하는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以外에도 前述한 NGO 프로그램의 開發, 世界銀行과 같은 多國間 開發銀行과의 共同協力事業等도 積極 推進토록 해야 될 것이다.

나. 援助의 質과 效果性的 提高

援助의 質의水準을 나타내는 贈與率(GE)에 있어 現在 DAC國家는 85.1%로 最近 크게 惡化되고 있는데 日本, 美國, 英國, 獨逸等 援助를 主導하고 있는 供與國들이 DAC基準인 86%를 遵守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援助의 大部分이 無償援助이고 1989년부터 始作된 有償援助인 EDCF는 1992年 境遇 總 ODA 115.2 百萬\$의 13.5%인 15.6百萬\$로 GE는 46.3%이다. 따라서 1992年의 우리나라 ODA의 GE는 92.7%로 DAC國家의 平均보다도 높은 水準으로 算出되었다(支援條件은 金利 年 3%, 5年 据置 15年 分割償還으로 計算).

2國間 援助중 가장 큰 比率을 占하고 있는 機資材供與는 國產物品의 供與를 原則으로 하는等(韓國國際協力團 事業遂行指針 第30條) 無償援助의 大部分이 Tied化 되어있으나 援助規模로 볼때 韓國經濟에 가져다 주는 利益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判斷되며 向後 援助規模의 增大에 對備해서 附帶條件有無(Tying Status)等 質的 側面에 對한 對應이 必要하다. 開發援助의 效果를 極大化시키기 爲해서는 現在 여러 國家에 多分野에 걸쳐 焦點없이 實施되고 있는 援助施策들을 點檢하여 이에 對한 適切한 對應方案을 提示해야 될 것이다.

支援分野에 있어 比較優位分野를 提示하는 일, 消費財 爲主의 機資材支援을 프로젝트型事業으로 轉換하는 일, 組織運營等 援助行政(Aid Administration)의 效率性을 增大하는 일, 專門家の 養成, Logframe(Logical Framework) 技法의 導入等은 援助의 質과 效果性(Aid Quality and Effectiveness)의 提高를 爲해 解決되어야 할 課題들이다.

다. 援助産業의 育成

開發援助와 關聯하여 政府는 勿論 民間部門에서 國內 各界의 參與範圍는 매우 尙大하다. 機資材 購買를 爲한 國內 關聯 物品供給業體의 生産, 開發調査와 關聯한 컨설턴트의 參與와 建設業體들의 後續事業 參與, 技術協力과 關聯한 大學, 研究所, 公共機關, 私企業等 各種 訓練機關 및 專門家들의 參與, NGO의 參與 等이 그것이다. ODA規模의 擴大에 對應하여 開發援助에 關聯되는 모든 資源(Resources)을 網羅하여 援助産業(Aid Industry)으로 育成토록 해야 될 것이다.

第 13 節 下部構造의 擴充

1. 現況 및 問題點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歷史가 日淺하고 規模도 微微하였으며 運用體制마저 多元化되어 10余個에 이르는 多様な 內容의 業務를 數個部處에서 分擔되어 實施됨으로써 有機的인 業務遂行이 되어오지 못하였으나 1991年 4월에 이들業務를 綜合專擔하게될 새로운 機構로 韓國國際協力團이 設立되어 事業의 本格的인 推進은 勿論 業務의 綜合性과 效率性을 期待하게 되었다.

그러나 開發援助를 效率의으로 推進하기 爲해서는 아직도 法令, 組織, 統計, 人力, 研究, 訓練, 情報, 弘報 및 協力團組織을 둘러싸고 있는 外的要因으로서 環境(Ecology)問題等에 對한 補完,強化가 持續的으로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2. 政策方向

가. 關聯法規와 組織의 整備

開發援助의 母法中の 하나라고 볼수있는 韓國國際協力團法이 施行된지 2年이 지났으나 開發援助를 綜合的으로 一貫性있게 施行하기 爲해서는 關聯部處

와의 業務分擔 및 關係設定에 對한 規程이 整備되어야 하며 關聯法規인 對外經濟協力基金法을 爲始하여 外務部の 指針等 規程 및 協力團 內部規程에 對한 補完이 必要하다.

韓國國際協力團의 人力問題는 增員보다는 組織內 人力構造의 調整과 人力의 高級化가 時急한 課題로 判斷되는데 人的資源 配分에 있어 組織階層間, 單位部署別로 最適配分이 이루어졌는지에 對한 精確한 職務分析이 必要하다. 便宜에 따라 階層이 지나치게 多段으로 되거나 爲人設官式的 不要不急한 上位職級の 設置를 抑制하고, 各 階層의 統率範圍(Span of Control)가 適正하지 못함으로써 惹起되는 業務의 非能率性和 浪費를 막고, 單位部署間 業務의 量과 內容을 勘案한 人力配置가 必要하다.

無償援助의 實施體制를 例로들면 豫算規模는 全體의 約 50%(日本은 26%)를 占하고 對象國家의 擴大와 事業形態 및 支援品目이 多樣化되고 있어 業務量의 增大는 勿論 良質의 業務遂行이 要求되고 있으나 專擔人力은 3.3%(日本은 25%)에 不過하다.

開發調查와 프로젝트型 事業의 業務는 開途國의 經濟·社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모든分野를 對象으로 하며 여러段階의 節次를 長期間에 걸쳐 遂行하는 協力團에서는 가장 專門性을 要하는 事業이나 人力(1.9%, JICA는 11.5%)等の 不足으로 內實있는 事業遂行이 困難한 實情이다. 따라서 組織內의 人力再配置를 通한 이들 部署에의 人力補強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한편 援助行政의 效率을 期하기 爲하여 有償 및 無償援助機關의 2元化體制는 勿論 KOICA의 地位, 機能, 所屬機關等 우리나라 援助實施體制에 對한 全般의인 檢討가 必要하다. 開發援助의 供與主體가 政府이며 業務의 性格이 國家의 公共行政業務라는 點에서 美國, 英國等 世界 先進國의 大多數 援助機關이 政府部處에 屬해있고 職員의 身分이 公職者이나 우리나라(KOICA)는 日本의 JICA 制度를 그대로 模倣하여 政府出捐機關의 性格으로 出發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援助業務를 半官半民의 機關에 委託하는 것이 適切한가라는 點과, 새로운 組織의 形成에서 期待되었던 援助業務의 能率化, 合理化等の 理念을

옳바르게 具現하였는지에 對한 評價가 必要하다. 日本의 境遇 그동안의 援助實施體制에 對한 批判이 提起되어 開發援助를 一元的으로 專擔할 政府機構의 設立을 目的으로 總理府傘下에 「國際開發協力廳」의 創設이 參議院에서 論議된 바 있는데 그 背景等を 檢討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援助行政의 效率性を 높이기 爲해서 KOICA가 向後 克服해야 할 課題들은 다음과 같다.

- ① ODA規模에 比해 專擔人力(또는 行政費用)이 過多하나, 實際로 必要한 專門人力은 크게 不足하다는 點.
- ② 事業費가 全額 國家豫算으로 充當되고 있어 豫算確保가 容易치 않은 點.
- ③ 政府가 主要政策部門을 擔當하고 이의 執行을 委任하고 있으나 一部 委任事項中에도 政策決定이 必要한 境遇 이에 對한 政策決定能力이 脆弱하여 公共政策의 遂行에 있어 一貫性の 缺如가 憂慮되고 政府와의 圓滑한 業務體制의 維持等 管理統制上에 어려움이 提起되는 點.
- ④ 國家公共業務의 遂行에 있어 業務遂行者의 職員身分(半官)에서 緣由하는 政府政策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과 構成員의 公共觀念이 稀薄할 수 있다는 點.
- ⑤ 援助業務가 여러部處에 關聯되어 KOICA로서는 業務의 統合調整力이 脆弱하고, 業務의 高度의 專門性·複雜多樣性·對外指向性(外國政府 및 海外公館等を 통한 受援國과의 援助決定等)에서 오는 業務遂行의 어려움에 比해 擔當者들의 經驗 不足으로 體系的인 業務의 執行과 管理는 勿論 受援國의 與件에 알맞는 援助政策의 獨自的開發과 노하우 蓄積이 不足하여 援助業務行政에 效率的으로 對處하기가 힘들다는 點이다.

나. 開發援助統計의 確立

1991년부터 OECD의 報告書에 우리나라의 ODA統計가 收錄되기 始作하였다. 따라서 ODA統計指針에 알맞는 體系的이고 正確한 統計의 作成이 要求된다. 그동안 業務가 여러 部處에 分擔되어 部處마다 統計基準이 相異하며 統計値도

多様 하게 提示되고 있다. ODA와 關聯한 綜合的인 統計가 經濟企劃院에서 作成되고 있으나 DAC의 統計指針과 相異한 境遇도 있다. ODA 行政費用의 境遇 一部 機關은 除外되거나 費用構成項目이 漏落되는等 概念이 相異하고, 그동안 外務部에서 施行되어온 機資材供與의 品目別統計 境遇 施行初年度인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把握이 전혀 不可能하여 推定値를 使用하고 있으며 協力形態別 受援國에 對한 金額基準統計, 分野別統計 및 NGO統計等은 把握이 어려운 實情 이다. 이밖에도 援助形態別로 各種 統計가 多角的으로 提示되고 있지 못하여 政策樹立이나 研究를 爲한 有用한 資料獲得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DAC 統計 指針에 알맞게 體系의이고 精確한 統計를 早速히 作成하여야 될 것이다.

다. 調查研究와 綜合情報體制의 構築

韓國國際協力團이 專門研究員을 確保하고 있으므로 開發援助의 效率的 推進을 爲해서 短期的으로 開發援助의 初創期임을 勸案 優先 必要的 課題인 援助의 國別配分基準이나 中長期비전의 提示等 事業部署에서 提起하는 政策課題에 對한 研究·分析을 通한 政策代案들이 時宜適切하게 提示되어야 하며 長期的으로는 開途國에 對한 綜合的이고 深層의인 研究를 遂行하여 開發援助 政策에 關聯된 各種 政策提示와 情報 및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싱크탱크의 役割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를 爲해 調查研究事業의 效率的인 遂行을 爲한 與件造成이 必要하나 當分間은 人力等の 制約을 勸案 國內外的 關聯 研究機關들과 有機的인 協助를 通해 情報를 交換 및 獲得토록하고 國內研究機關들에게 一部の 研究를 委囑分擔토록 하여 協業體制을 構築하는 方法도 效果的일 것이다.

라. 教育訓練의 強化

專門人力의 養成을 爲해 組織內的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開發援助 業務遂行에 緊要하고 適切한 教育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持續的인 反復的으로 教育시킴으로써 職務能力을 培養토록하고 優秀職員은 外國의 援助機關이나 IBRD等 主要

國際機關의 研修프로그램에 參與토록 機會를 擴大하며, 必要한 最小限의 專門 技術織을 新規採用하고 外部專門家를 招聘하여 세미나開催를 통한 幅넓은 意見을 收險토록 해야 한다.

다. 調達業務體制의 確立

開發援助 業務中 機資材 調達과 開發調査의 契約等の 業務比重은 매우 크다. 그동안 機資材 調達業務는 外務部에서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子會社였던 (株)高麗貿易과 對外無償援助物品 輸出代行契約를 締結하여 自動車等 一部品目を 除外한 大部分의 品目を 代行處理하여 왔으며, 1991年 7月 韓國國際協力團은 機資材 調達業務 改善策의 一環으로 手數料 節減등 豫算節減을 爲해 可能的 生産業體와의 直接契約締結을 擴大하고 輸出業體 境遇에는 (株)高麗貿易 以外에 1個以上 輸出業體로부터 見積을 接收받는 複數見積制度를 採擇하였으며, 1993年 1月에는 增大되는 業務의 能率的이고 內實있는 購買行政을 爲해 調達課를 新設하여 購買業務의 專門化를 期하고자 하였다. 向後 調達業務에서 推進되어야 할 事項은,

- ① 機資材調達을 爲한 細部指針과 規程(會計規程의 改定, 契約事務取扱細則의 制定, 機資材 檢查實施要領의 制定, 機資材 保險請求規程의 制定, 機資材 現地調達 基準의 制定, 豫定價格과 隨意契約基準의 作成等)을 마련하고,
- ② 機資材 調達業務를 直接遂行時 豫想되는 品目選定·原價計算·契約·保險·通關·檢收·船積等 購買 및 貿易에 關聯된 複雜한 諸般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擔當職員은 商品市場의 事情에 能通하고 購買 및 貿易業務에 專門인 知識을 習得케 하여 購買業務의 專門化를 期하며,
- ③ 契約方法을 從前의 隨意契約方式에서 競爭契約方式으로 轉換하고,
- ④ 調達方式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受援國의 事情 및 援助의 質等を 考慮하여 條件附(Tied)와 非條件附(Untied)에 依한 制度的 長短點을 檢討하고,

- ⑤ 徹底한 原價計算에 依한 購買制度를 確立하며,
- ⑥ 援助機資材를 輸出品目으로 認定할 것인지에 對한 論議로 協力團이 機資材를 直接調達時에는 關稅還給이 不可能하게 됨에따라(關稅等 還給에 關한 特例法 施行規制 第2條) 多少의 價格引上이 不可避하므로 同 條項의 改定을 推進하고,
- ⑦ 調達品目이 少量多品種으로 當分間은 輸出代行業者에 委託(CAD方式)하거나 또는 製造業體가 直接輸出業務를 履行時 對外貿易管理規程에 依한 輸出實績 範圍에 包含되지 않으므로서 關稅還給, 貿易金融融資 및 附加價值稅의 零細率 適用에 問題가 提起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對策을 마련하며,
- ⑧ 開發調査의 事業年度가 數個年에 걸쳐 繼續되고, 機資材 調達購買에 많은 時日이 所要되어 豫算의 會計年度內 執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1991年의 機資材購買分 移越은 總執行額의 29.2%인 360萬\$에 達함) 事業의 融通性있는 執行을 할 수 있는 會計規程의 明確한 整理와,
- ⑨ 供與機資材에 對한 定期點檢 및 事後管理를 徹底히 하고,
- ⑩ 供與機資材品目を 標準化 시켜 入札業務의 能率化, 一定한 品質의 保障, 物品檢査의 迅速等を 期해야 될 것이다.

마. 有關機關과의 協助體制 構築

援助形態別로 有機的인 連繫를 強化하기 爲하여 政府의 關聯部處와의 業務協助 및 調整이 充分히 이루어져야 하며 政府投資機關이나 出捐機關等の 公共機關은 勿論 大學의 研究所, 私企業體, 專門 컨설턴트業體 및 民間專門家等과의 協助體制 構築 및 國際機構들과도 幅넓은 紐帶關係가 이룩되어야 한다.

사. 弘報活動強化

最近 主要先進國에서는 國民의 稅金에 依해 實施되는 ODA가 一部 官僚에 依해 主導되고 있는데 對하여 議會에서 充分한 論議와 規制가 이루어지고 있

는가라는 反省이 일고 있으며, ODA를 行政府의 손에 맡겨둔채로 放置할 수는 없다는 意見이 提起되고 있다.

따라서 開發援助의 國際的 理解와 協助增進을 통한 協力事業의 效率性 提高를 爲하여 國民 및 關聯機關의 理解와 幅넓은 支持基盤의 確保가 必要한 바 이를 爲해 組織的이고 體系의인 弘報計劃의 樹立과 活動이 要求되고, ODA內容과 政策에 對하여 國會에서 充分한 論議가 있어야 될 것이다.

<附 錄>

I. 韓國의 開發援助 實績(1992)

1. 總括表

(單位：個國，百萬圓)

區 分		計	亞細亞	中 東	아프리카	中南美	東 歐	其 他
國 家 數		126國 6機構	28	18	38	29	13	6機構
研 修 生	國家數	87	22	16	21	19	9	—
	人 員	461	255	36	40	52	78	—
專 門 家	國家數	31	9	8	2	9	3	—
	人 員	47	18	9	2	13	5	—
醫 療 團	國家數	13	1	1	11	—	—	—
	人 員	16	2	1	13	—	—	—
跆拳道	國家數	17	4	6	7	—	—	—
	人 員	19	4	7	8	—	—	—
奉 仕 團	國家數	8	8	—	—	—	—	—
	人 員	52	52	—	—	—	—	—
機 資 材	國家數	99國 6機構	21	8	35	25	10	6機構
	金 額	8,356	1,543	868	3,323	1,610	578	434
開發調查	國家數	8	7	—	—	—	1	—
	件	12	11	—	—	—	1	—
프로젝트 型 事業	國家數	9	4	1	—	4	—	—
	金 額	845	335	19	—	491	—	—
EDCF	國家數	5	3		2	—	—	—
	金 額	12,260	7,700		4,560	—	—	—

註：韓國國際協力團의 無償協力, 財務部의 EDCF, 建設部의 開發調査 基準

2. 形態別 國家別 內譯

區分	國 家	事業數 (件)	研修生 (名)	專門家 (名)	醫療團 (名)	跆拳道 (名)	奉仕團 (名)	機資材 (百萬圓)	開發調査 (件)	프로젝트 (百萬圓)	EDCF (百萬圓)
	總 計	281	461	47	16	19	52	8,356	12	845	12,260
亞 細 亞 (大 洋 洲 包 含)	네 팔	6	6			1	4	62	1	14	
	대 만	1	2								
	라 오 스	1	1								
	마살아일랜드	1						30			
	마이크로네시아	1						30			
	말레이시아	2	29	1							
	몰 디 브	1						37			
	몽 골	4	15	1			7	154			
	미 얀 마	4	5	1		1		108			
	방글라데시	2	8					152			
	베 트 남	3	22					153	1		
	부 탄	2	1					152			
	솔로몬아일랜드	2	2					19			
	서사모아	2			2			22			
	스리랑카	5	8	1			5	77			1,600
	인 니	8	24	2		1	6	16	3	202	5,500
	인 도	1	15								
	중 국	2	39	5							

區分	國 家	事業數 (件)	研修生 (名)	專門家 (名)	醫療團 (名)	跆拳道 (名)	奉仕團 (名)	機資材 (百萬원)	開發調査 (件)	프로젝트 (百萬원)	EDCF (百萬원)
亞 細 亞	북아일랜드	1								54	
	키리바시	2	1					24			
	태국	7	27	2		1	9	80	1	65	
	통가	2	2					23			
	투발루	1						12			
	P N G	4	5				6	109	1		
	파키스탄	4	10	1				78	1		
	팔라우	1	1								
	필리핀	6	29	4			8	152	3		600
	황지	3	3				7	54			
	小計	80	255	18	2	4	52	1,543	11	335	7,700
中 東	리비아	2	2			1					
	모로코	2	2					78			
	모리타니아	4	2	1	1			187			
	바레인	1	2								
	사우디	1	1								
	수단	5	2	1		1		116		19	
	시리아	1	1								
	아프가니스탄	1						157			
	알제리	2	3	1							
	예멘	3	1	1				78			

區分	國 家	事業數 (件)	研修生 (名)	專門家 (名)	醫療團 (名)	跆拳道 (名)	奉仕團 (名)	機資材 (百萬원)	開發調査 (件)	프로젝트 (百萬원)	EDCF (百萬원)
中 東	오 만	3	3	1		1					
	요 르 단	2	2			1					
	이 란	1	5								
	이 집 트	3	4			2		175			
	지 부 터	1						38			
	카 타 르	2	1	1							
	터 어 키	3	2	1				39			
	튀 니 지	3	2	2		1					
	小 計	40	36	9	1	7		868		19	
아 프 리 카	가 나	5	4	1		2		74			1,961
	가 봉	2	1					38			
	감 비 아	1						39			
	기네비사오	1						39			
	나 미 비 아	3	4		1			100			
	나이지리아	3	3			1					2,599
	니 제 르	3			2	1		76			
	라이베리아	1	1								
	루 안 다	1						52			
	레 소 토	3	1		1			54			
	말 라 위	1						89			
	말 리	1						77			
	모 리 셔 스	2	2					54			

區分	國 家	事業數 (件)	研修生 (名)	專門家 (名)	醫療團 (名)	跆拳道 (名)	奉仕團 (名)	機資材 (百萬원)	開發調査 (件)	프로젝트 (百萬원)	EDCF (百萬원)
아 프 리 카	베 넵	2	1					221			
	모 잠 비 크	1						76			
	부르키나파소	2				1		51			
	부 룬 디	1						155			
	보 츠 와 나	2	1					78			
	세 네 갈	4	2			1		70			
	스와질랜드	3	2		2			64			
	시에라레온	1						77			
	앙 골 라	1		1				132			
	우 간 다	3	3		1			76			
	이디오피아	3	1		1			302			
	자 이 르	3	1			1		148			
	잠 비 아	3	2		1			116			
	중앙아프리카	3			1	1		77			
	짐 바 브 웨	1	2								
카	차 드	1						39			
	카 메 룬	3	2		1			108			
	캅 베 르 테	1						37			
	소 말 리 아	1						*63			
	콩 고	2	2					72			
	코 모 로	1						34			
	코트디부아르	3	1		1			153			

區分	國 家	事業數 (件)	研修生 (名)	專門家 (名)	醫療團 (名)	跆拳道 (名)	奉仕團 (名)	機資材 (百萬원)	開發調査 (件)	프로젝트 (百萬원)	EDCF (百萬원)
中 南 美	트리니다드토바고	2	3					77			
	그 레 나 다	1						21			
	도미니카(연)	1						15			
	페 루	3	3	1						151	
	파 나 마	2	1					109			
	파 라 과 이	3	2	1				165			
	카리브4개국	1						84			
	小 計	54	52	13				1,610		491	
東 歐	불 가 리 아	2	7					111			
	루 마 니 아	3	7	1				108			
	리투아니아	2	1					39			
	C I S	2	33					49			
	알 바 니 아	2	2					54			
	키르기스스탄(공)	1						8			
	유 코	2	1						1		
	체 코	2	6					52			
	폴 란 드	1	13								
	헝 가 리	2	8	3							
	우크라이나(공)	2		1				39			
	카자흐스탄(공)	1						38			
	우즈베키스탄(공)	1						80			
	小 計	23	78	5				578	1		

區分	國 家	事業數 (件)	研修生 (名)	專門家 (名)	醫療團 (名)	跆拳道 (名)	奉仕團 (名)	機資材 (百萬원)	開發調査 (件)	프로젝트 (百萬원)	EDCF (百萬원)
其 他	ESC A P	1						31			
	비동맹아프리카 기금	1						154			
	A N C	1						91			
	ONCHO기금	1						79			
	UN중앙운영 긴 급 기 금	1						40			
	UN남부아프 리카한발기금	1						39			
	小 計	6						434			

註：1) 事業數란 各事業形態를 1件으로 본 數値임.

Ⅱ. 世界의 開發援助

1. 對開發途國 資金協力總量 變動推移

區分 \ 年度	金 額 (10億 \$)					
	1970	1975	1980	1988	1989	1990
I. 公的開發金融(ODF)	8.9	18.3	34.3	61.8	60.7	69.9
1. 公的開發援助(ODA)	7.9	14.9	27.3	47.9	48.2	52.7
(二 國 間)	6.8	11.1	19.5	36.6	36.5	39.2
(多 國 間)	1.1	3.8	7.8	11.3	11.7	13.5
2. 其他公的開發金融(ODF)	1.0	3.4	7.0	13.9	12.5	17.2
(二 國 間)	0.3	0.8	2.2	7.4	5.6	7.0
(多 國 間)	0.7	2.6	4.8	6.5	6.9	10.2
II. 輸出信用金融	2.7	5.6	17.2	-2.5	9.4	4.7
長期金融	2.7	5.6	14.3	-4.5	4.7	0.1
短期金融	—	—	1.8	2.0	4.8	4.5
III. 國民資金移動	8.3	22.8	65.6	43.0	46.8	52.7
1. 直接投資(OECD)	3.7	11.4	11.2	29.3	29.3	26.9
2. 銀行借款	3.0	8.5	49.0	10.5	10.5	18.5
3. 債權發行	0.3	0.4	1.1	-0.3	-0.3	-3.2
4. 其 他	0.4	1.2	1.8	3.3	3.3	5.6
5. 民間援助	0.9	1.3	2.4	4.0	4.0	4.9
總 計 (I + II + III)	19.9	46.7	117.0	102.3	116.9	127.3
'90年 不變價格 및 不變換率基準						
資金純 互換 總計	87.4	115.6	184.8	113.0	130.3	127.3
公的開發金融總計	39.1	45.3	54.2	68.3	67.7	69.9
ODA 總受惠額	34.7	36.9	43.1	52.9	53.7	52.7
DAC의 ODA	29.4	32.9	41.1	51.9	50.9	53.0

資料: OECD

2. ODA의 地域別 配分

地域別 國名		사하라 以南地域			南 아 시 아		
		80/81	85/86	90/91	80/81	85/86	90/91
1. DAC國家 2國間供與							
美	國	15.8	14.9	11.8	12.8	8.7	6.7
日	本	10.0	10.4	11.5	25.8	25.0	15.3
프	랑 스	49.2	52.6	57.9	4.4	4.7	3.0
獨	逸	29.2	31.1	43.0	20.4	18.7	10.4
北 유 럽	小 計	52.6	60.6	59.6	24.9	22.6	15.4
(덴 마 크)		51.6	60.1	58.8	31.1	26.3	22.4
(핀 란 드)		60.6	63.8	56.4	7.5	14.9	12.0
(노 르 웨 이)		54.1	64.0	63.8	30.0	25.7	19.8
(스 웨 덴)		51.5	58.1	59.0	22.2	20.2	10.9
이 태 리		55.2	68.2	45.0	1.7	6.1	2.4
네 델 란 드		31.2	39.4	35.8	24.8	20.2	18.6
英	國	37.0	39.4	48.1	40.0	33.2	26.1
카 나 다		38.6	40.3	51.7	34.8	27.5	14.8
오 스 트 리 아		5.7	6.0	8.6	10.8	4.8	7.2
뉴 질 란 드		2.5	1.2	1.9	2.1	0.7	0.9
其他 DAC	小 計	45.7	54.9	40.9	8.8	7.6	7.4
(오 스 트 리 아)		7.8	9.1	15.8	5.1	2.8	5.1
(벨 기 에)		66.0	76.3	63.2	5.0	3.8	4.5
(아 일 랜 드)		95.9	96.5	93.8	1.4	1.9	1.9
(포 르 투 갈)		—	—	100.0	—	—	—
(스 페 인)		—	—	22.5	—	—	4.6
(스 위 스)		39.8	57.1	45.7	26.7	16.2	17.1
DAC 小計		28.5	29.3	31.3	18.7	14.7	10.0
2. 多 國 間 供 與							
E E C		60.4	65.2	58.2	17.2	9.3	7.2
I F I s		21.5	32.4	43.6	44.2	42.1	34.9
U N	機 構	32.5	41.5	40.3	18.2	19.5	16.9
3. 非 DAC 供與小計		11.2	15.9	9.0	9.9	10.4	7.4
總計(1+2+3)		24.2	28.8	31.6	19.0	17.3	11.6

資料: OECD

(單位：%), 全體供與額中 比率

其他 아시아, 오세아니아			中東, 北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연안		
80/81	85/86	90/91	80/81	85/86	90/91	80/81	85/86	90/91
9.2	7.8	3.6	50.2	48.2	58.1	12.2	20.3	19.8
49.1	48.0	53.2	8.3	8.3	11.7	6.9	8.3	8.3
19.9	18.6	18.3	19.3	16.7	15.4	7.3	7.4	5.3
9.3	14.2	11.9	29.5	22.9	24.6	11.7	13.1	10.0
13.9	8.4	8.0	4.8	2.8	6.9	3.8	5.5	10.1
8.9	6.8	4.9	6.2	4.7	7.5	2.2	2.2	6.4
21.0	8.7	11.5	6.6	5.5	12.0	4.1	7.2	8.0
6.1	3.8	4.0	6.7	1.1	1.2	3.1	5.4	11.0
18.4	12.4	10.2	3.2	2.1	7.4	4.7	7.3	12.4
6.5	4.0	4.2	28.5	11.8	19.6	8.1	10.0	21.1
10.6	12.6	16.5	5.4	6.1	5.9	27.9	21.8	23.1
8.5	11.1	10.4	8.3	8.7	7.1	6.2	7.5	8.2
5.8	11.5	12.5	8.0	2.8	7.8	12.8	17.8	13.2
81.4	87.8	81.8	2.0	1.0	2.4	0.1	0.4	0.1
94.2	97.7	96.3	—	—	0.3	1.2	0.5	0.8
15.6	6.8	18.6	23.5	21.5	16.9	6.3	9.2	16.1
29.5	6.7	37.9	52.9	77.0	35.6	3.7	4.4	4.8
11.9	7.7	9.9	12.2	6.1	12.3	4.9	6.1	10.2
0.7	1.6	0.6	—	—	3.1	1.4	0.8	1.2
—	—	—	—	—	—	—	—	—
—	—	22.7	—	—	16.8	—	—	33.5
6.5	6.1	10.9	12.0	3.5	10.4	14.9	17.2	15.9
18.9	18.5	18.9	23.7	24.1	26.6	10.1	13.3	13.0
5.0	5.5	4.9	12.0	12.6	19.7	5.4	7.4	10.1
11.0	8.9	11.7	4.8	3.2	1.1	18.5	13.4	8.6
19.3	14.2	12.1	18.7	11.9	17.8	11.3	12.9	12.9
17.4	32.5	15.8	52.9	29.0	66.2	8.6	12.3	1.6
17.2	19.5	17.2	29.1	21.5	27.9	10.5	12.9	11.4

3. ODA의 集中度

DAC計		캐나다		프랑스		獨逸	
國名	%	國名	%	國名	%	國名	%
이집트	9.4	방글라데시	3.4	코트디부아르	5.5	케냐	6.1
인도	3.2	카메룬	3.2	뉴칼레도니아	4.2	터키	5.1
중국	2.5	가나	2.4	폴리네시아프랑스	3.8	이집트	4.2
이스라엘	2.3	케냐	2.2	모로코	3.6	잠비아	4.0
방글라데시	2.0	잠비아	1.9	세네갈	3.4	가나	3.5
인도	2.0	중국	1.9	카메룬	2.5	인도	3.4
필리핀	1.9	인도	1.7	마다가스칼	2.0	중국	3.3
케냐	1.9	파키스탄	1.6	이집트	2.0	세네갈	2.8
터키	1.7	코트디부아르	1.6	알제리	2.0	인도	2.5
탄자니아	1.4	인도	1.3	콩고	1.8	파키스탄	2.1
파키스탄	1.3	짐바브웨	1.2	인도	1.8	요르단	2.1
태국	1.3	이집트	1.2	자이레	1.7	마다가스칼	1.8
모잠비크	1.3	모잠비크	1.1	가봉	1.7	이스라엘	1.6
잠비아	1.2	탄자니아	1.1	말리	1.5	자이레	1.4
세네갈	1.2	세네갈	1.1	중국	1.5	태국	0.9
모로코	1.0	이디오피아	1.1	부룬디	1.4	방글라데시	0.9
가나	1.0	자마이카	1.0	차드	1.4	모로코	0.8
볼리비아	0.9	태국	1.0	니제르	1.4	베네수엘라	0.7
코트디부아르	0.9	자이레	0.9	기네아	1.2	탄자니아	0.7
니카라과	0.9	필리핀	0.9	튀니지	1.2	튀니지	0.7
말레이시아	0.9	모로코	0.9	태국	1.2	페루	0.7
자이레	0.9	요르단	0.8	토고	1.1	볼리비아	0.7
온두라스	0.8	나이지리아	0.7	모잠비크	1.1	이란	0.7
이디오피아	0.8	루완다	0.6	베냉	1.0	브라질	0.6
자메이카	0.7			인도	1.0	짐바브웨	0.6
計	43.3		35.4		51.0		52.0
多國間援助	24.0		27.8		20.6		21.9
其他	11.2		26.1		11.6		7.9
總 ODA (百萬元)	64,569		2,865		7,799		8,460

資料: OECD

(1990~91)

(單位：%)

日 本		네델란드		스웨덴		英 國		美 國	
國 名	%	國 名	%	國 名	%	國 名	%	國 名	%
인 니	10.8	인 니	7.5	탄 자 니 아	7.1	인 도	5.1	이 집 트	32.1
필 리 핀	7.4	인 도	5.8	모 잠 비 크	6.6	방글라데시	3.2	이스라엘	8.3
중 국	7.1	탄 자 니 아	2.9	잠 비 아	3.1	케 나	2.4	온두라스	2.4
태 국	4.8	네델란드	2.5	인 도	3.0	말 라 위	1.8	니카라과	2.2
말 레 지 아	4.5	영안틸제도	2.5	베 트 남	2.7	잠 비 아	1.8	자 마 이 카	2.1
방글라데시	4.0	방글라데시	2.5	이디오피아	2.2	파 키 스 탄	1.8	방글라데시	1.9
터 어 키	3.3	수 단	2.0	니 카 라 과	2.2	짐 바 브 웨	1.7	볼 리 비 아	1.8
파 키 스 탄	2.4	케 나	2.0	길 바 브 웨	1.8	탄 자 니 아	1.6	필 리 핀	1.6
한 국	2.3	모 잠 비 크	1.9	앙 폴 라	1.7	나 이 제 리 아	1.5	파 키 스 탄	1.4
스 리 랑 카	1.9	잠 비 아	1.6	방글라데시	1.5	가 나	1.4	엘살바돌	1.4
인 도	1.8	파 키 스 탄	1.4	방글라데시	1.5	우 간 다	1.4	케 나	1.1
이 집 트	1.6	수 리 나	1.3	케 나	1.4	수 단	1.4	터 어 키	1.1
요 르 단	1.6	볼 리 비 아	1.2	우 간 다	1.2	모 잠 비 크	1.4	이 라 크	1.1
모 로 코	1.1	페 루	1.2	중 국	1.0	이디오피아	1.2	인 도	0.8
볼 리 비 아	1.1	말 리	1.2	보 츠 와 나	0.9	인 도	1.1	수 단	0.7
케 나	1.0	부르키나파소	1.2	라 오 스	0.8	중 국	1.1	탄 자 니 아	0.7
온두라스	0.8	이 집 트	1.1	기 네 비 소	0.7	말레이시아	1.0	하 이 티	0.6
나 이 제 리 아	0.8	예 멘	1.0	류 니 지 아	0.6	네 팔	1.0	파 나 마	0.6
세 네 갈	0.8	아 루 바	1.0	스 리 랑 카	0.6	이 라 크	0.9	인 도	0.6
브 라 질	0.8	니 카 라 과	1.0	칠 레	0.6	스 리 랑 카	0.8	페 루	0.6
가 나	0.7	이디오피아	0.9	알 제 리 아	0.5	이 잡 트	0.7	가 나	0.6
자 이 레	0.7	스 리 랑 카	0.9	아프가니스탄	0.5	세인트헬레나	0.6	스 리 랑 카	0.5
자 마 이 카	0.6	자 마 이 카	0.8	캄 배 르 테	0.5	터 어 키	0.5	모 잠 비 크	0.5
미 얀 마	0.6	짐 바 브 웨	0.8	수 단	0.5	보 트 와 나	0.5	과 테 말 라	0.5
네 팔	0.5	가 나	0.7	코스타리카	0.4	구 아 나	0.4	코스타리카	0.5
	62.8		45.0		42.4		36.1		65.4
	21.8		26.8		30.8		42.0		15.4
	5.4		15.4		21.1		13.5		10.2
	10,462		2,737		2,062		3,088		15,994

4. ODA의

國 名	分 野 別	社 會 · 行 政 인프라스트락춰		經 濟 인프라스트락춰		農 業	
		75/76	89/90	75/76	89/90	75/76	89/90
오스트랄리아		17.5	42.5	7.3	14.4	4.3	15.8
오스트라리아		7.0	33.9	0.7	24.2	3.3	2.5
벨기에		3.8	38.4	0.9	6.3	2.1	10.0
캐나다		16.5	20.3	11.5	12.9	8.4	9.7
덴마크		14.0	30.9	0.0	11.1	11.4	14.7
핀란드		10.9	21.5	8.8	16.9	3.5	16.8
프랑스		53.7	40.8	13.0	18.6	7.0	7.4
독일		23.4	25.7	17.7	26.7	7.6	7.0
아일랜드		—	42.3	—	2.1	—	19.9
이탈리아		14.0	18.4	2.0	23.1	2.9	17.5
일본		3.3	18.9	36.6	31.9	6.0	11.2
네덜란드		36.4	27.9	10.7	13.9	20.9	15.3
뉴질랜드		14.8	1.5	34.0	0.0	23.7	2.2
노르웨이		25.4	18.7	16.7	16.4	25.5	13.3
포르투갈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22.2	19.9	2.5	18.0	9.0	10.3
스위스		12.3	22.8	13.4	6.3	15.5	18.7
英國		4.8	25.1	3.4	23.5	4.3	10.8
美國		8.7	15.0	2.3	3.3	8.1	4.0
DAC	小計	20.1	23.3	10.2	17.0	8.1	8.6
世界銀行		—	21.2	—	39.2	—	12.2
I D A		—	32.1	—	25.1	—	27.2
E E C		—	—	—	—	—	—
U N 機構		—	39.0	—	7.5	—	8.7
其他		—	—	—	—	—	—
多國間供與小計		—	25.2	—	33.2	—	15.4
總計		20.1	23.5	10.2	25.3	8.1	11.0

資料: OECD

分類別 供與

(單位: %), 全體供與額中 比率

工 業		食糧援助		프로그램援助		其 他		NGO를 通한 ODA
75/76	89/90	75/76	89/90	75/76	89/90	75/76	89/90	89/90
1.6	3.9	9.1	6.5	43.9	5.3	16.2	11.6	5.9
25.2	13.7	—	1.4	—	0.0	63.7	24.3	-3
1.3	11.3	2.2	3.0	0.9	5.6	88.9	25.4	11.4
14.4	4.6	24.9	8.3	0.1	3.5	24.1	40.8	2.6
24.4	15.9	3.4	—	8.2	0.8	38.6	26.6	8.8
11.0	16.8	7.3	0.1	—	1.3	58.5	26.6	2.2
16.6	2.5	1.1	0.5	5.1	5.5	3.6	24.7	—
17.7	10.0	3.1	2.6	2.6	9.4	28.0	18.8	—
—	6.2	—	—	—	—	100.0	29.5	—
28.4	12.1	—	4.6	—	5.0	52.6	19.2	—
20.3	6.0	1.2	0.5	0.1	18.9	32.4	12.6	—
10.7	7.8	3.0	2.3	0.6	13.1	17.7	19.8	—
3.1	—	—	—	13.5	—	10.8	96.3	—
7.3	6.0	—	0.4	—	2.9	25.0	42.3	—
—	—	—	—	—	—	—	—	—
—	—	—	—	—	—	—	—	—
14.7	10.4	8.4	0.1	0.9	7.6	42.2	33.8	—
5.2	3.4	10.6	4.1	—	7.7	43.1	37.0	—
54.4	5.7	1.8	1.3	5.0	12.5	26.3	21.2	1.6
4.1	3.3	29.5	8.2	8.8	16.3	38.6	49.8	—
13.7	5.8	13.1	3.6	5.9	11.9	28.9	29.7	0.4
—	16.7	—	—	—	10.5	—	0.2	—
—	7.2	—	—	—	7.0	—	1.4	—
—	—	—	—	—	—	—	—	—
—	5.8	—	19.6	—	—	—	19.5	—
—	13.6	—	—	—	—	—	—	—
—	9.8	—	1.6	—	8.8	—	2.1	—
13.7		13.1	2.5	5.9	10.8	28.9	17.2	0.3

5. ODA의 供與

國名 供與條件	G E		無償贈與比率	
	1981-82	1990-91	二國間	計
			1990-91	
오스트랄리아	100.0	100.0	100.0	100.0
오스트리아	57.1	84.6	53.7	64.1
벨기에	97.7	94.8	91.7	94.8
카나다	97.8	96.9	95.4	96.9
덴마크	95.1	100.0	100.0	100.0
핀란드	95.8	98.5	95.2	96.7
프랑스	88.8	86.2	69.4	70.8
獨逸	83.1	85.3	64.9	72.2
아일랜드	100.0	100.0	100.0	100.0
이태리	90.1	89.0	64.0	75.4
日本	73.0	75.1	26.8	38.6
네덜란드	94.1	94.1	89.9	92.0
뉴질랜드	100.0	100.0	100.0	100.0
노르웨이	99.4	99.7	99.3	99.5
포르투갈	—	77.1	73.3	77.1
스페인	—	—	—	—
스웨덴	99.4	100.0	100.0	100.0
스위스	95.8	100.0	100.0	100.0
英國	98.4	98.9	98.2	98.9
美國	92.5	86.7	94.3	73.9
D A C 計	88.9	85.1	68.6	71.7

資料: OECD

條件(90—91平均)

(單位：%)

借款中 GE	LDCs에 對한 GE	LLDCs에 對한 二國間 供與의 GE
—	100.0	100.0
57.4	99.9	92.6
—	100.0	100.0
—5	100.0	100.0
—	100.0	100.0
66.0	100.0	99.9
54.0	99.8	88.1
55.6	100.0	100.0
—	100.0	100.0
65.5	100.0	97.8
59.0	100.0	91.8
60.2	100.0	100.0
—	100.0	100.0
27.3	100.0	99.1
—	100.0	100.0
—	—	—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63.7	100.0	99.5
58.6	100.0	97.7

6. ODA 의 條件附

國 名	二 國			
	非 條 件 附			
	計	現 金	技術協力	商品購入
오스트랄리아	8.5	5.9	1.5	1.1
오스트리아	30.3	15.7	11.3	3.4
멜기예	0.0	0.0	0.0	0.0
카나다	25.5	2.1	4.1	0.3
덴마크	0.0	8.6	0.0	0.0
핀란드	17.3	11.5	1.8	4.0
프랑스	39.5	20.5	9.0	10.0
獨逸	19.5	4.3	2.4	12.8
아일랜드	0.0	0.0	0.0	0.0
이태리	9.4	7.5	0.4	1.5
日本	69.9	32.3	0.0	37.6
네덜란드	34.7	12.4	12.7	9.6
뉴질랜드	72.4	17.2	3.0	52.2
노르웨이	36.7	0.0	0.0	0.0
포르투갈	0.0	0.0	0.0	0.0
스페인	0.0	0.0	0.0	0.0
스웨덴	53.1	44.2	2.1	6.7
스위스	51.9	42.5	7.9	1.5
英國	0.0	0.0	0.0	0.0
美國	58.9	38.9	0.0	0.0
D A C 計	43.3	31.0	2.3	9.6

資料: OECD

供與現況

(單位：%)

間				多 國 間	
部分 非條件附		條 件 附		EEC除外	EEC
計	技術協力	計	技術協力		
0.0	0.0	45.3	31.1	46.2	0.0
2.4	2.3	45.5	5.3	21.8	0.0
0.0	0.0	0.0	0.0	25.1	13.9
11.8	9.2	28.4	6.4	34.4	0.0
0.0	0.0	0.0	0.0	40.5	8.2
0.9	0.8	44.9	11.3	36.9	0.0
3.6	3.6	40.8	23.3	8.2	8.0
0.0	0.0	38.2	19.2	14.9	11.6
0.0	0.0	0.0	0.0	20.3	42.8
0.0	0.0	47.2	14.7	25.1	18.3
2.8	0.0	12.5	11.3	15.6	0.0
29.5	15.5	3.7	0.0	18.3	9.1
0.0	0.0	0.0	0.0	27.6	0.0
0.0	0.0	23.2	0.0	4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5	7.2	32.9	0.0
0.0	0.0	30.5	18.4	17.6	0.0
0.0	0.0	0.0	0.0	21.8	22.6
6.7	6.5	19.2	6.1	12.7	0.0
3.5	3.5	23.5	10.8	17.1	4.9

7. ODA의 所得 그룹別 配分(90-91平均)

(單位: %), 全體 ODA中 占有率

所得그룹別 國 名	國際機構	LICs	LLDCs		LMICs	UMICs
			1980-81	1990-91		
오스트레일리아	26.3	19.1	20.4	8.8	0.2	
오 스 트 리 아	22.1	12.3	21.0	15.2	0.6	
벨 기 에	22.0	54.8	55.6	34.9	5.8	1.7
카 나 다	31.4	31.7	27.5	5.6	1.0	
덴 마 크	35.4	62.3	46.7	38.2	2.5	0.3
핀 란 드	39.0	45.1	35.0	5.7	0.7	
프 랑 스	10.2	56.7	21.4	26.9	6.7	3.1
獨 逸	16.3	60.9	34.3	25.2	10.8	1.9
아 일 랜 드	17.7	41.5	20.7	32.3	3.1	0.0
이 태 리	19.6	58.4	42.5	28.9	8.9	1.1
日 本	21.8	31.2	16.4	14.2	1.1	
네 델 란 드	20.3	62.5	33.5	28.6	3.4	2.5
뉴 질 랜 드	16.9	15.7	17.9	7.7	0.0	
노 르 웨 이	37.4	43.8	45.9	3.7	0.6	
포 르 투 갈	5.5	76.5	—	68.1	0.3	—
스 페 인	12.4	49.2	—	16.2	9.7	2.9
스 웨 덴	30.8	40.8	38.2	5.3	0.6	
스 위 스	20.8	40.2	35.1	4.6	0.6	
英 國	21.5	59.2	36.5	30.3	3.2	0.6
美 國	21.6	20.8	16.9	3.9	0.3	
計	20.9	60.4	29.1	24.4	7.6	1.3

資料: OECD

＜參考 文獻＞

- 金彩炯, OECD 會員國의 NGO 活動, 韓國國際協力團, 1992.12
- 金學洙,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經濟協力 方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10.
- 金學洙,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關한 政策課題와 方向,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7.
- 羅元燦·宋河律,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開發援助政策, 產業研究院, 1989.11.
- 羅元燦,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技術協力政策方向, 產業研究院, 1991.5.
- 朴 昇, 經濟發展論, 博英社, 1990.1.
- 沈義燮, 對開途國 投資協力과 中小企業의 役割,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中心, 1991.7.
- 尹海鎮, 우리나라 政府開發援助의 國別差別化政策方案, 韓國國際協力團, 1992.11.
- 李善煥·孫正植,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經濟協力政策方向, 1991.8.
- 林鍾哲, 國際經濟學, 日新社, 1980.1.
- 鄭勳沐, 經濟協力, 國際經濟研究院, 1978.12.
- 池鎔基, 韓國開發援助政策과 比較開發調查論, 韓國國際協力團, 1992.12.
- 池鎔基, 金相泰, 우리나라의 國際協力事業, 韓國國際協力團, 1991.5.
- 經濟企劃院, 1992年度 開途國 經濟協力報告書, 1993.7.
- 科學技術處, 國際技術協力統計, 1993.10.
- 韓國國際協力團, 開發調查業務要領, 1992.1.
- 韓國國際協力團, 日本의 海外經濟協力便覽(Ⅰ, Ⅱ, Ⅲ), 1991.10.
- 國際經濟研究院, 戰後國際經濟30年史(經濟協力篇), 1977.12.
- 韓國海外開發公社, 世界의 國際協力概要, 1990.12.
- 產業銀行, 經濟協力的 實績과 課題, 1970.12.
- 韓國輸出入銀行,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效率的 選定方案, 1989.1.
- 韓國輸出入銀行,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制度, 1993.6.
- 서울國際건설링株式會社,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技術的妥當性檢討
을 爲한 技術部門 Consultant活用方案에 關한 研究, 1991.5.
- 櫻井雅夫, 國際開發協力の 仕組みと法, 三省堂, 1985.10.
- 青山利勝, 開發途上國を 考える, 勁草書房, 1991.6.
- 桶口貞夫, 政府開發援助(第二版), 勁草書房, 1991.9.

- 小浜裕久, ODAの 経済學, 日本評論社, 1992.6.
- 鳥山正光, 開發 プロジェクト 具體化の ための F/Sの 理論と 實踐, 1986.2.
- 土井たか子外共著・譯, ODA改革, 社會思想社, 1990.7.
- 外務省 經濟協力局, Outlook of Japan's Economic Cooperation, 1991.2.
- 外務省 經濟協力局, Japan's ODA, 1992.3, 1993. 3.
-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の 政府開發援助(上, 下), 1991.10.
- 外務省 經濟協力局, 經濟協力評價報告書, 1989, 1990, 1991年版.
- 總務廳 行政監察局, ODA(政府開發援助)の 現状と 課題, 1988.9.
- 通商産業省, 經濟協力の 現状と 問題點, 1991.7.
- 國際協力事業團, 開發調査の しおり, 1991.2.
- 國際協力事業團, プロジェクト 方式技術協力の 手引, 1989.1.
- 國際協力事業團, 調査事務 コンサルタント等 契約手續, 1983.8.
- 國際協力事業團, 開發途上國の 綜合開發計劃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975.3.
- 國際協力事業團, 開發調査團の 手引, 1981.9.
- 國際協力事業團, 事前調査の 手引, 1983.1.
- 國際協力事業團, プロジェクト 方式技術協力事業案件の評価 ガイドティン,
1993.10.
- 國際協力事業團, JICA 統計實務便覧, 1992.1
- 國際協力事業團, 分野別(環境)援助研究, 1988.12
- 國際協力事業團, 分野別(開發と女性) 援助研究會 報告書, 1991.2.
- 國際協力事業團, 分野別(貧困問題) 援助研究會 現状分析, 1991. 2.
- 國際協力事業團, 先進國援助機關・國際機關における 開發調査實施方法に関する
調査報告書, 1987.2.
- 國際協力事業團, 先進諸國援助機關における コンサルタント 利用狀況等に關す
る 調査報告書, 1986.2.
-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事業團年報, 1991.10. 1992.10.
- 國際協力推進協會, 經濟協力參加への 手引き, 1991.3.
- 國際協力研究會, 國際協力ハンドブック, 1983.3.
- 國際開發ジャーナル社, 主要先進國の 無償援助, 1989.8.
- 國際開發ジャーナル社, 開發 コンサルタント, 1988.9.
- 國際開發センタ、類型的相違を 考慮した 開發局面別 經濟協力形態に關する 基
礎調査, 1988.3.

- Baum, W.C., and Tolbert, S.M., *Investing in Develop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Browne, Stephen,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0.
- Imbeau, L.M., *Donor Aid-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 Allocations to Third World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Pater Lang, 1989.
- Meise, Gerald M.,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Krueger, A.O., Michalopoulos, C., and Rutton, V.W., *Aid and Development*,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 Riddell, R.C., *Foreign Aid Reconsider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Sooyong Kim and Wan-Soon Kim,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 Performance, Prospects and Policy*, Seoul,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Institute, ICEG, 1992.
- ICVA and Euro Step, *The Reality of Aid*, United Kingdom, 1993.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Course*, Malaysia, 1990.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1992 Report*等 各年度.
- OECD,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1992.
- OECD,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1.
- OECD, *E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88.
- OECD, *Voluntary Aid for Development :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1988.
- OECD/DAC, *Reference Articles in Assessing Development Assistance*, 1989.
- OECD/DAC,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 1989.
- OECD/Development Centre, *Manual of Industrial Projec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1972.
- IBRD, *Use of Consultants by World Bank Borrowers as Executing Agency*,

1986.

UN, Guideline for Project Evaluation, 1972.

UN, Manual on the Use of Consultants in Developing Countries, 1972.

AID, AID Handbook2-Policy, 1987.

AID, AID Handbook3-Project Assistance, 1991.

AID, AID Handbook17-AID Organization, 1987.

AID, AID Evaluation Handbook, 1987.

ADB, 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DB and its Borrowers, 1986.

BMZ, Guidelines on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BMZ, Assessment and Follow-up, 1990. 11.

KfW, Financ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1985.

CIDA, Application to Register with CIDA, 1985.

CIDA, Consultant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1985.

CIDA, Consultant Selection : User's Guide, 1985.

CIDA, Project Management Planning, 1990.

CIDA, Bilateral Project Management Lifecycle, 1991.

CIDA,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 An Overview, 1989.

CIDA, Sharing Our Future, 1987.

CIDA, Management of Bilateral Project Evaluations, 1991.

Treasury Board of Canada,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s by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1981.

AIDAB, Country Programs Operations Guide, Volume2, 1992.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Australian Overseas Aid Program, 1984.

ODA, The British Overseas Aid Programme, Some Basic Facts, 1985.

ODA, Guide to Aid Procedures, 1991. 8.

ODA(Edited by B.E. Cracknell), The Evaluation of Aid Projects and Programmes, 1984.

ODA, Appraisal of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 A Guide For Economists, 1988.

SIDA, SIDA's Role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Program Countries, 1987.

JICA, Development Study, 1991. 2.

<索

引>

- 家族計劃(Family Planning) 193
 開發輸入融資基金(Development Import Finance Facility) 199
 開發援助(Development Assistance) 24
 開發援助委員會(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4, 25, 102
 開發援助戰略(ODA Strategy) 98
 開發調查(Development Survey, Development Study) 53, 143
 開發協力(Development Cooperation) 24
 겅(隔差) 理論 (Gap Theory) 20
 据置期間(Grace Period) 88
 經濟인프라스트럭처(Economic Infrastructure) 221
 經濟的動機(Economic Motives) 101
 經濟的分析(Economic Analysis) 164
 經濟的費用收益分析(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170
 經濟協力(Economic Cooperation) 24
 經濟協力處(Economic Cooperation Agency) 36
 高中所得國(UMICs) 49
 共同補助(Concertation) 17
 共同融資(Confinancing) 90, 159, 196
 共同協力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 197
 共線性(Collinearity) 130
 供與國(Donor Country) 6
 供與國의 利益(Donor's Interest) 123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25
 歐美型(一貫實施型) 59
 構造調整融資(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 SAL) 197
 歐洲復興開發銀行(EBRD) 95
 國家開發戰略書(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47
 國家專門人力管理制度(National Recruitment Services) 178
 國別研究報告書(Country Report) 150, 177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ming) 48, 147
 國別援助實施指針 149
 國際開發研鑽事業 37
 國際開發協力廳 144, 203
 國際經濟協力會議(CIEC) 3
 國際開發協會(IDA) 95
 國際金融公社(IFC) 95
 國際機構分擔金 28. 97
 國際機構出資金 28. 96
 國際農業開發基金(IFAD) 95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95

- 國際收支(Balance of Payment) 106
- 國際資本移動(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20
- 國際協力局(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36
-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164
- 機會費用(Opportunity Cost) 164
- 技術援助(Technical Assistance) 79
- 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 79
- 技術的分析(Technical Analysis) 164
- 技術協力(Technical Cooperation) 79
- 基礎調查(Basic Study) 62
- 其他公的資金(Other Official Flow : OOF) 26
- 其他 低所得國(LICs) 50
- 機資材 供與事業 41
- 南南協力(South-South Cooperation) 87, 187
- 南北問題(North-South Problem) 2, 100
- 內部收益率(Internal Rate of Return : IRR) 170
- Nurkse R. 20
- 能率性(Efficiency) 170
- 多國間 投資保證機關(MIGA) 95
- 多國間協力(Multilateral Cooperation) 26, 94
- 單獨技術協力(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 FTC) 27, 80
- 單一隔差理論(One Gap Theory) 21
- 對外經濟協力基金(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38, 87, 117
- 對外援助法(Foreign Assistance Act) 36
- 對外活動處(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36
- Logframe(Logical Framework) 170, 200
- Long List 68
- Rosenstein-Rodan P.N. 20
- Rostow W. 20
- Riddell R. C. 20
- Rio 宣言 191
- Ricardo D. 20
- Mikesell R. F. 20, 22
- Matching Grants 196
- McKinnon R. I. 22
- Multi-year Funding 196
- 湄公委員會(Mekong Committee) 177
- Mosley P. 136
- 無償技術用役事業 37, 54, 57
- 無償援助(Grant Aid, Grant Assistance) 42
- 無償資金協力(Capital Grant Assistance) 26
- 無償協力 26, 133
- 貿易依存度 18
- Myrdal G. 20
- Mill J. S. 20
- 民間資金(Private Flow : PF) 26
- Barry B. 17
- Baum W. C. 55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102
- 附帶條件(Tying Status) 200
- 部門別 評價(Sector Evaluation) 167
- 部分非條件附(Partially Untied) 7, 16

- 分野別 研究報告書(Sector Report) 177
- Brandt委員會 100
- Browne S. 20, 26, 94
- Bruce C.M.F. 166
- Block Grants 196
- BMZ(獨逸 經濟協力部) 12
- BOO方式(Build-Operate-Own-Scheme) 5, 200
- BOT方式(Build-Operate-Transfer-Scheme) 5, 200
-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 141, 200
- 費用收益(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166, 170
- 費用效果性 分析(Cost-Effectiveness Analysis) 170
- 非政府機關(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26, 196
- 非條件附(Untied) 7, 205
- 非프로젝트援助(Non-Project Assistance) 52, 152, 174
- 貧困輕減(Poverty Alleviation) 3
- Sadik N. 199
- 事業發掘(Identification) 55, 158
- 事業發掘檢討書(Project Identification Document) 164
- 事業實施(Implementation) 55
- 事業審查(Appraisal) 55
- 事業準備(Preparation) 55
- 事業評價(Evaluation) 55, 167
- 事業範圍(Scope of Work) 64
- 事業施行條件(Terms of Reference: TOR)
- 事業執行計劃(Action Plan) 150
- 事前審查(Appraisal Ex Ante) 167
- 事後評價(Ex-Post Evaluation) 167
- 社會的分析(Social Analysis) 164
- 社會的費用收益分析(Social Cost-Benefit Analysis) 170
- 社會・行政인프라스트럭처(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52, 222
- 3隔差理論(Three Gap Theory) 21
- 商品援助(Commodity Aid) 42
- 相互經濟援助會議(CMEA) 2
- 相互安全保障法(Mutual Security Act) 36
- 相互依存性認識(Recognition of Interdependency) 100
- 世界共同體(World Community) 100
- 世界食糧計劃(WFP) 95
- 世界的 再配分(Global Redistribution) 15
- Sharing Our Future 109
- Sengupta A. 22
- Short List 68
- 受援國(Recipient Country) 5
- 受援國費用負擔(Local Costs 또는 Counterpart Costs) 152 154, 155
- 受援國援助需要(Recipient Needs) 123
- 圓卓會議(Round Table Meetings) 17
- 垂直協力(Vertical Cooperation) 176
- 消費財(Consumption Goods) 51

- 水平協力(Horizontal Cooperation) 176
 受惠者(Beneficiary) 51, 153, 174
 Speidel 193
 Smith A. 102
 Stewart F. 141
 Strout A. M. 20
 CIDA(캐나다 國際開發廳) 14, 150
 SIDA(스웨덴 國際開發廳) 14
 시뮬레이션(Simulation) 分析 130
 CCCE(프랑스 經濟協力中央金庫) 14
 CAD方式 206
 食糧援助(Food Aid) 7, 52, 141, 223
 新經濟5個年計劃 105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NIEO) 3, 100
 新興工業國家(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NICs) 3
 實務調整(Operational Coordination) 17
 實施設計調查(Implementation & Detailed Design) 63
 아래로부터의 開發戰略(Bottom-up Approach) 51
 IDCA(美國國際開發協力廳) 14
 兩隔差理論(Two Gap Theory) 21
 諒解覺書(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67
 讓許性水準(Concessionality Level : CL) 16
 ESCAP(亞·太地域 經濟社會 理事會) 177
 ADB(아시아開發銀行) 95
 AID(美國國際開發廳 : USAID) 150
 女性開發(Women in Development : WID) 4, 195
 年間豫算申請書(Annual Budget Submission) 150
 研修生招請事業 28, 81
 連繫性 145
 影響(Impact) 170
 豫備妥當性調查(Pre-Feasibility Study) 64
 豫備候補事業(Reserve Project Candidates) 160
 豫算制約(Budget Constraint) 106
 ODA(英國海外開發廳) 14
 Ohlin B.G. 20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經濟協力開發機構) 25
 OECF(日本海外經濟協力基金) 14
 要請主義方式(Request Basis) 158, 181
 外國援助(Foreign Aid, Foreign Assistance) 25
 外部指向的政策(Outward-looking Policy) 18
 外換隔差(Foreign Exchange Gap) 21
 外換供給能力(Foreign Exchange Capacity) 21
 援助(Aid, Assistance) 25
 援助供與國會議(Donor's Meeting) 5, 198
 援助倦怠(Aid Weariness) 4
 援助浪費性(Aid Dissipation) 20
 援助代替性(Aid Fungibility) 20

- 援助目的(Aid Objectives) 103
- 援助貿易連繫事業(Aid and Trade Provision)
199
- 援助產業(Aid Industry) 201
- 援助生產性(Productiveness of Aid) 20
- 援助受容(吸收)性(Aid Absorption) 20
- 援助의 商業化(Commercialisation of Aid) 15
- 援助의 中長期戰略(Strategic Plan) 107
- 援助의 質(Aid Quality) 200
- 援助理念 98
- 援助集中度 115, 200
- 援助調整(Aid Coordination) 16
- 援助支援適格國(Country Eligibility List) 113
- 援助疲困(Aid Fatigue) 3
- 援助行政(Aid Administration)
- 有償協力 26, 142
- UN開發 10年(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2
- UN 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UNHCR)
- UNCTAD(UN貿易開發會議) 2
- UNIDO(UN工業開發機構) 178
- UNDP(UN開發計劃) 15, 37, 95, 38, 176
- UN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 38, 176
- UN食糧農業機構(FAO) 95
- UN女性開發基金(UNIFEM) 195
- UN人口活動基金(UNFPA) 95, 193
- UN韓國復興機構(UNKRA) 36
- UN環境開發會議(UNCED) 191
- 醫療團派遣事業 84
- 議題 21(Agenda 21) 191
- 二國間 協力(Bilateral Cooperation) 26
- 人間의 基本的需要 接近方式(Basic Human Needs Approach) 3
- 人間의 基本的 欲求(Basic Human Needs: BHN) 7
- 人口協力援助(Population Assistance) 193
- 人道主義的考慮(Humanitarian Consideration) 100
- 人道主義的動機(Humanitarian Motives) 101
- 人力資源開發(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4
- 引出(Disbursements) 90
- 日本型(區分實施型) 59
- Imbeau L.M. 123
- 剩餘農產物援助(PL480)
- 資金協力(Financial Cooperation) 196
- 諮問二層會議(Consultative Group Meetings) 17
- 資本財(Capital Goods) 51
- JICA(日本國際協力事業團) 14
- 殘存開發事業(Residual Development Projects) 158
- 潛在價格(Shadow Prices) 164
- 災難救護(Disaster Relief) 52, 141
- 財務的分析(Financial Analysis) 164
- 財務的費用收益分析(Financial Cost-Benefit Analysis) 170

- Jackson Report 116
 占領地域行政救護援助(GARIOA) 36
 低中所得國(LMICs) 50
 貯蓄隔差(Savings Gap) 21
 貯蓄能力(Savings Capacity) 20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 141
 絕對貧困(Absolute Poverty) 15
 專門家派遣事業 28, 83
 點檢(Monitoring) 167
 漸增主義(Incrementalism) 132
 定量的方法 124, 126, 131
 定性的方法 126
 政府間協力(Exchange of Notes : E/N) 87
 政策對話(Policy Dialogue) 158
 政治的 動機(Political Motives) 101
 制度的分析(Institutional Analysis) 164
 條件附(Tied) 7, 15, 199, 205
 綜合開發計劃(Master Plan) 62
 主候補事業(Prime Project Candidates) 160
 準據(Criteria) 165
 重點支援分野(Sectoral Focus) 108
 重點支援國家(Country Focus) 108
 贈與(Grants) 27
 贈與率(Grant Element) 7, 25, 142, 200
 持續性(Sustainability) 170, 175
 支援決定(約束)(Commitments) 90
 GTZ(獨逸技術協力公社) 184
 職務分析(Job Analysis) 184
 執行中評價(On-going Evaluation) 167
 借款協約(Loan Agreement : L/A) 87
 參與的開發(Participatory Development) 5
 債務償還比率(Debt Service Ratio) 197
 請求權資金(The Property and Claim)
 青年海外奉仕團派遣 85
 債務輕減(Debt Relief) 197
 Chenery H. B. 20
 Chenery-Strout Model 22
 最貧困(LLDCs) 49
 最適配分(Optimum Allocation) 140
 最初評價(Initial Assessment) 164
 77그룹(Group of 77) 2
 KfW(獨逸復興金融金庫) 14
 Keynes J. M. 20
 코디네이터 86
 Colombo Plan 1
 Conly 193
 Kontos S.E. 22
 Krueger A. O. 16, 35, 199
 妥當性調査(Feasibility Study) 57, 63, 65
 Tidewater供與國會議 198
 Tolbert S. M. 164
 Toronto Terms 5
 投資關聯技術協力(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 ITC) 27, 80
 Trinidad Terms 5
 特別引出權(Special Drawing Rights : SDR)
 16
 Tinbergen報告書 2, 170

- 波及效果(Trickle Down Effect) 2
- Parallel system 177
- Fei J. C. 20
- Fei-Paauw Model 22
- Point Four Program 2
- Pool System 189
- Prebisch R. 20
- 프로그램援助(Programme Assistance) 7, 223
- 프로그램評價(Program Evaluation) 168
- 프로젝트 사이클(Project Cycle) 55
- 프로젝트 集合評價制度(Project Pool Appraisal System) 159
- 프로젝트型事業(Project-type Technical Cooperation) 41, 73
- Pearson 報告書 3, 100
- 現金(Cash)支援 51, 53
- 下請契約方式(Sub-Contracts) 196
- 韓國國際協力團(KOICA) 38, 98, 202
- 合同會議(Joint Consultation) 17
- 合意議事錄(Record of Discussion : R/D) 153
- 海外依存度 18
- 行政費用(Administrative Costs) 184, 185
- Hirschman A. O. 22
- 協議主義方式(Consultation Basis) 160
- 混合融資(Mixed Credits) 16, 199
- 環境問題(Environmental Issues) 4
- 環境的分析(Environmental Analysis) 164
-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92
- 效果性(Effectiveness) 170, 200
-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 20
- 吸收能力隔差(Absorptive Capacity Gap) 21